

2017

여성기업 백서

Women Entrepreneurs White Paper



WOMEN

ENTREPRENEURS

WHITE PAPER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women enterprise supporting center

2017

여성기업 백서 발간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 관련 정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6년 기준 OECD 35개국 중 31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사업체 수는 139만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수의 38.7%를 차지하는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15년 기준, 통계청).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선진국수준으로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이 충분하며,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업종에서도 여성 사업체수가 ‘13년 69.9천개에서 ‘15년 75.8천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여성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39만의 여성기업인은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여성기업가정신 함양 등을 통하여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유연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는 파듯한 구직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IMF총재가 지난 ‘17년 9월 “한국이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그 해법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이루어지면 GDP가 10% 성장할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여성은 앞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입니다.

여성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인 스스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여성기업육성에 관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첫 발간 이후 4번째 발간되는 「2017 여성기업 백서」에는 2017년 국내외 여성기업의 현황과 여성기업 관련 육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2017 여성기업 백서」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여성기업 발전에 토대가 되고 다양한 관심과 연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2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한 무 경

Contents

제1부 총론

제1장 서론	
1. 배경	03
2. 구성 및 내용	05

제2장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1. 여성기업 정의	06
2. 여성사업체 현황	08
3. 여성기업의 특성	12

제3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1. 국내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20
2. 해외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31

제2부 여성기업의 현주소

제1장 여성기업 동향	
1. 여성 창업 동향	43
2. 여성기업 일반 현황	55
3. 여성기업 고용 현황	63
4. 여성기업 재무 현황가. 재무 현황	68
5. 여성기업 수출 및 투자 활동	73
6. 교육 및 연수	76
7. 여성기업 애로 현황	78

제2장 해외 여성기업 동향	
1. OECD 국가 여성 경제활동 현황	85
2. 해외 여성기업 현황	102

제3부 해외여성기업 지원 정책

제1장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23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28

제2장 EU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32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33

제3장 영국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37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41

제4장 독일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44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47

제5장 스웨덴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50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52

제6장 핀란드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55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58

제7장 호주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60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63

제8장 일본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67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70

제9장 대만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74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76

제10장 인도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180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84

제11장 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	187
-----------------------	-----



제4부 여성기업 지원 주요 정책현황 및 성과

제1장 여성기업 지원정책 방향

1.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 193

제2장 주요 지원기관 현황

1. 중앙부처 ————— 203
2. 지방자치단체 ————— 208
3. 주요 여성기업 관련단체 ————— 210
4.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 222

제3장 여성기업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1. 여성창업 촉진 지원 ————— 227
2.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 247
3. 여성기업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 257
4.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288
5.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업 ————— 309

제5부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제1장 여성기업을 위한 경영환경 조성

1. 여성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 ————— 317
2. 여성친화 분야로 사회 구조 전환 ————— 322

제2장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및 육성 과제

1. 여성 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단계별 교육 시행 ————— 326
2. 타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등 협력 방안 수립 ————— 328
3.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 329
4.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 335
5.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개발 지원 ————— 337
6.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 ————— 339
7. 멘토링 기능 강화 ————— 341
8. 여성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 343

제3장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1.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제도(의무화)의 실효성 제고 ————— 349
2.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 강화 ————— 362
3. 여성기업 Control Tower 설립: 여성경제 위원회(가칭) ————— 369
4. 여성기업 공제조합(가칭) 설립 ————— 372

별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개 ————— 379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 388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개 ————— 401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발전전략 ————— 40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4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423

양성평등기본법 ————— 439

표목차 ————— 461

그림목차 —————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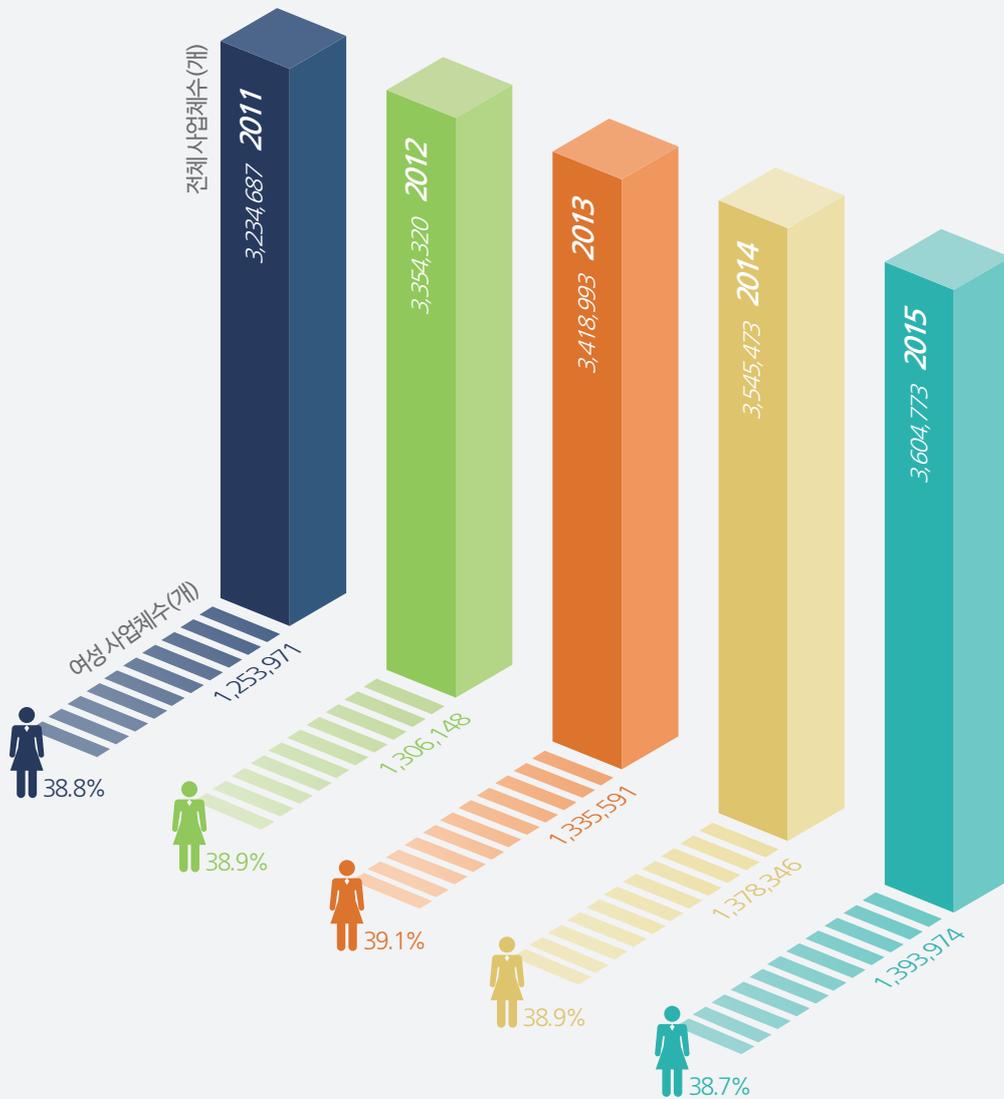


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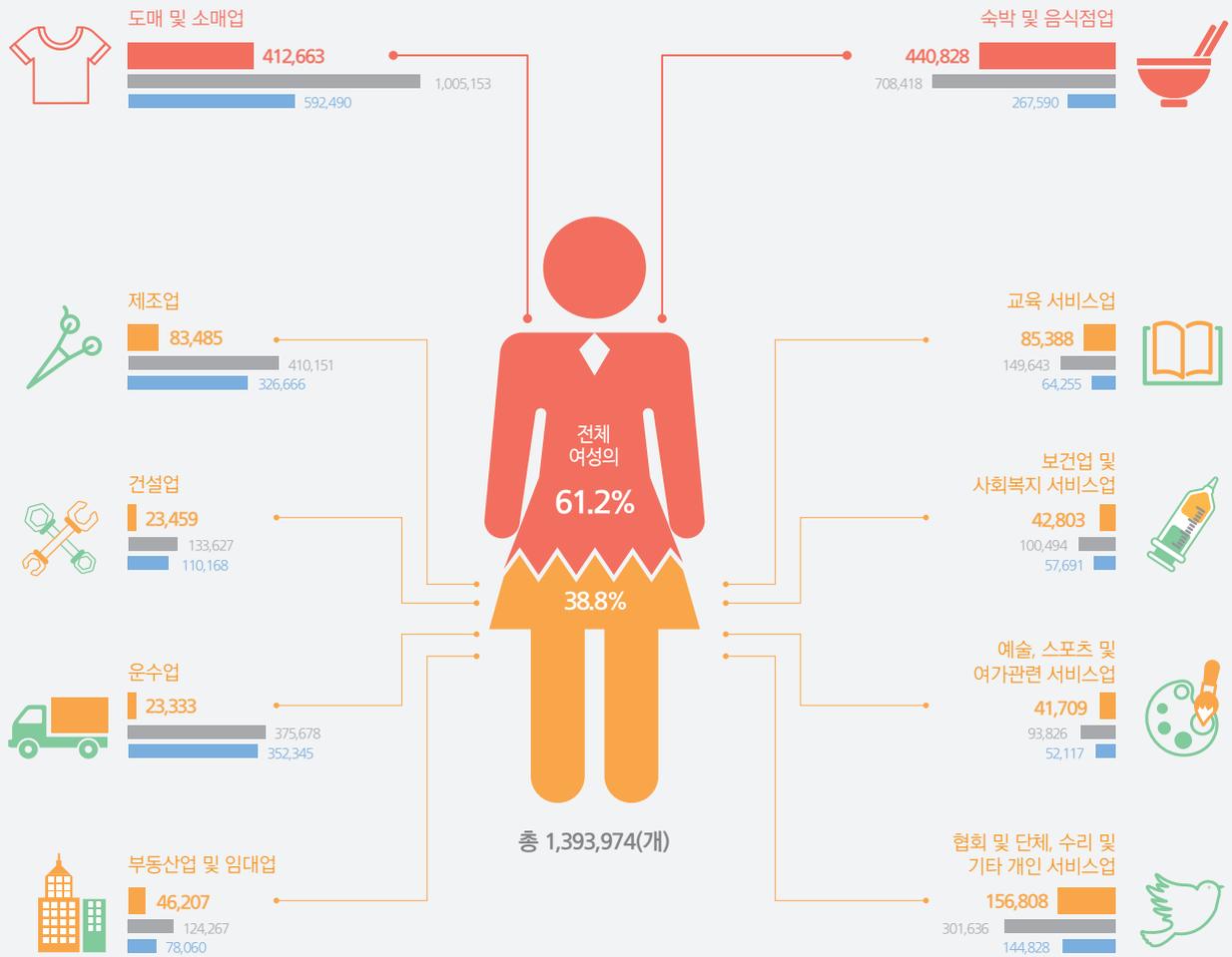
국내 여성 사업체수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수는 총 1,393,974개로
전체 사업체 중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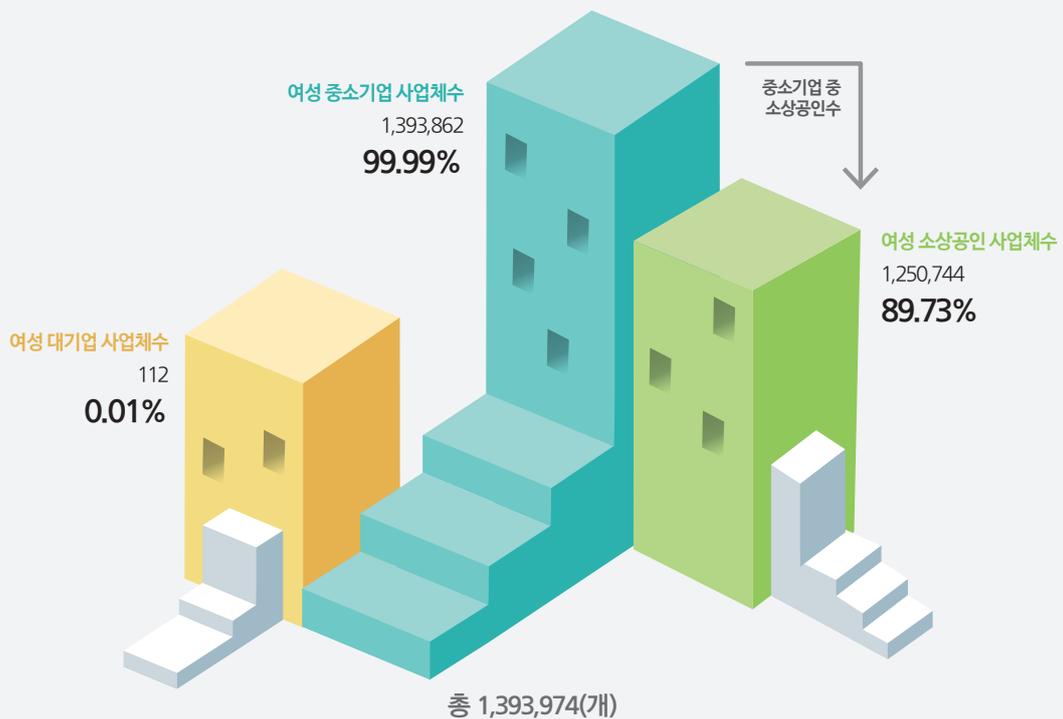
업종별 여성 사업체수

여성 사업체가 가장 많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업'(440,828개)과 '도매 및 소매업'(412,663개)이며, 전체 여성의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숙박 및 음식점'(440,828개),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53,017개), 교육서비스업(84,509개)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사업체수가 더 많은 업종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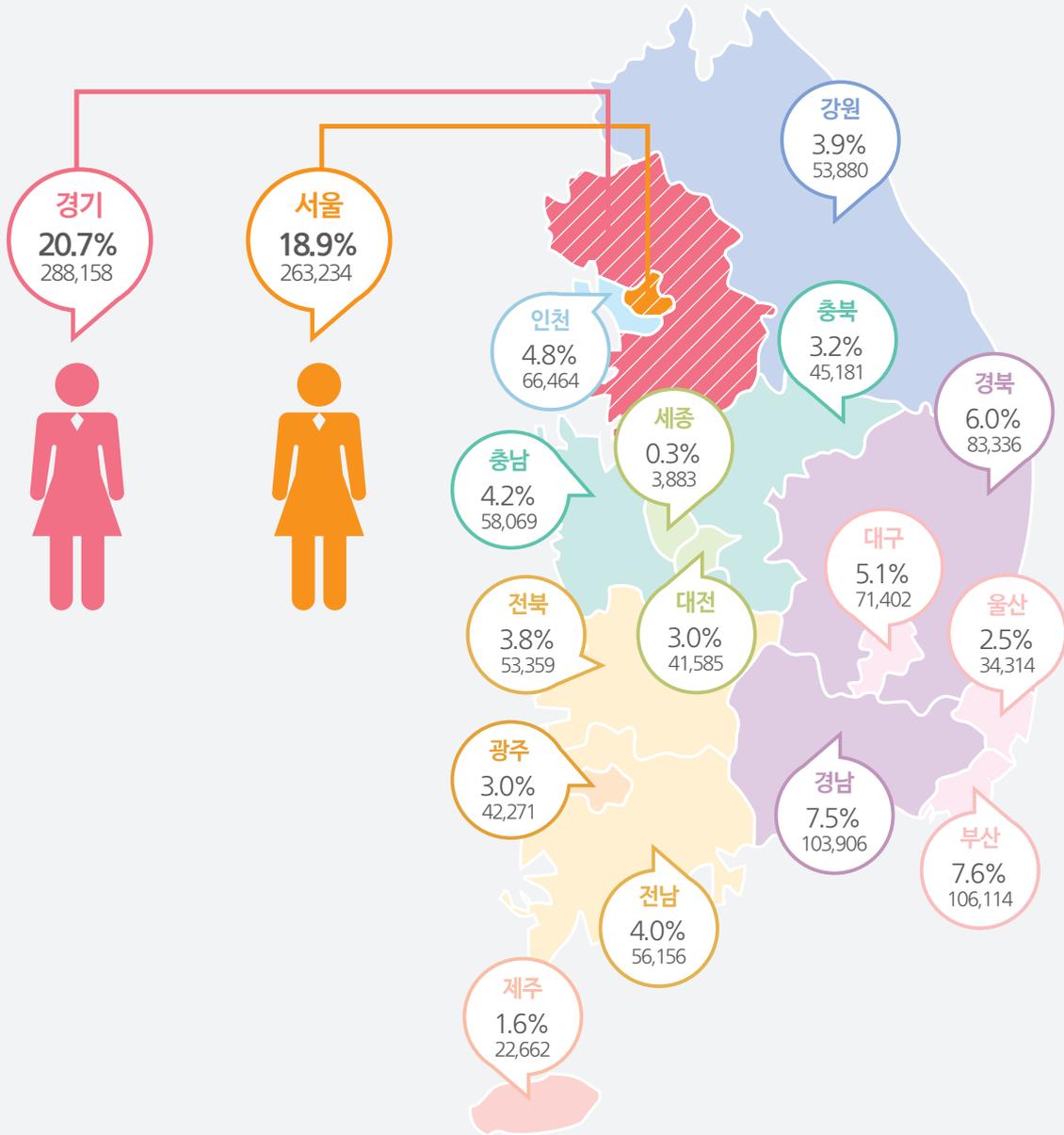
규모별 여성 사업체수

여성 사업체 **1,393,974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99.99%**(1,393,973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9.73%**(1,250,744개)는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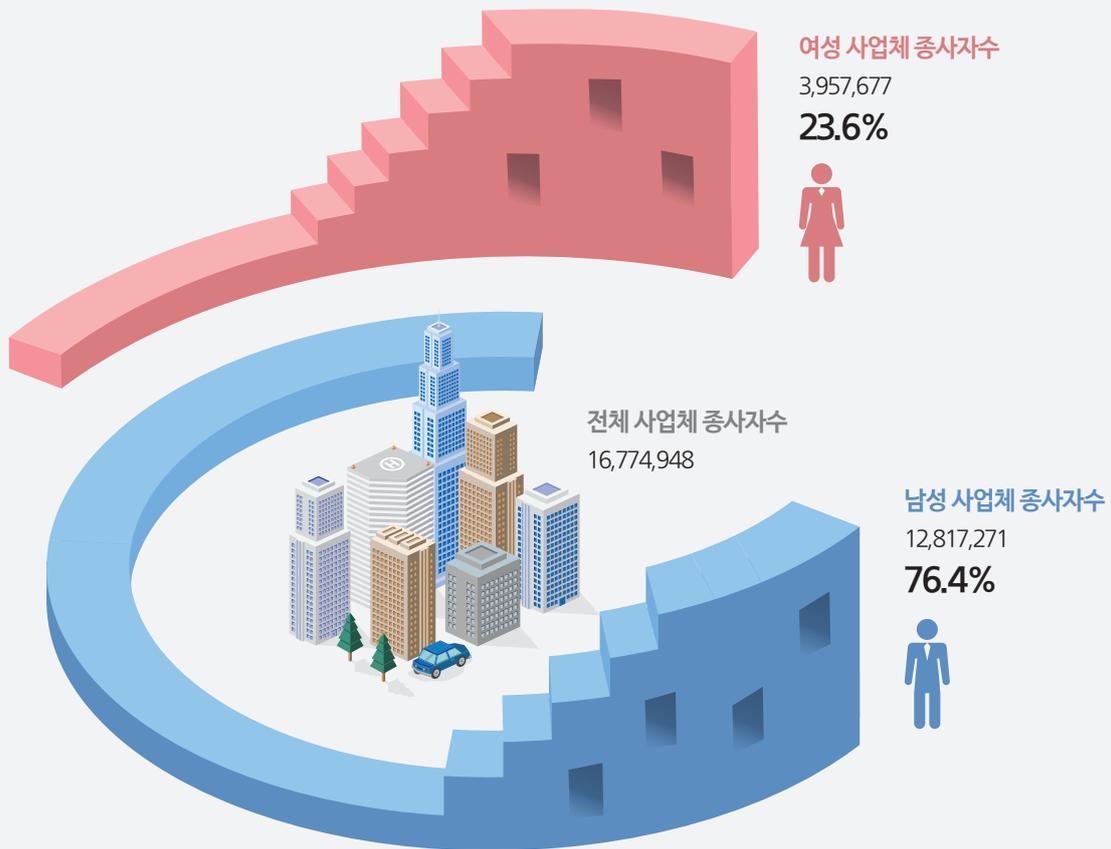
지역별 여성 사업체수

여성 사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경기와 서울이며, 경기도에 **288,158개**(20.7%), 서울에 **263,234개**(18.9%)의 여성 사업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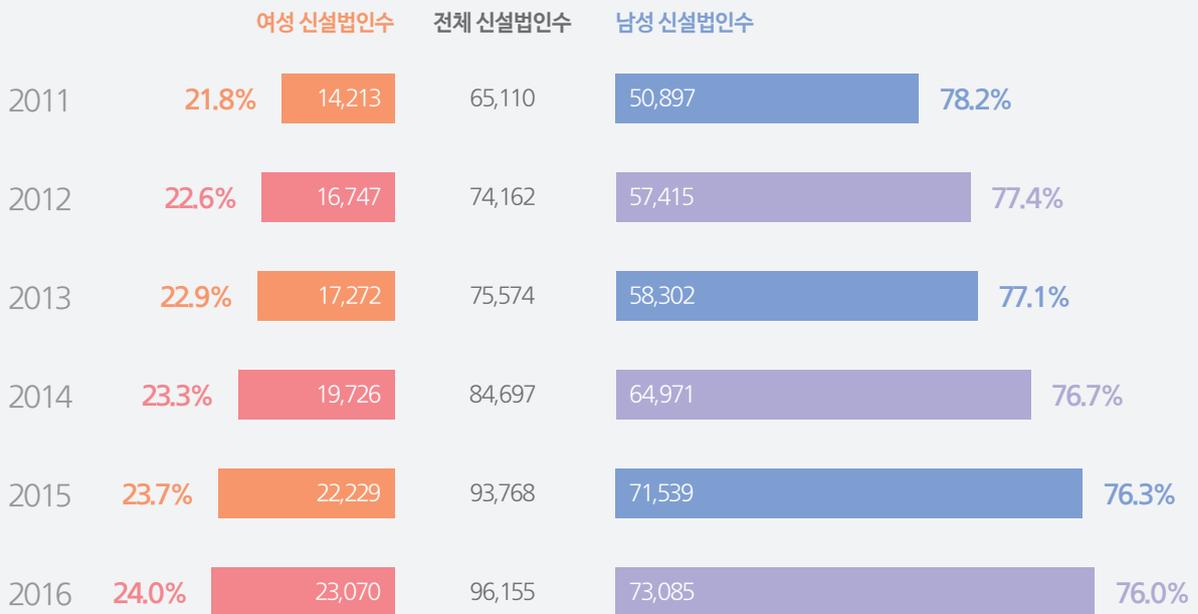
여성 사업체 종사자 현황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 16,774,948명 중에서
여성 사업체 종사자수는 **3,957,677명**(23.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설법인 동향

여성 신설법인수는 총 23,070개로
전체 신설법인 중 2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동향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기준
52.7%로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수(천명)



제1부 총론

- 제1장 | 서론
- 제2장 |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 제3장 |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제1장 서론

1. 배경

정부는 1999년 2월 5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이 창업 등 기업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여성의 창업·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여성기업 육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39만 개(15년 경제총조사 기준)의 여성이 대표자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있으며, 전체 360만 개의 사업체 중 38.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사업체는 '08년 이후 38%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기업 경영 활동이 주목받는 것은 인구 절벽 시기에 여성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지능성, 초연결성, 예측가능성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인터넷,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의 소통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소통 역량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중요해 질 것이다.

본 백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기업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여성기업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구성 및 내용

본 백서는 크게 여성기업과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그리고 향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필요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여성기업 정의 및 여성기업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여성기업 관련 법률을 소개하였다.

제2부에서는 여성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부분으로 국내외 여성기업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국내 여성기업의 창업, 수출, 인력 등 국내 여성기업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여성기업 동향은 OECD에서 발간한 'Entrepreneurship at Glance'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발간한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의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제3부에서는 미국, EU, 영국 등 주요 10개 국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해외와 국내와의 정책들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4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기업과 관련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여성단체들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5부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발전과제와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여성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세 가지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제2장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1. 여성기업 정의

가. 국내의 여성기업 정의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2016.7.28.>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② 삭제 <2016.7.28.>

그러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무화(’14.1월 시행)로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기업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16.7.28부터 시행되었다.

나. 해외의 여성기업 정의

미국은 중소기업법에서 여성기업을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 이상의 기업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 및 일상영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권한과 법적 책임에 있어서 여성의 소유 여부에 대한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여성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나 서류상에 여성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를 통해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표 1-1〉 각 국가별 여성기업 정의

구분	개념
미국	<p>미국의 중소기업법(1953년 제정)은 여성기업을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의 기업을 소유(공개된 기업의 경우 주식의 51%)하는 1인 이상의 기업으로, 1인 이상의 여성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으로 정의</p> <p>15 U.S. Code § 632 - Definitions</p> <p>(n) “Small business concern owned and controlled by women” defined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small business concern is a small business concern owned and controlled by women if—</p> <p>(1) at least 51 percent of small business concern is owned by one or more women or, in the case of any publicly owned business, at least 51 percent of the stock of which is owned by one or more women; and</p> <p>(2) the management and daily business operations of the business are controlled by one or more women.</p>
독일	<p>독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따른 법률(2001년 통과)에 따라 여성기업을 ‘기업의 모든 의사 자율권과 법적 책임을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라고 정의¹⁾</p>
대만	<p>대만은 ‘여성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여성이름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정의</p>

1) 중소기업청(2004),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실질적인 여성기업 지원사업 수립방안」

2. 여성사업체 현황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2015년 기준 총 1,393,974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38.7%를 차지하며 사업체수의 절대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 사업체는 2015년 기준 총 3,604,773개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 전체 사업체 및 여성 사업체수 추세

(단위 : 개,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전체 사업체	3,354,320	3,418,993	3,545,473	3,604,773
여성 사업체	1,306,148	1,335,591	1,378,346	1,393,974
전체 사업체 대비 여성 사업체 비율	38.9	39.1	38.9	38.7

자료: 통계청,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각 년도에서 재편·가공

업종별 여성 사업체의 분포를 보면, 여성사업체의 경우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1.22%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31.6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9.60%),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1.25%), 교육 서비스업(6.13%), 제조업(5.9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남·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2015)

(단위 : 개, %)

구분	전체	여성사업체		남성사업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1,280	240	0.02	1,040	0.05
광업	1,990	217	0.02	1,773	0.08
제조업	410,151	83,485	5.99	326,666	14.7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74	108	0.01	566	0.0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296	1,282	0.09	6,014	0.27
건설업	133,627	23,459	1.68	110,168	4.98
도매 및 소매업	1,005,153	412,663	29.60	592,490	26.80
운수업	375,678	23,333	1.67	352,345	15.94
숙박 및 음식점업	708,418	440,828	31.62	267,590	12.10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8,250	6,100	0.44	32,150	1.45
금융 및 보험업	10,512	2,389	0.17	8,123	0.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4,267	46,207	3.31	78,060	3.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443	14,030	1.01	79,413	3.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8,435	12,925	0.93	35,510	1.61
교육 서비스업	149,643	85,388	6.13	64,255	2.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494	42,803	3.07	57,691	2.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3,826	41,709	2.99	52,117	2.3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1,636	156,808	11.25	144,828	6.55
합계	3,604,773	1,393,974	100.00	2,210,799	100.00

자료: 통계청,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각 년도에서 재편·가공

반면, 남성사업체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이 26.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운수업(15.94%), 제조업(14.78%), 숙박 및 음식점업(12.1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이 덜하고, 제조업의 비중(14.78%)이 3순위로 여성사업체에서의 제조업 비중(5.99%)보다 높은 편이다.

〈표 1-4〉 남·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2015)

(단위 : 개, %)

지역	전체		여성사업체		남성사업체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서울	775,802	21.52	263,234	18.88	512,568	23.18
부산	262,534	7.28	106,114	7.61	156,420	7.08
대구	189,584	5.26	71,402	5.12	118,182	5.35
인천	174,558	4.84	66,464	4.77	108,094	4.89
광주	105,151	2.92	42,271	3.03	62,880	2.84
대전	103,812	2.88	41,585	2.98	62,227	2.81
울산	75,994	2.11	34,314	2.46	41,680	1.89
세종	9,482	0.26	3,883	0.28	5,599	0.25
경기	779,237	21.62	288,158	20.67	491,079	22.21
강원	120,252	3.34	53,880	3.87	66,372	3.00
충북	111,100	3.08	45,181	3.24	65,919	2.98
충남	143,921	3.99	58,069	4.17	85,852	3.88
전북	130,509	3.62	53,359	3.83	77,150	3.49
전남	129,491	3.59	56,156	4.03	73,335	3.32
경북	199,830	5.54	83,336	5.98	116,494	5.27
경남	243,245	6.75	103,906	7.45	139,339	6.30
제주	50,271	1.39	22,662	1.63	27,609	1.25
합계(전국)	3,604,773	100.00	1,393,974	100.00	2,210,799	100.00

자료: 통계청,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각 년도에서 재편·가공

전국 사업체는 주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이중, 여성 사업체는 경기도 (20.67%)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서울(18.88%), 부산(7.61%), 경남 (7.45%)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남성사업체는 서울(23.18%)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서울지역에 분포한 여성사업체는 18.88%로 남성사업체 대비 4.30%p 더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분포도는 남성과 여성사업체 간에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도를 보인다.

3. 여성기업의 특성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기업 여부에 따른 경영방식의 차이를 연구해 왔으나, 아직 관련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공통적으로 여성기업의 특성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더 위험 회피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가 남성이나 혹은 여성이나가 반드시 한 기업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기업은 남성기업과는 다르게 여성기업 특유의 경영 스타일을 보인다. 다음은 여성기업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장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여성기업의 장점

1) 안정적인 경영 추구

여성기업인은 경제적인 목표 외에 사회적인 목표에도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이나 수익 등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남성기업인의 경우, 경제적 성과에 대한 몰입이 강한 반면, 여성기업인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고객만족도나 기업의 가치, 종업원의 만족도 등과 같은 질적 성과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단순히 수익을 늘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데 급급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정적인 기업이 되는데 더 큰 목표를 두는 특성이 강하다²⁾.

또한 여성은 남성기업인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성향이 강하여 재무건전성 및 안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여성기업은 남성기업 보다 매출액과 종업원 규모 자체는 더 작은 편이지만, 부도와 같은 사고율은 여성기업이 더 낮고, 수익성이나 활동성은 여성기업이 더 높아 재무적 건전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³⁾. 또한 자산 구성에서 여성기업은 자기자본의 구성비가 높아 부채 비율이

2) Brush, Candida G.(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4), 5-30

낮은 편이며, 어음결제보다는 신뢰성이 높은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다⁴⁾. 이는 단기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금 차입이나 투자보다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여 내실 있는 경영상태를 유지해나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은 IMF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한 금융환경을 잘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1997년 후반 중소기업체의 평균어음부도율이 30%를 넘어설 때도 여성기업의 부도비율은 7%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의 건실한 경영방식을 잘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⁵⁾

2) 여성적 리더십(Feminine Leadership)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은 가부장적인 것으로, 리더가 스스로의 신념과 확신에 의해 결정을 하고, 구성원들을 과업에 동원시켜 이끌어가는 유형이었다. 그리고 가부장적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보다 나아간 것이 부성적 리더십(paternalist)인데, 이는 리더가 과제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지만, 구성원들과 소통을 높이고 도움으로써 그들로부터 존경, 의존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부성적 리더십도 리더 권력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조직 구성원 보다는 리더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⁶⁾

반면, 여성적 리더십은 가부장적 리더십이나 부성적 리더십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여성적 리더십은 리더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이 따르게 되는 하향식(Top-down)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이 아닌 협동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성장 외에 질적 결과물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지위에 의한 권력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유능함과 능력에서 리더십의 근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⁷⁾ 이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여성기업에서는 권력에

3)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2008),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여성연구, 75(2), 5-26

4) 안승철, 박소영, 김명화(2005),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산업연구, 13, 95-129

5) 강혜련(2003),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경영논총, 21(2), 1-19

6) 김양희, 김홍숙(2000), “기업 내 남녀 관리자의 리더십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50(7), 30-34

7) Loden, M.(1985), “Feminine leadership or how to succeed in business without being one of the boys”, N.Y : Times Books

의한 통제보다는 팀 중심의 협동으로 부드러운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모성적 감정이 조직 구성원과의 친밀한 유대감 형성에 작용하여 노사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여성기업인은 조직을 가족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근로자의 후생복지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적인 기업문화라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고 섬세한 주의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며 민주적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여성적 리더십은 여성기업의 성공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⁸⁾

3) 수평적 소통과 조직 구조

여성은 상하관계가 위계적으로 형성된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해서 소통방식과 조직 분위기에서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먼저, 여성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친밀감, 신뢰감을 유도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으로 소통을 한다. 대개 상하관계를 두기보다는 공통적 관심사나 개인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수평적인 소통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도 창의성, 감수성,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여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⁹⁾ 또한 조직관리에서는 공동체(communal)적이고, 관계적인 친사회적 행동(relational prosocial behaviors)경향이 있기 때문에¹⁰⁾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의 경우, 상하관계가 분명한 위계적 구조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에 수평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규칙과 질서의 확립에 역점을 두어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선호하고, 사고 자체를 논리적·분석적으로 사고하여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필요에 따라 남성은 수직적 관계를 곧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데 필요하다면 상하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인

8) 김정화(2011),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9) 헬렌 피셔(2005), “제1의 성 THE FIRST SEX”, 정명진 역, 생각의 나무

10) Eagly, Alice H.(2009), “The his and hers of prosocial behavior : An examination of the social psychology of gender”, American Psychologist, 64, 644-658

다. 또한 남성에게 말은 권위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특성이 있어, 권위에 대한 집착이 일종의 남성적인 언어로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기술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수치나 데이터 중심의 대화를 통해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를 분명하게 비교하여 순위화시키고자 한다. 이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수치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위계적 질서를 더욱 분명히 하기도 한다.¹¹⁾

11) 한상복, 박현찬(2013), “휘메일리스크”, 위즈덤하우스, 32-37

나. 여성기업의 약점

1) 영세한 기업규모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의 89.7%는 소상공인이고, 99.9%가 중소기업이다. 대부분 소규모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은 영세한 규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이러한 영세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 중 하나이다. 여성기업이 영세한 규모를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은 초기자본이다. 초기자본은 제품개발이나 인력확보 등 사업성과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자원인데, 여성의 경우, 창업 이전에 받는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고, 고용기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¹²⁾ 남성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여성은 금융 자산을 획득하는데 제약이 있고, 결혼 또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외부 자본을 차입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남성에 비해 외부 자본을 끌어오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며, 향후의 성과 결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외부 투자를 받는 데 주저한다.¹³⁾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기업인 300명과 여성기업인 300명의 초기자본을 비교한 결과, 여성기업의 초기자본이 남성기업인의 초기 자본의 2/3 수준으로 나타났다.¹⁴⁾

여성기업의 영세성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위험회피적 경향으로 인하여 사업 확대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규모의 확대로 인한 성과 증대보다 현 규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자 한다.¹⁵⁾ 이와 유사하게 여성의 경우,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12) Boden, Jr, R. J. & Nucci, A. R(2000), "On the Survival Prospects of Men's and Women's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347-362

13) Gracie, S.(1998), "In the Company of Women", Management Today, June, 66-70

14) Carter, S. and Rosa, P.(1998), "The Finding of Male and Female Owned Businesses", Entrepreneurship and Research Development, 10(3), 225-241

15) Watson, J. and Robinson, S(2003), "Adjusting for risk in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male-and female- controlled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773-788

않으려는 ‘최대사업규모 값(maximum business size thresholds)’을 설정하려는 경향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성기업인은 조직에 대한 통제 가능성,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의 합리성, 일과 개인생활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규모를 심리적으로 정해놓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한다는 견해도 있다.¹⁶⁾

2) 편중된 산업 분포

여성기업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으로 139만 개의 여성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약 31.62%가 분포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에는 29.6%가 분포해있다. 남성사업체의 경우에도 도매 및 소매업이 26.80%로 가장 많기는 하나, 가장 많은 도소매업(26.80%)과 운수업(15.94%), 제조업(14.78%)의 분포 비율을 합쳐도 약 60%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여성기업은 2개 업종에서 약 61.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업종 내 편중성이 큰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여성기업이 두 업종에 편중되었다는 점보다는 편중된 업종이 경쟁이 매우 치열한 레드오션에 해당하고,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산업 내 경쟁자가 매우 많고, 그 만큼 생존율이 낮아 사업실패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또한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라 투자비용을 수확하였더라도 타 산업 대비 고부가가치 창출이나 향후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자본을 들여 창업을 시도 했지만, 결국 치열한 경쟁과 낮은 수익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¹⁷⁾.

한편, 여성기업의 업종 편중성의 원인에는 대개 이러한 업종이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착형의 업종과 관련이 있다. 즉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기술력이나 교육 수준 등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아 접근이 쉽다. 또한 업종 특성상, 노동 집약적이

16) Cliff, J. E.(1998), "Does One Size Fit Al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s Gender, and Business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125-145

17)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2008),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여성연구*, 75(2), 5-26

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성 뿐 아니라 초기창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창업 아이템으로 관심있는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최근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여성 창업 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네트워크 부족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기업인의 경우, 남성기업인에 비해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바이어에 대한 술 접대나 로비 등 이러한 접대 문화가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활동은 남성 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여성기업이 네트워크 부족을 겪는 원인은 먼저, 현재 남성중심의 기업문화형성을 들 수 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가치나 경험 등을 가진 상대방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기업문화에서 특히 주류가 되는 남성기업인들은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들 간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간다.¹⁸⁾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토큰리즘(Tokenism)의 역학에 따라 여성은 남성지배적인 집단에서 본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라기보다는 성(gender) 차원에서 여성으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¹⁹⁾

또한 여성기업인들 스스로가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관리 및 구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기업인과 남성기업인의 네트워크 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 보다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적은 노력을 투입하며, 대체로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²⁰⁾

18) Vinnicombe, S.(1998), "The issues facing women in management in U.K and around the world", in Women in Management

19) Kanter, R. M.(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 Basic Books

이는 여성의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창업 이전 사회경험이나 직장 경험 자체가 현실적으로 남성기업인과 어울리기에 부족하여 소극성을 띠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즉 남성기업인의 경우 현 사업과 관련 있는 직장 경험을 비교적 충분히 가진 데 비해, 여성기업인의 경우 경력이 짧고 경력이 있더라도 기업 내 핵심 부서에서 경력을 오래 쌓기 힘들어서 기업인으로서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인은 자연스럽게 남성기업인 중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소극성을 띠게 될 수 있다²¹⁾.

결과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기업의 성격에 의해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네트워크 관리에 소극적인 경향 때문에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것이다.²²⁾

20) Reese, P. R.(1992), "Entrepreneurial networks and resource acquisition :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1) Watkins, D. S & Watkins, J.(1984), "The female entrepreneur : Her background and determinants of business choice - some British data",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4), 21-31

22) 김영옥, 임희경(2006),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1, 107-140

제3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1. 국내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2. 5. 제정, 2016. 01. 27 일부개정)

1) 입법 배경 및 취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고급 여성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여성 기업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 여성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1997년 11월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그리고 양 법안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산업자원 위원회가 이를 통합한 법안을 제출²³⁾한 결과, 1999년 1월 6일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통합 법안을 통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²⁴⁾

23) 지성배(199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경과」

24)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서울·동 위원회)(1998),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참여와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고,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정착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 이후 다음과 같은 개정과정을 거쳤다.

1차 개정(2005년 5월)은 제정법상 여성경제인의 정의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규정하여 여성경제인의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시켜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 부여, 여성의 고용 증대 및 경제 기여도 증가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차 개정(2009년 5월)은 여성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폐합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개정 전 법률상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와 통합하여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촉진위원회는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정 전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주요 납품업체수의 10~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 총액 대비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 비중은 2.8%로 과도하게 낮은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제시하되, 공공기관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개정(2009년 12월)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등 통보절차 규정에 대한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개정 전 법률은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통계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구매계획과 계약실적 대신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한자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순화,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는 수정, 길고 복잡한 문장의 간소화 등을 통해 법령 수요자인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였다.

4차 개정(2013년 7월)은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 해당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2차 개정에서 정한 구매목표비율의 달성이 권고사항이었다면, 제4차 개정은 구매목표비율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5차 개정(2016년 1월)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한다는 기준을 소유하고 경영한다는 기준으로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장 여성기업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6.7.28부터 시행되었다.

3) 주요 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 여성기업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여성기업 실태 조사,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및 협회의 업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별칙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법률은 제2조에서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²⁵⁾”으로 규정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성기업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심의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한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안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2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창업 촉진과 더불어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매총액의 3%이상의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기의 구매목표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경영안정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의 구심체 역할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등의 업무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6.7.28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는 여성기업 확인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업

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 확인이 취소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고,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고,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 기타 여성관련 법률

1) 「양성평등기본법」(1995. 12. 30. 제정, 2017. 12. 12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개정한 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 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이 실시되는 등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어 2014년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등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 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존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제개발협력(ODA)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08. 6. 5. 제정, 2017. 3. 21. 일부개정)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턴취업의 지원,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이 법에 필요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하고 있다. 제5조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는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를 정하고 있다.

제7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서 일자리창출지원, 유망직종 선정·지원, 직업훈련교육,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13조부터 제14조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센터업무 보고·검사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15조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부장관의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제16조는 이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2. 12. 18. 제정, 2017. 12. 19. 일부개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타법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제4조부터 제5조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6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의 실시, 제7조부터 제8조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및 우대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제9조부터 제13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장학금지원, 연구활동비 지원, 채용목표 및 승진목표 비율 수립,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취업지원 등을 정하고 있다. 제14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사업비 조달, 제16조는 지원정책의 위탁을 정하고 있다.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2001. 12. 31. 제정, 2015. 7. 20.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수립 및 재정지원을 위한 책무를 정하고 있다. 제4조는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의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 내지 제6조는 정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시행

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정하고 있다.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위한 자문회의와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수권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제9조부터 제13조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정하고 있다. 제14조는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해외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해외 국가들도 각자 자국의 여성기업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률, 조직 및 정책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해외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별도의 독립법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간접적으로 타 법률 내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 장에서는 독립법을 시행중인 미국과 근거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법률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정책 및 조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미국

미국은 1960년대부터 여성기업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 및 정책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기업 관련 법안은 1988년에 제정된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으로서, 이 법은 1964년에 소수자 및 여성의 차별 금지 및 이들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민권리법(Civil Right Act)」과 1974년에 혼인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신용기회평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등을 제정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77년 「공공사업고용법(public works employment act)」, 1988년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1991년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 1994년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 2003년에는 「여성기업센터유지법(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 등이 대표적인 여성기업지원 관련법이다.

〈표 1-5〉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률 변화

연도	법률	내용
1964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 Act)	소수자, 여성의 차별 금지 및 이들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성별 또는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신용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972년	고용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명시
1974년	신용기회평등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혼인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
1977년	공공사업 고용법 (Public Works Employment Act)	정부 조달부문에서 정부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우대(Small Business Act 8조)
1978년	우대 조치법 (Affirmative Action Act)	연방정부의 구매 시, 소기업 및 여성소기업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1998년	여성기업소유법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여성이 소유 및 경영하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중소기업법 내의 소기업법을 별도로 수정한 법률
1991년	여성기업 개발법 (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	여성기업소유법 개정
1994년	연방구매합리화법 (Federal Aquisition Streamling Act)	각 연방기구와 여성소기업간의 계약목표를 5%로 수립
2000년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지원 프로그램	여성소기업 대상 '제한경쟁'을 허용
2003년	여성기업센터유지법 (Women's Business Centers Preservation Act)	여성기업센터를 영구사업화 함으로써 센터의 신설과 기존 센터의 예산지원을 연장

1) 「공공사업고용법(Public Works Employment Act)」

1977년에 제정된 「공공사업고용법」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 연방정부는 소수 인종 및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 행정기관들은 조달 계약에서 적어도 5%를 배정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8(a)조달지원 프로그램”²⁶⁾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에 대한 특별조달지원시책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입찰응모 이전에 최소한 2년간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00년부터는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소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정부기구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허용하도록 하여 기존 여성기업인에게 일정률의 계약을 지원하던 조치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 WBOA)」

세계 최초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인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WBOA)」은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공헌자로 보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여성경제인법’으로 일맥 상통하는 본 법은 여성이 소유 및 경영하는 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법」 내의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별도로 수정한 법률이다.

이러한 「여성기업소유법」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기업의 법률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 여성기업이 자본 및 다른 생산요소들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을 분석·정의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한편, 상호 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에 여성경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26) 8(a) 프로그램의 명칭은 1953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법」 제8조(a)항에 기재된 것으로부터 유래

〈 「여성기업소유법」 제정 목적 〉

-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의 법률적 이익 증진
- 자본과 다른 생산요소들에 접근하는 경우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 제거
-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을 분석, 정의, 확인하는 정부의 노력에 의회의 참여를 요청
- 협력관계 형성에서 여성경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

「여성기업소유법」에서는 여성기업의 정의, 지원방안, 지원예산 및 운용방안, 전국여성기업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을 다루고 있다.

첫째, 여성기업의 정의로서,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이란 ‘1명 또는 2명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서 1명 또는 2명 이상의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여성기업지원기관의 설립방안으로,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을 위해서 시범계획을 시행하려는 비영리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들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는 타당성을 평가하고 승인한 후에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여성기업들의 경영·자금·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²⁷⁾ ② 경영능력 기술 지원방안으로, 여성기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③ 예산 및 운용 위임방안으로, 제201조에 따라 필요한 시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본에 대한 접근 보장에서는 「소비자신용보호법률」을 수정하여 「보증 및 우대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채권자들에게 공통양식을 사용하도록

27) 미국 정부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시행된 모든 민간단체의 시범계획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하원의 소기업위원회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i) 지원받는 사람들의 수, ii) 이제 시작되고 있는 사업 수, iii) 지원사업의 총 수량액, iv) 지원받는 회사의 이익 증감, v) 지원받는 회사에게 발생한 고용률의 증감 또한, 이 보고서는 적어도 24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자들에게 5만 달러 이하의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국립여성기업위원회는 여성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주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여성소유기업의 지위 및 상태 등에 대한 검토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 여성소유기업과 관련된 정부주도 사업에 대한 검토,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 12개월마다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인구조사 자료에 따라 노동통계청, 인구조사청에서 동법의 여성기업 정의에 따라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수를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달자료에 의거하여 각각의 연방 대행기관들은 성별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기업 및 여성기업 수에 관한 정보를 연방조달정책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

미국은 1991년에 「여성기업소유법」을 개정한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여성기업소유법」에 의해 지원된 여성기업들이 나뉠의 성과를 보임에 따라, 1991년에 종료 되는 시범사업 및 소자본 대출프로그램을 연장했으며, 미국 내 여성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기업개발법」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운영과 시범사업들의 연장,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운영방식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여성기업개발법」 주요 내용 〉

-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을 위해서 시범계획을 시행하는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들에게 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원
- 1차연도에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2:1, 2차연도에는 1:1, 3차연도에는 1:2의 비율로 민간단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4) 「연방 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 및 「여성기업센터유지법(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

1994년에 「연방 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이 제정되어 복잡한 연방정부의 조달체제를 단순화시켰으며, 각 연방기구가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5%로 정하고 여성기업위원회의 조직체계를 변경하였다. ‘정부조달 우대정책’으로써 조달계획의 5%를 여성이 소유하는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게 권고한다. 또한 각 부처는 직원 1명을 여성소유기업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촉진자(Advocate)로 임명한다.

2003년에는 「여성기업센터유지법(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센터를 영구 사업화하고 센터의 신설과 기존센터의 예산지원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5)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특징 요약

미국의 중소기업법은 법의 목적에서부터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범위와 지원시책에 이르기까지 법규의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법규시행기관의 자의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에 주어져야 할 지원혜택이 남성기업에 돌아갈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여성기업의 지원사항도 지원방법(직접대출 또는 보증)과 절차, 그리고 대출한도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에서 여성경제인법이라고 평가되는 「여성기업소유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미국 내에서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축인 동시에 미국 경제발전의 공헌자로 인정하였으며, 미국 중소기업법의 내용 중에서 여성기업에 관한 부분을 새롭게 확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법 및 여성기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 유럽연합(EU)

1) 「중소기업법(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2008년에 「중소기업법(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을 제정하여 유럽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재능 배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절차 참여가 쉽도록 조달시장 접근에 대한 장벽을 완화한다.

2) ‘여성기업을 위한 국고보조(Aid for Female Entrepreneurship)’²⁸⁾

유럽연합(EU) 및 28개 회원국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창업하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국고보조(Aid for Small Enterprises Newly Created by Female Entrepreneurs)’²⁹⁾는 단일 경제권을 목표로 하는 공동시장의 원칙 범위 안에서 여성기업을 위하여 국고를 보조한다.

28) Communication인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은 EU 및 28개의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면 Regulation인 Aid for Female Entrepreneurship은 법률 및 법령으로 해석되어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음

29) 「적용제외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제16조(2008년 제정)

〈표 1-6〉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역	회원국
유럽연합(EU) (28개국)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트,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몰타

유럽 위원회 규정 (EC) 800/2008 (2008.8.6.)

1. 창업하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국가보조는 기본적인 공동시장의 원칙에 맞추고 다음 2항에서 5항까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보요구조건이 면제된다.
2. 수혜 여성기업인은 여성에 의해 새롭게 설립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3. 국고보조금은 사업당 1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조액은 전체기업 자산의 3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국고보조는 초기창업 시기 5년 동안에 사용 가능한 금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국고보조는 창업하는 데 필요한 적격비용, 법률상담, 자문 컨설팅비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 (a) 외부금융과 자본에 대한 배당 및 이자
 - (b) 생산설비나 장비임대에 대한 사용료
 - (c)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비, 관리비용에 대한 세금
 - (d) 생산설비나 장비임대에 대한 비용 및 임금(다른 원조 혜택이 없는 경우)
 - (e) 보육·양육 및 육아 휴직 관련된 비용
6. 12개월 동안 같은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동종계열 여성소기업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다. 영국

영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 규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여성기업을 위한 독립법이 아닌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률 속에 담겨 있다. 영국의 여성기업 및 남녀평등 관련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의 여성기업 및 남녀평등 관련 주요 법률 〉

- 평등임금법(Equal Act)
-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 공정고용법(Fair Employment(Northern Ireland) Act)

「평등임금법」이 도입된 1970년 이전의 영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 평등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은 1992년 이후부터 육아 정책, 모성에 대한 고려,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보호, 교육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은 없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간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교육 및 훈련, 자금 지원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체제로만 운영되고 있다.

라. 일본

일본은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을 직접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³⁰⁾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법 역시 현재 구비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인 여성기업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³¹⁾ 다만, 1999년 산업회복법 보충결의안에 ‘정부는 여성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최초로 공식 문서화하였다.³²⁾ 2003년 11월에는 민노당이 노동 고용 조항에 여성기업가 및 비영리조직의 양적 확대 및 여성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일정부분 정부계약에 대한 보장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성지원 지원 관련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30) 일본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정치 참여를 표현할 때 ‘참여’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참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 참여의 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참여의 장에서 정책·방침의 기획, 결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음

31) 이태야(2010), “여성기업 지원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 이정섭(2007),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제2부 여성기업의 현주소

- 제1장 | 여성기업 동향
- 제2장 | 해외 여성기업 동향

제1장 여성기업 동향

본 장에서는 4,526개의 여성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 조사와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제조, 건설 등 다양한 업종의 여성기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사업체 표본이 아닌 여성기업체(개인사업자 제외, 법인 여성기업) 표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여성사업체의 경우, 도소매업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60%가량을 차지하고, 소상공인이 약 90%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기업체는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5인 미만 업체 비중이 약 48% 정도 차지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정 업종에 편중된 여성 소상공인보다는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 여성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분석한 국내 여성기업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창업 동향

최근 들어 취업난,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창업촉진정책 등 여러 상황 요인들이 창업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체가 창업을 하고 있으나, 창업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창업 시 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업체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업체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창업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창업자들의 성공적 창업 및 경영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사업 체수는 총 1,393,974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 대부분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업, 도·소매업으로, 해당 업종이 전체의 약 6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조사 시 전체의 70%인 것에 비해 8.8%p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여성기업의 업종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숙박 및 음식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여성기업인의 장점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자발적 창업의 증가

여성의 창업동기에 대해서 연구한 Hisrich and Brush³³⁾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독립의 욕구가 일차적인 창업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창업 동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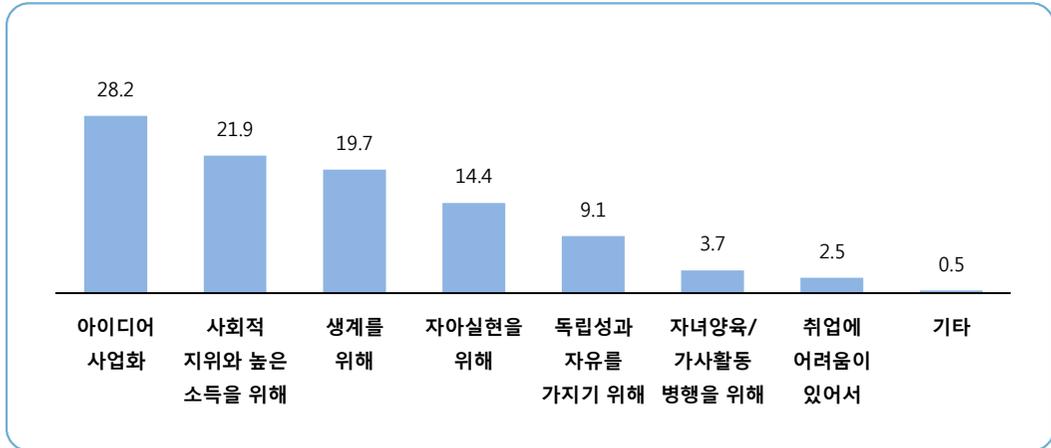
여성이 창업하는데 있어서 독립심과 성취욕구(자아실현 욕구)라는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가족가업의 승계, 정부지원, 친구의 권유, 적정한 일의 발견 등과 같은 외부압박 요인(Push Factor)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과 외부압박 요인(Push Factor) 중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창업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적절한 창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2016년도 여성기업의 창업 동기는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28.2%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한 경우가 21.9%, 생계를 위한 경우가 19.7%, 자아실현이 14.4%,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한 경우가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 병행을 위한 창업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창업은 각각 3.7%, 2.5%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33) Hisrich, R. D. & Brush, C. G.(1986), "The woman entrepreneur: Starting, financing, and managing a successful new busines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그림 2-1〉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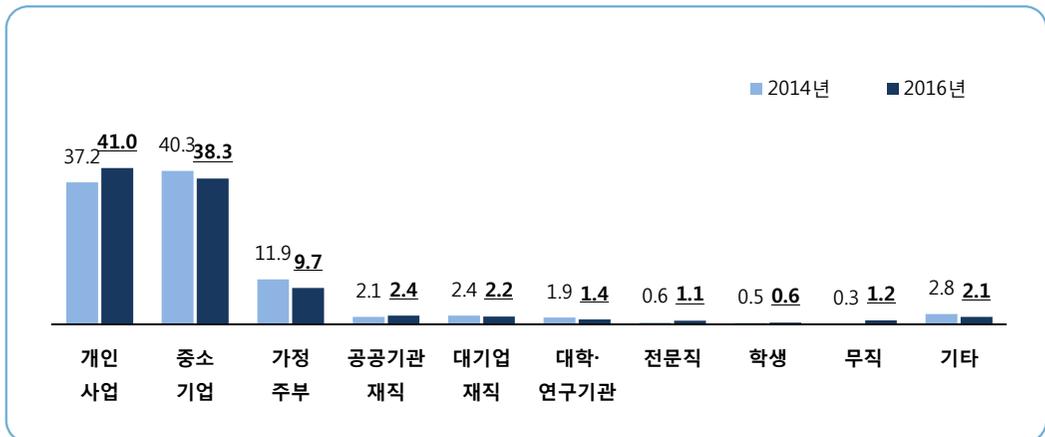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경제활동 여성의 창업 증가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개인사업이 41.0%, 중소기업 재직 38.3%, 가정주부 9.7%, 공공기관 재직 2.4%, 대기업 재직 2.2%, 대학/연구기관 1.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보다 가정주부에서 창업으로 전향한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을 하던 여성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림 2-2〉 현 기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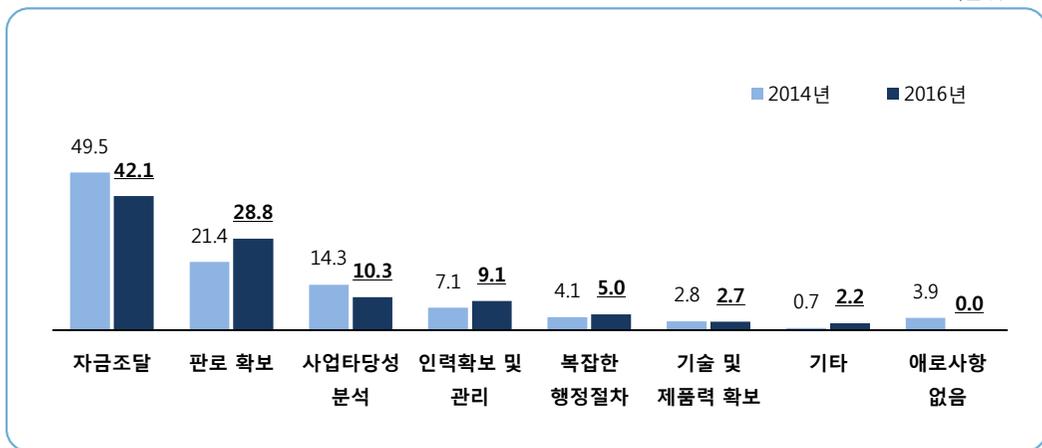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다. 여성기업 창업 준비 시 애로요인

여성기업인의 창업 준비 단계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자금조달 애로는 42.1%로 2014년에 49.5%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2-3〉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자금조달의 문제는 모든 창업자들이 경영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지만 여성창업자가 자금 조달 문제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성창업자의 자체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문화 및 관습 등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³⁴⁾ 즉,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사회적인 편견,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 현상, 여성의 상급직 진출이 어려운 보수적인 기업구조, 가사와 육아라는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발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한다. 이로 인해 여성 창업자는 창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사회적자원, 재정적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창업자금 조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담보나 배우자의 서명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다른 조건을 제시받기도 한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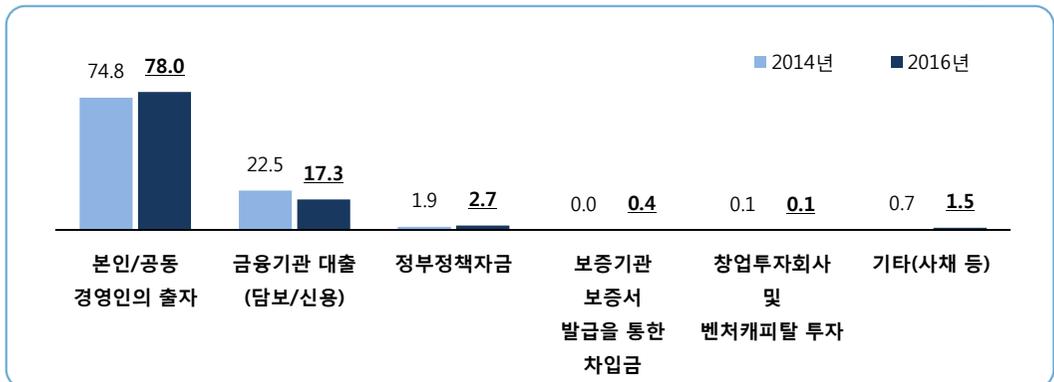
34) 김정화(2011),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편, 여성들은 판로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애로 요인 중 판로확보 비중이 2014년 21.4%에서 2016년에는 28.8%까지 증가하였다.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애로사항 비율은 2014년 14.3%에서 2016년 10.3%로 감소하였으며, 인력확보 및 관리 애로 비율은 2012년 7.1%에서 2014년 9.1%로 증가하였다. 기술 및 제품력 확보 애로 비율은 2.7%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여성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복잡한 행정절차상 애로 사항 비율은 2014년 4.1%에서 2016년 5.0%로 증가하였다.

2016년 여성기업 대표의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본인/공동경영인 출자’가 78.0%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 대출(담보/신용)’이 17.3%, ‘정부 정책자금’이 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인/공동경영인 출자’는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기관 대출(담보/신용)’의 경우 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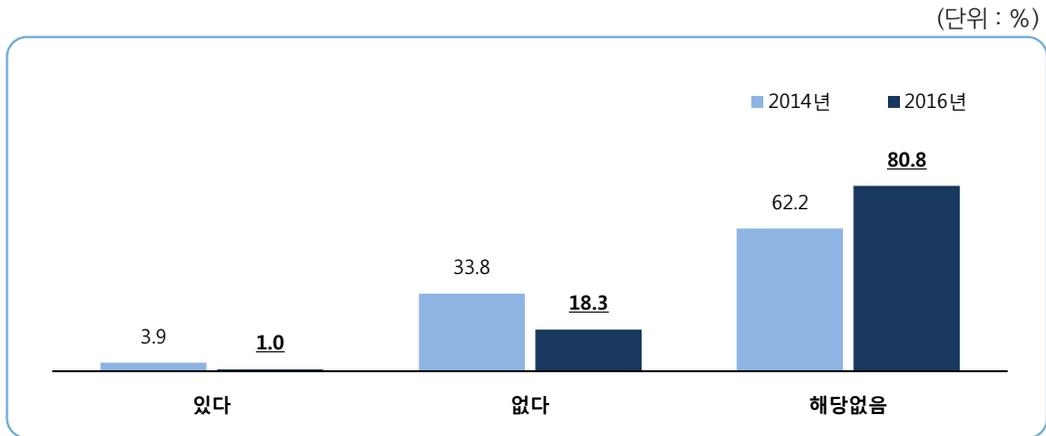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35) Coleman, S. & Cohn R.(1997), "Small Firm Use of Leverage :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Owned Firms", Conference Proceedings, United States Association for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San Diego, January 14-17.

창업 시 정책 자금신청 후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1.0%, ‘없다’라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으며, 자금신청 경험이 없는 경우가 80.8%에 달하였다. 실제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이 상당 규모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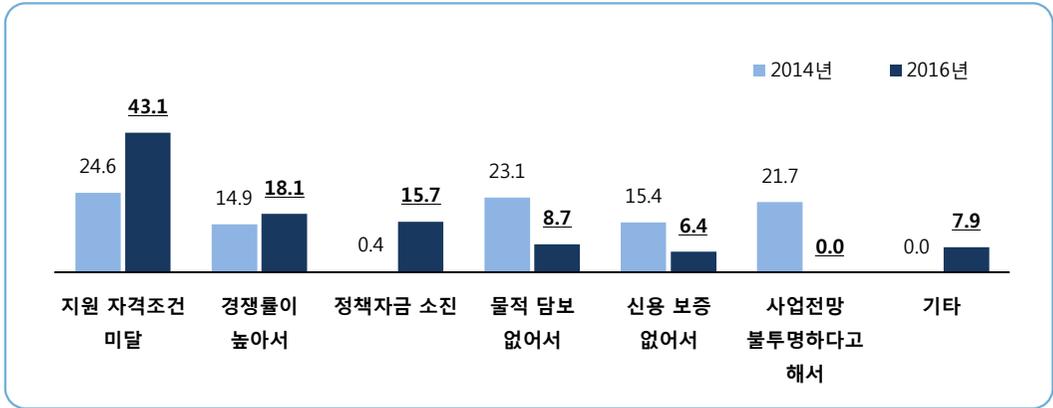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정책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자격조건 미달’이 43.1%로 가장 높았고, ‘경쟁률이 높아서’인 경우가 18.1%로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정책자금 소진’이 15.7%, ‘물적 담보가 없어서’ 8.7%, ‘신용 보증이 없어서’ 6.4%, 기타가 7.9%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는 2014년 21.7%에서 0.0%³⁶⁾로 낮아졌는데 여성기업의 사업성 및 담보력이나 신용 수준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여성기업의 정책금융 이용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인하여 0.0%로 산출됨

〈그림 2-6〉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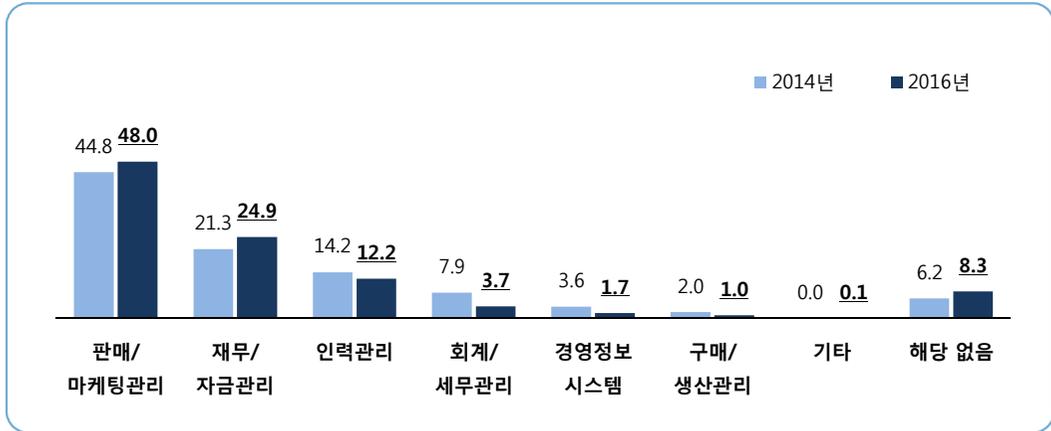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창업 후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판매/마케팅 관리’가 48.0%로 가장 높았고, ‘재무/자금관리’ 24.9%, ‘인력관리’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해 보면, ‘판매/마케팅 관리’라는 응답은 3.2%p 증가(2012년 38.5% → 2014년 44.8% → 2016년 48.0%)하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성기업의 초기 사업 운영에 있어 판로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또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무/자금관리’라는 응답도 3.6%p(2014년 21.3%) 증가하여 여성 기업에 있어 여전히 자금 문제도 해결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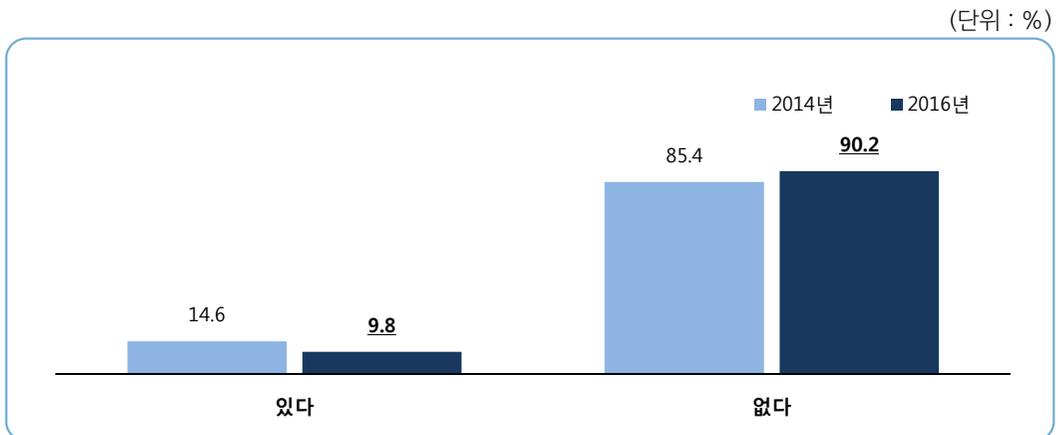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라. 창업 시 전문가의 도움 여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보육센터,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에 사업을 위탁하고 여성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여성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자의 대부분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및 정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자의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창업 시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응답은 9.8%로 2014년 대비 4.8%p 감소하였고, 반면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응답은 90.2%로 2014년에 비해 지원기관 활용도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또는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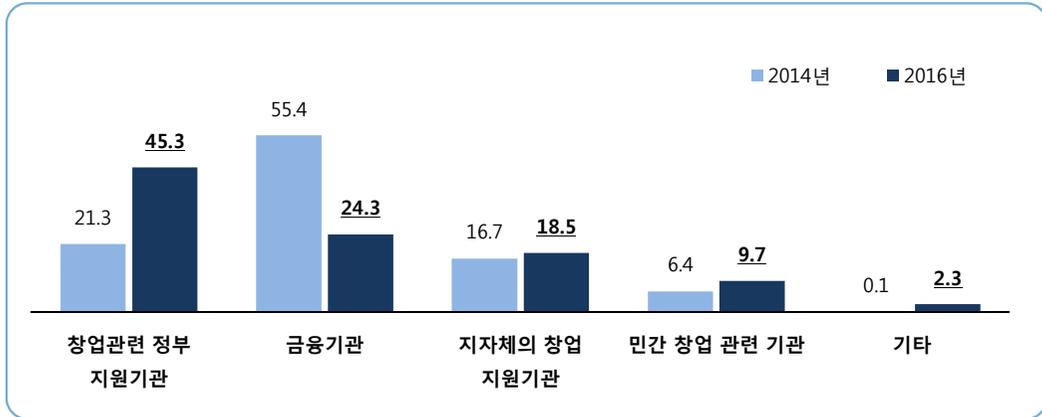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창업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련 정보나 자문을 받은 기관으로는 정부 지원기관이 45.3%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이 24.3%, 지자체의 창업 지원기관이 18.5%, 민간 창업관련 기관이 9.7%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 시, 금융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가 31.1%p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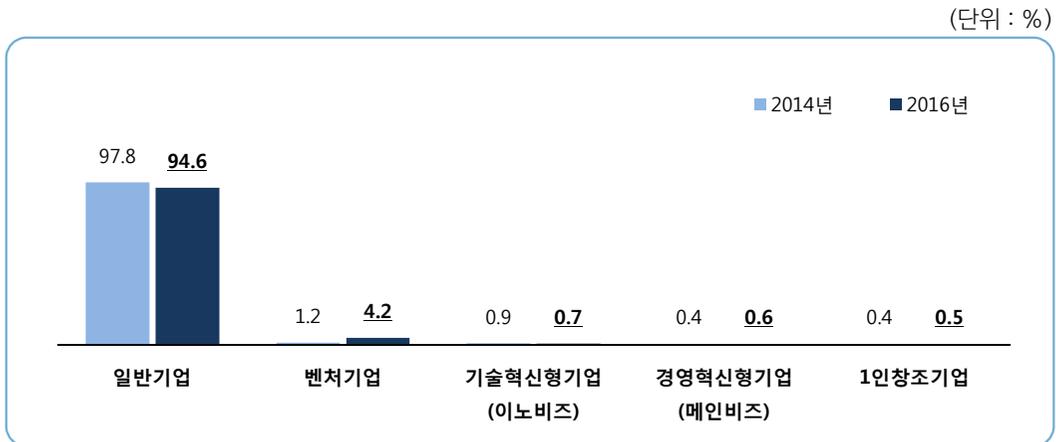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2. 여성기업 일반 현황

가. 기업유형

여성기업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 등의 혁신 기업과 관련된 인증을 받은 경우가 적은 편이다. 여성기업의 기업인증 유형을 살펴보면, 94.6%는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기업이며, 벤처기업은 4.2%,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은 0.7%, 경영혁신형기업(메인비즈)은 0.6%, 1인 창조기업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일반기업과 기술혁신형 기업은 소폭 감소하였고,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기업, 1인 창조기업은 다소 증가하였는데, 특히 벤처기업은 2014년 대비 3.0%p 증가하였다.

〈그림 2-10〉 여성기업의 인증 유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성장단계

기업 수명주기 이론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 PLC)이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업도 유기체와 같이 일정 패턴에 따라 변화가 진행된다는 개념이다. 크게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성숙기에는 수익성은 높으나 매출이나 점유율이 정체된 특성을 보이며,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쇠퇴기에 접어들면 대개 기업은 철수나 사업전환 등의 전략을 택하게 된다.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의 40.6%는 현재 자신의 사업 분야가 성장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시장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많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업이 역동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여성기업의 37.2%는 성숙기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진입기는 17.3%, 쇠퇴기는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중소기업의 기업성장단계 현황과 유사하다.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는 성숙기와 성장기 비중이 각각 50.0%, 41.0%로 성숙기, 성장기에 있는 기업 비중이 높으며, 그다음으로 쇠퇴기(5.0%), 진입기(4.1%) 순이다. 참고로, 여성제조업의 경우에는 성장기(46.9%), 성숙기(32.0%), 진입기(14.0%), 쇠퇴기(7.1%)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대비 성숙기는 18.0%p로 낮게 나타난 반면, 진입기, 성장기, 쇠퇴기는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9.9%p, 5.9%p, 2.1%p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 성장단계별 위치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체	여성기업	17.3%	40.6%	37.2%	5.0%
제조업	여성제조업	14.0%	46.9%	32.0%	7.1%
	중소제조업	4.1%	41.0%	50.0%	5.0%

- 주: 1. 진입기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품 / 서비스 개발단계
 2. 성장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 양적·질적으로 발전 단계
 3. 성숙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
 4. 쇠퇴기 :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단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2017),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다. 기업업력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10.5년으로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중소기업 제조업(평균 12.6년) 평균 업력 보다 짧은 편이다. 여성기업의 경우, 3년 미만 기업이 18.0%로 나타났으며, 4~5년 기업 비중 15.3%, 6~10년 기업이 26.6%, 11~15년 기업 비중 18.8%, 16~20년 기업이 12.1%, 21년 이상 기업은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6~10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장 높았고, 11~15년이 다음으로 높은 등 전반적으로 역 U자형을 띄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서는 6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3년 미만의 신규 기업과 16년 이상의 기업 비중이 높아졌다.

대체로,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짧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비중은 59.3%인 반면, 여성기업의 경우 40.0%로 나타났다. 여성제조업 기준으로는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비중이 34.3%로, 일반 중소기업 대비 25.0%p 낮은 편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2008)에서도 남성기업의 업력은 평균 160개월, 여성기업은 평균 82개월로 남성기업이 여성기업보다 약 2배 정도의 긴 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시대적 분위기상 여성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남성보다 늦은 편이고, 외환위기 이후 남편의 직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창업하는 여성이 외환위기 이후에 증가하는 등의 요인이 업력이 짧은 여성기업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표 2-2〉 여성기업의 기업연령(업력)

(단위 :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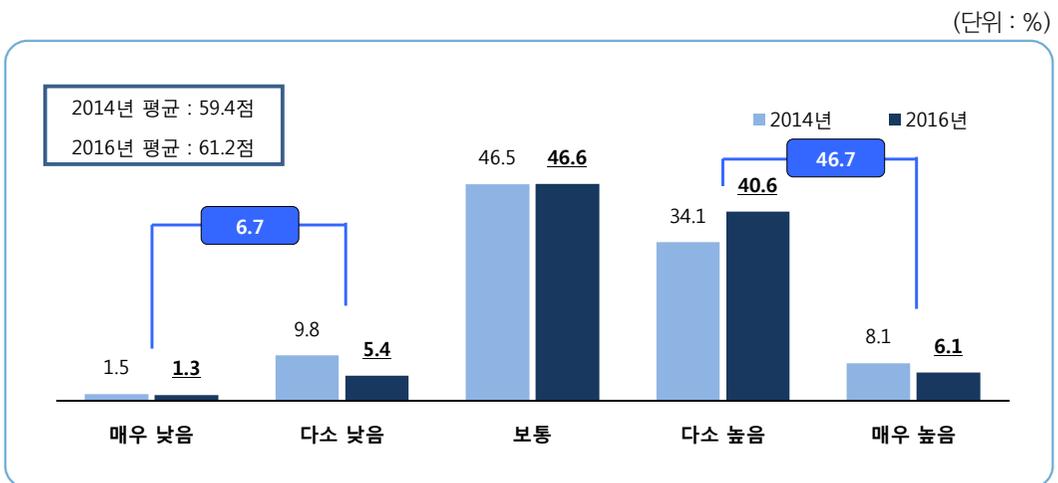
구분	3년 미만	4~5년	6~10년	11~15년	16년~20년	21년 이상	[평균업력]
비중	18.0%	15.3%	26.6%	18.8%	12.1%	9.1%	10.5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라. 시장경쟁정도

여성기업은 자사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정도가 대체로 보통 수준(46.6%)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정도가 높다는 응답(46.7%)이 경쟁 정도가 낮다(6.7%)는 응답 보다는 30.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여성기업 주력분야 내 시장경쟁 정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특히 비제조업(46.1%)보다는 제조업분야(49.4%)에서 시장경쟁 정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제조’(51.1%), 비제조업 중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68.6%), ‘숙박 및 음식점업’(43.5%)에서 시장경쟁 정도가 높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 여성기업 대표의 특성

국내 여성기업 대표자는 평균 연령은 52.9세로 40대(30.6%)와 50대(40.8%) 비중이 높으며, 20대(0.5%) 비중은 낮은 편이다. 2014년과 비교 시, 여성기업 대표의 연령이 40~50대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으나 20~30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60대 이상의 비중도 높아지며 연령별 구성이 다소 완만해졌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가 33.1%이며,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학교 졸업자가 61.1%, 대학원 졸업자가 5.5%로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졸 이상인 여성기업 대표의 전공 분야는 인문/사회계열(4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경영(27.9%)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학(11.6%) 및 자연과학(8.9%)을 전공한 여성기업 대표 비중은 적어 여전히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기업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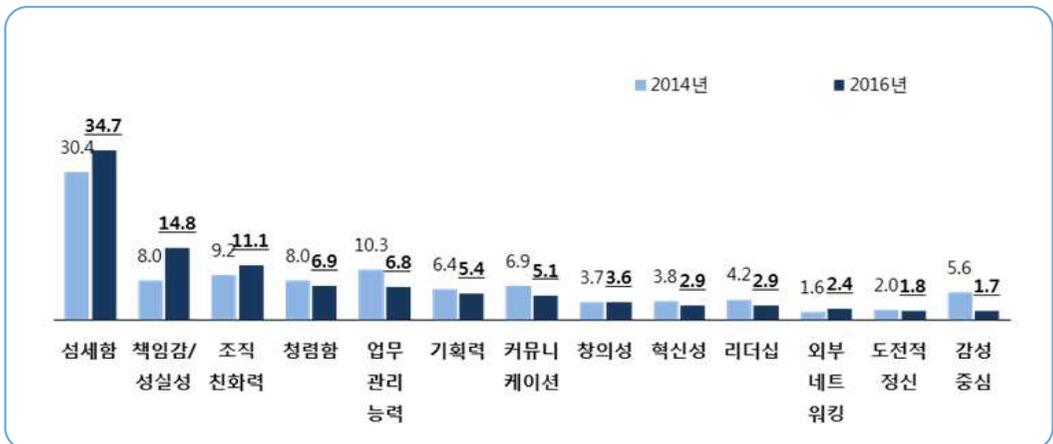
〈표 2-3〉 여성기업인의 일반현황

항목	구분	2014년	2016년
연령	20대 이하	0.2%	0.5%
	30대	5.4%	6.1%
	40대	36.5%	30.6%
	50대	42.1%	40.8%
	60대	15.6%	21.9%
	무응답	0.3%	0.0%
	평균연령	51.5세	52.9세
학력	고졸 이하	29.0%	33.1%
	전문대졸	11.6%	7.5%
	대졸	54.0%	53.6%
	대학원졸	5.4%	5.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편,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기업인보다 섬세함과 책임감/성실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여성기업인의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강점을 조사한 결과, 1위로 섬세함(34.7%)을 꼽았으며, 2위는 책임감과 성실성(14.8%), 3위는 조직친화력(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의 경우 공감 능력과 소통, 조직친화력, 섬세함 등이 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발견해왔는데, 이러한 여성 특유의 강점이 기업 경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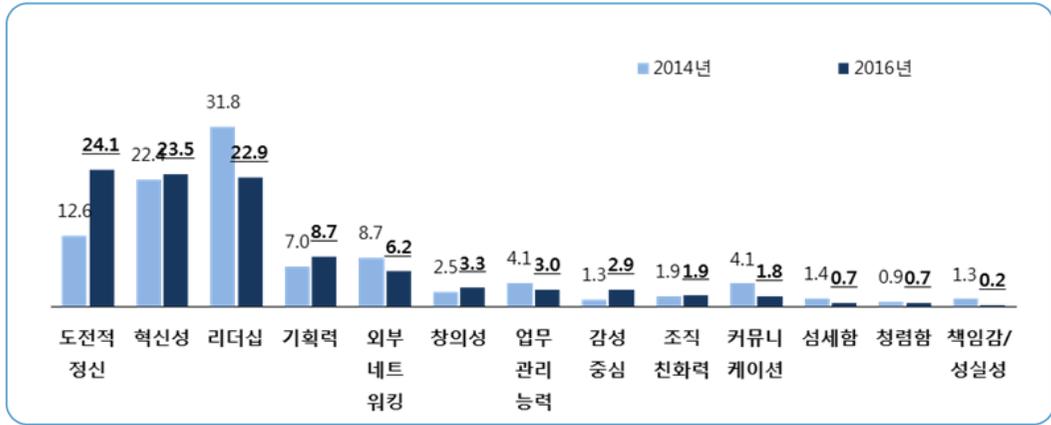
〈그림 2-12〉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반면, 도전적 정신, 혁신성, 리더십은 남성기업인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기업인들은 도전적 정신(24.1%)을 가장 취약한 점으로 꼽았고, 그다음으로 혁신성(23.5%), 리더십(22.9%), 기획력(8.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기업인들은 스스로 혁신능력과 리더십 등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리더십과 혁신성 등의 요인이 여성기업에서 더 취약한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예전부터 자주 거론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연구자별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확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2-13〉 여성기업인의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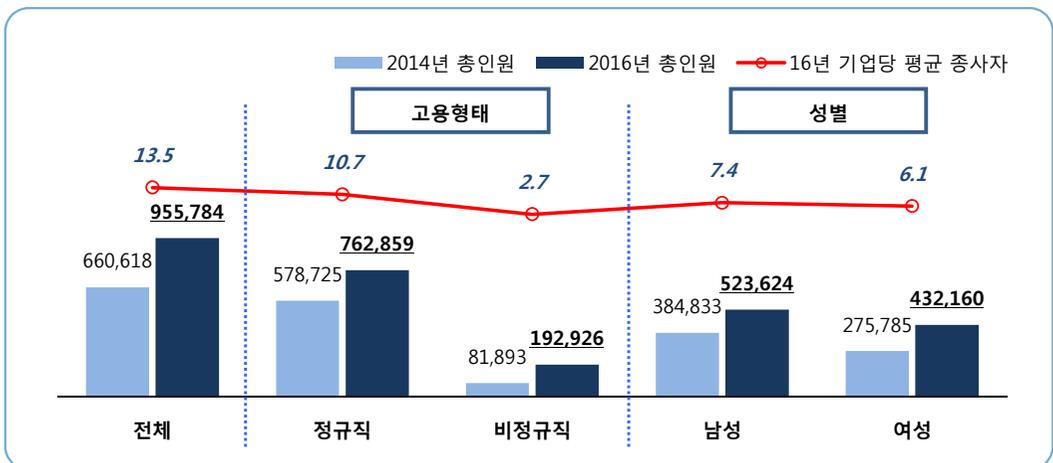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3. 여성기업 고용현황

가. 고용 특성

'16년 6월 30일 기준, 여성기업의 종사자 인원은 총 955,784명으로 1개 기업체 당 평균 13.5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체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62,859명, 비정규직이 192,926명으로 비정규직(20.2%) 대비 정규직 비중(79.8%)이 높은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림 2-14〉 여성기업체 고용인원 및 고용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성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여성기업에 고용된 남성인력은 523,624명(54.8%), 여성이 432,160명(45.2%)으로 남성고용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5%p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여성 고용 비율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중, '식품/음료 제조'(56.0%)와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80.9%), '금융 및 보험업'(63.0%), '부동산업'(52.0%) 등은 남성고용률 보다 여성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여성기업체 업종별 성별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인원	성별				
			남성		여성		
			총인원	비율	총인원	비율	
전체		762,859	523,624	54.8	432,160	45.2	
부문	제조업	176,727	112,774	62.7	67,057	37.3	
	비제조업	586,131	410,850	52.9	365,104	47.1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료품/음료 제조	22,319	10,286	44.0	13,109	56.0
		섬유/의복/가방/신발	22,576	13,603	59.1	9,415	40.9
		기타 제조	131,832	88,885	66.6	44,533	33.4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7,154	6,698	74.4	2,303	25.6
		건설업	95,913	87,894	75.8	28,111	24.2
		도매 및 소매업	119,862	66,145	53.2	58,093	46.8
		운수 및 창고업	40,354	36,367	83.7	7,100	16.3
		숙박 및 음식점업	22,866	11,734	39.0	18,359	61.0
		정보통신업	29,367	16,682	54.0	14,211	46.0
		금융 및 보험업	15,110	6,189	37.0	10,540	63.0
		부동산업	17,331	10,452	48.0	11,329	5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912	30,133	54.3	25,390	45.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3,700	93,822	50.1	93,265	49.9
		교육 서비스업	36,289	19,597	43.3	25,661	56.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59,702	12,017	19.1	50,915	80.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829	4,886	47.9	5,310	52.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744	8,235	36.2	14,518	63.8		

자료: 중소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성별 고용현황을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여성기업의 여성고용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여성제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비율은 26.6%이지만 여성제조업의 여성인력 고용비율은 37.3%로 여성제조업이 10.7%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제조업이 중소기업보다 여성고용에 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표 2-5〉 여성제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현황비교(성별구분)

(단위: 명, %)

구분	여성제조업		중소제조업	
	총인원(명)	구성 비율(%)	총인원(명)	구성 비율(%)
전체	179,831	100.0	2,198,734	100.0
남성	112,774	62.7	1,613,764	73.4
여성	67,057	37.3	584,970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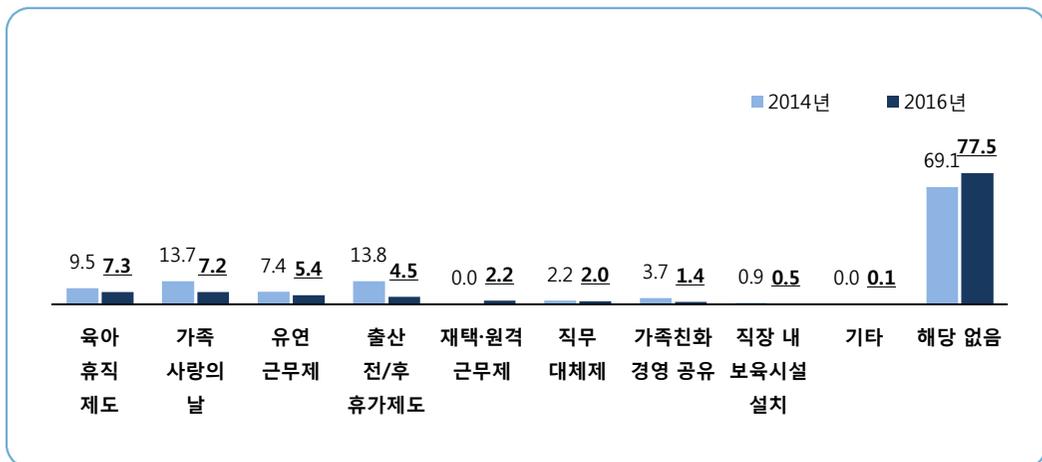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2017),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은 여성의 사회활동 유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 경제참여활동 촉진 차원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22.5%에 불과하였으며, 77.5%의 여성기업이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7.3%)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사랑의 날’(7.2%), ‘유연근무제’(5.4%), ‘출산전후휴가제도’(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2014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4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비중이 30.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22.5%로 큰 폭 감소하였다.

〈그림 2-15〉 여성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편, 근로자 규모가 커질수록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세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기에 경제적,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인 미만 여성기업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지 않는 기업 비중이 약 75%이상에 육박하는 반면, 100인 이상인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4.3%의 여성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 기업에서 지원 종류별로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6〉 여성기업 규모별 일·가정양립 지원 현황

구분	육아 휴직 제도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실천	유연 근무제	출산 전·후 휴가제도	재택· 원격 근무제	직무 대체제	가족친화 경영 공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타	해당 없음
5인 미만	3.8	4.8	4.8	2.7	2.9	1.4	1.2	0.3	0.2	82.8
5~19인	8.6	9.3	5.3	4.2	1.5	2.1	1.4	0.5	0.0	75.6
20~49인	15.4	10.1	7.4	10.3	1.7	3.5	1.3	0.7	0.0	64.5
50~99인	21.7	8.9	8.7	20.3	1.4	6.4	3.7	1.6	0.1	54.8
100인 이상	25.7	12.2	10.6	19.9	1.9	5.3	7.2	1.9	0.3	54.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4. 여성기업 재무 현황가. 재무 현황

2016년 기준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자산은 2,639백만원이며, 이 중 자본은 1,174백만원, 부채는 1,465백만원이다. 평균 매출은 3,037백만원, 당기순이익은 147백만원으로 순이익률은 약 4.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제조기업보다 제조업의 자산과 매출,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 제조기업의 자산규모(3,471백만원)는 비제조업(2,412백만원)의 약 1.4배이며, 당기순이익은 제조기업(184백만원)이 비제조기업(137백만원)보다 약 1.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표 분석 시, 제조기업은 비제조기업에 비해 부채비율과 순이익률은 소폭 높고 자기자본회전율은 소폭 낮아, 수익성은 제조업이 비교적 높으나 안전성과 활동성은 비제조기업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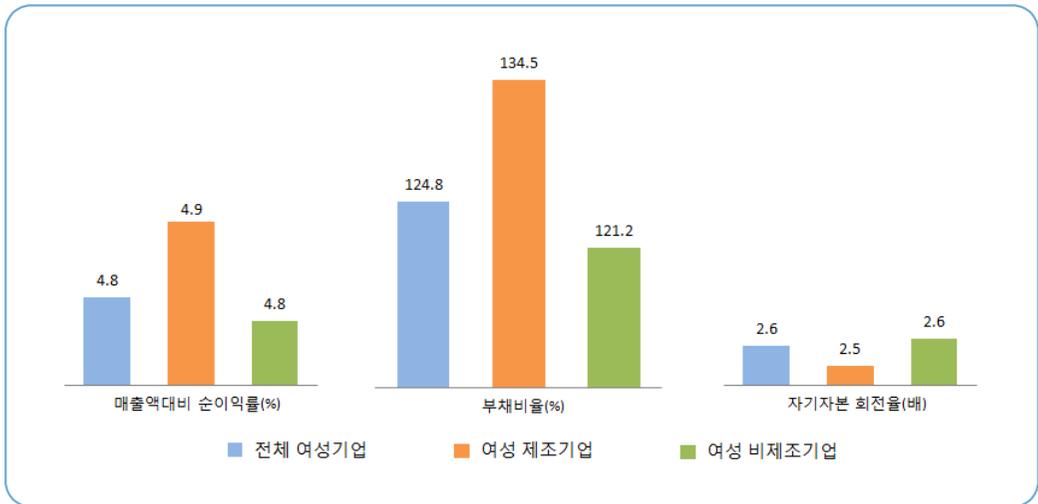
〈표 2-7〉 2016년도 여성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업체당 자산	기업체당 자본	기업체당 부채	기업체당 매출액	기업체 당 당기순이익	
전체 여성기업	2,639	1,174	1,465	3,037	147	
구분	여성 제조기업	3,471	1,480	1,991	3,748	184
	여성 비제조기업	2,412	1,091	1,322	2,843	13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16) 2016년도 여성기업 경영지표 비교



구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 회전율(배)
전체 여성기업		4.8	124.8	2.6
구분	여성 제조기업	4.9	134.5	2.5
	여성 비제조기업	4.8	121.2	2.6

※ 주요 경영지표의 산식

• 수익성

$$\text{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안정성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 활동성

$$\text{자기자본 회전율(배)} =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편,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성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모 면으로는 여성제조업이 더 영세한 편이었지만 수익성(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나 안정성(부채 비율) 등에서는 여성제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체당 자산과 매출액이 여성제조업보다 각각 약 1.3배, 약 1.1배씩 더 큰 편이다.

그러나 수익성은 여성제조업이 4.9%로 중소기업(4.2%) 대비 0.7%p 높았고, 부채비율은 134.6%로 중소기업(140.7%) 대비 6.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더 양호하고, 부채비율은 낮아 대체로 안정적이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무 활동성을 의미하는 자기자본 회전율의 경우, 여성제조업의 자기자본 회전율(2.5배)과 중소기업(2.3배)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자본 활동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제조업이 중소기업 대비 활동성과 수익성, 안정성 부문에서 모두 비교적 양호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2016년도 여성제조업 및 중소기업 재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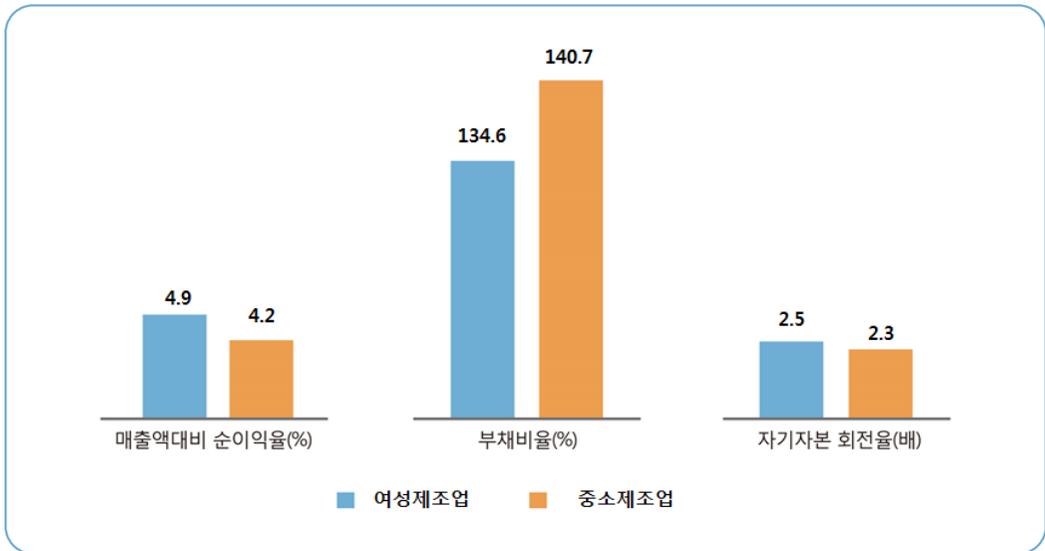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업체당 자산	기업체당 자본	기업체당 부채	기업체당 매출액	기업체 당 당기순이익
여성제조업	3,471	1,480	1,991	3,748	184
중소제조업	4,354	1,809	2,545	4,181	176

주: 중소기업과 여성제조업은 표본설계 기준이 상이하여 절대적인 수치 비교가 불가하나, 전반적인 현황 비교를 위함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2017),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17〉 2016년도 여성제조업 및 중소기업 경영지표 비교



구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 회전율(배)
구분	여성제조업	4.9	134.6	2.5
	중소제조업	4.2	140.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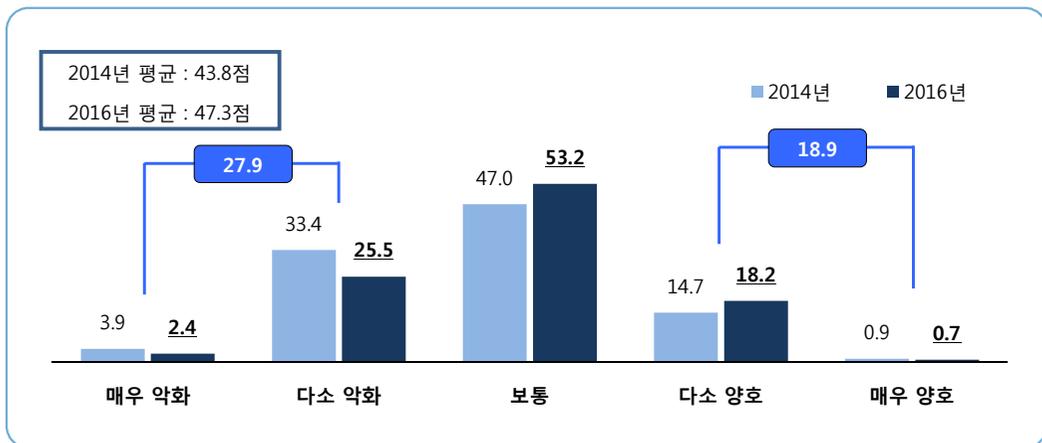
주: 중소기업업과 여성제조업은 표본설계 기준이 상이하어 절대적인 수치 비교가 불가하나, 전반적인 현황 비교를 위함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2017),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경영성과

여성기업의 경우 2016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과반수가 전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비 경영성과를 질문한 결과, 응답 여성기업의 53.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대해 ‘악화’ 응답이 27.9%로, ‘양호’ 응답(18.9%)보다 9.0%p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동산업’(39.9%), ‘섬유/의복/가방/신발’(36.0%), ‘운수 및 창고업’(34.8%), ‘숙박 및 음식점업’(33.0%), ‘도소매업’(30.1%) 등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2-18〉 여성기업의 수익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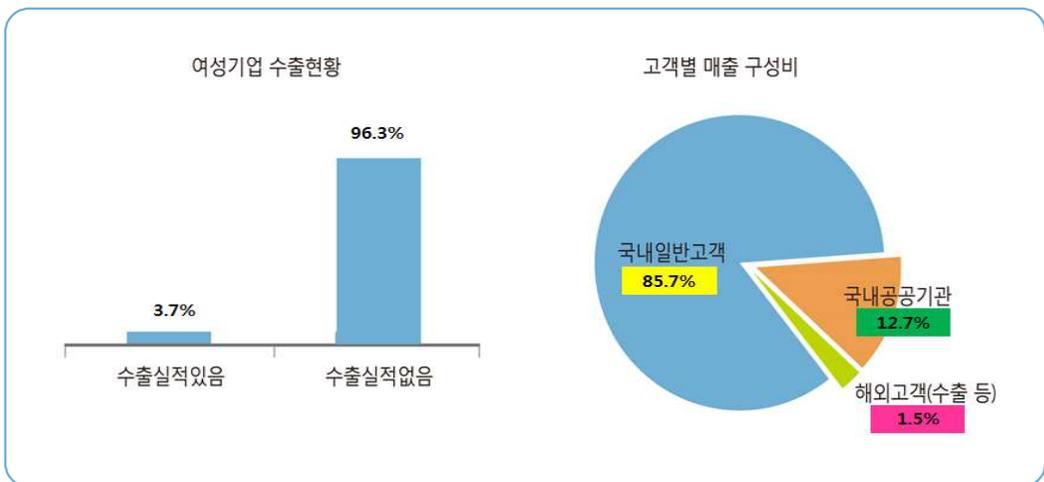
5. 여성기업 수출 및 투자 활동

가. 수출활동

국내 여성기업은 내수중심으로 경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2016년 기준, 수출실적이 있는 여성기업은 3.7%로, 96.3%의 여성기업은 수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분포에서도 국내 일반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5.7%로, 해외고객의 매출구성비는 불과 1.5% 수준이다.

여성기업의 수출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기업의 58.9%는 수출품목 발굴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수출품목이 부재하다는 것으로, 여성기업 내부적으로 해외로 판매할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의 핵심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국내외 동일업종 최고 기업 대비 상위 몇 %”에 해당되는지 묻는 질문에 해외 동일업종 최고기업 대비 상위 40.2%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 여성기업 수출 및 매출액 구성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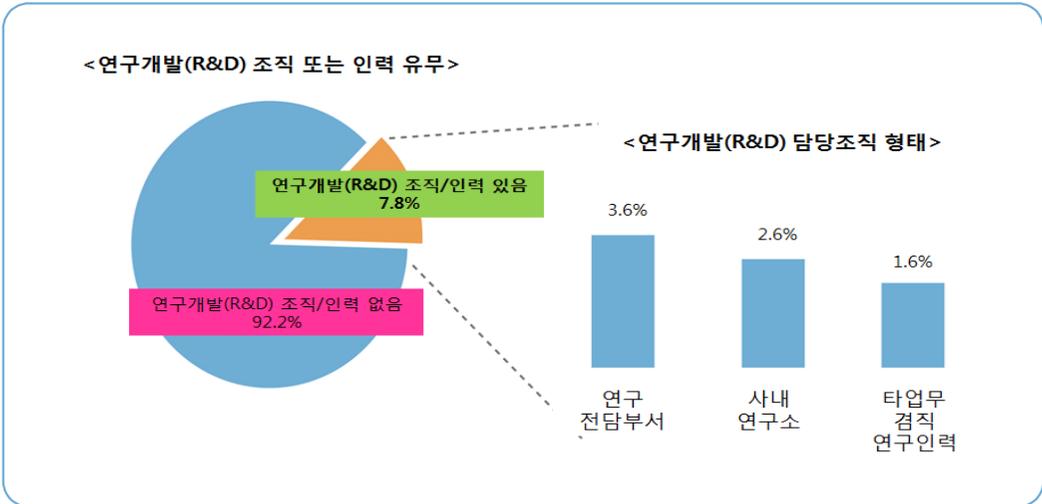
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활동

여성기업들은 연구개발(R&D)이나 설비 등 투자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2016년 기준, 여성기업 중 7.8%만이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한 조직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2.2%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연구 전담부서 운영이 3.6%, 사내연구소 2.6%, 타업무 겸직 연구인력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 활동이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10.2%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여성제조업 중에서는 21.9%가 연구개발(R&D)투자 조직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기업 비중이 평균 31.4%에 비교해서는 9.5%p 낮은 수준이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있는 여성제조업 중에서도 3.7%는 타업무 겸직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 외에 설비투자나 사업 확대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여성기업 중 97.6%는 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중에서는 평균 8.8% 정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용으로 투입하는데, 이 비용도 약 85% 이상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규 설비 투자는 미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0〉 여성기업의 연구개발(R&D)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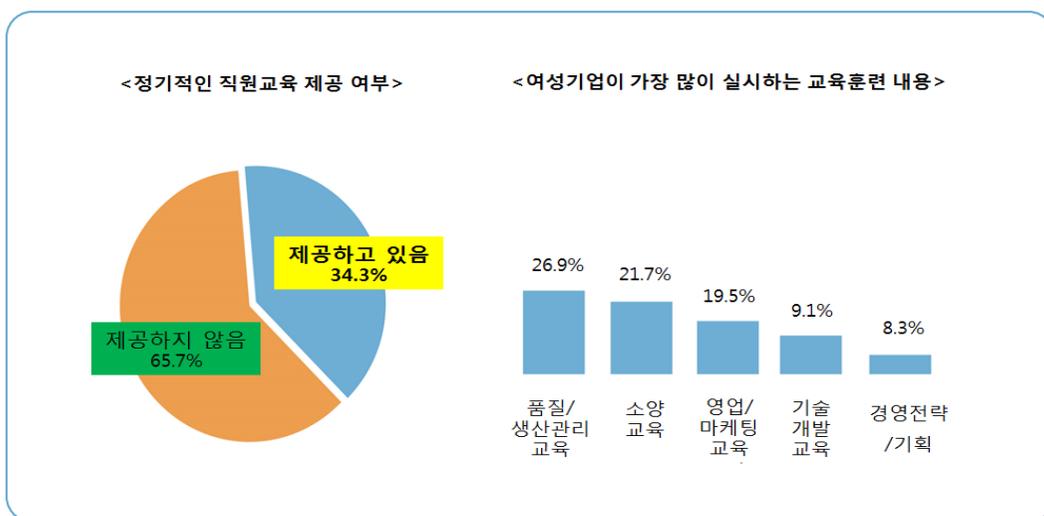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6. 교육 및 연수

가. 교육 및 연수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근로자와 CEO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제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기업에서는 34.3%가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대상 정기 교육을 하고 있었다. 품질/생산관리 교육(26.9%)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직원 소양교육(21.7%), 영업/마케팅 교육(19.5%)을 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 여성기업의 정기적인 직원교육 제공 여부 및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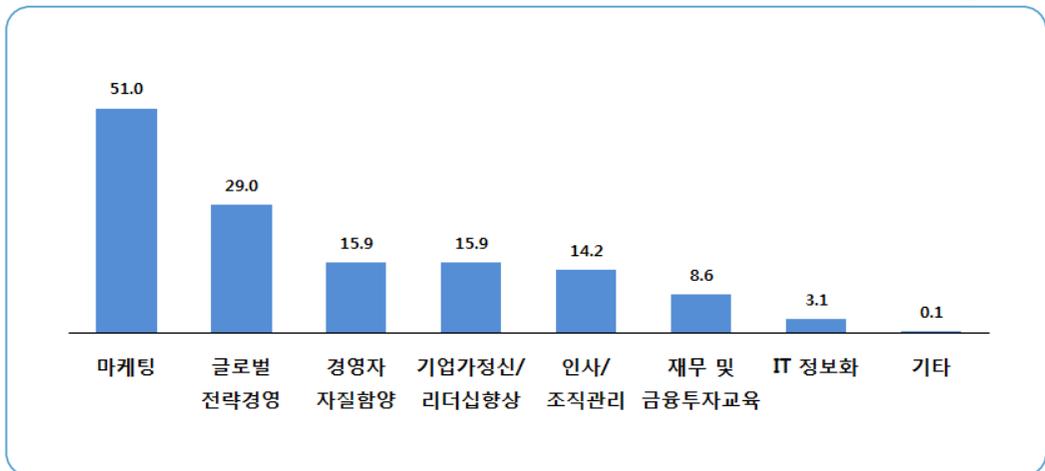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경영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도 요구되는데, 여성기업인의 12.7%가 여성기업인 대상 교육 또는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마케팅과 글로벌 전략경영 교육 등에 니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경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마케팅(51.0%)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글로벌 전략경영(29.0%), 경영자 자질함양(15.9%), 기업가정신/리더십향상(15.9%), 인사/조직관리(14.2%) 등의 순이다. 한편,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여성기업인은 경영 지식 함양뿐만 아니라, 동업종 경영자 간의 정보교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들이 업종 간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트렌드, 경영정보 등에 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2〉 여성경영자에게 필요한 교육 분야

(단위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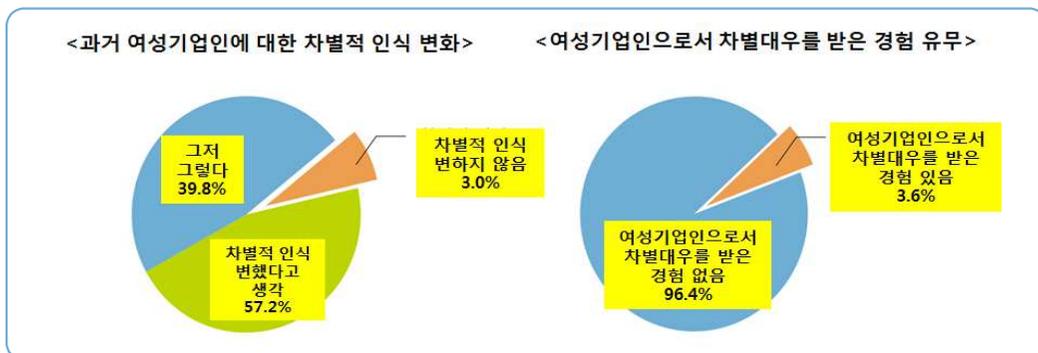
7. 여성기업 애로 현황

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대우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성기업 경영에 불합리한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이 증가하고, 성장함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인의 57.2%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기업의 절반 이상은 차별적 인식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3.0%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15.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3%), 교육서비스업(5.8%) 순으로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여성이라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은 3.6%에 불과하고, 나머지 96.4%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불합리한 대우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과거보다 여성기업인의 경영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3〉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대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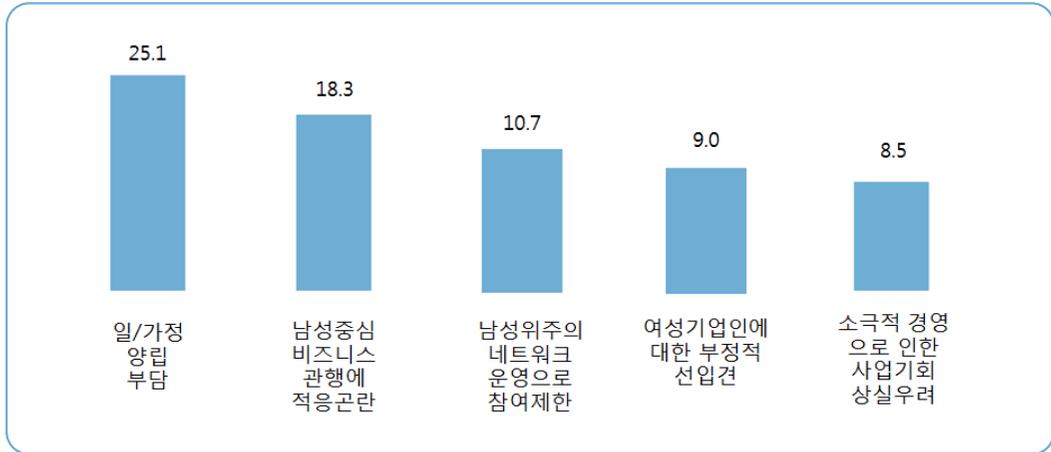
여성이라서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 등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영활동상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불리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기업인이 경영과정에서 남성기업인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일/가정 양립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기업의 약 25.1%가 일과 가정 양립의 부담을 가장 큰 불리한 점으로 꼽았으며, 특히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65.4%, 제조업 분야에서는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이 47.8%로 일/가정 양립 부담으로 인해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경영과 동시에 가정 및 육아에 대한 역할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남성기업인보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여전히 가사, 자녀 보육 등의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이 기업경영을 한다고 해서 남성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관습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위는 남성중심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한 적응 곤란(18.3%)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접대문화 등 남성위주의 사업 관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기업의 약 10.7%가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인해 참여 제한이 되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부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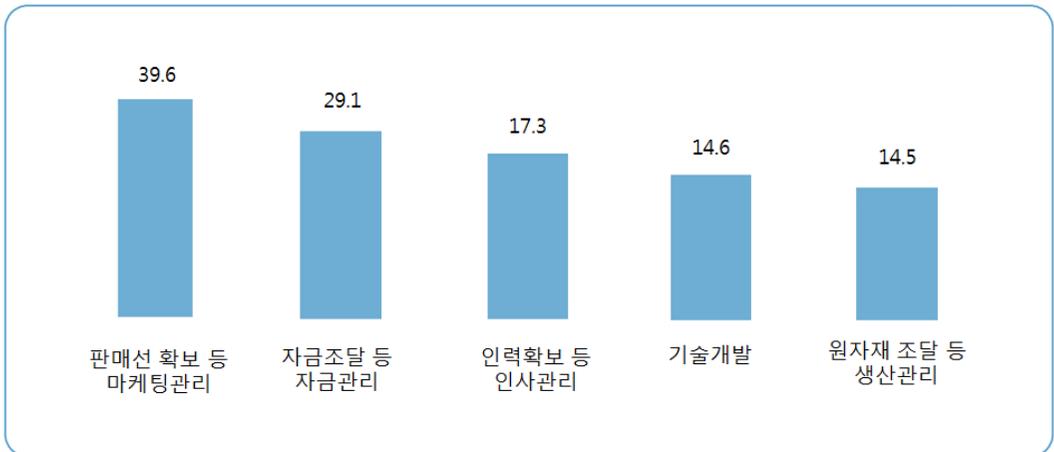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다.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

여성기업이 기업 활동상,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는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이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1순위가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39.6%), 2순위가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인력 확보 등 인사관리(17.3%), 기술개발(14.6%), 원자재 조달 등 생산관리(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5〉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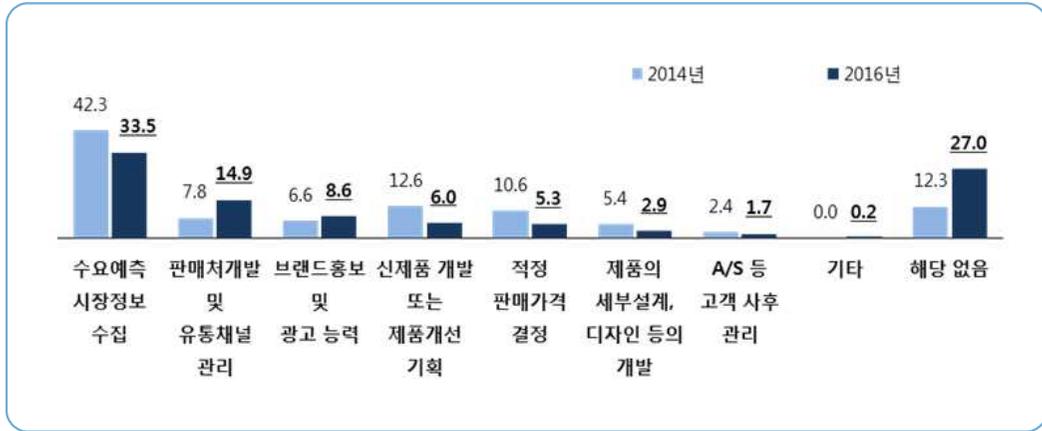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케팅 관리상 애로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33.5%)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 수집 등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판매처 개발 및 유통채널 관리(14.9%), 브랜드 홍보 및 광고 능력(8.6%) 부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전문 컨설팅 또는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수요예측, 시장분석, 홍보, 유통채널 관리 등의 마케팅 역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 2-26〉 여성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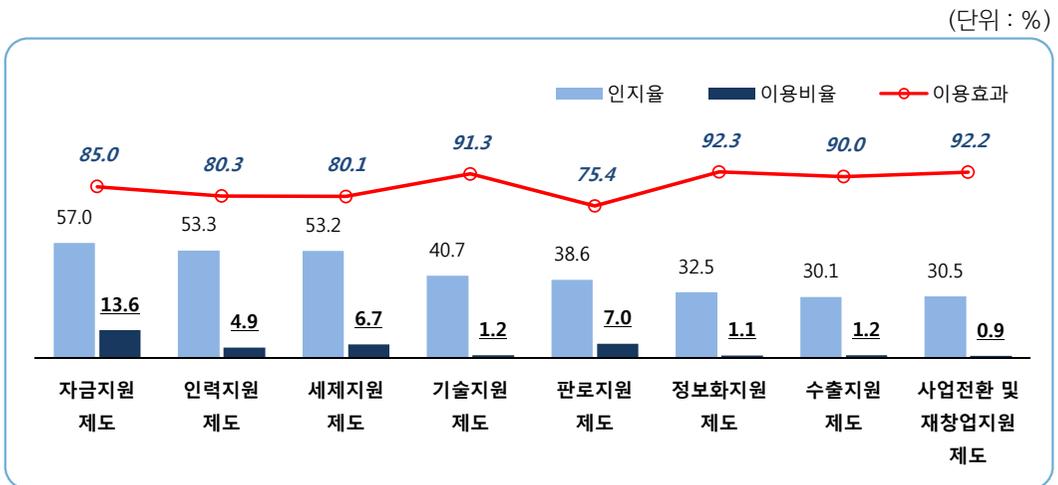


주: 1,2위 중복 응답 중 2014년 2016년자료 1위로 답한 수치만을 말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라. 여성기업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여성기업체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지원 제도 중, 자금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율이 가장 높는데, 여성기업의 57.0% 정도가 자금지원 제도를 알고 있고, 이 중 13.6%가 자금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제도 인지율은 인력지원(53.3%)과 세제 지원(53.2%)을 제외하고는 50%를 밑돌고 있으며, 제도 이용율은 자금지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를 넘지 않았다. 또한 이용효과에 있어서는 정보화지원 제도와 기술지원 제도의 이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정보화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1.1%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원에 대한 여성기업의 인지도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2-27〉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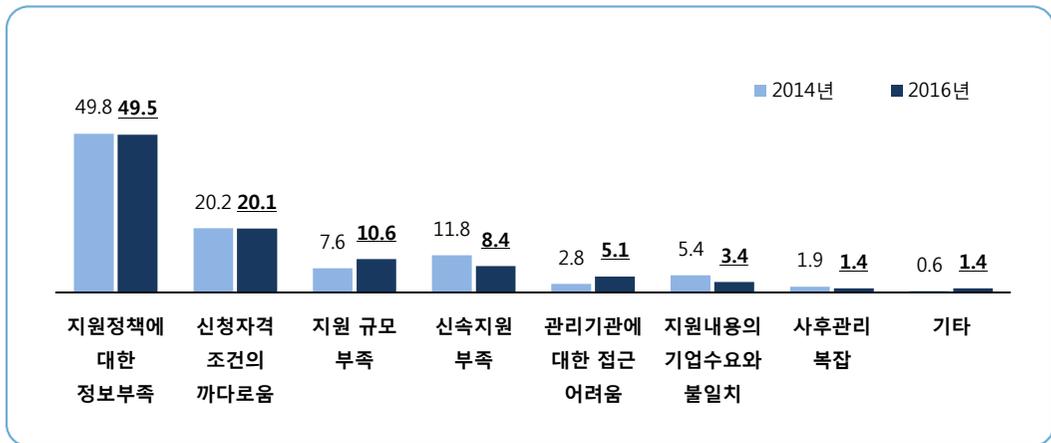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에 여성기업이 정부 정책 활용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기업의 49.5%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정책 활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보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제도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기업의 20.1%는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6%는 지원규모 부족, 8.4%는 신속지원 부족, 5.1%는 관리기간에 대한 접근 어려움 등을 정부지원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그림 2-28〉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단위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제2장 해외 여성기업 동향

1. OECD 국가 여성 경제활동 현황

가. 해외 여성의 경제활동 동향

OECD 회원국의 15~64세 여성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63.6%를 기록하였으며,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58%대 수준에서 2005년 이후 60%를 넘겼고 이후로도 소폭씩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인 유럽 국가의 여성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80.2%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였고, 독일 및 영국도 73%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우 19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스페인은 2000년에 59.2%의 상당히 낮은 수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 20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6년에는 70.2%까지 기록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름세를 보이며 2000년 70.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16년에는 67.3%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 등에 기인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참가율을 보이다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고,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에 기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가파르게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68.1%까지 상승하였다.

터키,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터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36.2%에 불과하고, 멕시코도 4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세는 200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를 보이며, 전체 OECD 평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58.4%이며, OECD 전체 35개 회원국 중 31위로 이머징³⁷⁾ 국가들과 함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상승세는 다소 확대되어 OECD 평균 수준과의 격차를 점차 줄이고 있는데 실제 1998년 8.5%p 수준이었던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6년 5.2%p까지 축소되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비교적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역시 선진 국가는 낮은 수준을 보이나 이머징 국가로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OECD 평균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2016년 기준 16.4%p 수준이며, 스웨덴은 3.7%p에 불과하고, 독일은 8.6%p이며,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은 10%p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각각 17.2%p, 20.5%p 이고, 터키, 멕시코는 41.4%p, 34.9%p로 격차가 상당히 높은데 다만, 이들 국가의 격차 추이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3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표 2-9〉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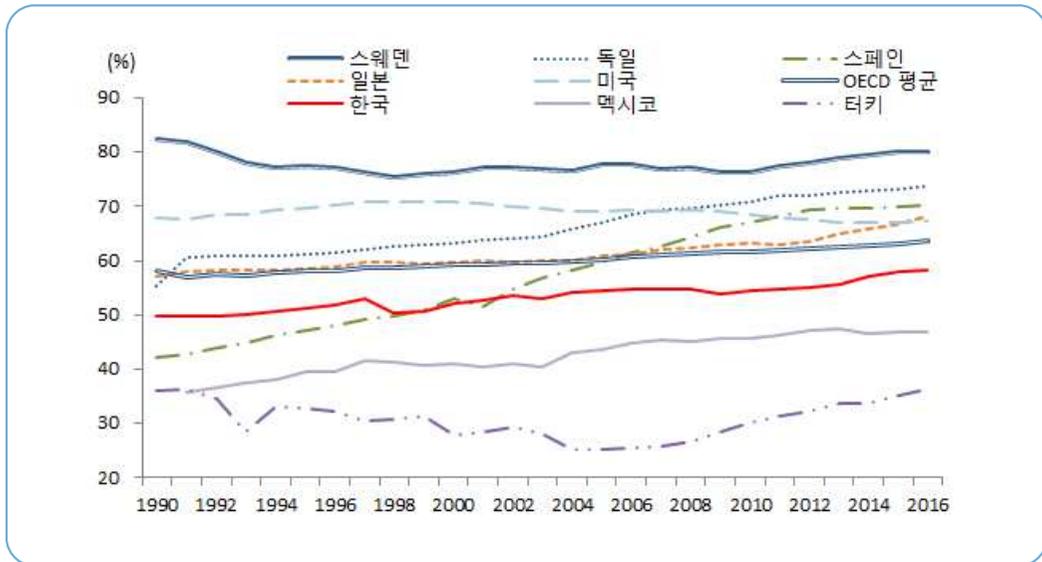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국가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1	아이슬란드	83.3	83.4	82.7	86.2
2	스웨덴	76.4	77.7	76.2	80.2
3	스위스	71.6	74.3	75.3	79.5
4	덴마크	75.6	75.9	76.0	77.2
5	노르웨이	76.5	75.4	75.6	75.9
6	네덜란드	65.2	68.0	72.6	75.0
7	뉴질랜드	67.2	70.4	71.6	74.9
8	캐나다	70.4	73.0	74.3	74.4
9	핀란드	72.1	72.9	72.5	74.1
10	라트비아	62.1	64.8	70.8	74.0
11	독일	63.3	66.9	70.8	73.6
12	에스토니아	66.3	67.6	71.0	73.1
13	영국	68.9	69.6	70.2	73.0
14	오스트리아	61.8	64.9	68.9	71.7
15	호주	65.3	68.2	70.0	71.6
16	포르투갈	63.8	67.8	69.7	70.5
17	스페인	52.9	59.7	67.1	70.2
18	이스라엘	62.5	64.6	66.4	68.6
19	슬로베니아	62.9	66.1	67.4	68.6
20	일본	59.6	60.8	63.2	68.1
21	프랑스	61.7	64.4	65.8	67.9
22	체코	63.7	62.4	61.5	67.6
23	미국	70.7	69.2	68.4	67.3
24	슬로바키아	63.2	61.5	61.3	65.3
25	룩셈부르크	51.7	57.0	60.3	64.7
26	아일랜드	56.3	60.8	62.3	64.1
27	헝가리	52.6	55.1	56.3	63.5
28	벨기에	56.4	59.5	61.8	62.9
29	폴란드	59.9	58.3	58.5	62.0
30	그리스	50.5	54.5	57.5	60.4
31	한국	52.0	54.5	54.5	58.4
32	칠레	42.1	45.5	51.8	56.1
33	이탈리아	46.3	50.5	51.1	55.2
34	멕시코	41.0	43.6	45.6	47.0
35	터키	28.0	25.2	30.2	36.2
36	OECD평균	59.2	60.3	61.6	63.6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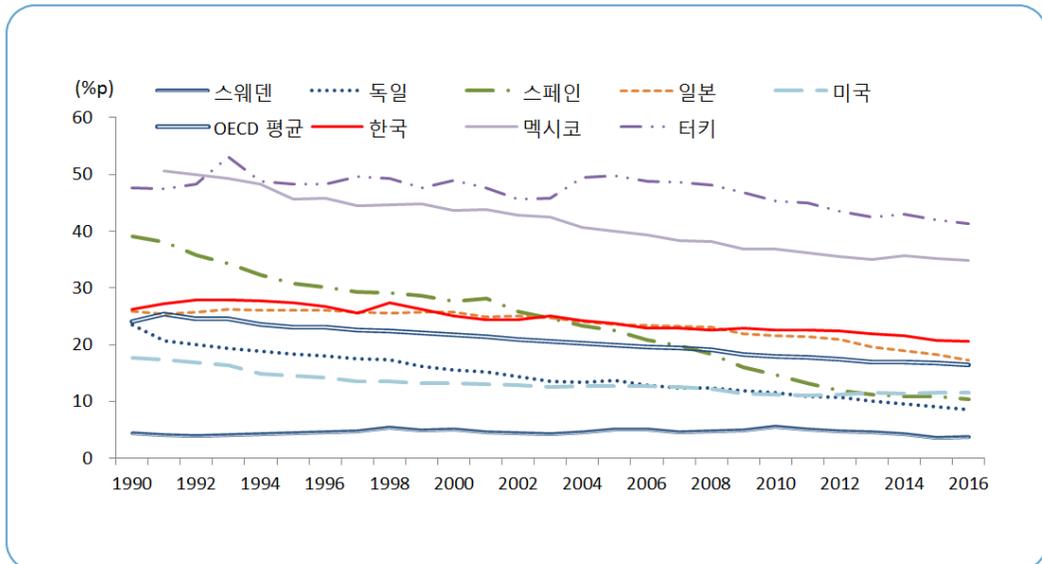
주: 순위는 2016년 기준

〈그림 2-29〉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2-30〉 OECD 회원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갭 추이(15~64세)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회원국들의 여성(15~64세) 고용률은 경기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이다. 2016년 OECD 평균 여성고용률은 59.4%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가 2010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2016년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56.2%로 전체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이며, 역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의 고용률도 2010년 이후 상승세에 있으며 특히 일본의 여성고용률 증가폭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 2016년 66.1%까지 상승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양적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경우 북유럽 등 선진 국가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남성과의 격차도 작은 반면,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의 여성들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결국 국가 경제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머징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 여성들의 평균적인 경제활동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0〉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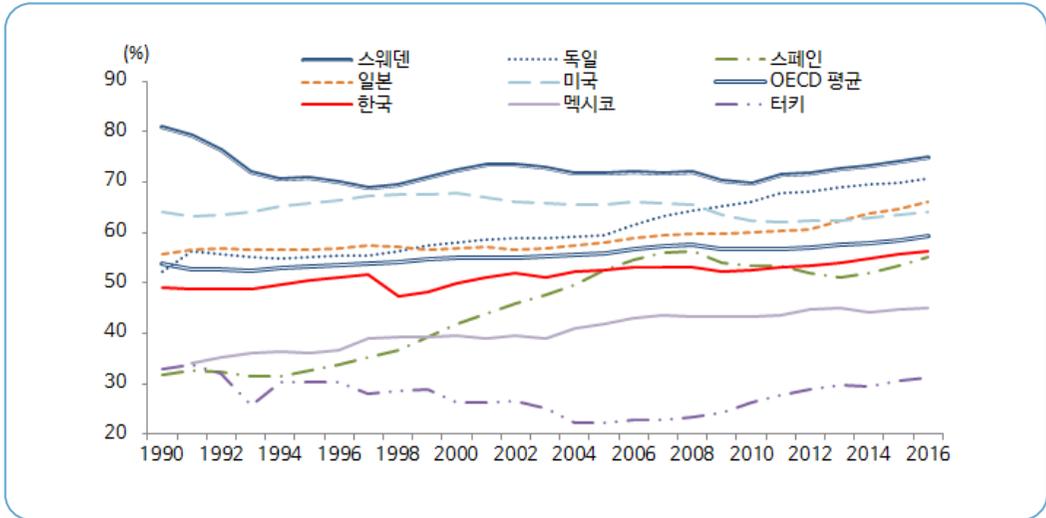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국가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1	아이슬란드	81.0	81.2	77.0	83.4
2	스위스	69.3	70.4	71.3	75.4
3	스웨덴	72.2	71.8	69.7	74.8
4	노르웨이	74.0	72.0	73.3	72.8
5	덴마크	71.6	71.9	71.1	72.0
6	독일	58.1	59.6	66.1	70.8
7	뉴질랜드	63.1	67.4	66.5	70.7
8	네덜란드	62.7	64.1	69.4	70.1
9	캐나다	65.6	68.2	68.8	69.7
10	영국	65.6	66.7	65.3	69.5
11	에스토니아	57.3	62.8	60.7	68.5
12	오스트리아	59.4	61.1	65.7	67.7
13	핀란드	64.5	66.5	66.9	67.6
14	라트비아	53.8	58.2	59.0	67.6
15	호주	61.3	64.6	66.1	67.4
16	일본	56.7	58.1	60.1	66.1
17	이스라엘	55.5	57.0	61.0	65.2
18	체코	56.9	56.3	56.3	64.4
19	미국	67.8	65.6	62.4	64.0
20	슬로베니아	58.4	61.3	62.6	62.6
21	포르투갈	60.5	61.6	61.0	62.4
22	프랑스	54.3	58.4	59.8	61.4
23	룩셈부르크	50.0	53.7	57.2	60.4
24	헝가리	49.6	51.0	50.2	60.2
25	아일랜드	53.7	58.2	56.0	59.5
26	슬로바키아	51.5	50.9	52.3	58.3
27	벨기에	51.5	53.8	56.5	58.1
28	폴란드	48.9	47.0	52.6	58.1
29	한국	50.0	52.5	52.6	56.2
30	스페인	42.0	52.5	53.5	55.1
31	칠레	36.8	39.8	46.7	52.0
32	이탈리아	39.6	45.4	46.1	48.1
33	멕시코	39.6	41.8	43.2	45.1
34	그리스	41.7	46.0	48.0	43.3
35	터키	26.2	22.3	26.2	31.2
36	OECD평균	55.0	56.0	56.6	59.4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주: 순위는 2016년 기준

〈그림 2-31〉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국내 통계청 자료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16년 52.1%까지 상승했고, 남성은 2000년 74.4%에서 2016년 73.9%로 소폭 감소하며 그 격차는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 이후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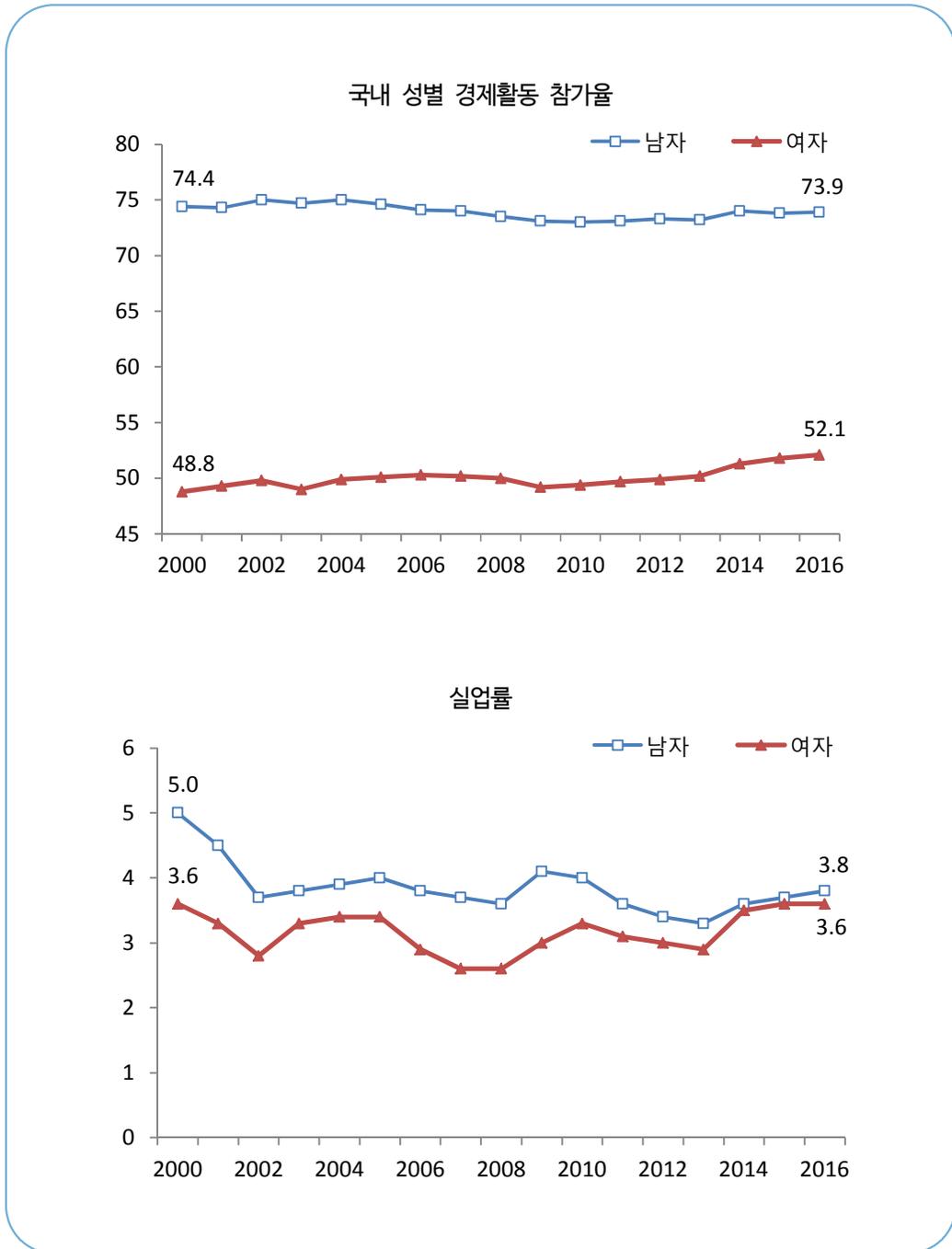
〈표 2-11〉 국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0		2010		2016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74.4	48.8	73.0	49.4	73.9	52.1
실업률	5.0	3.6	4.0	3.3	3.8	3.6
고용률	70.7	47.0	70.1	47.8	71.1	5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그림 2-32〉 국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나.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지표 분석

OECD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의 기간제 고용 비율, 남녀 간 임금 격차, 고위직/공공부문 고용 비중 등 여성 경제활동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지표를 통해 본 OECD 회원국 여성들의 고용수준 및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북유럽 등 선진 국가에 비해 이머징 국가 여성들의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며, 국가 간 편차도 큰 편이다.

먼저,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여성근로자들의 산업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들의 서비스업 종사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업(15.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5%), 숙박 및 음식점업(12.7%), 교육 서비스업(11.1%) 순으로 종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종사비율은 11.7%이다.

일본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6%)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19.5%), 제조업(11.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독일도 일본과 비슷한 순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1%), 도소매업(15.4%), 제조업(11.2%)의 종사 비중이 높으나 교육서비스업(9.9%), 행정·사회 보안 서비스업(7.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0%) 등의 비중도 다소 높아 전반적으로 분포가 고른 편이다. 스웨덴은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91.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5.4%), 교육서비스업(17.3%)의 종사 비중이 높고, 행정(7.9%), 과학기술(7.4%) 등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도 다소 높은 편이다. 한편 멕시코는 제조업(15.9%) 종사 비중이 비교적 높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25.7%)과 가사노동을 포함한 기타서비스업(14.8%)과 숙박 및 음식점업(11.7%)에 편중되어 있다.

〈표 2-12〉 2016년 주요국 여성근로자 산업별 종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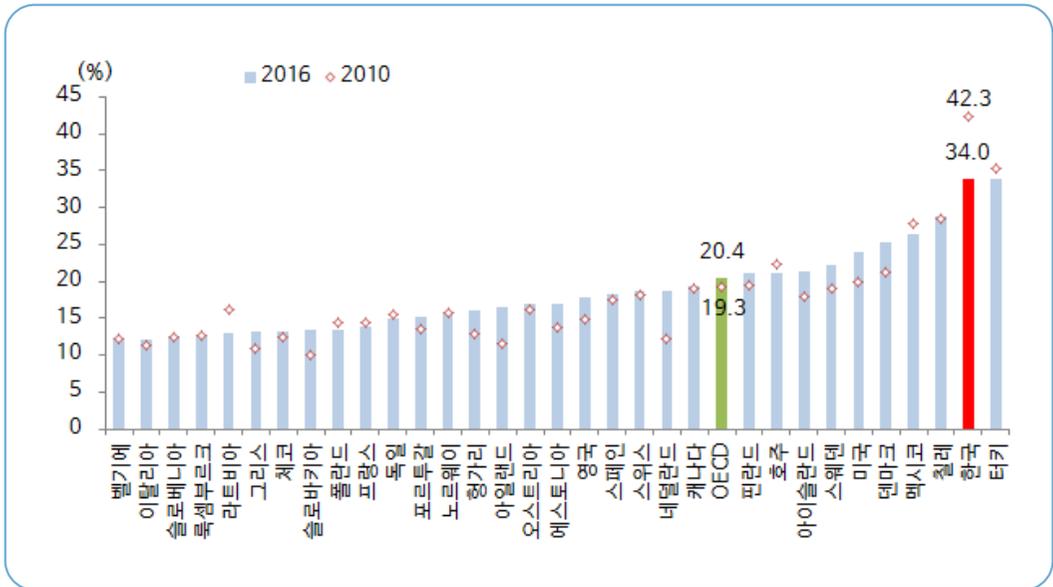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멕시코
농업	4.8	3.0	0.9	1.0	3.5
광공업	13.3	14.3	13.8	6.9	17.1
제조업	11.7	11.3	11.2	5.0	15.9
서비스업	81.8	81.0	85.3	91.4	79.4
도소매업	15.4	19.5	15.4	10.5	25.7
운수업	1.3	2.8	2.6	2.3	0.9
숙박 및 음식점업	12.7	8.6	4.6	3.8	11.7
정보 통신업	2.0	2.0	2.1	2.6	0.6
금융 및 보험업	3.8	3.5	3.4	2.2	1.2
부동산업	2.0	1.3	0.5	1.2	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	2.7	6.0	7.4	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3	4.8	5.3	4.5	2.7
행정, 사회 보안 등	3.3	2.3	7.5	7.9	4.4
교육 서비스업	11.1	6.2	9.9	17.3	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5	21.6	21.1	25.4	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	1.3	1.4	2.6	0.7
기타 서비스업(가사 서비스 포함)	6.4	4.4	5.3	3.6	14.8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여성 고용의 안정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자료 중 근속기간 12개월 미만 여성근로자 비율은 2016년 OECD 회원국 평균 20.4%로 2010년(19.3%)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선진 국가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북유럽 국가 및 미국 등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42.3%에서 2016년 34.0%로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3〉 OECD 회원국의 근속기간 12개월 미만 여성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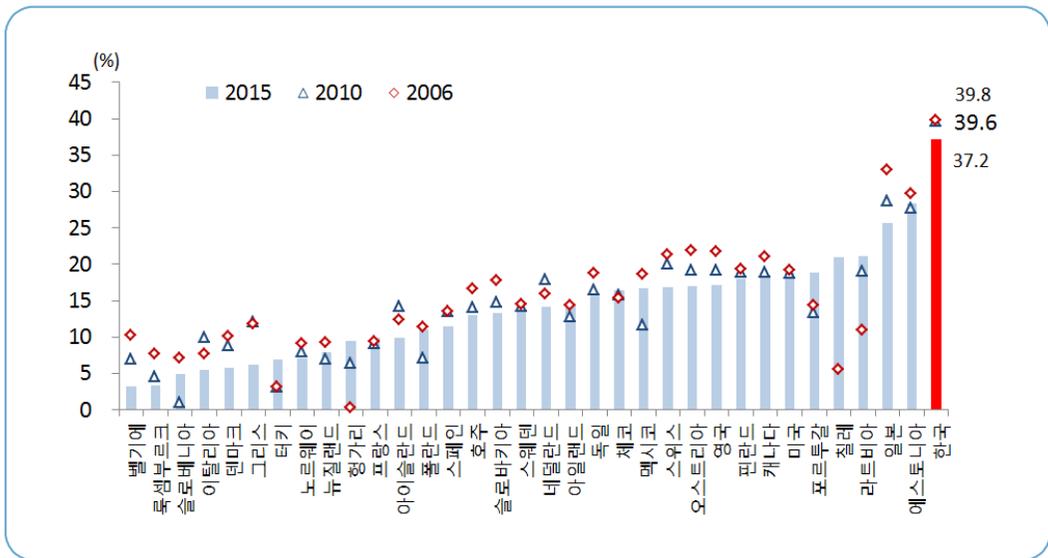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회원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34개 국가 중 2015년 기준, 남녀 간 격차가 10%를 밑도는 국가가 12개국이며, 20%를 하회하는 국가는 17개국(10% 이하 제외)이다. 특히, 벨기에는 남녀 간 임금 격차가 2014년 기준 3.3%에 불과하고 2006년(10.3%)에 비해서도 상당히 축소된 모습을 보이며, 남녀 간 임금 불균형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남녀 간 임금 격차가 2015년 기준 37.2%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전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도 상당히 커 남녀 간 임금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기간제 또는 단순 노무, 단순 서비스직 등에서의 종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다만 2006년(39.8%)에 비해서는

소폭 축소되었다. 일본은 25.7%(2015년)로 우리나라와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며, 임금 불균형이 큰 국가에 속하나 2006년(33.0%)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그림 2-34)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



자료: OECD,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주: 1) 전일제 근로자들의 소득 중앙값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 차이

2)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의 경우 2015년도 수치 대신 2014년도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연도 별로 집계되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에 OECD 평균치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한편,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위직, 공공부문 종사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7년 27.8%이며, 2012년 26.8%, 2002년 20.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47.6%에 달하며, 일본은 9.3%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17.0%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는 2002년(5.9%)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2-35〉 OECD 회원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자료: OECD(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여성 장관 비율 역시 OECD 평균치는 2005년 21.1%, 2012년 24.9%, 2017년 27.9%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프랑스와 스웨덴, 캐나다는 여성 장관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국가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은 터키, 헝가리와 함께 최하위권에 있다. 실제 한국의 2017년 여성 장관 비율은 9.1%로 2012년도(11.1%)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6〉 OECD 회원국의 여성 장관 비율



자료: OECD(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률은, 2015년 OECD 평균 58.4%로 전반적으로 여성 고용 비중이 남성에 비해 더 높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공공부문 여성 고용비중이 70% 전후로 상당히 높으며, 한국은 44.4%로 일본(43.8%)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림 2-37〉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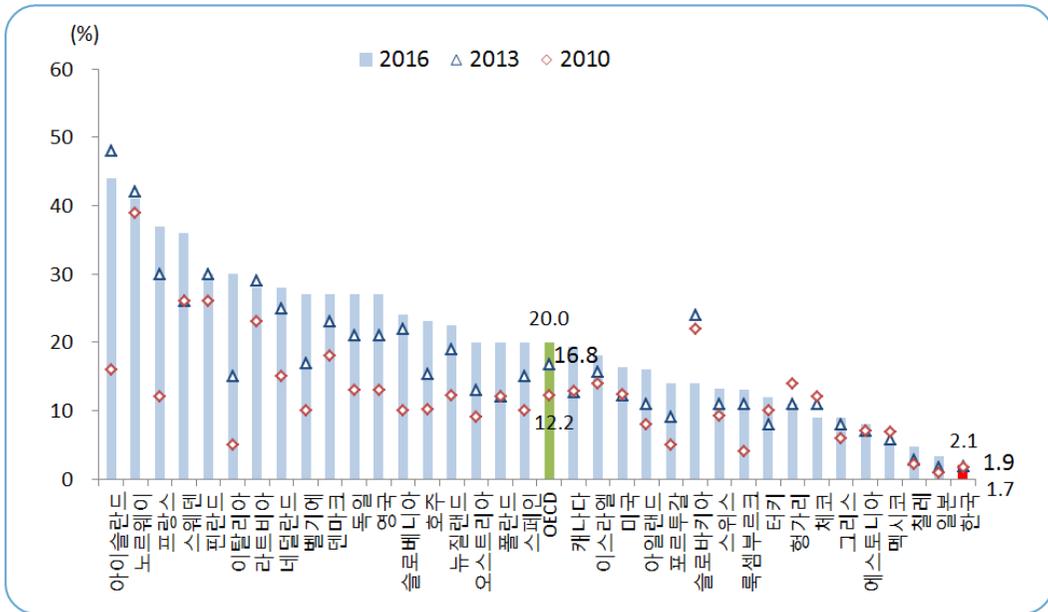
자료: OECD(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여성의 기업 내 영향력 수준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수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OECD 회원국의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20.0%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기업 내 영향력이 큰 편이다. 2010년에 비해서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이슬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는 25%p 이상의 증가 폭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016년 2.1%로 조사대상 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3.4%)도 우리나라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며, 고용 활동에 있어 남녀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CEO 수는 2016년 32명(6.4%)³⁸⁾으로, 기업에 있어서 여성의 영향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4년 24명에서 2015년 21명, 2016년 32명으로 여성 CEO 수는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기업 내 영향력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Fortune에서 발표한 미국 내 500대 기업 기준

〈그림 2-38〉 2016년 OECD 회원국의 여성 임원(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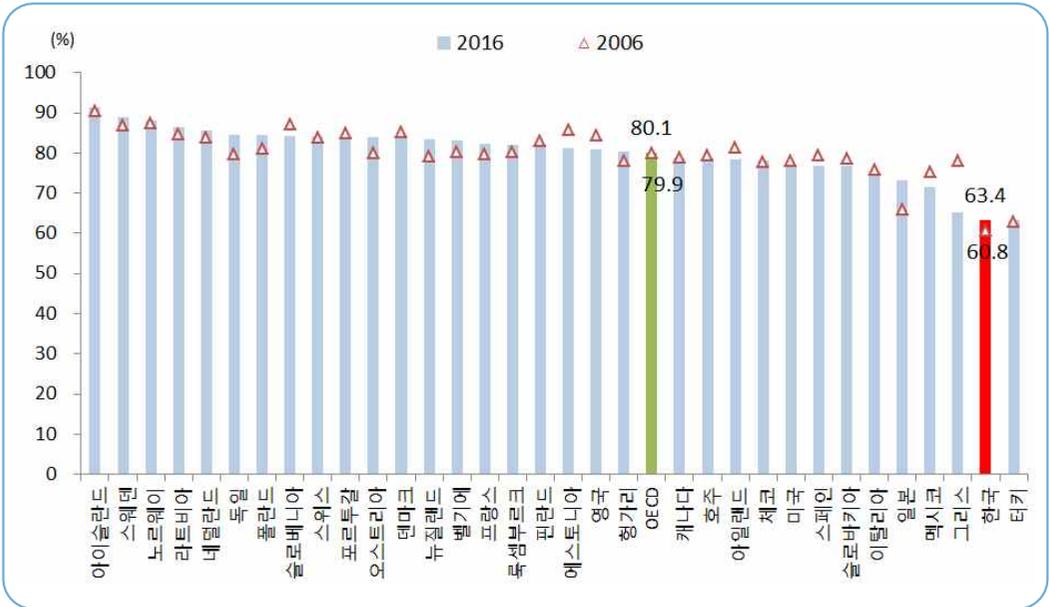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statistics

OECD 회원국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2016년 기준 평균 80.1% 수준이며, 2006년(79.9%)에 비해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고학력 여성고용률이 90% 전후로 상당히 높으며, 일본 및 이머징 국가의 고학력 여성고용률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63.4%로 조사대상 34개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낮아 고학력 여성의 활용 수준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2006년(60.8%)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중 두드러진 점은, 30대 중반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M자형을 보인다는 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45-49세 구간까지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5-29세 구간이 69.5%로 가장 높고, 35-39세 구간에서 56.5%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40세 이후 구간에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이며, 경력 단절 후에도 질적 수준이 높은 일자리로 복귀하기 보다는 단순직 등에 종사하며,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나 안정성, 사회영향력 등이 모두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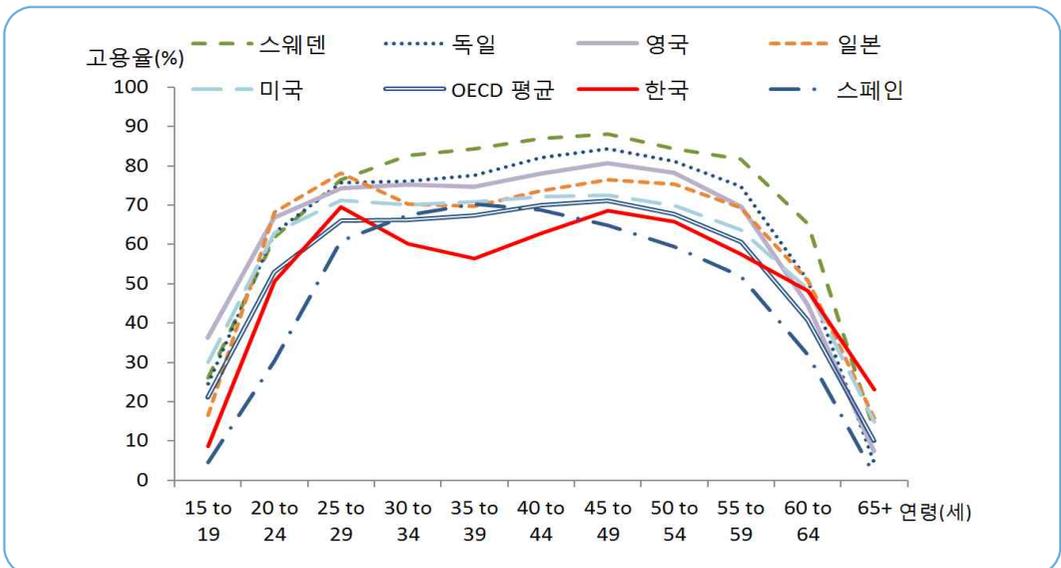
〈그림 2-39〉 OECD 고학력 여성고용률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7」

주: 3차 교육기관 졸업 이상의 여성고용률

〈그림 2-40〉 OECD 연령별 여성 고용률(2016)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 단계별 여성기업 활동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에서는 여성기업 활동에 대한 보고서(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 이하 GEM이라함)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전세계 7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2016년 여성의 초기기업활동 수준은 전년에 비해 10% 가량 증가하였으며, 남성과의 격차는 5% 가량 축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초기기업활동(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은 근로가능인구(18-64세) 중 임금 지급 개월 수 3개월 미만의 신생기업과 영업을 시작한지 42개월이 지나지 않은 초기 기업인 비율로, 여성의 경우 지역별로는 2015-2016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 10.5%, 유럽 6.3%, 남아메리카 17.2%, 북아메리카가 11.9%를 기록하였으며, 남성과의 격차는 대부분 60~80% 범위에 있다.

GEM 조사대상 국가 중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초기활동비율을 살펴보면, 칠레가 19.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선진 국가 중 미국은 10.5%, 스웨덴은 6.3%, 독일은 가장 낮은 3.1%를 기록하였으며, 이머징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10% 수준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의 초기기업활동은 남성 대비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멕시코는 남성보다 여성의 초기기업활동 비율이 높다.

한국 여성의 초기기업활동 비율은 5.3%이며,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는 20위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고, 남성에 비해서는 70%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기기업활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생계형보다는 기회추구형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남아메리카 및 사하라·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생계형 비중이 비교적 높고, 남성기업 대비 생계형 기업활동 수준도 높은 편이다. 한편, GEM⁴¹⁾은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생계형 비중이 낮고, 생계형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활동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초기기업활동비율도 비교적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을 살펴보면, 스웨덴 여성의 생계형 기업활동 비중이 2.3%로 가장 낮고, 슬로바키아가 47.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생계형 비중이 23.1%로 높은 편에 속하고, 남성기업 대비로는 9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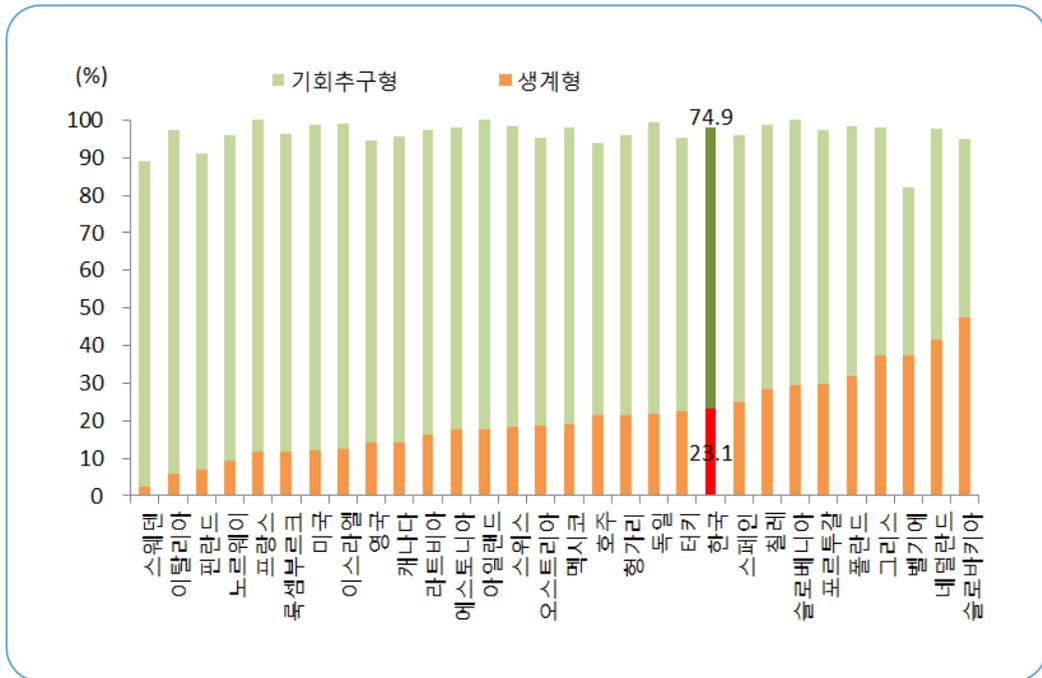
〈표 2-14〉 지역별 여성기업 생계형/기회추구형 활동 비율(2015-2016)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아프리카
여성기업 생계형	23.3	25.0	29.9	23.9	13.1	35.7
남성기업 대비 (여성/남성)	1.1	1.3	1.4	1.0	1.0	1.5
여성기업 기회추구형	74.2	71.3	67.6	73.0	84.2	61.8
남성기업 대비 (여성/남성)	1.0	0.9	0.9	1.0	1.0	0.9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41) GEM은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Factor-Driven Economies, Factor-to-Efficiency-Driven Economies, Efficiency-Driven Economies, Efficiency-to-Innovation-Driven Economies, Innovation-Driven Economies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43) OECD 회원국 여성의 생계형/기회추구형 기업활동 비율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18-64세 여성인구 대비 영업 시작 42개월이 지난 여성기업 비율 수준을 나타내는 성숙기 여성기업(Established Business Ownership) 비율은 2015-2016년에 2013-2014년 대비 평균 8% 증가하였으며, 남성기업 대비 비중은 9%가량 축소되었다⁴²⁾. 지역별 비율은 아시아-태평양 9.7%, 유럽 4.7%, 남미 및 북미 지역이 7.0%로 유럽이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가 10.8%로 가장 높고, 벨기에가 1.6%로 가장 낮으며, 선진국가 중 미국은 7.6%, 독일 4.4%, 스웨덴은 3.0%이고, 이머징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6.5%, 5.3%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남성기업에 비해 성숙기 비율이 낮으며, 한국은 5.6%로 30개국 중 11번째로 높고, 남성기업 대비로는 80% 수준이다.

42) GEM 조사대상 국가 평균 기준, GEM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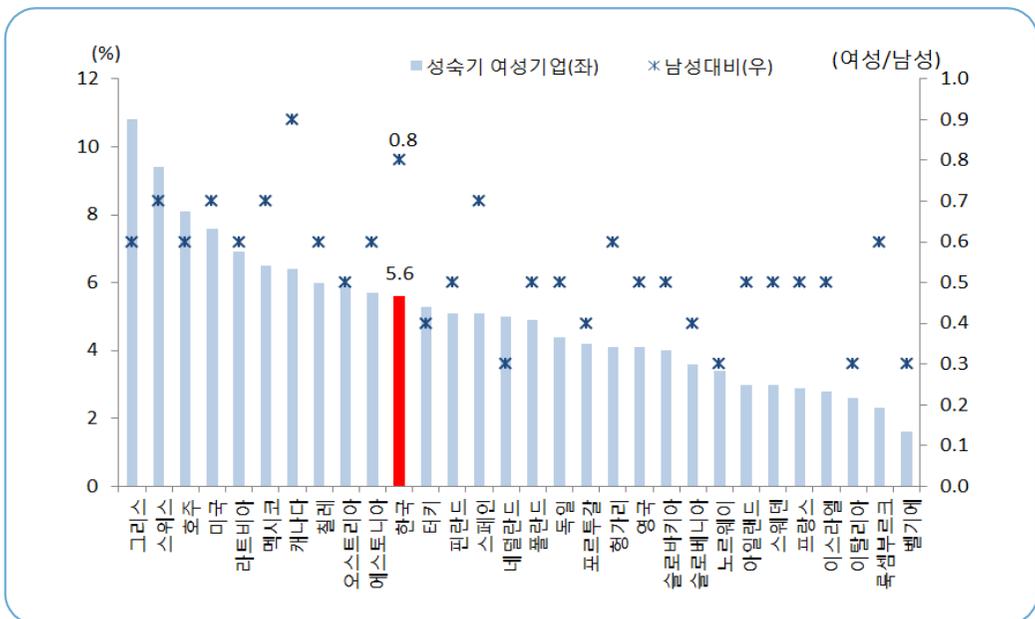
〈표 2-15〉 지역별 성숙기 여성기업 활동(2015-2016)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중양아시아·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아프리카
성숙기 여성기업	9.7	4.7	7.0	3.2	7.0	11.5
남성기업 대비 (여성/남성)	0.7	0.5	0.7	0.3	0.8	0.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18-64세 여성인구 대비 영업 시작 42개월이 지난 성숙단계 여성기업 비율

〈그림 2-44〉 OECD 회원국의 성숙기 여성기업 활동(2015-201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18-64세 여성인구 대비 영업 시작 42개월이 지난 성숙단계 여성기업 비율

여성 기업의 사업중단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사업 중단 비율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 기준, 사하라아프리카 지역의 여성기업

사업중단 비율은 8.4%로 가장 높고, 남아메리카는 4.6% 수준이며,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은 각각 1.6%, 2.6%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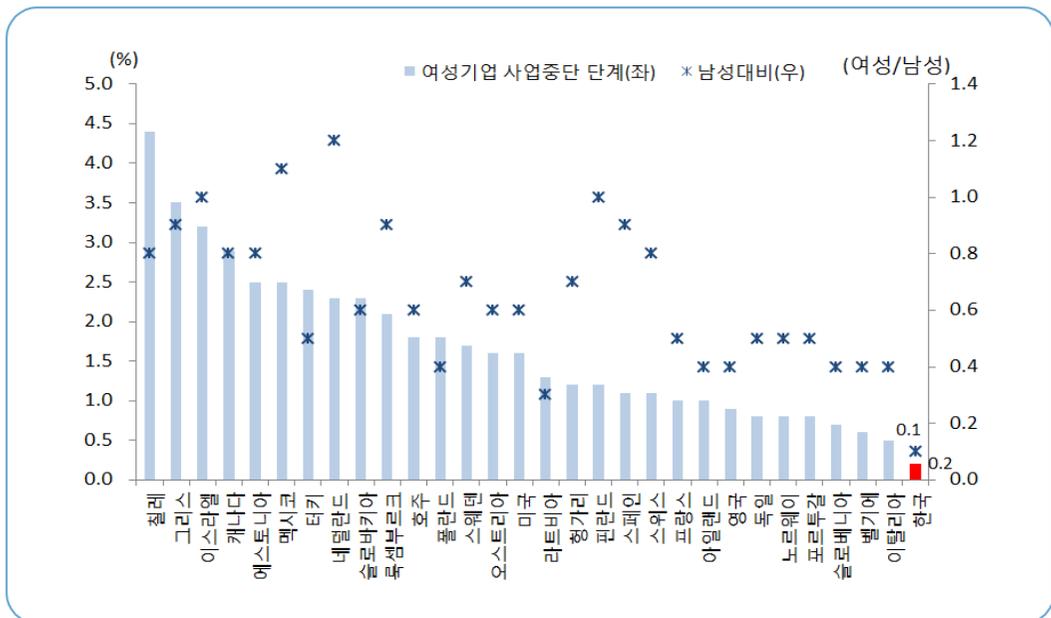
OECD 국가별로는 칠레의 사업중단 비율이 4.4%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0.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남성기업과의 비교 시에도 여성기업 사업중단 비율이 높은 국가일 수록 남성기업 대비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남성기업 대비 10% 수준이다.

〈표 2-16〉 지역별 여성기업 사업중단 활동(2015-2016)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아프리카
여성기업 사업중단	2.6	1.6	4.6	3.1	2.2	8.4
남성 대비 (여성/남성)	0.8	0.7	1.2	0.8	0.7	1.2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그림 2-45〉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사업중단 활동(2015-201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나. 해외 여성기업의 특성

1) 여성기업의 산업별 분포

여성기업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소매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의 도소매업 비중이 64.7%로 가장 높고, 남아메리카와 사하라·아프리카 등도 60% 내외의 도소매업 종사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 및 북아메리카는 산업 분포가 고른 편인데, 도소매업 외에 공공·의료·교육·사회서비스업 및 금융 등 전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세계 전반적으로 ICT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북아메리카의 ICT 비중이 5.4%로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한다.

OECD 회원국 역시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선진국일수록 공공·의료·교육·사회서비스업 및 금융 등 전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이머징 국가일수록 도소매업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분야별로 농업·광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30%), 터키(20%) 등이며, 제조업은 라트비아(18.2%), 벨기에(14.3%)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도소매업이 비중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63.7%)와 한국(58.4%) 칠레(57.3%) 등이며, ICT는 캐나다(7.1%)와 영국(5.5%)의 비중이 높고, 공공·의료·교육·사회서비스업은 네덜란드(47.8%), 스위스(44.7%) 등 서유럽 국가, 금융 등 전문서비스업은 스웨덴(39.3%), 노르웨이(39.7%) 등 북유럽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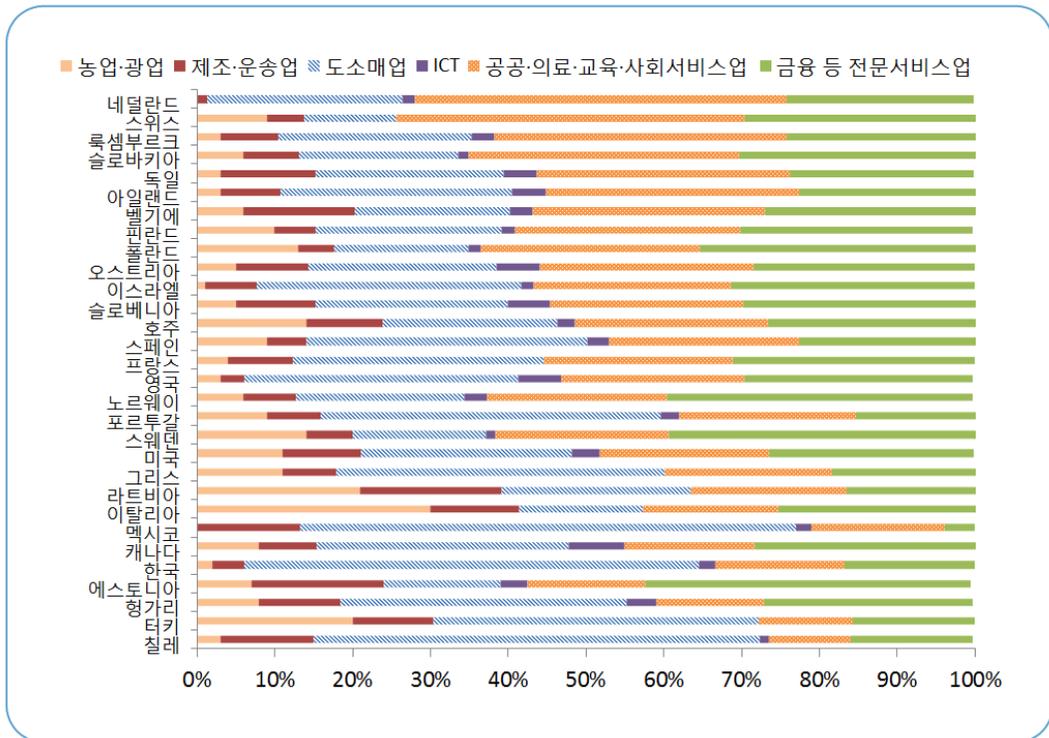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와 유사하게 도소매업 비중이 58.4%로 상당히 높으며, 다음으로 금융 등 전문서비스업이 16.7%, 공공·의료·교육·사회서비스업이 16.6%, 그 외 농업 및 광업 2%, 제조 및 운수업 4.1%, ICT가 2.1%를 기록했다.

〈표 2-17〉 지역별 여성기업 산업 분포(2015-2016)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중양아시아·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아프리카
농업·광업	5.6	9.8	3.7	5.8	9.5	14.1
제조·운송업	6.5	9.3	10.3	9.8	8.7	11.9
도소매업	64.7	30.0	62.6	50.7	29.8	59.6
ICT	2.0	2.1	1.5	0.6	5.4	1.0
공공·의료·교육·사회서비스업	12.9	25.6	13.5	20.5	19.3	8.3
금융 등 전문서비스업	8.0	23.0	8.0	13.0	27.0	5.0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정보통신기술

〈그림 2-46〉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산업 분포 (201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2) 혁신 및 국제화 수준

GEM에서는 혁신을 다른 경쟁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경쟁자 수준, 경쟁력 있는 사업 제공 여부, 최신의 기술과 지식 사용 수준, 고객에 대한 기대, 새로움과 독특함에 대한 기업가들의 시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여성기업의 혁신 수준은,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수준 차이는 크지 않았고, 북아메리카 지역의 여성기업이 3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30.9%), 유럽(27.7%) 순으로 여성기업 혁신 비율이 높으며, 아시아태평양은 21.6%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칠레와 룩셈부르크가 50%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가 중 미국은 4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독일은 26.5%, 스웨덴은 26.3%이며, 이머징 국가 중 멕시코는 22.8%, 터키는 28.5%이다. 우리나라는 23.2%로 하위권에 속하고 남성기업 대비시 60% 수준에 불과하여, 여성기업의 혁신 수준이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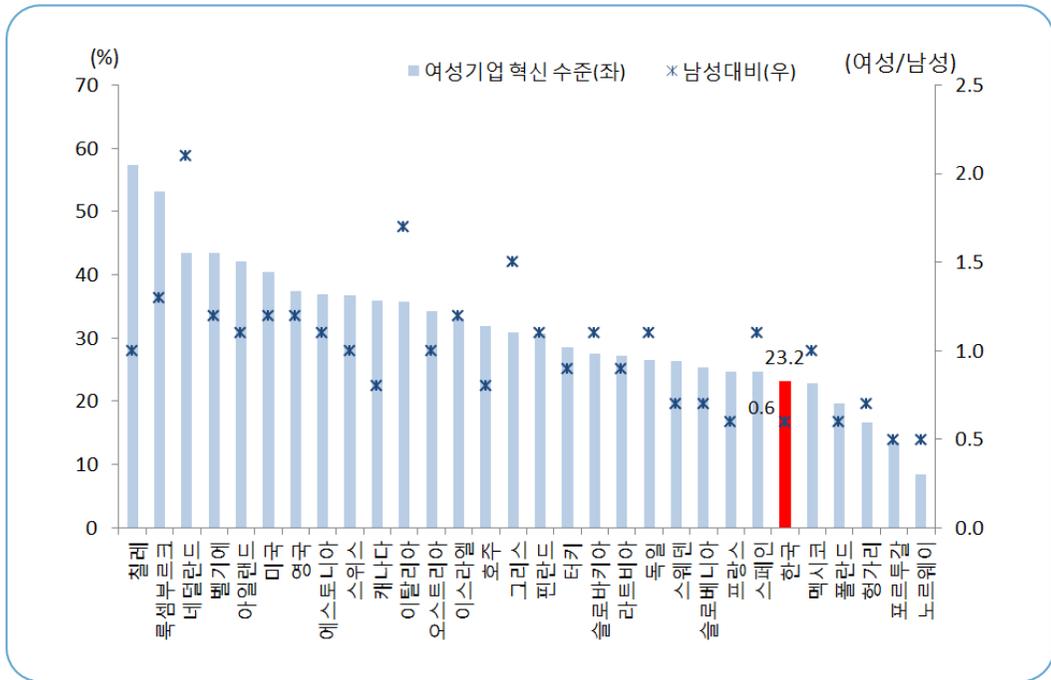
〈표 2-18〉 지역별 여성기업 혁신 수준(2015-2016)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아프리카
여성기업 혁신	21.6	27.7	23.8	30.9	38.2	17.6
남성 대비 (여성/남성)	0.9	1.0	0.9	1.6	1.0	1.0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18-64세 여성인구 대비 혁신단계 여성기업 비율

(그림 2-47)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혁신 수준(201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18-64세 여성인구 대비 혁신단계 여성기업 비율

여성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혁신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의 25% 이상이 수출로 이루어진 여성기업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이 9.0%, 유럽 17.6%, 남아메리카 11.3%, 북아메리카 20.1%, 사하라-아프리카가 6.1%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으며,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 지역이 28.7%로 비교적 높고 남성기업 대비로도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다.

OECD 회원국별로는 그리스와 캐나다의 여성기업 수출 비율이 각각 41.1%, 31.6%로 높으며, 그리스는 남성기업 대비 170%로 남성에 비해서도 여성기업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진국가 중 독일의 여성기업 수출 비율은 16.3%, 미국은 8.6%이고, 노르웨이가 2.8%로 가장 낮으며, 이머징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7.7%,

10.6%이다. 우리나라는 6.0%이며 남성기업 대비로도 30%에 불과하여 여성기업의 수출 수준이 상당히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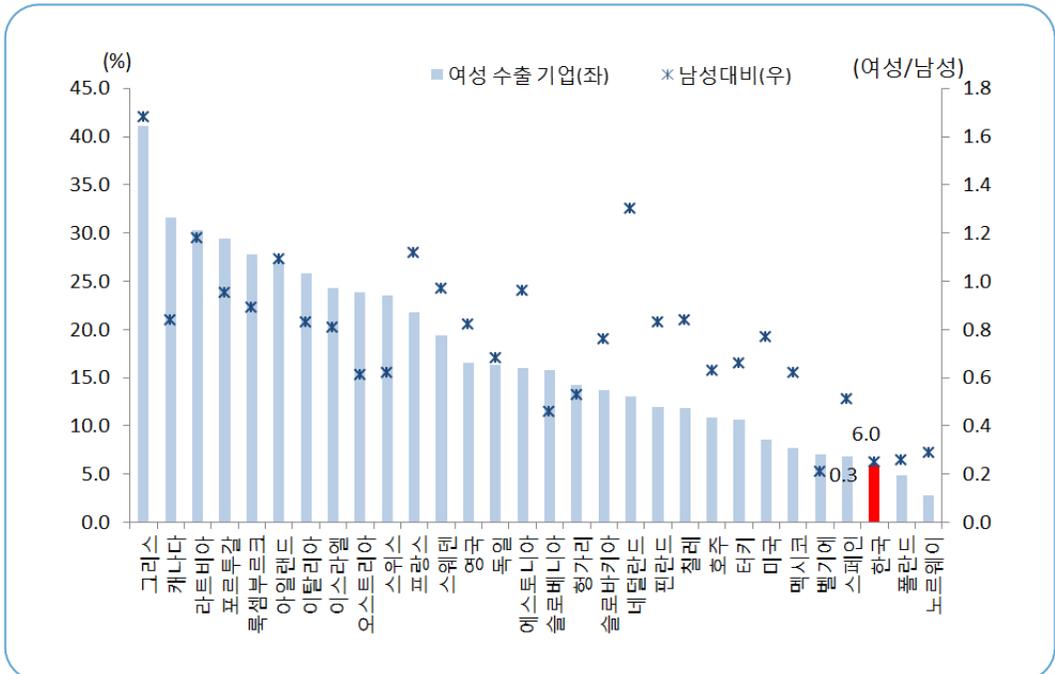
〈표 2-19〉 지역별 여성기업 수출(2015-2016)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중아시아·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아프리카
여성기업 수출	9.0	17.6	11.3	28.7	20.1	6.1
남성 대비 (여성/남성)	0.9	0.9	0.8	1.2	0.8	0.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수출액이 매출의 25% 이상인 여성기업

〈그림 2-48〉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수출(201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수출액이 매출의 25% 이상인 여성기업

3) 경영 환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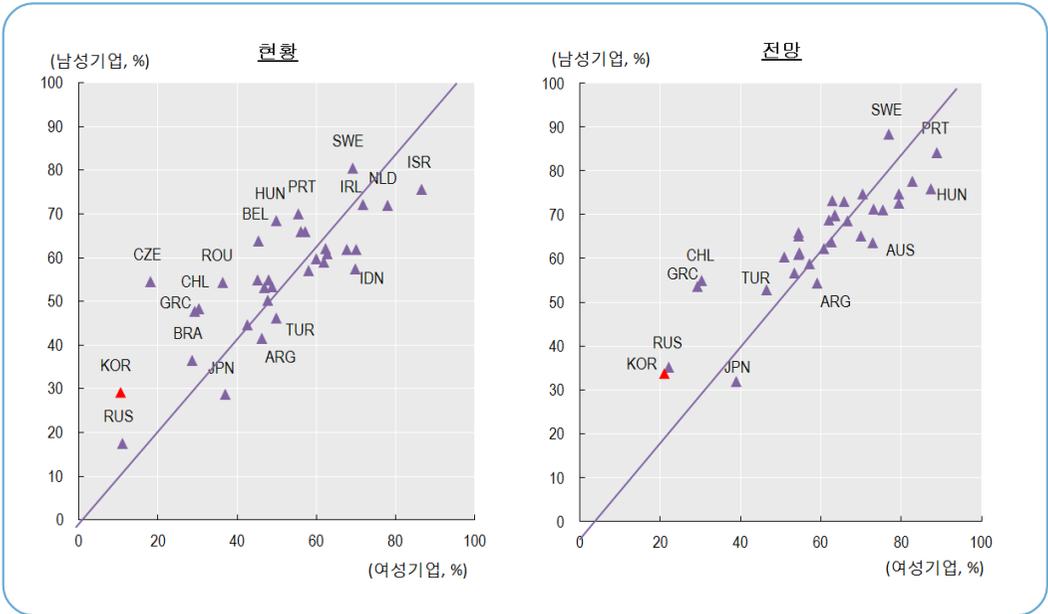
2016-2017년 기준 OECD에서 조사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⁴³⁾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 비해 향후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기업에 비해 남성기업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대체로 현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이 향후 전망도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며,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33개국 중 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여성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86.7%)과 네덜란드(78.0%), 아일랜드(71.8%), 미국(70.1%) 순이고, 독일은 57.1%로 13위, 일본(37.0%)은 26위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은 11.0%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낮으며, 남성기업의 현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도 29.0%로 여성에 비해서는 높으나 러시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의 경우 포르투갈(88.9%)과 헝가리(87.5%), 네덜란드(82.9%) 순으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으며, 미국은 73.2%로 8위, 독일은 62.2%로 18위이고,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57.3%(21위), 46.7%(28위)로 낮다. 우리나라는 21.1%로 역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으며, 남성기업의 긍정적 전망은 33.7%로 역시 여성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체 국가 중에서는 일본(31.9%)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43) OECD(2017),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자료에서는 여성(남성)기업을 여성(남성)이 지분을 65% 이상 소유하거나 최대경영자인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은 '긍정적', '중립', '부정적' 답변 중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2-49〉 국가별 기업 경영환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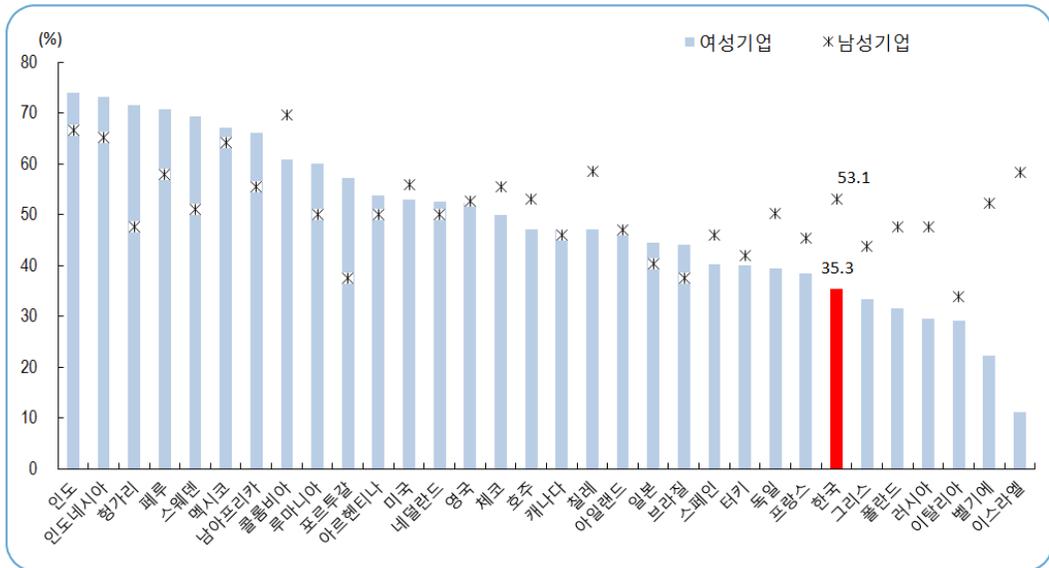
자료: OECD(2017),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주: 최대주주 또는 CEO의 성별에 따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며, 경영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비율

OECD의 향후 고용 증가 전망에 대한 조사에서도 여성기업에 비해 남성기업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 32개국 중, 경제성장률이 높은 인도(73.9%)와 인도네시아(73.0%), 헝가리(71.4%)의 여성기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미국은 52.9%, 일본은 44.4%, 독일은 39.3%이다.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35.3%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남성기업은 53.1%가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여성과 남성의 고용 전망 인식 격차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0〉 OECD 회원국의 향후 고용 증가 예상



자료: OECD(2017),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주: 6개월 이후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

GEM에서 조사한 기업의 향후 고용 기대에서도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36.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아메리카(29.6%), 유럽(28.3%), 아시아태평양(2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터키가 60.5%로 가장 높고, 미국은 37.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7.9%이고, 우리나라는 18.1% 수준이며, 남성기업 대비로도 40%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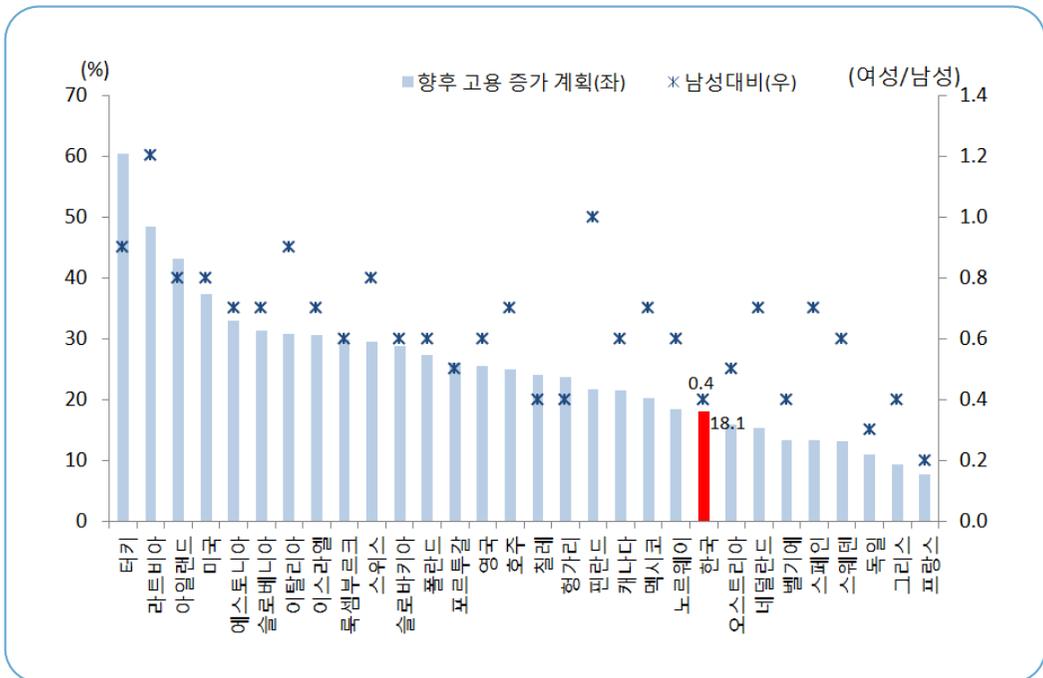
〈표 2-20〉 지역별 여성기업 향후 고용 기대(2015-2016)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아프리카
고용증가기대 여성기업	23.7	28.3	16.9	36.5	29.6	21.5
남성기업 대비 (여성/남성)	0.7	0.7	0.6	0.8	0.7	0.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향후 5년 간 6명 이상 신규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성기업 비율

〈그림 2-51〉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의 향후 고용 전망(201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향후 5년간 6명 이상 신규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성기업 비율

4) 여성의 기업 투자 성향

기업에 대한 투자성향은 여성기업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GEM은 선진국가일수록 공적자금의 이용이 어렵고,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지난 3년간 투자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사하라·아프리카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아메리카는 5.2%, 아시아·태평양은 4.9%이며, 유럽은 3.5%로 가장 낮다. 반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규모(중앙값)는 유럽이 가장 크며, 사하라·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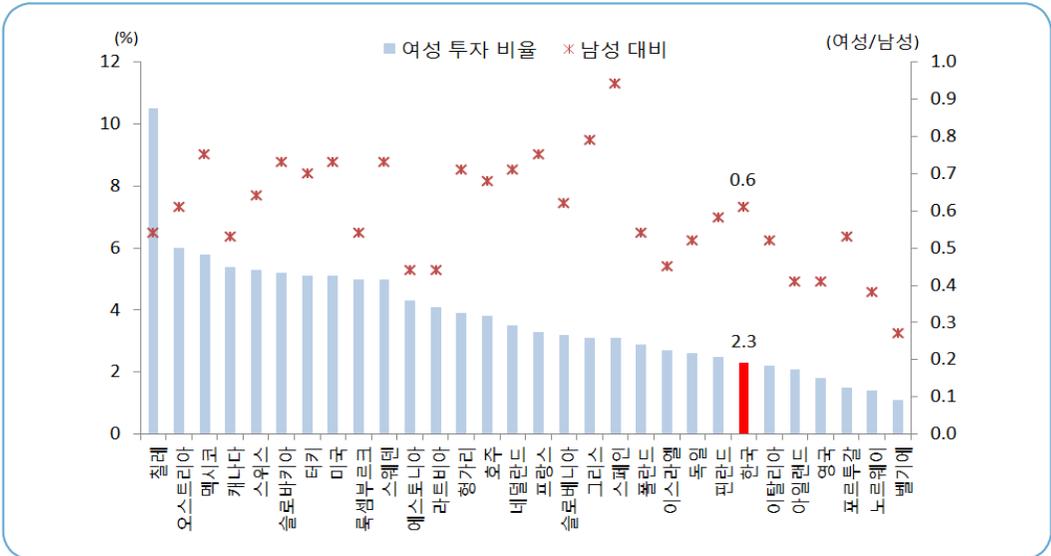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칠레의 여성들이 10.5%로 가장 투자경험이 많으며, 다음으로 오스트리아가 6.0%, 멕시코가 5.8%를 기록했다. 미국은 5.1%, 독일은 2.6%이고, 벨기에는 1.1%로 가장 낮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2.3%로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여성의 투자규모 중앙값은 이탈리아가 44,822달러로 가장 크며, 독일은 5,603달러, 미국은 4,000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투자규모 중앙값은 78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 지역별 여성 투자 비율 및 규모(2015-2016)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아프리카
여성 투자 비율	4.9	3.5	4.9	4.9	5.2	9.3
남성 대비 (여성/남성)	0.8	0.6	0.6	0.6	0.6	0.6
여성 투자 규모(USD)	4,017	6,675	1,501	5,779	3,157	230
남성 대비 (여성/남성)	1.0	0.9	0.8	1.0	0.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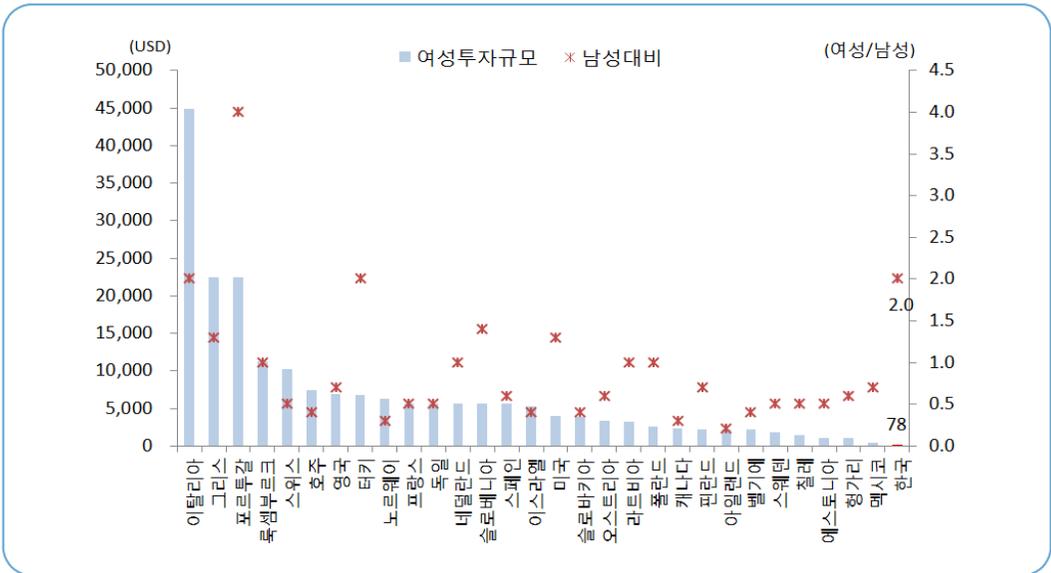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그림 2-52〉 OECD 회원국의 여성 투자 비율(201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18-64세 여성 중 기업에 투자 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

〈그림 2-53〉 OECD 회원국의 여성 투자 규모(2015-2016)



자료: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omen's Entrepreneurship 2016-2017 Report」
 주: 창업기업에 대한 여성 투자금액 중앙값

제3부 해외여성기업 지원 정책

- 제1장 |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
- 제2장 | EU의 여성기업 지원
- 제3장 | 영국의 여성기업 지원
- 제4장 | 독일의 여성기업 지원
- 제5장 | 스웨덴의 여성기업 지원
- 제6장 | 핀란드의 여성기업 지원
- 제7장 | 호주의 여성기업 지원
- 제8장 | 일본의 여성기업 지원
- 제9장 | 대만의 여성기업 지원
- 제10장 | 인도의 여성기업 지원
- 제11장 | 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

제1장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가. 정부 및 지방자치

1)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국(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⁴⁴⁾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국(OWBO)은 1979년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되어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여성 기업인들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국은 중소기업청의 지역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기업국의 프로그램에는 신용 및 자금조달, 공공조달계약을 포함한 판로 상의 자문과 경영 훈련 등이 있다. 그리고 2017년 110개의 지방의 여성기업센터와 온라인 여성기업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기술, 회계,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과 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신용, 자본, 시장진출에 관한 사업 자문 및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여성기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여성기업센터(Women's Business Center)⁴⁵⁾

중소기업청은 1988년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of 1988 (Public Law No. 100-533)]」에 의해 여성기업인이 겪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100개가 넘는 교육센터가

44) 2003년에 제정된 「여성 중소기업 프로그램 증진법(Women's Small Business Program Improvement Act)」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부기관으로서, 동법에서 OWBO의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5) 이 센터는 미국의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1988: WBOA)」 제2장 제201 조에서 명시된 비영리 민간조직임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여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성들이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여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성기업센터는 지역사회 기반의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로서 여성기업국(OWBO)에서 관리 및 감독하여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개인의 출자금(matching fund)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기업센터는 중소기업청 지역 사무소 및 기타 중소기업청 파트너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이 창업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요업무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기업 형성 지원이며, 농촌·교외·도시 등 다양한 경제지역에서 여성경영인들을 대상으로 SBA프로그램⁴⁶⁾과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여성자문·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는 개별 지역사회의 요구에 서비스를 맞추어 교육과 상담, 금융 지원 및 연방정부의 조달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재 미국 전역에 총110개의 여성기업센터가 여성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3) 국립 여성기업 위원회 (National Women's Business Council)⁴⁷⁾

국립 여성기업 위원회(NWBC)는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 의회, 미국 중소기업청에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소속 연방 자문위원회로 여성기업인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을 내는 정부의 유일한 기관이다. 국립 여성기업 위원회의 위원들은 저명한 여성기업인들 또는 여성기업 조직의 리더이며, 임기는 3년이고 인원은 15명⁴⁸⁾으로 구성된다. 연방정부 조달업무를 포함하여 각 정부 부처의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등을 검토하고,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한다. 더불어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 여성기업 위원회의 주요 활동범위는 첫째, 전국의 여성기업 현황 및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 둘째, 연방 주·지방정부의 여성기업지원, 셋째, 여성기업 관련 자료수집이다.

46) SBA 프로그램에는 신용 및 자금지원, 연방 정부조달 계약, 국제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음

47) WBOA 제4장 제401조부터 제407조까지에서 전국여성기업위원회의 설립, 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구성, 위원회의 이사와 직원, 위원회의 권한, 보고, 업무위임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48) 15명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장이 임명한 위원장(1명)
2. 여성기업인 또는 최고경영자, 야당 1/2, 여당 1/2 (8명)
3. 전국 여성기업 관련 협단체 대표 (6명)

〈표 3-1〉 미국 여성기업센터(WBC) 현황(2017년 기준)

연번	지역	개소	연번	지역	개소
1	Alabama	3	27	Nevada	1
2	Arizona	2	28	New Hampshire	1
3	Arkansas	1	29	New Jersey	2
4	California	12	30	New Mexico	6
5	Colorado	1	31	New York	8
6	Connecticut	3	32	North Carolina	4
7	Delaware	1	33	North Dakota	1
8	District of Columbia	1	34	Ohio	2
9	Florida	4	35	Oklahoma	2
10	Georgia	2	36	Oregon	1
11	Hawaii	1	37	Pennsylvania	3
12	Illinois	1	38	Puerto Rico	2
13	Indiana	2	39	Rhode Island	1
14	Iowa	1	40	South Carolina	1
15	Kansas	1	41	South Dakota	1
16	Kentucky	1	42	Tennessee	2
17	Louisiana	2	43	Texas	4
18	Maine	2	44	Utah	1
19	Maryland	2	45	Vermont	1
20	Massachusetts	2	46	Virginia	2
21	Michigan	3	47	Washington	3
22	Minnesota	2	48	West Virginia	1
23	Mississippi	1	49	Wisconsin	4
24	Missouri	2	50	Wyoming	1
25	Montana	1			
26	Nebraska	1	합계	110	

자료: 미국 중소기업청

나. 민간단체

여성기업 관련 민간단체는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신용 제공, 교육 훈련, 연구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여성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전국여성경영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 NAWBO)

1975년에 설립된 전국여성경영자협회(NAWBO)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1,100만명 이상의 여성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모든 산업에 걸쳐 모든 여성기업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전국 5,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NAWBO는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며, 경제, 정치, 사회,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자영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직은 글로벌 사회에서 여성기업인으로서 자부심 강조와 여성기업인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예리한 논평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여성기업인의 폭넓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며 리더 역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2) 여성기업센터연합(Association of Women's Business Center : AWBC)

여성기업센터연합은 1998년 설립된 비영리 (501(c)(3)) 기관으로서 교육, 훈련, 기술지원, 멘토링, 개발 및 자금조달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의 기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모든 주에서 14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100개가 넘는 여성기업센터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원하면서, 여성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여성기업 인증기관

미국 내 여성기업이 정부에서 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확인은 연방정부기관, 주정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전국단위의 확인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기관이나 중소기업청

의 승인을 받아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관은 4개 기관이 있다. 4개 기관은 1997년에 설립된 여성기업인 평의회(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 : WBENC), 엘파소 상공회의소(El Paso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 EPHCC), 여성기업인조합(National Women Business Owners Corporation : NWBOC), 미국여성 상공회의소(US Women's Chamber of Commerce : USWCC)이다.

4) 여성영향공공정책기구(Women Impacting Public Policy : WIPP)

WIPP는 2001년 6월에 설립된 여성기업 단체 및 여성기업인의 연합단체로서 미국 입법 과정 및 정부정책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470만 명 이상의 경제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건강보험 정책,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 세금 정책, 에너지, 통신 등의 넓은 범위에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검토하며 법안 발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의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가.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 지원 프로그램(Women-Owned Small Business Program, WOSP)

미국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8(m)조(15 USC § 637(m))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은 2011년 2월 4일부터 여성중소기업프로그램(Women-Owned Small Business Program, WOSP)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비율(5%)을 달성하고자 여성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추정가격 제한 조항⁴⁹⁾을 삭제하였다(2013. 5. 17).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기업(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women-owned small business, EDWOSB)⁵⁰⁾이 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 제한조치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①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이고 ② 여성기업 활동이 취약한 업계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조달계약에 있어 비중이 낮은 산업계는 중소기업청이 주기적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15 USC § 637(m)(4)) 2007년 4월 미국 중소기업청은 북미산업분류코드(NAICS)기준으로 83개 업계를 공식적으로 선정하였다⁵¹⁾. 이후 2014년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로 5년 주기로 여성기업 활동저조업계의 조사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 활동저조업계는 113개 업계이다.

49) 낙찰가격이 제조의 경우 5백만 달러 이하, 기타의 경우 3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제한 조항 삭제
50) 여성기업확인 인증을 받은 중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여성기업을 말한다. 13 CFR§127.203

① 개인의 순자산(자산-부채)이 \$750,000미만이어야 함

② 개인적인 수입을 고려할 때, 직전 3년간의 동안 연봉이 \$350,000를 미만이어야 함

51) 코프만-랜드 창업가정신 공공정책 연구소(Kauffman-RAND Institute for Entrepreneurship Public Policy, RAND)이 조사를 수행함

〈표 3-2〉 미국의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억\$)

구분	2015				2016			
	원청계약		하도급계약		원청계약		하도급계약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중소기업	23.00	25.75 (907)	34.03	31.30	23.00	24.34 (1,000)	33.70	32.20
여성기업	5.00	5.05 (178)	5.00	6.00	5.00	4.79 (197)	5.00	5.70

자료: 미국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Procurement Scorecard Overview for 2015 & 2016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우대 프로그램에 둘 이상의 여성중소기업이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성중소기업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성중소기업이 한 곳만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경제적으로 취약한((2)(A))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2)(E))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약 금액에 있어 제한을 두었는데, 제조업의 경우 총 금액이 \$6,500,000, 이외의 사업에서는 \$4,000,0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계약으로 한정해 두었다.⁵²⁾ 또한 입찰에 응하는 여성중소기업의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계가 여성중소기업(여성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극심히 저조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⁵³⁾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진출이 어렵고 활동이 미미한 업계에서 사업하는 여성중소기업에게 연방조달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52) 15 USC §637(m)(7)

53) 15 USC §637(m)(8)

나.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Pre-qualification Loan Program)은 여성기업인에게 특정한 지원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기업인이 은행에 가기 전에 25만 달러 이하에 대하여 사전에 보증을 제공하고, 용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용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이다. 운영방식은 주로 중개인을 통해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개인이 대출에 필요한 제반 양식에 관련한 조언 및 채권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대출양식이 모아지면 중소기업청으로 제출하고, 3일 내에 중소기업청은 대출보증을 진술하는 사전승인서(Pre-qualification Letter)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격은 여성, 재향군인 등이다. 대출을 위한 심사기준은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지원자의 경영능력, 신용 및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 소액금융지원(SBA Veterans Advantage Loans)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저소득층, 재향군인, 소수민족기업인 등) 및 여성기업인에게 제공되는 평균 1만 달러 이하(최대 3만 5천 달러)의 소액대출과 담보 없이 제공되는 신용대출 지원으로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원재료 또는 기계구매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 연방정부 납품 계약 지원

재향군인, 상이군인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소수민족 포함)와 여성기업에 대하여 연방기구는 연방정부와의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 참여에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이들이 하도급 계약자가 되었을 경우 원계약자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1994년에 제정된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에 의해 연방기구가 납품과 관련하여 여성소기업과 5%의 계약체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4)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16.

마. 여성기업인훈련 네트워크 프로그램(Women's Network for Entrepreneurial Training, WNET)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한 여성기업인과 경험이 적고 성공을 기대하는 여성창업가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년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기업훈련을 수행하여 새로운 사업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원조하고 사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성장관리, 네트워킹 방법 등이 포함된다.

바. 능력개발 프로그램(Demonstration Program)⁵⁵⁾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대학이나 비영리단체 등의 협력기관에서 장기연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⁵⁶⁾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47,000여 명이 넘는 여성이 교육을 받았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기대소득의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콜롬비아 지역, 28개의 주에 54개의 교육훈련센터가 운영 중이다. 모든 센터들은 잠재적 또는 재직 중인 여성기업인에게 금융, 관리, 마케팅 그리고 기술지원을 하며, 아시아계 미국인, 흑인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1988년 「여성기업소유법(WBOA)」에 의해 여성기업인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91년 법에 의해 재승인 되었다. 여성기업인 능력개발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들은 Grameen 은행을 모델로 하는 대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코칭과 금융/관리교육과 함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5)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demonstration-program.html>

56) <http://www.sbaonline.sba.gov/womeninbusiness/>

제2장 EU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가. 리더십 및 중소기업 위원회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⁵⁷⁾

리더십 및 중소기업 위원회는 중소기업지원법안(SBA)과 “기업가정신 2020 실천계획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을 통해 여성기업가 육성을 위한 유럽 여성기업을 지원한다. 위원회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여성 리더, 예비 창업자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관련 조직도 지원한다.

나. 유럽정보센터(European Info Centre)

기업 및 산업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유럽 정보 센터는 2006년도에 DEW-SET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가상 네트워크 및 자가 진단 도구를 설정하여 과학, 공학 및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관련 홈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사무총장 연구센터(Directorate-General Research and Innovation)

유럽위원회에서 DG 연구센터는 과학 및 기술 분야를 강화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는 과학 및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업 또는 관리자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57) http://ec.europa.eu/growth/index_en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가. 유럽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The European Network to Promote Women's Entrepreneurship : WES)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WES는 31개 유럽 국가의 회원으로 구성된 정책 네트워크로 여성기업가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각국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다. 한편 여성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고취는 2009년 ‘유럽 여성기업 대사단(European Network of Female Entrepreneurship Ambassadors)’를 창설하는 것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유럽 여성기업 대사단’은 잠재적 여성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롤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2011년에 ‘유럽 여성기업 멘토(European Network of Mentors for Women Entrepreneurs)’로 이어져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여성에게 자발적으로 조언을 제공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유럽의회에서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균형을 맞추도록 제안했는데, 이는 여성이 고위 관리직에 있는 것 자체도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ES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뿐만 아니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여성기업인이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활동 조사를 통해 선진여성기업 사례를 발굴 및 정책 개발을 하여 연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에게 배포한다.

나. 여성 비즈니스 엔젤(Women Business Angels : WBAs)⁵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WBAs는 유럽의 여성기업인들의 수를 높이고 여성기업인들이 자금과 경영관리능력을 신생여성기업에 투자하여 여성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에 신설되었다. 지원 자격은 28개의 EU의 회원국가의 여성기업인이

58) https://ec.europa.eu/growth/content/european-community-women-business-angels-women-entrepreneurs-0_en

며, 2017년 프로젝트를 위하여 책정된 총 예산은 약 2,200,000유로이고 최대 프로젝트 기간은 24개월로 하고 있다.

다. 유럽 여성기업 대사단

(European Network of Female Entrepreneurship Ambassadors)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여성기업 대사단은 2009년부터 기업 및 산업위원회 관할 하에 여성기업 대사단을 선출하여 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2개 유럽 국가 출신의 약 270명의 기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창업하려는 여성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650회 이상의 국가회의가 열렸으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비여성기업인은 61,000명이 이상이다. 여성기업 대사단은 250명 이상의 새로운 여성창업을 지원했으며 여성을 위한 22개의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지원 클럽을 만들었다.

라. 여성기업 온라인 플랫폼

(The European on-line Platform for women entrepreneurs WEgate)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안정기까지 여성의 기업 활동을 육성시키고자 모든 연령의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온라인 네트워크 허브(WEgate 플랫폼 : a one-stop shop for women's entrepreneurship)를 개발하였다. WEgate 플랫폼은 2016년 9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교육, 멘토링, 사례연구, 기업관련 뉴스, 자문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마. 유럽 여성기업 멘토

(The European Network of Mentors for Women Entrepreneurs)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2011년에 설립하여 17개 국가⁵⁹⁾에 속하는 멘

59) 알바니아, 벨기에, 키프로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

토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 네트워크 (Mentors Network)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초기사업 단계 (신생기업 및 소유 기업의 존재 후 2년에서 4년)에 기업의 창업, 관리 및 성장에 관한 컨설팅과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바. 북유럽 지역의 여성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

북유럽 지역의 여성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에서 여성 기업가정신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 직업인 ICT 부문 및 모든 분야에서 고학력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기업가정신을 촉진 시키고자 한다. 지역 파트너로 아이슬란드 혁신 센터, 노르웨이 SINTEF, 혁신 노르웨이 센터, 덴마크 네스트 지역의 개발 회사 및 덴마크 농업 비즈니스 파크가 있다.

사. 혁신적인 여성기업인 장려 프로그램(WomEn2FP6)⁶⁰⁾

혁신적인 여성기업인 장려 프로그램(WomEn2FP6)은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여성 기업을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뿐만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단체 및 여성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프로그램 통합을 목표로 하고, 800명 이상의 여성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환 지역 학습, 교육 및 여성기업인을 위한 세미나를 지원하며 여성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주제별로 나누어 다른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창업하는 여성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유럽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931,000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WomEn2FP6는 최소 450개 여성 기업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며 유럽의 혁신연구 영역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한다.

60) Danish Enterprise and Construction Authority(2011), "National and Cross-national Policies on Women's Entrepreneurship in the Baltic Sea Region - A Comparative Perspective"

아. INTERREG 프로젝트⁶¹⁾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역정책(DG Regional Policy)을 통해 여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 개발 기금의 공동 재정 프로젝트인 INTERREG는 국가 간 공동작업 및 파트너 기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INTERREG 프로젝트의 대표 실적은 다음과 같다.

INTERREG 프로젝트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여성기업 회의인 FEM이 INTERREG III B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FEM은 발트해 지역 여성기업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며 참가 국가의 모범 사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이다. FEM은 지원센터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교육 및 자문, 멘토링 프로그램, 신용 그룹의 네트워킹과 여성의 기업가 정신의 국제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국들은 각국의 여성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INTERREG IV 프로젝트 사업은 여성의 창업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 개발, 여성에 의한 중소기업을 이끄는 성장을 주 쟁점으로 삼았다. 활동은 여성 기업의 확장 및 개발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 당국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사례를 연구하였다. 유럽연합(EU)은 이 프로젝트에 362,495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노르웨이는 추가로 394,278 유로를 투자하였다.

61) Danish Enterprise and Construction Authority(2011), 전계서

제3장 영국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영국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지원 활동이 활성화되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졌다⁶²⁾. 과거 여성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⁶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2년 이후에는 양성평등청(Government Equalities Office)⁶⁴⁾ 산하의 여성기업위원회(WBC, Women's Business Council)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청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별로 관련 부처 간 협조 관계 하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중앙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은 여성기업 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등 각 지원 사업에 있어 여성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자치구에서도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코틀랜드는 여성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가. 여성기업위원회(Women's Business Council)

2012년 국무총리에 의해 출범된 정부기관으로 양성평등청(Government Equalities Office) 산하에 있으며 영국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및 여성의 미래 경제 성장 기여도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WBC는 영국 여성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 관련 정책, 제도 등을 제안하고 정부의 여성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조직은 Starting Out Action

62) 양인숙·강민정(201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정섭(2007) 재인용

63)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현재(2017)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관련 정책은 양성평등청(Government Equalities Office)에서 담당

64) 여성 및 양성평등부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권한 하에 있음

Group, Getting On Action Group, Staying On Action Group, Men as Change Agents Action Group, Enterprise Action Group의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Enterprise Action Group에서 영국 내 여성기업 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WBC에서는 정부 보증 창업 자금 지원프로그램, 영국(잉글랜드)내 39개의 여성 창업 과 기업 성장 지원 허브를 구축하고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하는 Business Support Helpline⁶⁵⁾ 구축 및 여성기업의 기술혁신 펀딩⁶⁶⁾ 등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Deloitte와의 협조를 통해 여성기업가(Women Entrepreneurs) 툴킷을 만들어 여성 기업의 증가 및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더하여, 여성기업의 양적 수 증가뿐만 아니라 여성 취약 분야로 꼽히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영국 혁신청(Innovate UK, UK's innovation agency)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의 지원 하에 이노베이트 펀드(Innovate Fund)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게 정부보증 대출 및 펀딩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 산업은 총 5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Emerging and Enabling Technologies, Health and Life Sciences, Infrastructure Systems, Manufacturing and Materials, Open으로 구분된다. 또한 2007년 이후 8,000여개의 기업에 18억 파운드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여성기업위원회(WBC)는 이러한 혁신기금을 여성기업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여성기업의 이용률은 14% 수준이다.

또한, 이노베이트 영국(Innovate UK)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여성 캠페인과 혁신 여성에게 지원금을 수여하는 혁신 여성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65) GREAT Business website를 통해 제공되며, 2016년 기준 여성 이용고객 비율이 45% 수준

66) 영국의 innovate funding 중 여성기업 이용률은 14% 수준임

다. 프로위스(Prowess)⁶⁷⁾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되었던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Women's Enterprise가 그 전신이며,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여성기업인을 위한 전국조직이다. 여성 친화적인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기업문화 형성 등을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서비스 단체의 능력 향상 지원, 기업지원,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로비 및 정책제안 활동 등을 수행하고, 매년 약 10만 명의 여성을 지원하여 1,000여 개의 창업을 유도하였다. 현재는 민간회사인 Greenwell Consulting 소유의 사회적 기업으로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며, 여성기업의 창업 지원, 자문 및 교육 정보 공유,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라. WIN 여성네트워크(Women into Network, WIN)⁶⁸⁾

WIN은 잉글랜드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장애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민간 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워크숍, 전시회, 훈련, 상담과 모니터링 등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회원제로 운영된다.

마. 스코틀랜드여성기업단체(Women's Enterprise Scotland, WES)⁶⁹⁾

스코틀랜드의 비영리단체로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여성 창업지원 및 관련 정책 발의, 캠페인 등의 역할을 한다. WES는 미디어 및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기업가 증진을 위해 힘쓰며, 여성기업의 주력 분야 확대 및 전 산업에서의 여성기업 주도 성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대사 및 롤모델 선정, 마케팅 및 금융지원, 여성특화 지원 등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WEIG(Women in Enterprise Implementation Group)⁷⁰⁾가 수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67) <http://www.prowess.org.uk>

68) <http://www.womenintothetnetwork.co.uk>

69) <https://www.wescotland.co.uk>

바. 여성기업정책그룹(Cross-Party Group on Women in Enterprise)⁷¹⁾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 내 조직으로 스코틀랜드 지역 경제에의 여성 기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프레임워크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발의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기업 활동 제고를 위한 주요 실행계획에는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금융지원, 인식개선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대학지원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사. 영국 과학기술여성 인력센터(UK Resource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UKRC)

영국 과학기술여성 인력센터는 2004년 정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⁷²⁾)의 여성과학기술인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UKRC에서는 양질의 과학기술분야 일자리를 찾고,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관리 및 경력단절 후 복귀하려는 과학기술분야 전문 여성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공개강좌, 멘토링과 같은 캠페인을 운영하며, 복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04년 이후로 2,000명이 넘는 여성인력을 지원했으며, 지원인력 중 30% 이상이 교육을 수료하거나 복직하는 성과를 내었다. 그 외에도 네트워킹, 미디어 등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70) Business Gateway, Highlands and Islands Enterprise, Scottish Chambers of Commerce, RBS, Scottish Enterprise, Investing Women, Association of Scottish Businesswomen, Enterprise Research Centre, Community Development Scotland and Women's Enterprise Scotland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71) OECD(2016), 「Supporting women entrepreneurs in germany」

72) 현재는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으로 대체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가. 정부보증 창업자금 지원⁷³⁾

정부에서 제공하는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⁷⁴⁾의 자회사인 Start up loans에서 수행하고 있다. 정부보증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하나의 사업 종목에 대해 500파운드에서 2,500파운드 한도로, 개인이 최대 100,000파운드 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은 6%⁷⁵⁾의 고정금리로 제공하며 상환 기간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더하여 자금관리 및 플랜 컨설팅, 창업지원, 사업 계획 등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금 지원은 영국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에 제공된 창업자금 중 여성기업 비중이 39%⁷⁶⁾ 수준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업지원서비스(Business Support Helpline) 운영⁷⁷⁾

잉글랜드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⁷⁸⁾ 영국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에서부터 성장 및 확대의 전 단계에 걸쳐 펀딩, 고용,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창업(Start)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설립, 자금조달, 고용, 웹사이트 제작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 단계(Grow)에서는 기업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 수립, 직원 관리, 마케팅, 수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 확대 단계에서는 수출 제고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전산화, 자금조달, 혁신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3) <https://www.startuploans.co.uk>

74) 영국 B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산하 국책은행

75) 2017년 12월 기준

76) WBC 2017년 사업보고서(Women's Business Council Progress Report 2017)

77) <http://www.greatbusiness.gov.uk/> 영국 중앙정부(Her Majesty's Government)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78)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각 지방 정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

다. 기업성장 허브 구축(LEP Growth hubs)

지역 기업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 LEP)에서 운영하며, 지방 공공기관 및 민간 섹터의 연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중앙정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지원 하에 개인의 창업 또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2016년 기준 잉글랜드 내 39개의 허브가 구축되었으며, 470만 파운드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WBC는 기업성장허브에 대한 여성 중소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혁신 여성상 선정(women in innovation campaign and prize)

Innovate UK의 프로그램으로 젊은 혁신 여성기업들의 진입장벽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혁신적인 여성기업인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수여하고 있다. Innovate UK는 혁신 여성기업인 12명을 선정하여 총 20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여성리더나 성공을 거둔 기업가,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기업가, 다른 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여성기업가, 미래 비전이 뚜렷한 여성기업가, 상금 사용계획을 수립한 여성기업가, 다른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기업가 등, 국가의 혁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성기업가 모델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마. 여성 전문 금융 제공

스코틀랜드 로얄 बैं크(Royal Bank of Scotland, RBS)⁷⁹⁾에서는 1964년 영국 최초로 여성 고객들을 위해서 여성지점을 설치하여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여성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전에는 회사 설립 형태, 자금조달, 사무 공간 마련, 세금 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수출입 업무, e-Business, 산업 및 기업 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79) <https://www.business.rbs.co.uk/business/womeninbusiness.html>

RBS는 영국 전역에 400여명 이상의 여성기업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8,000여개의 스코틀랜드 여성기업을 지원하였다⁸⁰⁾.

바.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캠페인

영국 내 여성 및 여학생들에게 컨설팅, 교육·훈련, 어워즈, 컨퍼런스, 취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STEM)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롤모델과 여성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롤모델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훈련 및 연구 중인 학생들 중에서 월별 WISE 롤모델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며, 여성복지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2년 간 재교육 실시 및 관련 기관과 연결하여 복직에 도움을 제공하는 멘토링 훈련제도이다. 영국 내에서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여성 공학자와 기술자들은 진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엑손모빌과 허더스필드 대학의 지원 아래, 영국의 여성 공학자와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수요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채용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80) <https://www.rbs.com/rbs/news/2016/04/supporting-enterprising-women.html>

제4장 독일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독일은 국가경제활동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기술력을 이어가는 가족 중심의 기업 문화와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기업의 경우 1990년대부터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2004년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산하 기관인 연방여성창업청(bga) 설립 후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이 중앙에서 관리되었다. 각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금융, 교육, 자문 등의 여성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연방여성창업청

(National Agency for Women Start-ups Activities and Services, bga)⁸¹⁾

연방여성창업청(National Agency for Women Start-ups Activities and Services, bga)은 2004년 설립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Energy, BMWi) 산하 기관으로 산업 및 시장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키우고 여성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 전역에 걸쳐 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여성의 창업 뿐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bga는 교육연구부, 가족부, 경제기술부 및 유럽 사회기금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창업 정보 제공, 자문서비스, 네트워크 제공, 프로젝트 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독일 전역에 16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사무소는 주정부 정책과

81) <https://www.existenzgruenderinnen.de/EN/Home/home.html>

지역 여성 창업활동의 연결 및 지역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9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유럽 내 최우수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⁸²⁾.

나. 연방가족노인여성아동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BMFSFJ)⁸³⁾

연방가족노인여성아동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BMFSFJ)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 균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연방 정부부처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여성문제는 양성평등정책으로(Equality Policy)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내 여성의 위치 상승 및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200개 기업 내 5.4% 수준에 불과한 여성 이사회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기업의 혁신 및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공조 하에 여성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독일의 「양성평등법(The German Act on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Leadership Position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에 근거하여 기업 내 여성의 포지션 변화를 관리하고 있다.

다. 정보과학기술지원센터(Kompetenzzentrum, Competence center)⁸⁴⁾

정보과학기술지원센터(Kompetenzzentrum, Competence center)는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 기술전문 분야에서 여성기업이 취약한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캠페인 개발 및 관리, 연구 및 자문, 컨설팅 및 벤치마킹,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과학기술지원센터는 연방고용청(German Federal Employment Agency), 다국적 기업인 Cisco Systems, 독일여성대학연합(German Federation of University Women), 독일 여성엔지니어협회(German Association of Women Engineers)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2) OECD(2012), 「Women in Business」

83) www.bmfsfj.de/BMFSFJ/gleichstellung.html

84) www.kompetenzz.de

라. 독일여성기업인협회(German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85)

독일여성기업인협회(German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는 여성자영업자 및 기업인 단체로 1954년에 설립되었으며 제조, 무역, 운송,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600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⁸⁶⁾ 독일 내 15개 주에 17개 지역 그룹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본사는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DIHK(Association of German Chambers of Industry and Commerce), BDI(the 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A(the Confederation of German Employers' Associations), BMFSFJ(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및 BMAS(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등과 협조 관계를 맺으며 여성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정보, 자문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여성기업인들의 산업 주도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세미나, 회의 및 워크숍 등의 활동과 회원사를 위한 인터넷 포럼 개최,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성공 전략 및 적합한 산업 선택을 위한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여성기업인 협회는, 기업 대표로서의 여성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책, 미디어, 공공부문에서 이익활동을 하고, 무역협회 등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내부적으로 VIT(VdU international Team)를 조직하여, 여성기업의 해외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업 내 여성 경영진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원자를 대상으로 훈련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마. 사회경영여성협회(Social Business Women Association, SBW)⁸⁷⁾

사회경영여성협회(Social Business Women Association, SBW)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여성들의 기업 활동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여성들의 창업 또는 경력개발,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초기 3년 간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4년 이후에는 독일KfW개발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85) Verband deutscher Unternehmerinnen e.V, VdU

86) 2017년 기준

87) <http://www.social-business-women.com/>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가. 독일KfW개발은행의 금융지원(KfW development bank)

KfW(Kreditanstalt für den Wiederaufbau) 개발 은행은 독일 정부 소유 은행으로 연방 정부 및 주정부 보증의 저리 대출상품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도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KfW는 독일연방경제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를 대신하여 여성 및 여성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내 뿐만 아니라 Women's World Banking⁸⁸⁾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외에 있는 여성소기업에게도 소액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여성 창업 자문서비스

연방여성창업청(bga)에서는 자문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성기업에게 창업 및 확장, 성공 전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창업 관련 999명의 전문가와 445개의 전문 자문기관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내 원하는 지역에서 해당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들은 여성 창업자들에게 특별한 지원프로그램을 bga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Hotline' 서비스에서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공에 대해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창업 네트워크 운영

연방여성창업청에서는 323개의 네트워크 및 창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약 성사, 거래 경험, 관련 정보나 중요한 이슈 등에 대해 전문가

88) 2014년까지 6백만 USD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음

들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 파트너나 협업 등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네트워크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여성기업가들에게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라. 여성 사업 전환 지원

연방여성창업청의 사업전환 지원 부서에서는 여성기업 관련 기본 정보 및 여성기업의 성공과 관련된 최근 이슈 또는 최신 연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관련 문제들의 중앙 플랫폼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여성 근로자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 Supporting Women Start-ups – Good Practice in Europe 프로젝트

연방여성창업청에서 진행하며 유럽의 기술이전이나 좋은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바. 여성기업 롤모델 프로그램(FRAUEN unternehmen)⁸⁹⁾

여성들의 창업 촉진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연방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에 의해 출시된 플랫폼으로, 연방여성창업청의 지원 하에 연구기관인 RKW 전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FRAUEN unternehmen (Women company)'는 여성자영업자의 성공을 독려하고, 젊은 여성들의 사업가로서의 진출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기업가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독일 각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기업인 36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그들의 기업가로서의 경험담을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FRAUEN unternehmen (Women company)' 는 2014년 10월 공식적으로 출시, 2016년

89) Women company, http://www.existenzgruenderinnen.de/DE/Vernetzung/Frauen-unternehmen/frauen-unternehmen_node.html

10월에는 확장 운영되었으며, 학교 및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거나 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연방가족부와 협조 하에 여성들의 자영업 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 대한 자금지원 방안⁹⁰⁾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사. 케이트 알만의 멘토링 프로그램⁹¹⁾

2001년에 창설된 민간재단인 케이트 알만(Die Kie Ahlmann Stiftung)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청년 여성창업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인 초기 여성기업가에게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를 제공한다. 여러 사회단체의 지원과 정부의 보조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인 TWIN-Two Woman Win은 처음 창업하려는 젊은 여성기업인과 성공한 여성기업인이 한 팀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공한 여성경제인이 차세대 여성기업가를 도와 기업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통해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90) 이슈페이퍼 “Founding Women: Strengthening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Germany” 작성

91) www.kaete-ahlmann-stiftung.de

제5장 스웨덴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스웨덴은 경제 부처에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여성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에 대한 국가적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경제지역성장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4년 제안된 "Districts and Regions in Development⁹²⁾"에서 여성에 대한 소액자금대출, 지역여성지원센터 설립 등의 지원정책이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과거 낙후된 시스템으로는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평가 후에는, 여성기업을 일반기업과는 다른 기업으로 정의하여 여성기업 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스웨덴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여성기업 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초기 스웨덴 경제지역성장청 산하의 국가센터(National Center, NRC) 및 지역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NRC는 여성기업 지원의 중앙관리 역할을 하였으나, 1999년 "The Swedish National Association of Resource Centers for Women(Winnet)"에 통합된 후 Winnet에 의해 네트워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지역성장청을 중심으로 국세청, 기업등록청, 고용청, 세관, 사회보험청, ALMI 등 관계 기관들과의 협조하에 지원을 하고 있다.⁹³⁾

92) Proposition 1993/94:140

93) Ahl & Nelson, Welfare Systems and Policies for Women's Entrepreneurship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가. 경제지역성장청(The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Tillväxtverket)

경제지역성장청(The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Tillväxtverket)은 기업부(Ministry of Enterprise) 산하 기관으로 “NUTEK”에서 2009년 “Tillväxtverke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스웨덴 경제지역성장청은 기업활동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향후 기업활동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⁹⁴⁾을 수립하였다.

나. Winnet 여성자원센터(Swedish National Federation of Resource Centres for Women)⁹⁵⁾

Winnet은 경제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의 관할 하에 정부의 공적자금과 스웨덴 내 각 지역센터의 금융 지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스웨덴 내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종합 관리하던 정부산하 기관 NRC(National Resource Centre for Women)와 기존 경제지역성장청(NUTEK)의 여성 지원 관련 조직이 통합되어 1999년 설립되었다. Winnet은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경쟁력 강화 및 양성 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각 지역 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공문을 세우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기업가정신 및 잠재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Winnet은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의 기업 활동에 필요한 교육, 고용,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94)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Promotion on Equal Terms 2015 - 2020

95) <http://winnet.se/web/page.aspx?refid=37>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가. 여성기업가정신 프로그램(Women's Entrepreneurship Programme)⁹⁶⁾

여성기업가정신 프로그램(Women's Entrepreneurship Programme)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에 의해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스웨덴 내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 중앙 및 지역 전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8년 간 총 8억 SEK가 투입되었다. 프로그램은 ① 여성기업의 창업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툴 제공, ②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로서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제공, ③ 여성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롤모델 프로그램 제공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사업 및 혁신개발 프로그램, 대학 내 기업가정신 제고 프로그램, 여성기업가 경연 프로그램,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대사 프로그램, 창업의 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으며, 그 밖에 자료 및 통계 구축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1) 사업 및 혁신개발 프로그램

스웨덴 전역 21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업 아이디어 및 모델 개발, 수익성 제고, 사업네트워크 구축 등 여성들의 창업과 사업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4,500만 크로네(SEK)가 투입되었고, 27,000명의 여성기업가들이 700여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여성기업이 친환경 산업을 주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대학 내 여성 기업가정신 제고

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기회를 제공하고, 자문 및 코칭을 통해 여성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1,000명이상의 여학생들이 참여

96) Tillväxtverket(2012), 「Promoting Woman's Entrepreneurship」

하였고, 540개의 회사를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여성기업가 경연 프로그램

2007년에서 2014까지 매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여성기업가들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내어 롤모델로 삼을 만한 여성기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4) 여성기업가 대사(ambassador) 프로그램

여성기업가 대사 프로그램은 여성기업인들이 기업가를 꿈꾸는 젊은 여성들에게 경험담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사로 선정된 여성기업인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된다. 2008년 이후 스웨덴 내에서 약 88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이 대사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5) 창업의 날(Start-Up Days)

스웨덴 내 각 부처에서 창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날로, 경제지역성장청은 사업 컨셉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기업등록청은 기업 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국세청은 회계 및 세금 관련 이슈들을 제공한다.

6) 자료·통계 구축 및 연구

경제지역성장청은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또한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료 및 통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 여성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으로 스웨덴 내 여성기업 비율이 25%까지 상승하였고, 연간 창업 중 여성 비율은 3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업 내 여성의 영향력도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8년에는 그동안 구축된 통계데이터들을 바탕으로 VINNOVA(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에 의해 Research on women's entrepreneurship

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사업은 여성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여성기업의 증가와 발전을 위한 정책, 교육, 복지, 공공부문, 지원 실행 방안, 벤처캐피탈, 리스크관리, 유럽 기금과 지역 파트너십, 노동시장, 가족경영 등 10여개의 주제로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나. 혁신금융 지원⁹⁷⁾

ALMI는 정부출연 기관으로 1994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보증 대출, 벤처캐피탈을 다루며, 자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여성기업가정신 제고 프로그램 및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도 ALMI를 통해 이루어졌다. ALMI는 이노베이션 파이낸싱(innovation financing)을 제공하고 기업인수를 원하는 여성기업의 소유권 이전 지원하며 대학에서의 여성 기업가 활동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정부 프로그램에 힘입어 ALMI를 통한 자금지원의 43%가 여성기업에게 이루어지는 등 여성기업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다⁹⁸⁾.

다.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She Entrepreneurs Programme)⁹⁹⁾

정부기관인 Swedish Institute(SI)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MENA 지역과 스웨덴의 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사업경험 및 협력학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가로서의 전략 및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수립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식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여성기업가 간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97) <https://www.almi.se/English/>

98) Ahl & Nelson, Welfare Systems and Policies for Women's Entrepreneurship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99) <https://si.se/en/apply/leadership-programmes/she-entrepreneurs/>

제6장 핀란드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핀란드는 양성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1985년 여성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여성기업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핀란드의 여성기업 촉진 활동은 경제노동부의 주도 하에 민간과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기업 비중 확대 및 여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자문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 훈련 및 개발서비스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00)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핀란드는 현재 여성의 기업활동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최근에는 민간 중심으로 여성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여성기업의 국제화 지원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

가. 핀란드 경제고용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경제고용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는 핀란드의 정부기관으로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주도하였으며, 2004년-2005년, 2008년~ 2009년까지 별도의 워킹 그룹을 설치하여 여성기업가정신 촉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정책 및 전략 수립 등 여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여성기업청을 통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수행하였다.¹⁰¹⁾

100)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The promotion of women entrepreneurship in finland, 2010

101)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The Promotion of Women Entrepreneurship in finland, 2010

나. 여성기업청(Women's Enterprise Agency)¹⁰²⁾

여성기업청(Women's Enterprise Agency)은 여성기업가 정신 제고 및 여성기업가 지원 및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1996년도에 설립된 민관협력 기관으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문, 교육 및 훈련, 정보 제공,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핀란드 경제노동부, 유럽사회기금, 교육문화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인 InnoLadyCamp와 플랫폼 Innolady Cloud을 운영하였다. 또한, 여성기업센터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소액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금융지원 예산은 연간 40만 유로 수준이고, 이 중 절반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으로부터 지원받았다.¹⁰³⁾ 여성기업청의 여성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뛰어난 지원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핀란드 여성 기업가정신 센터(Naisyrittäjyyskeskus, The Finnish Women's Entrepreneurship Center)로 변경되었다¹⁰⁴⁾.

다. ELY 센터(The Centres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ELY Centres)¹⁰⁵⁾

ELY 센터(The Centres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ELY Centres)는 중앙정부의 정책 수행기관으로, 2001년부터 여성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여성 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창업 또는 사업 확장, 네트워크 활동, 여성기업가 정신 제고 및 새로운 경영기법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다. 여성기업청에서 고안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멘토뱅크(Mentor Bank)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제공하였다.

102) <http://naisyrittajyyskeskus.fi/>

103) OECD, The missing entrepreneurs 2014

104) <https://fi.wikipedia.org/wiki/Naisyritt%C3%A4jyyskeskus>

105) <https://www.ely-keskus.fi/web/ely-en>,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The promotion of women entrepreneurship in finland, 2010

라. 여성기업인중앙협회

(The Central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in Finland)¹⁰⁶⁾

핀란드 여성기업인중앙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in Finland)¹⁰⁷⁾는 여성 기업인들의 성공 및 사회적 위치 제고를 목적으로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전역에 걸친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이익단체이다. 2017년 현재 70여 개 지역협회와 6,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및 원활한 여성기업 활동을 위해 핀란드 및 유럽연합 지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전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인들의 창업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뛰어난 여성기업가들을 선정하여, 올해의 여성기업가 상, 사업 초기 단계의 여성기업가에게 주어지는 Golden Oras상 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여성기업가 매거진을 발행하여, 여성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디어 활동 및 여성기업인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마. 지역여성자문기관(Rural Women's Advisory Organization)¹⁰⁸⁾

지역여성자문기관(Rural women's advisory organisation)은 지역 여성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각 지방의 1,300여개 하위 협회와 5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핀란드 내 가장 큰 조직 중 하나이다. 지역여성자문기관은 농업 개발 및 농촌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70여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전문서비스,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자문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케이터링 서비스, 지역 여행 및 식품 생산 분야의 여성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Koti ja maaseutu' 매거진도 연 10회 발행하여, 지역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여성자문기관은 중앙의 1개 센터(Rural Women's Advisory Centre)와 지역 1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센터는 ProAgria Centres에서 통합관리된다.

106) <http://www.yrittajanaiset.fi/tietoa-meista/>

107) www.yrittajanaiset.fi/index.php?k=3979

108) www.maajakotitalousnaiset.fi/english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가. 여성 비즈니스 스쿨(Ladies' Business School)

여성 비즈니스 스쿨(Ladies' Business School)은 지역 고용·경제개발 센터(Region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centres, T&E centres)에 의해 1987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경영 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 여성들의 경영 능력을 개발하여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및 멘토링, 그룹 모니터링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소액신용프로그램(Mini Credit Program)

소액신용프로그램(Mini Credit Program)은 정부산하 금융회사인 Finnvera Plc.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대출 프로그램으로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중에서 여성들의 소규모 창업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3,000에서 35,000유로 한도로, 전체 창업 비용의 75%까지 제공한다.

다. 고용, 기업가정신, 일·가정 양립 정책 프로그램¹⁰⁹⁾

경제고용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2008년부터 2009년 중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여성의 창업 환경 분석,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 여성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금융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여성기업가정신을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전략과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자문 및 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자원의 확보, 국가차원에서의 자영업자 지원, 기업가 훈련 및 교육 강화, 여성기업인들의 복지 향상, 공적자금의 투자범위 확대, 계속사업 지원

109)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The promotion of women entrepreneurship in finland, 2010

및 가정생활양립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여성기업가 정신에 대한 통계구축과 연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라. 국제 여성 경영 포럼(International Forum on Women in Business)¹¹⁰⁾

2016년 핀란드 외교부(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와 국제무역센터(ITC)가 함께 주최하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된 국제 포럼으로 정책입안자, 기업 커뮤니티, 여성기업 관련 조직 대표 등이 모여 여성무역 지원프로그램인 ‘She Trades¹¹¹⁾’와 여성기업의 무역 확대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 FCC 여성리더프로그램 (Women leaders program in FCC)¹¹²⁾

핀란드 상공회의소(Finland Chamber of Commerce, FCC)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 내 여성 리더 증가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여성리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 내 여성 리더를 증가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여성리더프로그램에는 여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top-level mentoring programme) 및 스터디 활동, 연구 및 홍보 활동, 기업과의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간 보고서¹¹³⁾를 통해 기업의 여성리더 관련 통계 자료 및 성과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110) http://www.intracen.org/itc/women-and-trade/International_Forum_on_Women_in_Business

111) 2015년 12월 시행된 ITC의 여성기업 무역지원 프로그램

112) <https://naisjohtajat.fi/>

113) Finland Chamber of Commerce Women Executives Report

제7장 호주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호주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별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은 주로 정부 기관인 여성청(The Office for Women : OfW)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각 경제부처별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 단위에서도 여성기업 지원 및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 지원보다는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가. 여성청(The Office for Women : OfW)¹¹⁴⁾

여성청(The Office for Women : OfW)은 총리 및 내각(Prime Minister and Cabinet) 소속 기관으로 호주의 전체 정부기관에 걸쳐 양성평등 및 여성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기업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며, 여성과 아동들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성청의 주요 업무로는 여성부 장관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여성의 리더십 및 개발 전략과 지원금 프로그램(WLDS)의 기금 관리 및 금융지원, 양성평등 및 여성 관련 국제 포럼 개최, 민간 및 공공섹터의 여성 리더 확대, 여성의 경제성 확보, 여성 안전 보장 등이 있다. 더하여 여성기업

114) www.dpmc.gov.au/office-women

현황 등의 통계 및 정책자료, 민간 여성단체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호주무역투자위원회(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¹¹⁵⁾

호주무역투자위원회(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는 호주정부기관(Australian Government)으로 호주의 기업 및 교육기관, 관광 부문을 지원한다. 특히,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수출지원(Women in Export) 서비스¹¹⁶⁾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수출지원 서비스에는 여성들의 원활한 해외 기업활동을 위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해외 영업을 위한 자원 및 자문 제공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으며, CEW 등 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출 장학금과 혁신여성기업 선정 및 수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크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다. 호주여성상공회의소(Australian Wome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WCCI)¹¹⁷⁾

호주여성상공회의소(Australian Wome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WCCI)는 2011년에 출범한 호주 유일의 여성 상공회의소이자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회원제로 운영되었으며, 2015년까지 여성기업의 권익 제고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양성평등을 위한 목적으로 여성자영업자들의 무역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였고,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발의 등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회원들에게 시장 및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용 워크샵 제공, 판로개척을 위한 포럼 개최, 정책 개발, 연구 및 통계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가연구프로젝트가 있다.

115) <https://www.austrade.gov.au/>

116) <https://www.austrade.gov.au/Australian/How-Austrade-can-help/Trade-services/women-in-export>

117) <http://www.awcci.org.au/about-us/mission-vision.html>

라. 여성CEO협회 (Chief Executive Women, CEW)

여성CEO협회 (Chief Executive Women, CEW)는 1985년도에 설립된 민간단체로 호주의 대표적인 여성기업가 40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정부 및 호주의 모든 기업체들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장학금 등의 혜택에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평등한 금융활동,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여성리더십 제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여성 리더 사례연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리더스 프로그램 운영, 우수 여성 CEO 및 경영주 선정, 리더십 새도우 모델 선정, 장학생 선정, 양성평등 키트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호주정부는 여성 소기업이 전체 소기업의 1/3을 넘고, 가족경영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 사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여성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 가족경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및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이 이슈가 되며 여성기업만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가. 소기업·가족경영기업 지원제도

1) 소기업지원프로그램(SBAP)

2003년 '소기업지원프로그램(SBAP)'을 마련하여 소기업경영인의 기술개발, 멘토링, 자문 서비스 등을 통해 4년간 6,000만 불을 지원하였다. 그 후 2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2009년 6월 30일 까지 총 1억 1,500만 불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현재는 국세청에서 소기업을 대상으로 Business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2) 소기업문화프로그램(Small Business Enterprise Culture Program)

2003년에는 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자의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소기업문화프로그램(Small Business Enterprise Culture Program)을 실시하였다. 특히 동 프로그램은 8회 실시되었는데, 그 중 5회는 여성기업인의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소기업기업능력개발 프로그램', SBAP, 호주관광개발 프로그램 등에서는 농촌과 지역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의 다수가 여성 기업이었다.

3) 소기업 자문서비스 (Australian Small Business Advisory Services, ASBAS)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제공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4) 신생기업 인센티브 계획(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¹¹⁸⁾

신생기업 인센티브 계획(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은 실직자가 창업(소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 ‘기업인 세금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소기업이 사업소득과 관련해 최대 25%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다. 주요 대상은 75,000불의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며, 소득이 50,000불 이하인 기업은 최대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소기업의 회계기록과 신고요건을 단순화하여 보다 많은 소기업들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가족경영기업지원(Family-based Business)

호주에서 가족경영기업(family-based business)은 중소기업 부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4년간 2백만 불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약 70여 회의 가족경영기업 관련 세미나 개최와 비즈니스 클럽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경영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획득을 돕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5,000만 불의 ‘규제축소인센티브펀드(Regulation Reduction Incentive Fund)’을 통해 가족경영기업을 대상으로 복잡한 규제와 허가요건을 단순화 하도록 지방정부를 유도하였다.

118) www.employment.gov.au/self-employment-new-enterprise-incentive-scheme-neis

나. 국가연구프로젝트(National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 Female Entrepreneurs)¹¹⁹⁾

국가연구프로젝트(National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 Female Entrepreneurs)는 2011년 시작되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온라인 국가연구프로젝트로 ‘National Resr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 Female Entrepreneurs’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여성청(Office for Women), 가족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 뉴사우스웨일 지방정부(New South Wales State Government) 등 연방 정부의 협조 하에 AWCCI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여성자영업자 및 여성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호주의 여성기업 현황 분석에 활용되었다.

다. 여성의 STEM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프로그램(Women in STEM and Entrepreneurship)¹²⁰⁾

여성의 STEM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프로그램(Women in STEM and Entrepreneurship)은 국가 혁신 및 과학 아젠다(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며, 여성들의 과학분야 진출 및 과학분야에서의 기업활동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 2019년 부터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 기업부(Government of Business)에서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8백만 달러로 여성들의 STEM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프로젝트 당 최소 5천달러에서 25만달러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수행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있다.

119) AWCCI, National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 Female Entrepreneurs, 2013

120) <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women-in-stem-and-entrepreneurship>

라. 여성 리더십 개발프로그램(Women's Leadership and Development Program, WLDP)¹²¹⁾

여성 리더십 개발프로그램(Women's Leadership and Development Program, WLDP)은 호주 여성청(Office for Women)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 총리 및 내각부 예산으로 진행된다. WLDP는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경제활동참가율·리더십·안정성·국제활동 등 5개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Project Grants와 Advocacy Grants로 구분하여,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및 정책안 개발 시 자금을 지원한다.

마. 뉴사우스웨일 여성기업 네트워크 (NSW Women Entrepreneurs Network)

뉴사우스웨일 여성기업 네트워크(NSW Women Entrepreneurs Network)는 호주 지방정부인 뉴사우스웨일의 산업부(NSW Department of Industry) 산하 지역 커뮤니티로 여성 기업들의 네트워크 활동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성장에 대한 정부 및 산업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바. 여성 수출 장학금 프로그램(Women in Export Scholarship)

여성 수출 장학금 프로그램(Women in Export Scholarship)은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 Austrade)와 민간기관과의 협력 하에 매년 국제부문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여성기업인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에는 CEW와 공동으로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교육과정을 수료 기회를 제공하였다.

121) <https://www.pmc.gov.au/office-women/grants-and-funding>

제8장 일본의 여성기업 지원

일본은 과거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기업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베정권 들어, 침체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율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중앙정부는 여성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운영하며 여성의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지역 여성센터를 통해 멘토링, 강좌운영, 교류회 및 세미나 개최, 창업경연대회 실시 등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지원조직

가. 경제무역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ETI)¹²²⁾

경제무역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ETI)은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로, 여성기업에 대한 금융 등 지원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확대되었으며, SME Agency와 Mirasapo 사이트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인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및 네트워크, 리서치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122) <http://www.meti.go.jp/english/index.html>

나. 여성기업센터¹²³⁾

각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약 130여 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자금 지원, 세미나 및 강연 개최,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정책 담당, 상공정책 담당, 노동정책 담당 등 각 지자체에서 관련정책 연구 및 강습 실시, 강연회 및 교류회 실시, 용자 및 채무보증제도의 실시, 상담창구 설치, 매뉴얼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문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요코하마시 여성센터는 창업 강좌, 매뉴얼 작성, 창업상담창구 설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참여 및 자기실현을 증가 차원의 주부층 참가자가 많았던 설립 초기에 비해 현직에 있는 여성고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의식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다. 일본개발은행 여성기업가센터 (DBJ-WEC)¹²⁴⁾

일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은 2011년 여성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인 여성기업가센터(Women Entrepreneurs Center)를 설치하고, 여성 창업을 위한 금융, 경영기술 및 사업 매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가 경연대회를 열어 우수한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상금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라. 도쿄 여성 네트워크(For Empowering Women)¹²⁵⁾

도쿄 여성 네트워크(For Empowering Women)는 도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들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이자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1981년 설립된 'Foreign Executive Women'이 전신이다. FEW는 일본 여성들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제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123) 조달청(2007), 「정부조달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기업과 신기술 지원정책의 비용-편익(BC)분석 연구 :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124) <http://www.dbj.jp/en/service/advisory/wec/>

125) <http://fewjapan.com/about/>

정기적으로 교류회 및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이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여성들의 국제화를 위한 지식과 정보, 해외 취업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성 및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가. 일본정부의 여성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¹²⁶⁾

일본정부의 여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무역산업성의 관할 하에 정책금융공사에 의해 시행되며, 신규 및 2차 사업 지원 등의 창업 지원과 기존 기업의 지속 및 성장을 위한 현금흐름 및 운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여성, 청년, 노인 기업가 지원 대출 프로그램(Loan Program for Supporting Female, Young, and Senior Entrepreneurs)

여성, 청년, 노인 기업가 지원 대출 프로그램(Loan Program for Supporting Female, Young, and Senior Entrepreneurs)은 신규 사업 또는 추가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며, 1999년부터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연령 및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기업가들을 양성하기 위함이며, 일본정책금융공사(The Japan Finance Corporation, JFC)의 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자 담당부서(SME and Micro Business and Individual Units)에서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여성, 30세 이하의 청년, 55세 이상의 노인 기업가들 중 과거 7년간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며,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9,581건 및 751억엔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고, 2017년에도 진행 중이다.

126) National Association of Trade Promo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017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2) 중소기업 및 소기업 보증 프로그램(SME and micro-business management enhancement loan/guarantee program)

중소기업 및 소기업 보증 프로그램(SME and micro-business management enhancement loan/guarantee program)은 운영자금 부족 등 현금흐름상 문제, 신규투자자금 부족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이 경영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활발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재난 등의 이벤트 발생 시 겪을 수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보증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자금관리도 지원한다. 여성, 청년, 노인기업의 대출 시 기본금리에서 0.4%를 추가 인하하여 적용하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2017년 정부 예산은 17억엔이다.

3) 여성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Construction of support networks among female entrepreneurs)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은 여성 창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여성기업가 네트워크 구축(Construction of support networks among female entrepreneurs)을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일본 전역에 걸쳐 지역 금융기관, 산업 지원기관 및 창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네트워크는 여성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성 기업과 이용 가능한 관련 정책을 연결하는 한편, 여성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원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예산은 2억엔, 2017년에는 1.9억엔 수준이다. 대표적인 네트워크로는 Pasona Inc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가네트워크¹²⁷⁾가 있다.

127) <http://joseikigyo.go.jp/>

나. DBJ-WBC의 여성기업 창업경연대회¹²⁸⁾

여성기업 창업경연대회는 일본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혁신적이고 사업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보인 여성기업을 선정하여 상금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동부대지진으로 인해 위축된 일본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 여성기업의 신규 사업과 창업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엔의 상금과 사업계획 수립 및 기술 개발 관련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판로지원제도¹²⁹⁾

판로지원제도는 여성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정부와의 계약 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중앙 및 지방정부 포함)시 전체 계약 중 여성기업과의 계약 비율을 5%로 정하고, 금융기관도 총 대출액 중 여성기업 대상 대출액을 5%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경제산업성(METI)나 일본무역협회(JETRO) 등에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여 여성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라. APT Women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 in Tokyo for Women)¹³⁰⁾

APT Women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 in Tokyo for Women)은 여성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한 관리기술 개발 등 단기집중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벤처캐피탈, 미디어, 대기업 등 타 기업, 사업 파트너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기회 제공 등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다. 또한 도쿄 내 여성기업인을 롤모델로 선정하여 여성들의 잠재적인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고,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등 여성기업인 육성을 추진한다. 단기집중 프로그램은 국내 및 국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3개월 간 경영 지식 및 기술, 네트워크, 국제화 등 사업확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후

128) <http://www.dbj.jp/en/service/advisory/wec/>

129) 조달청(2007), 전거서

130) <https://apt-women.tokyo/en/index.html>

2주간의 국제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국내 프로그램에는 수업 외에 개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워크숍 등도 포함된다.

제9장 대만의 여성기업 지원

1. 지원조직

가. 대만 중소기업지원청(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¹³¹⁾

대만 중소기업지원청(SMEA)은 중소기업의 발전 및 관련 법률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지침제공과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연구조사와 중소기업의 생산 기술 교육 훈련 및 관련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운영 및 경영, 자금조달 등의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 지침을 함께 제공하고 산업구조에 따라 다음 분야의 행정처리 강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① 기업 활동 및 혁신을 위한 지원 제공,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 ② 중소기업이 정보기술을 채택하도록 도와주고, 전산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
- ③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 기능 강화
- ④ 중소기업금융서비스팀 프로젝트를 통한 금융자금조달과 건전한 회계시스템 구축
- ⑤ 소기업의 창업자금대출 프로모션 프로그램
- ⑥ 중소기업 신용보증자금과 지원기금 관련 문제

131) 대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s://www.moeasmea.gov.tw>

나. 고용 및 직업 교육부의 노동위원회(The Bureau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Council of Labor Affairs, Executive Yuan)

고용 및 직업 교육부의 노동위원회는 기업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과 가이드제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창업활동을 위한 법률이해, 마케팅, 회사의 설립, 인적자원관리와 교육 훈련, 비즈니스 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리더십 교육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목표는 여성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대상은 창업에 관심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들은 시장분석, 마케팅, 운영관리, 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고객관리와 같은 경영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성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 Special Loans to SMEs Funded by the Government in 2016 (Micro-Business Start-up Phoenix Loan)¹³²⁾

대만의 중소기업인은 ① The Free Trade Industry Revitalization and Counseling Preferential Loans, ② Youth Entrepreneurship Guidance Loan A and B, ③ SME Development Fund Special Loan, ④ Assistance for SMEs to Take Root Special Loan, ⑤ Indigenous Integrated Development Fund Loans, ⑥ Micro-Business Start-up Phoenix Loan 등의 6가지 특별대출 받을 수 있다.

그 중 Micro-Business Start-up Phoenix Loan의 지원대상은 20-65세 여성, 45-65세 대만 연안 섬의 여성 거주자이며 대출한도는 249만 대만 달러이다.

132) 대만 중소기업청(2016), 「2017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aiwan」

2.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가. 여성기업 육성 네트워크 계획(The Female Entrepreneur Cultivation Network Plan)¹³³⁾

여성기업 육성 네트워크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대만의 중소기업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문화 및 창조산업, 고부가가치 기술분야, 건강과 미용,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자원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운영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면서 여성기업이 더 창의적이고 지식기반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을 위한 교육강좌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기업에 대한 리서치 장려금을 지원하고, 대만의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험 공유 및 자문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잠재력이 있는 여성기업가에게 정부 포상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기업이 국제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에게 국제 경영 컨벤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고 3년 동안, 7000명이 넘는 여성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았고, 611개의 여성기업이 창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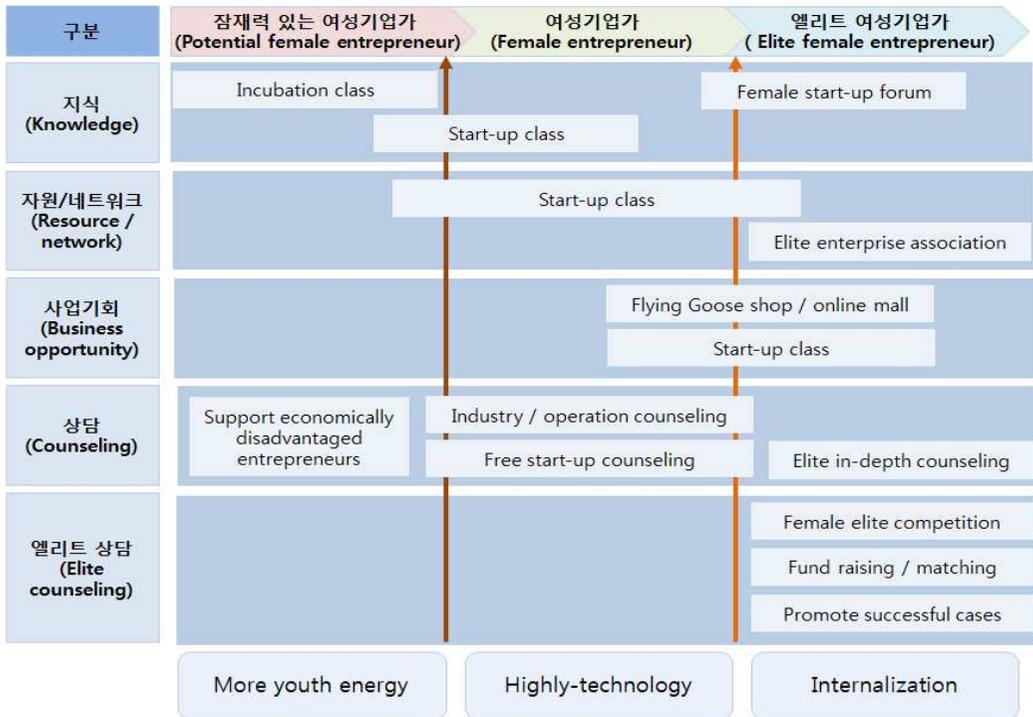
나. 비상하는 거위 프로젝트(Flying Goose Project)¹³⁴⁾

2017년 대만경제부(MOEA)의 비상하는 거위 프로젝트는 창업보육강좌, 팀별 상담, 창업자금 등 여성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지난 2015년 총 2,300명의 여성 기업가들이 훈련 보조금을 받았고, 146명의 여성 소유 기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92.4백만 대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비상하는 거위 프로젝트의 수행방안 체계는 그림3-1과 같다.

133) 대만 중소기업청(2016), 전게서

134) 대만 중소기업청(2016), 전게서

〈그림 3-1〉 여성기업가정신 Flying Goose 프로그램 수행방안



자료: 대만 중소기업청(2016), 전게서

다. 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펀드(Phoenix Micro Funds for Entrepreneurial Women)¹³⁵⁾

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펀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보증과 신용보증을 결합한, 대만 최초의 프로그램이며, 창업하려는 여성의 니즈에 맞춤형된 신용보증 프로그램이다. 노동위 원회가 5천만 대만 달러, SMEG협회가 또 다른 5천만 대만 달러를 보증하여 총 100백만 대만 달러의 프로젝트 기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제공된다.

95%에 달하는 높은 보증비율과 낮은 거래비용 덕분에 여성기업인들이 쉽게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

135) <https://www.moeasmea.gov.tw/ct.asp?xItem=1318&Ctnode=39&mp=2>

펀드 프로그램은 조건이 유동적이다. 단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옥션, 스튜디오와 작업공간, 가내미용서비스,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기업인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다. 여성기업인은 그들의 관심분야와 능력 그리고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창업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다.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당 최대 50만 대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여성기업인들은 노동 협회로부터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로 여성 기업인들은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라. 여성기업인 엘리트 양성 계획(Female Entrepreneurial Elite Plan)

2012년, 대만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인 엘리트 양성 계획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창업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여성기업인에게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① 여성기업인 리더십 향상과 여성기업인 성공모형 제시, ② 여성기업인 성공사례 홍보 및 여성기업인의 기업활동 지원 등 이다.

마. 창업기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Online-to-Offline Integration Services for Startups)

대만 중소기업청은 신규수출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상담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각 정부부처와 위원회의 기업지원 자료를 제공하며, 대만 전역의 청년 기업인들에게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Youth Startup Hubs와 Young Entrepreneurs Network 설립하였다.

바. A⁺ Start-up Ac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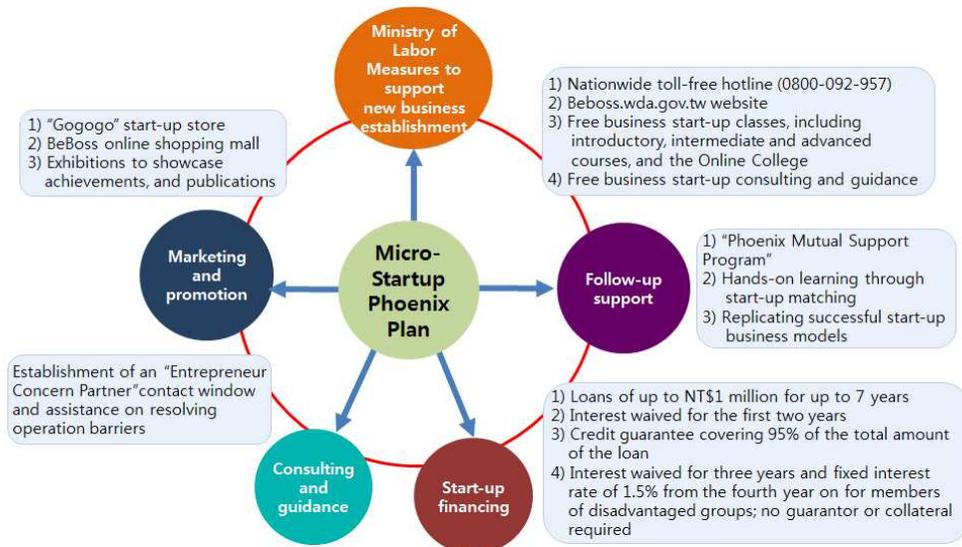
대만의 중소기업청(SMEA)과 경제부(MOEA)에서는 산업개선과 전도유망(前途有望)한 신생기업의 육성을 위해 2015년 A⁺ Start-up Action Plan을 시작했다. A⁺ Start-up Action Plan은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스타트업 진단 및 권고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 팀의 실시간 평가를 안내하는 툴을 제공하고, 두번째는 Start-up Action Plan으로 일반상담, 멘토십, 중장기 팀 지원을 포함한 창업기업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원과 비즈니스 모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win-win제휴를 위해 중견기업과 파트너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기업 피닉스 플랜(Business Startup Phoenix Plan for Microenterprises)

대만의 노동부는 창업기업 피닉스 플랜(Micro-Startup phoenix Plan)을 수립하였다. 이 플랜은 여성(20~65세), 대만 연안 섬의 거주자, 중년(45~65세)의 경제활동참가 향상 및 신규기업창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 구축하고 여성과 중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와줌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플랜은 기업인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신용보증 및 대출 등을 지원한다. 다음 그림 3-2은 창업기업 피닉스 플랜의 구조와 수행방안이다.

〈그림 3-2〉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기업 피닉스 플랜



자료: 대만 중소기업청(2016), 전계서

제10장 인도의 여성기업 지원

인도는 여성기업이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성향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에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이에 1990년 여성위원회는 「의회법(Act of Parliament in 1990)」을 제정하여 여성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영세한 여성 기업들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장애 요인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창업 확대 및 여성기업들의 금융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인도의 지원정책은 정부의 기본정책에 따라, 중앙은행과 민간 상업은행 및 비영리단체 등의 협조 하에 진행된다.

1. 지원조직

가. 인도 중소기업부(Ministry of 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¹³⁶⁾

인도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계획에 여성 및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인도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서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으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기업 지원 및 개발 프로젝트(Trade related entrepreneurship assistance and development, TREAD)와 여성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여성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Mahila Coir Yojana)도 운영하고 있다¹³⁷⁾. 또한, 대표가 여성인 중소기업에게 정부보증 창업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136) <http://msme.gov.in>

137) <https://smallb.sidbi.in/%20fund-your-business%20/additional-benefits-msmes%20/women-entrepreneurship>

나.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

2000년대 여성기업의 금융 이용 제고를 위해 인도정부는 정부산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체 대출 중 여성기업 대출 비중을 5%까지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인도중앙은행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25개 은행들의 여성기업 대출비중은 2001년 2.36% 수준에서 2009년 6.3%까지 증가하였다.¹³⁸⁾

다. 인도소산업개발은행(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SIDBI)¹³⁹⁾

인도소산업개발은행(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SIDBI)은 인도 「의회법(Act of Indian Parliament)」에 따라 1990년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정책을 수행한다. 중소기업부에서 관할하는 여성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연구조직(MSME Knowledge Hub, SmallB)을 통해 창업 및 신설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정책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라. Kerala지방 여성개발회사(Kerala State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 KSWDC)¹⁴⁰⁾

여성개발회사(Kerala State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 KSWDC)는 1988년 설립된 Kerala지방 정부 산하기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KSWDC에서는 여성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IT분야 등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여성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MITHRA 181 Helpline도 운영하며 정보 제공 및 긴급상황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138) IFC,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e Improving Access to Finance for Women-owned Businesses in India, 2014

139) https://www.sidbi.in/About_SIDBI.php#

140) <http://kswdc.org/>

마.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¹⁴¹⁾

인도의 국가여성위원회는 인도 여성들의 권리 확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국가여성위원회법(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Act 1990)」에 의거하여 1992년 설립되었다. 국가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한 강화 및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바. 인도여성기업인연합(Federation of Indian Women Entrepreneurs, FIWE)¹⁴²⁾

인도여성기업인연합(Federation of Indian Women Entrepreneurs, FIWE)은 1993년 설립된 국가 차원의 비영리기관으로, 여성의 기업가정신 발전을 위해 힘쓰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인도 전역에 걸쳐 15,000명의 회원과 28개 회원협회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회원의 60%가 소규모 기업이며, 5% 정도는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FIWE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네트워킹 플랫폼, 기술 지식, 산업 연구 및 분석, 기술 개발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럼 개최를 통해 여성 기업가 발전을 위한 여성경영인들의 아이디어 및 비전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사. 기업가정신발전기구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s, EDI)¹⁴³⁾

기업가정신발전기구(EDI)는 SBI, IDBI와 정부(The Government of Gujarat), 등의 지원 아래 1983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EDI는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여성기업인 리더십 연구기관(The Centre for Women Entrepreneurship & Gender Studies, CWE&GS)을 설치하고 여성기업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41) <http://ncw.nic.in/frmSkillDevelopment.aspx>

142) <http://www.fiwe.org/>

143) <http://www.ediindia.org/>

- 여성 기업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 여성기업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잠재적인 여성기업인을 위한 워크숍개최 및 지원

2.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가. 여성 무역기업 지원 및 개발 계획(TREAD)¹⁴⁴⁾

인도 중소기업부에서 2008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농업을 제외한 산업분야에서의 경영기술 개발 및 무역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훈련, 교육, 연구 등의 지원사업에 최대 30%까지 지원금을 정부가 제공하고, 나머지는 협력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여성기업가에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는 프로젝트 당 최대 10만 루피, EDI와 같이 국가 연구사업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프로젝트 당 최대 50만 루피까지 지원한다.

나. Mahila Coir Yojana 프로그램

Mahila Coir Yojana 프로그램은 1994년부터 시행된 정부추진정책인 Skill Upgradation & Mahila Coir Yojana의 일부이며, 중소기업부의 'Coir Board'에서 관할하였다. Coir(야자수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노동자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훈련 및 교육과 연구기관(Central Coir Research Institute, CCRDI)을 통한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이 있다.

다. 상업은행의 여성 창업 대출 프로그램

인도정부는 창업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정책¹⁴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여성기업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에서 보증하는 여성기업 대출 프로그램¹⁴⁶⁾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기업은 운영자본에 대해 최대 1000만 루피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144) IFC,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e Improving Access to Finance for Women-owned Businesses in India, 2014/ <http://www.dcmsme.gov.in/schemes/treadwomen.htm>

145) 2020년까지 스타트업 기업을 12,000개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
<https://inc42.com/startup-101/startup-scheme-indian-government-startups/>

146) Startup Scheme 9 : Credit Guarantee

정부보증 한도는 대출의 75%, 500만 루피까지이며, 50만 루피 이하의 소규모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85%까지, 500만 루피 이상 1000만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50%로 기업 규모에 따라 보증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아래는 대표적인 상업은행의 여성기업 전용 창업자금 대출 프로그램이다.

1) Cent Kalyani Scheme¹⁴⁷⁾

인도의 상업은행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ndia, CBI)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여성기업 전용 대출 프로그램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여성기업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는 다르게 적용되며 시장금리에 비해 낮은 이율¹⁴⁸⁾로 최대 1000만 루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에 필요한 장비, 설비 및 주식 등에 대한 대출로 추가 담보는 필요하지 않다.

2) Stree Shakti Package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인도 SBI(State Bank of India)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 전용 대출 상품으로 여성의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마진율은 5% 이내에서 분야별로 달리 적용하고, 이자율은 은행의 기준금리보다 최대 0.5%까지 낮게 적용하며, 대출금액 50만 루피까지는 별도의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3) Annapurna Scheme¹⁴⁹⁾

인도국영은행인 SBM(State Bank of Mysore)에서 제공하며,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50만 루피까지를 한도로 36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은행의 기본금리에 비해 낮은 이율로 제공된다.

147) https://www.centralbankofindia.co.in/English/Cent_Kalyani.aspx

148)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10lakh까지는 MCLR + 0.25%, 10lakh 이상 100lakh 이하는 MCLR + 0.50%의 가산금리가 붙으며, 외부 기관을 통한 경우에도 0.25%의 가산금리가 적용됨

149) <http://cmfakochi.com/bank-schemes-female-entrepreneurs-india/>

4) Dena Shakti Scheme¹⁵⁰⁾

Dena Bank의 여성기업 전용 대출상품으로 제조업, 농업, 소매업, 그 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분야 및 규모에 따라 대출 금액은 달리 적용되며, 소매업의 경우 최대 200만 루피까지 제공하고, 교육 및 주택업은 200만 루피, 소액 금융은 5,000루피까지 제공한다.

150) <http://cmfakochi.com/bank-schemes-female-entrepreneurs-india/>

제11장 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

국가별 여성기업 관련 정책들은 각국의 경제적·문화적 환경 차이에 따라 운영 목적과 방법도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가령,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 분위기 속에서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주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및 영국, 독일 등도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들의 혁신성 및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민간을 중심으로 여성기업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나 최근에는 오랜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성기업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여성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여성기업 관련 법 또는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정책에 있어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한하였는데, 특히 미국은 선도적으로 여성 및 여성기업과 관련한 법·제도와 정책 등은 세계 최초로 구비하였고, 여성 및 소수자를 위한 매우 다양한 법체계와 함께 여성과 관련한 정책에서 약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 국가 및 호주의 경우 양성평등법은 있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도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여성기업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여성기업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별도의 여성기업 전담 기관은 확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기업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여성기업 관련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고 있을 뿐, 여성기업을 위한 별도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여성기업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각국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범국가 기관의 특성 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여성기업 관련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2009년 10월 ‘여성기업대사 네트워크 발대식’을 갖고, 여성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여성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및 호주의 경우 정부 정책은 주로 민간기관의 역할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혁신성 및 기업가정신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장애인, 소수인종 등)의 범주에 여성을 포함하여 금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가마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내용과 방식이 다른 것은 각 국가의 정치적 특성과 사회적 분위기, 지리적 특성,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한 결과겠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선진 각국은 법·제도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주체이며, 고용창출 등의 국민경제적 기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국민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기업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여성기업지원에서 각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조직인 여성기업센터(WBC)의 지원을 통하여 자국 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센터(WBC)는 미국 중기청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 장기적인 훈련·자문·멘토링, 신용 및 자금 지원, 연방 정부조달 계약, 국제 거래 등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 국가 및 호주 등도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화된 기존의 여성기업 관련 민간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국 내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 각국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 형태보다는 경영자문, 전시회, 세미나, 멘토링, 기업경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간접지원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형식의 배경에는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의 과도한 자금지원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반시장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만,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할 경우 여성기업을 소수자에 포함하여 소액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선진국들은 여성기업을 남성기업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차원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및 연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및 연구분야, ICT 산업에의 여성기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공 모델을 전파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즉, 각국은 미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여성기업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 역량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3〉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국내외 비교 분석

구분	차이점	공통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실시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시 및 인증된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고용 창출 등의 국민 경제적 기여자로 인식 직, 간접적으로 정부(지자체 포함)가 관여되어 여성기업을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전시회, 세미나, 멘토링,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간접지원 형태를 중시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산업 지원 확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관과 민간기구 간에 유기적인 지원체계구축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시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판로 확대 정책의 시행 연방정부차원의 여성기업 계약프로그램 실시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여성기업대사 네트워크를 '09년 발족 여성창업자 대상, 멘토링 지원 및 여대생대상 창업교육실시 유럽30개국 여성기업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정보 제공, 우수사례 전파, 정책조언 제공 여성기업 네트워킹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하고 여성간부비율 증대방안을 연구하는 네트워크 구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지원정책에서 여성의 활용비중 확대 방향으로 추진 여성기업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기업 육성 지자체에서의 별도 여성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 전략적인 여성 인력 양성과 여성기업을 지원 중앙기관과 유관 기관들간의 효율적인 정책실행체계 구축 여성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제고 노력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및 유관기관, 민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여성기업가정신 제고 프로그램 운영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민간 협력 기관인 여성기업가정신센터 운영 민간 중심 지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조직의 자원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추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금융지원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 최초의 사회복지 자원과 신용보증계약을 결합한 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펀드 프로그램 운영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주도 정책으로 여성기업에 직접적인 금융지원 제공 	

제4부 여성 기업 지원 주요 정책현황 및 성과

- 제1장 | 여성기업 지원정책 방향
- 제2장 | 주요 지원기관 현황
- 제3장 | 여성기업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제1장 여성기업 지원정책 방향

1.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과정

가.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시기별 발전과정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국가 발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여성 경제참여율 증대, 나아가 경제적인 가치 창출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기여이다. 실제, 국가 발전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정부조직법」, 제18조 및 대통령령 제156993호)되었고, 1999년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1999년 2월에 법률적 발판이 마련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었으나, 1997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부품소재공급자로서 전통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이 주 정책대상이었다면,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법률체계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체계가 마련되고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¹⁵¹⁾.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각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여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51) 양인숙·강민정(201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추진성과와 사회 및 경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되거나 중단, 변화되어 오면서 체계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매년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지원정책 방향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큰 틀은 2005년부터 매년 수립되고 있는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7년까지 기본계획 상의 지원정책방향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추진 중에 있다.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에 나타난 지원정책방향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 주요 내용

연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2005년	다양한 분야의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여성기업을 경제발전의 하나의 축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 여성기업 유망직종의 발굴·육성 - 여성기업 경영혁신 지원 -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 -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 - 여성기업에 대한 균형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에 안정적인 정책자금 및 보증 공급 -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강화 - 여성기업 책임관 제도 시행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제54차 세계여성경제인대회 개최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연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 -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 - 여성기업 정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CEO 경영혁신 교육 강화 - 여성기업제품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 여성기업의 정책접근성 제고 - 여성기업단체의 기능 활성화
2008년	여성의 창업촉진 및 글로벌 여성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기반의 획기적 개선 - 여성기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 여성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09년	여성의 창업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 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 경영안정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여성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2010년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 및 경제활동영역에서의 동반성장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여성창업 시스템 구축 - 여성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 진입장벽 완화 및 불평등 관행 해소
2011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2012년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활동 및 여성창업 협력 기반 구축 - 여성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13년	여성의 중요성과 특수성 인식한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활동 및 여성창업 협력 기반 구축 - 여성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14년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비즈니스역량 강화 - 여성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및 투자 확대 - 판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연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2015년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비즈니스역량 강화 - 여성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및 R&D 지원 - 판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16년	여성 창업 촉진과 여성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여 - 판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및 R&D 지원 -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비즈니스역량 강화
2017년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여성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성 및 여성기업 인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와 사업별 여성기업지원목표 관리 - 여성기업 판로 및 수출 지원 강화 - 여성기업 R&D 지원 확대·여성기업 자금 및 보증 지원 강화 - 여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여성기업 인적 역량 제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 각 년도

2005년부터 2007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정책과 창업한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다. 2008년부터 2009년의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화 지원이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우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여성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기업의 경영애로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인프라를 확충·재정비하는 방향도 제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기업 특유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여성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조사연구팀¹⁵²⁾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확대, 여성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등으로 창업 지원 과정을 보완하였으며, 여성기업 관련 정보망을 통합하고 고도화하여 관련 정보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이 가장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판로인데, 정부에서는 여성기업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에 적극 나섰다.

2014년과 2015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정책건의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통해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기업 창업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및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의 건의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여성전용 R&D 지원 및 우수 여성인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6년과 2017년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기업의 인적역량을 제고하였고, 여성창업 지원기관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기반 여성기업 전용 R&D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공공조달 시장 판로확대와 여성기업제품의 해외판로지원을 확대하였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별 여성기업 지원목표를 관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의 내용을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과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보면 세부적인 추진과제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152) 2015년 5월 1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조사연구팀으로 이관되었으며, 2017년 5월 연구조사팀으로 팀명이 변경됨

있다. 우선 여성창업 촉진정책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기업활동 촉진기 본계획에서 밝힌 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촉진 및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창업의 질적·양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의 지원정책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에 중점을 두었다. 여성 특화 스마트창업터 운영, 여성의 기술지식기반 분야의 벤처창업 촉진 등 신 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2017년 이후의 정책의 기본방향은 제4차 산업혁명을 반영하여 여성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인적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의 판로·수출 지원강화와 여성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에 중점을 두고, R&D지원과 여성 기술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표 4-2〉 여성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지원정책 흐름

구분	2005년 ~ 2016년	2017년 이후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교육 강화 및 자금지원 - 창업사전 정보·지식의 제공 - 소상공인 창업정보 제공 -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발굴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 - 성공창업사례 전파교육 실시 - 1인 여성기업 창업 촉진 - 창업보육 역량 증대 - 여성창업 구조전환 - 여성 창업자 맞춤형 지원 -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연계 -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확대 및 개편 - 여성 특화 스마트창업터 운영 - 여성의 기술지식기반 분야의 벤처창업 촉진 - 여대생 창업 집중육성 프로그램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판로·해외진출 지원 - 여성기업 R&D지원 확대 - 여성 기술창업지원 및 고부가가치 창업 지원 - 여성기업 자금 및 보증융자지원 - 중소기업 직무능력 향상 위탁 교육 실시 - 여성기업 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역량 강화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해외시장 개척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판로확대를 위한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수의계약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여성기업 혁신역량 교육 및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기업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멘토링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과 재정비를 위해서 여성기업인 정책 건의 전용 창구 운영, 여성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법률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 강화, 여성기업의 통합 정보망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여성특화제품 중심으로 해외 유명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4-3〉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흐름

구분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2005년 ~ 2016년	<p>1. 판로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제품 온라인/홈쇼핑 지원 - 대-여성기업 동반성장 지원, 국내외 박람회/전시회/상담회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지원, 여성특화제품 해외 판로 지원 확대 - 여성기업맞춤형 입찰정보사이트 운영 - 여성제품 구매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수의계약 확대 <p>2. 경영 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인 교육/세미나/포럼 지원, 경제인대회 및 경영연수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지원, 마라기업형 업종전환 구조개선 컨설팅 지원, 멘토링 제도 및 프로그램 운용 - 여성기업 혁신역량 교육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 여성기업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및 활성화 - 여성전용 R&D 지원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구분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p>3. 인프라 확충·재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여성기업책임관제도 도입 및 활성화 -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 여성기업전용 입주단지 제공,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보육실 확장 및 여성 특화창업보육센터 운영 -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고도화, 여성기업의 통합 정보망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활성화 - 제도·법률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여성기업인 정책건의 전용 창구 운영 <p>4. 글로벌 네트워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참가 지원, 해외정책동향 정보 수집 및 정책개발 - 여성지도자회의의 참가 지원,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유치 및 개최 - 여성기업 전용 수출사이트 (3D 사이버 전시장) 구축 - 여성산업 제품군 중심으로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 지원 - 통합정보망 구축과 연계하여 여성 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 오프라인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p>2017년 이후</p>	<p>1. 성과 목표 설정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 사업별 여성기업 지원목표 관리 : 개별 사업별 여성기업 지원 목표 설정 및 관리 <p>2. 여성기업 활성화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R&D 지원 확대 : 전용 R&D운영, 사업화 지원, 여성참여 확대, R&D기 획역량 제고, 협업 체계 구축 - 여성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 강화 : 자금우대, 보증지원 확대 및 융자지원 강화 - 여성기업 판로 및 수출지원 강화 : 해외진출지원 및 수출사업참여확대 공공구매 지원, 판로지원 확대 <p>3. 여성 및 여성기업 인적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기술창업 지원 확대 : 창업·고부가가치창업 지원, 보육지원개선 - 여성기업 인적 역량 강화 : 교육지원·인적네트워크·비즈니스역량 강화, 인적인프라 강화

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제도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등이 있고, 여성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경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CEO MBA 교육,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고, 지원조직,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호주에 비하여 여성창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정책은 간결하고 분명한 반면에, 한국은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복잡하여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이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¹⁵³⁾

여성기업의 규모, 성장 가능성, 현재의 경영환경의 열악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존 경력단절 여성¹⁵⁴⁾들의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 여성기업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여성 강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업-성장-안정을 이루는 여성 강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일반 중소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153)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7), 「해외여성기업실태조사」

154)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개인사업 41.0%, 중소기업 재직 38.3%, 가정주부 9.7% 등으로 나타남

융합화 및 신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이끌고 갈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및 재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여성기업이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규 사업 추진 및 성과가 있는 사업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여성기업의 지원체계는 이러한 기존 체계를 강화하여 혁신형 여성인력의 발굴과 육성, 창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여성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 및 조직 재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더불어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제2장 주요 지원기관 현황

1. 중앙부처

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 여성기업 관련 업무를 실제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그림 4-1〉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관련 지원사업

정책 방향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육성
목표	수출 여성기업수 10,000개사 육성('15년 8,083개사 → '17년 10,000개사) 여성벤처기업 3,500개사 육성('16년 2,923개사 → '17년 3,500개사(누적)) 기술기반 여성창업 1,000명/년 육성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1.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① 기본계획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② 사업별 여성기업 지원목표 관리
2. 여성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여성기업 판로 및 수출 지원 강화 ② 여성기업 R&D 지원 확대 ③ 여성기업 자금 및 보증 지원 강화
3. 여성 및 여성기업 인적 역량 강화	① 여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 ② 여성기업 인적 역량 제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7),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기업 판로 및 수출 지원 강화, 여성기업 R&D 지원 확대, 여성기업 자금 및 보증 지원 강화, 여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 여성기업 인적 역량 제고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 관련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되는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육성 사업계획 및 실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며,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경제분야-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기능 〉

-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장기비전에 기반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혁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산업-사회의 혁신을 유도하는 국가 R&D 시스템 구축,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¹⁵⁵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혁신성장동력 육성과 규제 혁파,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양질의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및 과학기술-ICT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 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산업강국 실현과 광역경제권 위주의 지역발전정책 수립·추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과 에너지 저소비형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정책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5) D-N-A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임

라. 여성가족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한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정부정책에 따른 성별영향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일자리안내를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대생 커리어 지원, 커리어 업, 사이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후 지속적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마. 특허청

지식재산의 주무부서로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제공,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세워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에서는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여성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여성발명인력 양성, 여성발명품박람회, 세계여성발명대회, 세계여성발명포럼, 여성지식재산권 설명회, 여성발명정보지 발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바. 조달청

조달청은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최고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공급하고, 원자재 파동 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방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정부물품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및 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와 9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창업교육부터 창업자금지원,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여성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마케팅, 전시회 및 홍보, 공공구매 등의 지원사업과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을 위한 포럼 및 경영연수, 경제인대회와 국제교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과 기회보장을 의무화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및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4〉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현황

지자체명	제정일자	지자체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2017년 01월 05일	경기도 동두천시	2015년 01월 07일
인천광역시	2007년 12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2009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2013년 06월 07일	경기도 수원시	2012년 10월 04일
대구광역시	2015년 10월 30일	경기도 시흥시	2012년 04월 10일
울산광역시	2008년 10월 16일	경기도 안산시	2012년 08월 08일
부산광역시	2009년 07월 08일	경기도 안성시	2015년 06월 30일
광주광역시	2009년 11월 16일	경기도 안양시	2012년 10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07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2016년 05월 27일
경기도	2008년 07월 25일	경기도 의왕시	2016년 06월 30일
충청북도	2008년 08월 08일	경기도 하남시	2015년 03월 02일
전라북도	2013년 08월 09일	경기도 화성시	2016년 03월 18일
전라남도	2011년 05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2017년 04월 28일
경상북도	2013년 11월 11일	충청남도 서산시	2017년 12월 20일
경상남도	2009년 08월 13일	충청남도 아산시	2017년 06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 01월 07일	충청남도 천안시	2013년 05월 13일
강원도 고성군	2016년 09월 07일	충청북도 당진시	2017년 04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2013년 02월 20일	충청북도 보은군	2017년 12월 08일
강원도 원주시	2016년 04월 15일	충청북도 제천시	2013년 05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2011년 08월 05일	전라북도 군산시	2017년 07월 03일
경기도 광주시	2011년 12월 30일	전라북도 익산시	2013년 07월 15일
경기도 김포시	2012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전주시	2009년 02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2016년 09월 29일	경상북도 구미시	2009년 09월 28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월 기준)

3. 주요 여성기업 관련단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별로 등록된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등이 있다.

〈표 4-5〉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관련 단체(소관부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요약	설립연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여성기업육성 및 여성창업 촉진 사업추진 등	1971년
(社)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성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여성벤처기업의 발굴 및 창업지원, 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안 등	1998년
(社)21세기여성CEO연합 (기획재정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과 새로운 기업환경 조성	세계적인 경제인사와의 교류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등	2003년
(社)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우수한 IT여성기업인의 발굴 및 전문 여성 인력의 양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여성IT인력 취업 지원 사업 IT여성기업지원 등	2001년
(社)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공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과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여성공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리더 양성, 공학기술계 여성활용에 대한 정부정책 제안 등	2004년
(社)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청)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개발로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	여성발명사업화지원 여성발명 저변 확대 여성발명 인력 양성 등	1993년
(社)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여성 경영자들의 경제단체로서 여성 경영인들의 교류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경제인구 증대 여성경영의 세계화 도모 등	1993년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2018년 1월 기준)

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여성가장 창업 및 여성경제인 혁신 역량 강화,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및 해외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4-6〉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여성CEO MBA 교육	○ 실제 경영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분야별 경영실무교육 및 인적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제공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 및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세계 여성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대외경쟁력향상 ○ 한국 여성기업 경영 현황 및 정부지원정책 등 대외 발표를 통한 한국 역량 홍보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여성기업에게 공공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판로확대 및 구매촉진 지원 ○ 공공기관 대상으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제고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 여성기업의 경영지원 및 창업여성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통합적 관리·운영
	여성기업 실태조사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여성기업의 활동 및 현황파악을 위해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및 결과 공표
	서로사랑 네트워크	○ 회원사의 직접생산 제품에 대해 회원사간 직거래 장터를 통한 판로 확보를 위해 서로사랑 네트워크를 개발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 품질은 우수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제품을 보유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원사(중소기업)를 위해 개발
	TV홈쇼핑 입점지원	○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제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입점을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사업
여성창업 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생계형 창업 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 하는 제도로서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CEO MBA교육,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이 있다. 판로지원 분야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실태조사, 서로사랑 네트워크,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이 있다. 여성 창업지원 분야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업이 있다.

나.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단체로서, 여성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여성벤처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고 여성벤처기업이 뿌리를 내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표 4-7〉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주요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벤처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벤처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기업의 모델 제시 ○ 창업 의식 고취를 통한 여성인력의 고용창출
여성벤처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타개 및 사회 인지도 개선을 통해 여성이 원활한 여건에서 경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여성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체질 강화 및 경쟁력 강화
여성벤처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벤처기업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성 및 효과적인 여성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사업협력지원
여성벤처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벤처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및 입찰, 신기술동향 등 최신정보제공
여성벤처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성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켓채널 구축 및 연계 지원활동 등 현지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벤처기업 발굴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창업 전문교육(코칭) 및 투자유치 IR,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 국내외 수출상담회, 여성벤처기업 공동홍보, 벤처확인교육, 여성벤처 네트워크 등이 있다.

다. 21세기여성CEO연합

21세기여성CEO연합은 여성CEO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협력단체로서, 여성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기업경영지식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여성경영인상을 정립하고자 설립되었다. 21세기여성CEO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세계적 경제인사와의 교류 사업,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사업, 최고경영지식 개발 연구 및 조사 등이 있다.

〈표 4-8〉 21세기여성CEO연합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세계적인 경제인사와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유명CEO 초청 강연 ○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세계적 경영자 네트워크 구축 ○ 세계경영인과 한국문화 공유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영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여성경영인 경영사례연구 및 교류지원 ○ 여성경영인 불이익 개선
최고경영지식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여성CEO 포럼 및 학회 개최 ○ 각 경영분야별 연구세미나 개최 ○ 산학연계 연구워크샵 개최

라. IT여성기업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는 IT분야 여성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ICT 여성인재 육성,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는 여성기업지원, 여성IT인재양성, 경력단절여성지원, 취약부문 정보화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4-9) IT여성기업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IT여성기업 협력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및 정보 교류회를 개최하여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및 여성기업 권익 향성 도모 ○ 업종별 맞춤형 소모임 활성화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사업종 교류회, 정기 모임 및 세미나 개최
IBWA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IT업계 기업인들의 직·간접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다양한 정보교류 IT분야의 신기술 및 최근 트렌드 파악 ○ 산학협력을 위한 인적 인프라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IT여성기업 해외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IT여성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핵심요소를 전략적 컨설팅하여 해외진출 지원 ○ 독자적으로 해외 시장개척이 용이 하지 않은 IT분야 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이 유망한 시장을 선정하여 현황조사 및 진출 조건 등을 탐색하고 직접 시장에 파견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인재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전문인력 육성하기 위해 IT기업인과 이공계 여대생이 멘티와 멘토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개발 프로젝트 수행 ○ 이공계 전문인력 연수사업을 통해 이공계여대생등 취업 희망자들에게 최신IT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지원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TEM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지원
정보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활용지원센터운영) IT활용 Help Desk 운영, e-business 활용 촉진, 우수IT기업 솔루션 시연회 개최지원, IT위민넷 사이트를 통한 IT분야 활용 정보제공

마.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공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육성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상생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과 공학기술의 선순환적 활용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수행사업으로는 여성공학 기술인력 경력개발 사업, 여성공학기술인력 경력단절 예방 사업, 산업기술문화 조성 사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이 있다.

〈표 4-10〉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 주요 수행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경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계 여성인력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및 전문성, 조직사회의 적응력,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여성 공학 기술 인력에게 공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이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육성 사업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여성기술인력 직무공유시스템을 개발, 직무공유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여 경력단절기간을 최소화하고 역량발휘 기회 제공
경력단절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전문가 지도와 사회 진출한 선배들의 코칭을 통해 현장 적응능력 향상 및 성공적인 경력개발 유도 ○ 공학계 각 분야 Opinion Leader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연계 기반 구축 ○ 매년 평균 7회의 테크노포럼을 개최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마련
산업기술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의 우수한 여성공학기술인 리더를 발굴, 표창 ○ 여성기술인 성공사례(‘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시리즈 출판)공유
R&D 중간조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계 각 분야 R&D 중간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고, 여성공학기술 인력을 한국 산업사회 핵심인재로 활용 ○ 여성공학기술인력의 정보공유와 원활한 의견 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적 지원 정책 제안 ○ R&D 중간조직 성과의 대외확산을 통하여 공대 여학생의 롤모델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멘토-멘티 교육확대에 활용 ○ 여성인력활용이 우수한 기업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산업체의 여성 고용을 증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원활한 연결통로 마련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공학인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WE(Society of Women Engineers)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 국내 유명 대학 및 다양한 기관, 협회, 단체와의 MOU를 통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서 공학 전반에 걸친 정보공유 및 정책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바.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들에게 발명의 생활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 발명 인구의 저변확대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발명풍토를 조성하며, 지식기반 사회와 세계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개발로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발명창의교실,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 박람회, 세계여성발명포럼, 글로벌 여성IP리더십아카데미, 생활발명코리아 등이 있다.

〈표 4-11〉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발명창의교실	지식재산권과 발명 기초에 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발명활동 참가 유도 ○ 개최장소 : 전국 지자체, 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교육시간 : 8시간 ○ 참가방법 : 협회 홈페이지 '교육일정' 참고
여성발명정보 웹진 발간	발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웹진 '발명하는 사람들' 을 매월 발송하여 발명계 소식, 여성발명 성공사례, 여성기업 지원사업 등 여성 맞춤형 IP 정보 제공 ○ 구독신청 : 전화(02-538-2710) 이메일(kwia@inventor.or.kr)
여성발명인 변리자문서비스	특허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특허 출원 안내, 분쟁 대응 방법 등 교육 서비스와 연중 무료 변리 상담을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 ○ 지원대상 : 여성 발명·기업인, 대학생 등 일반여성 ○ 상담방법 : 전화(02-538-2710)
여성발명지도사 자격검정	여성발명지도사(민간자격등록번호:2014-0424)는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실시하는 '여성발명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 아동발명 창의교육 전문 지도인력으로서 매년 1회 자격검정 시행을 통해 배출됨 ○ 참가대상 : 대한민국 만18세 이상 여성 ○ 시험일정 : 1차 필기시험(11월 중순), 2차 실기시험(12월 초)

구분	사업내용
생활발명코리아	<p>여성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생활용품으로 상품화가 되도록 전문가 멘토링,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부문 : (부문1) 신청일 현재 지식재산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아이디어(부문2)신청일 현재 지식재산권으로 출원(등록 이전이어야 함)되었으나 제품 개발된 적 없는 아이디어 ○ 신청시기 : 매년 2~4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www.womanidea.net
여성발명품박람회	<p>여성 기업의 우수한 발명 제품을 전시, 소개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여성발명품의 판로 개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대상 : 여성이 대표사이거나 임원인 사업체, 여성발명가 ○ 참가방법 : www.kiwie.or.kr 참고
세계여성발명대회	<p>세계적 규모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여성발명대회로 혁신적인 여성발명품을 전시·시상함으로써 국제 비즈니스 매칭 및 세계 여성발명기업인 간 교류 협력의 장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 : 여성발명품박람회와 동시개최 ○ 출품대상 : 국내·외 출원·등록된 여성발명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세계여성발명포럼	<p>국내·외 여성발명인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국제포럼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 : 세계여성발명대회 연계 개최 ○ 참가대상 : 국내·외 여성발명·기업인, 대학생 등
글로벌 여성IP리더십 아카데미	<p>여성발명인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을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발·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 : 세계여성발명대회 연계 개최 ○ 참가대상 : 국내·외 여성발명·기업인, 대학생 등
여성발명인 워크숍	<p>여성발명인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해 매년 워크숍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대상 : 정회원

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는 여성경영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전문여성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경영인의 정보제공을 위한 포럼개최, 여성경영인의 사회적 책임확대를 위한 봉사나눔활동, 일가정양립 인식제고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전개,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전개, 여성경영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유관단체에 정책제안 등이 있다.

〈표 4-12〉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교육/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경영’ 포럼 : 정부의 정책 입안 책임자를 초청, 정책제안 ○ 경영자 연수교육 : 해외경제단체와 회원사 연계,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 ○ 스터디모임 개최 : 각계 전문가를 초청 실무교육 훈련
홍보/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사이버 시스템을 통한 경제활동 및 홍보강화 ○ 여성과 경영 계간지 발간 : 정부 및 경제단체장 기고, 여성정책 가이드, 여경총 활동 사항, 회원사 소개 및 홍보 ○ 각종행사 언론홍보 : 포럼, 스터디모임, 워크샵, 경영교실 등 홍보 ○ 여성기업인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언론 홍보강화 ○ 외부 출판물에 여경총 소식 게재, 홍보 및 광고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에서 국제회의 참석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시찰, 투자 설명회 및 무역 상담회 개최, 후원 ○ 외국의 여성단체 및 여성 CEO들과의 교류사업
여성경영인의 대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계 정책입안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여성경영인의 의견 개진 ○ 정부, 관련단체의 정책에 대한 여경총의 입장 전달 ○ 국가정책기구 구성원에 여경총 대표 참가 ○ 정부 및 관련단체 위원회 참가활동
사회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기적 봉사나눔활동 전개 ○ 중등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지원사업)

구분	사업내용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가정 만들기 교육사업(2016) ○ 내용 : 부부교육, 자녀교육방법, 자기개발 ○ 참여자 : 925명(여성근로자)
중등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협력사업(2002 ~ 2014) ○ 협력학교 : 초,중,고 300개교 이상 ○ 프로그램 : 현장 체험학습 위주(학생들의 흥미도를 반영한 직업군 위주로 진행) ○ 운영형태 : 전일제(6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 현장체험 중심
정보통신진흥원 SW현장전문인력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진흥원 협력사업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여경총 부설 평생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표 : 평생학습을 통한 다방면의 전문인 양성 ○ 국비지원사업 : 사업주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 세부프로그램 : 개발실무 C프로그래밍, 성과를 만드는 실전영업의 기술, 실무에 바로 활용하는 세무회계실무, 영어 전문보육교사 보육활동실무, 개발 실무자를 위한 자바 핵심 프로그래밍, 자바 웹 컴포넌트 설계 및 개발실무, 개발자를 위한 MySQL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IT 직종 교육운영
실버들의 건강 프로젝트 「실버웃음트레이너」파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고령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실버웃음트레이너 교육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권역 요양시설로 파견하는 교육과정

4.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별로 등록된 주요 여성기업 지원기관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진흥원 등이 있다.

〈표 4-13〉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관련 단체(소관부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요약	설립연도
(財)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창업보육 및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2007년
(株)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판매 및 유통을 지원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전시, 마케팅 지원, 국내 판로지원 및 해외수출 지원 등	1995년
(財)한국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경영, 인력양성, 연구, 창업 지원 등, 여중·고·대학(원)생을 위한 영재 발굴, 연구대회, 멘토링, 아카데미 지원 등	2011년
(財)한국여성 경제진흥원 (기획재정부)	여성경제진흥을 통한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성숙한 양성 평등의 경제 환경 조성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여성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등	2009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2018년 1월 기준)

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창업 활성화와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창업보육,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2017년도 사업 추진방향은 기술기반 중심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여성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 저변확대를 위한 “씨뿌리기”지원에서 탈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중심의 여성기업 육성 시스템 마련이 중점 추진계획이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여성기업판로지원사업이 있다. 먼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부분의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센터 확장사업, 여성경제인 DESK 운영, 여성기업지원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이 있고, 여성창업지원사업 부분에는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판로지원사업에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과 여성기업 조사연구가 있다.

〈표 4-14〉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명	사업목적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운영	센터운영	○ 기술창업자 발굴 및 창업보육 전문성 강화 -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제공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센터확장	○ 창업보육공간 인프라 확충 - 사업체 증가율이 높고 여성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지역 여성창업자의 창업수요 충족을 위하여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 확장설치 운영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전문가그룹 멘토링 등 비즈니스 역량 강화 -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건의를 위한 여성기업인 전용창구 운영
	플랫폼 구축	○ 여성기업 지원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체계 구축 -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인력을 물리적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여성기업 인력부족을 해소
여성창업 지원	창업경진대회	○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조기육성 -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조기 발굴하여 여성창업 촉진 및 활성화
여성기업 판로지원	수출	○ 여성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지원 확대 - 여성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수출역량강화(실무교육·컨설팅), 해외박람회 참가 등 단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조사연구	○ 여성기업육성 관련 조사연구 인프라 확충 -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과 여성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조사

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핵심과제는 첫째,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여성과학기술인정책 조사연구 지원 둘째, 법 운영성과/정책성과/국내외 연관정책분석을 통한 발전적 지원 방안 도출 셋째, 전생애주기적인 멘토링체제 도입과 체계화로 자발적인 생태계 구축 넷째, 분야별/세대별 융합적인 격자무늬 모양의 인적자원 성장시스템구축 다섯째, 핵심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화로 나타난다.

(표 4-15)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목적
여·중고생 및 여대학(원)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여성멘토링 지원 ○ 여학생 이공계전공체험 및 공과대학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지원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 팀제 지원
경력단절 및 미취업·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 및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진여성과학기술인 및 경력여성과학기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취·창업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제도·정책 및 환경조성 기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법제도 운영 ○ 정책조사·연구 및 협력지원 ○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다.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은 여성경제인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루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성경제 진흥을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성숙한 양성평등의 경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여성경제인의 역량 결집, 여성의 경제적 권한 향상,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은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여성경제 진흥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협력 등이 있다.

〈표 4-16〉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인의 발전과 상호 교류 협력 ○ 여성경제 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여성 경제계간의 통로 역할 ○ 여성경제인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인식과 기업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설득 ○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기업문화의 여성 가족 친화적 변화 유도 ○ 여성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단점으로 평가되는 요인 제거를 위한 노력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근로자 및 간부, 여성 기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커리어 개발
여성 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인에 대하여 사업발전 단계(life-cycle)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경영 컨설팅 ○ 여성부, 중기청 등 각 부처의 각기 다른 지원을 함께 모아 종합적으로 one-stop 지원
여성경제 진흥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활동이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실태 조사 및 연구 분석 ○ 성별영향평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 ○ 여성인력활용 방안 등 정책제안

제3장 여성기업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1. 여성창업 촉진 지원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성창업경진대회와 창업보육센터운영 등이 있으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발명진흥, 여성기술융합창업 캠프 및 컨설팅 등이 있다.

가. 여성창업경진대회

1) 개요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창의적이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로 여성의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이거나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총 12명의 우수팀에게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및 수상자 맞춤형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표 4-17〉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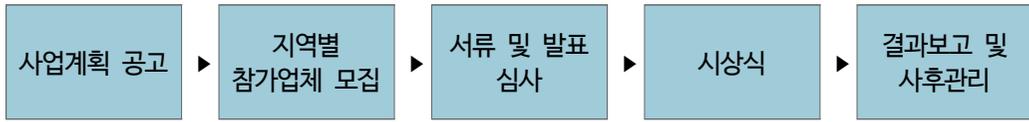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 및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및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1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2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500만원 우수상(3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6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및 상금 200만원(1명) 우리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하나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IBK기업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1명) • 수상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자 맞춤형 사업화 지원,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2) 현황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참가업체 모집, 서류 및 발표 심사, 시상식, 결과보고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창업 활성화 및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SNS, 블로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경진대회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여성경제인의 날에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회 인지도를 올리면서 시상식 이후에도 수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2〉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2017년 여성창업 경진대회의 지역별 참가자 수는 총 400팀으로, 서울이 174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86팀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참가자 중에서 약 65%(2017년 기준)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8〉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17년도)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참가수	174	21	23	9	13	25	11	10	86	3	9	12	4	400

3) 성과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팀 수는 2015년 351팀, 2016년 382팀, 2017년 400팀으로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상자는 매년 12팀으로 지난 3년간 수상팀의 약 61%가 창업하였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은 대부분 검증된 아이템을 가진 기술창업으로 현재 일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창업보다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표 4-19〉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참가팀수	351	382	400
수상팀수	12	12	12
창업업체수	8	6	8

4) 향후 과제

여성들의 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경진대회 운영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경진대회 사전사후 홍보를 이원화하여 대회 참가자를 증대하고, 수상자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대회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수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 12팀에 대해 마케팅 교육 등 실전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회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수상자 사업화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데모데이¹⁵⁶⁾ 등의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수상자 자금지원을 연계하도록 한다.

〈표 4-20〉 여성창업경진대회 운영 개선방안

구분	내용
대회 사전사후 홍보 이원화	대회 참가자 모집
	수상자 우수사례 홍보
수상자 역량강화 교육	수상자(12팀) 대상 교육 실시 (마케팅 교육 등)
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 사업화 이력관리
	네트워킹 지원

156) 창업기업이 개발한 비즈니스모델이나 시제품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행사

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보육실) 운영

1)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창업보육 공간·정보·인프라제공을 통해 여성의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경제인이며, 지원내용은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및 전문가 컨설팅, 각종 인증획득 지원, 판로지원과 정부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등이다.

〈표 4-2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센터 입주기업 및 여성경제인 • 창업 2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회의실, 사무집기, 인터넷, 보안장비 등) • 경영, 회계/세무, 재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마케팅 및 판로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성공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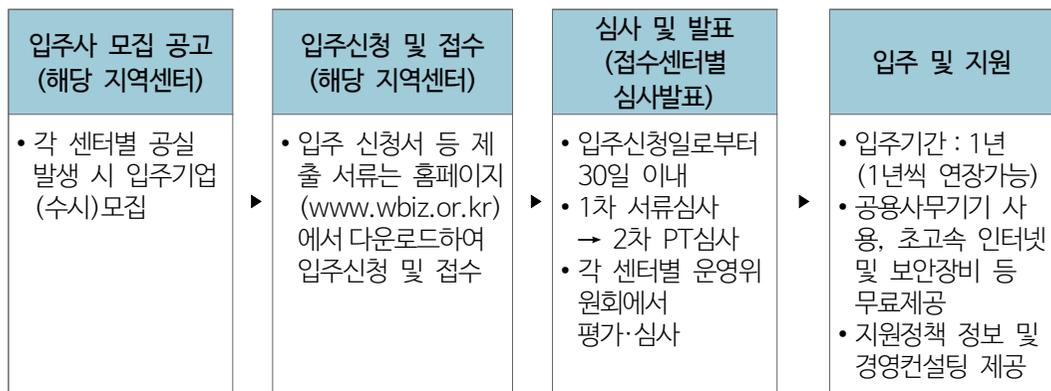
2) 현황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육실 운영,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제작, 성공한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유망업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 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등 여성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센터 입주는 입주사 모집 공고, 입주신청 및 접수, 심사 및 발표, 입주 및 지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3〉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프로세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총 보육실 225개 중에서 163개의 보육실이 입주된 상태로서, 지역적으로는 인천센터의 보육실수가 17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대구/경북, 울산, 충북이 각각 16개, 경남과 제주, 광주, 경기북부 (18년 4월 개소 예정)가 각각 15개 순으로 각 지역 센터 내에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육실 입주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IT, 패션 및 생활용품, 일반제조, 뷰티, 섬유 의류, 출판광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입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표 4-2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단위: 개, 2018년 2월 기준)

구분	보육실수	입주 업체수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주요 업종
중앙	9	9	방송/드라마 세트 디자인 응용 2차저작물, 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 자외선살균기, 손발땀, 운동기구 등
서울	16	12	애니메이션 기획, 의류, 잡화, 화장품, 광고, 전자상거래, 출판기획, 컨퍼런스 관리 시스템 등
부산	10	8	스마트폰 앱 개발, 파티용품, 화장품, 천연캔들, 여성복, 전기충격 휴대폰케이스 등
대구/경북	16	14	미술교육 콘텐츠, 한지공예, 천연염색, 발열벨트 제조, 액세서리, 영어교육 콘텐츠, 광고 등
광주	15	11	전자상거래, 애견용품, 미술교육 콘텐츠, 업사이클링 디자인, 탈모케어샴푸, 약기 제조 등
대전	10	8	생활용품, 제어계측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인천	17	15	건강 기능성 식품, 유아교육 콘텐츠, 휴대폰 부품, 화장품, 웹사이트 구축, 연마용 소모재, 데코레이션 시트 등
울산	16	11	교육지도사 양성 비즈니스, DIY 소품,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 소이캔들, 비누공예, 전자상거래 등
강원	13	9	정수 발전기, 광고 디자인, 화장품, 가방 제조, 카탈로그 등 행사용품 디자인, 동물 건강 보조식품 등
경기	10	10	교육 서비스, 유아용품, 천연 향초, 패브릭 잡화, 커피원두 무역업, 교통카드 시스템 등
* 경기북부	15	-	-
충북	16	13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유아교구 및 유아교육 콘텐츠, 화장품, 건조식품, 캐주얼 의류 등
전북	12	8	공예,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화학제품 제조, 커플룩, 스포츠 용품 등
경남	15	10	정보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광고, 디자인, 문구용 종이제품, 패류양식 및 가공식품 제조
제주	15	8	판촉물 제작, 영상촬영 서비스, 식품 제조, 광고, 디자인,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충남	10	9	섬유 디자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 스마트폰 앱 개발, 광고, 여가상품 콘텐츠 개발
전남	10	10	다시마 가공식품, 교육용 콘텐츠 개발, 디자인, 기능성 유아용품, 전자상거래 등
합계	225	165	-

* 경기북부센터는 2018년 4월 개소 예정

3) 성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인큐베이팅 성과를 살펴보면, 입주업체의 매출액은 2014년도에는 606억원, 2015년 95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963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 15.3%이며, 2015년 16.2%, 2016년 16.8%으로 업체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2014년 93.1점, 2015년 94.5점, 2016년 92.0점으로 평균 93.2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표 4-23〉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단위 : 억원,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입주업체 총매출액	606	958	963
업체평균 매출액증가율	15.3	16.2	16.8
입주업체 만족도	93.1	94.5	92.0

4) 향후 과제

창업보육시설은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교류하고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역시 여성의 창업수요 증대에 따라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보육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여성창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애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1) 개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서, 연 2.0% 이자율에 최대 1억 원까지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표 4-2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요건 :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및 신용등급 1~7등급 이내 * 지원제외대상 : 주점업, 사치·향락업종 예비창업자, 신용관리대상자,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억 원, 연 2.0% 이자율, 최대 6년(연장 2회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2) 현황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6개 지회에서 문의가능하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원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사업 담당자의 창업점포 현장 실사를 통해 검토를 진행한다. 검토과정을 거친 신청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창업자금을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원사업 선정자들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

〈그림 4-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3) 성과

1999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2016월까지 저소득 여성가장 총 65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신규지원자 19명, 기존 지원자 중 기간연장 신청자 9명에게 지원하여 총 28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4-25〉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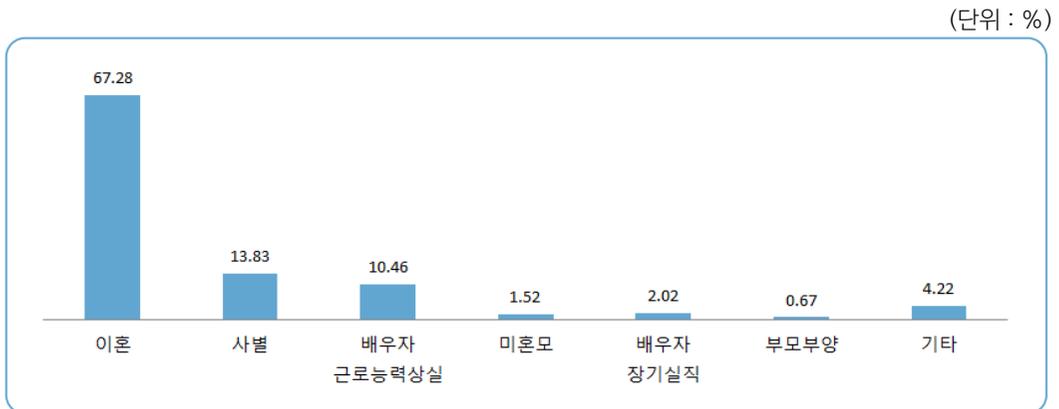
구분	연도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인원	지원인원
신규지원	13	12	18
기간연장	1	6	9
합계	14	18	28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

4) 향후과제

여성가장 창업자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신청 동기는 이혼이 67.28%, 사별 13.83%,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 10.46%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창업자금 신청 동기로 이혼과 사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여성가장들이 배우자와의 이별이 가져다주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창업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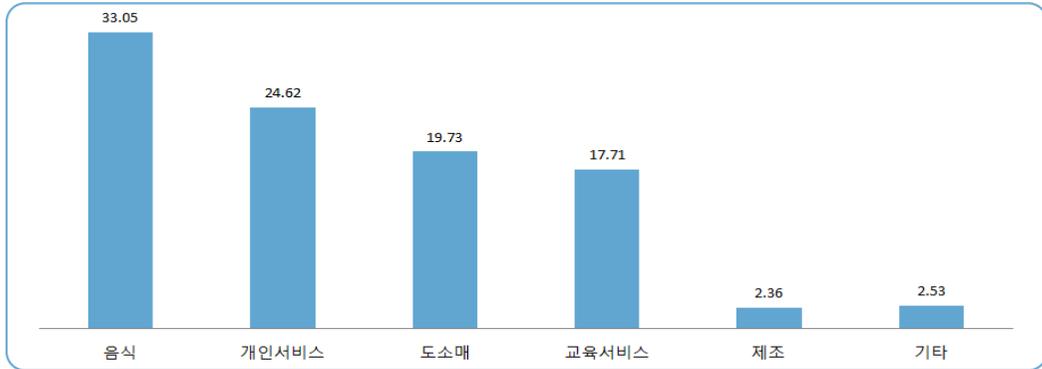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

여성가장의 주요 창업 업종의 대부분은 서비스업 형태로, 음식업이 33.05%, 개인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업 42.33%, 도소매업 19.7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규모의 자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업종을 주로 선택하여 창업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반면에 희소성이 없는 보편적인 업종 선택으로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이점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매출 상승곡선을 보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자금 지원과 더불어 업종을 선택하고 창업 이후 운영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4-6〉 창업자금 지원자의 창업 업종 선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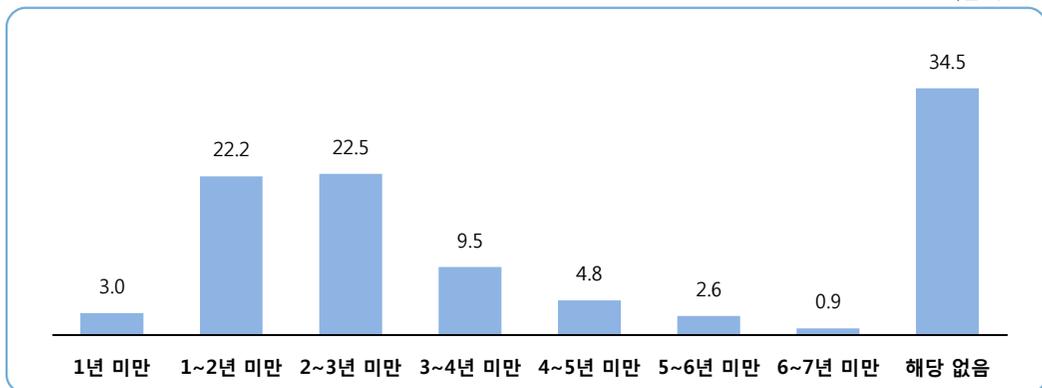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

여성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의 34.5%는 창업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여성기업 중, 1~2년 미만과 2~3년 미만에 도달한 기업은 각 22.5%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가장의 경우 대체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에 성공하고 지원자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과 더불어 창업 준비, 창업 이후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4-7〉 여성기업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단위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 추진방안

- a.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격조건 완화
- b. 지원관련 컨설팅 및 사후관리 체계화

a.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격조건 완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신규지원자는 652명으로, 18년 간 꾸준히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매년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데 비해 아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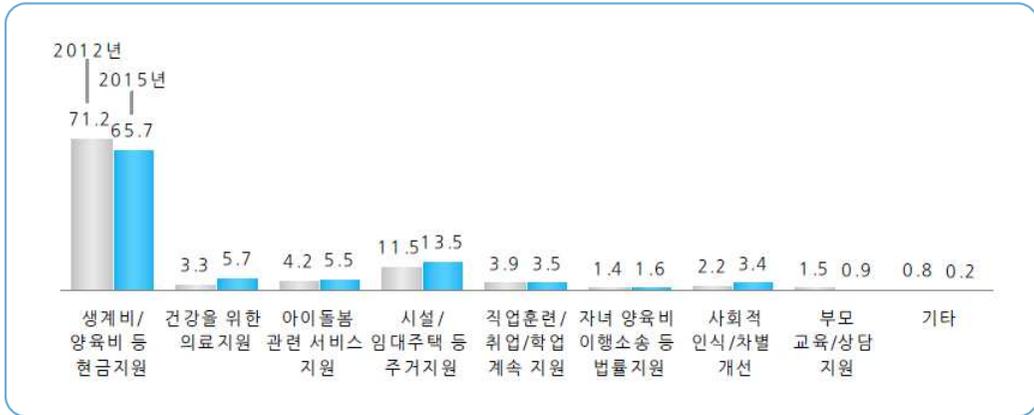
〈표 4-2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누적 현황

구분	현황
지원연도	1999년 ~ 2016년
지원자수	652명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

201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1순위는 생계비, 양육비 현금지원이 65.7%로 압도적이며,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13.5%, 아이돌봄관련 서비스 지원 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한부모가족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가장들은 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림 4-8) 한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이를 위해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원수혜자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년 창업자금 운용요령에 따르면 기존 2015년의 조건이었던 지원자에 대한 ‘선수금 납부’를 폐지하여 여성가장의 지원초기 비용을 약 89%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원 기간을 ‘최장 4년 이내’에서 ‘최장 6년 이내’로 연장하여 창업 후 여성가장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율을 ‘연 3.0%’에서 ‘연 2.0%’로 하향조정하여 지원자의 사업 운영비용 부담을 줄였다.

여성가장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대상자 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꾸준한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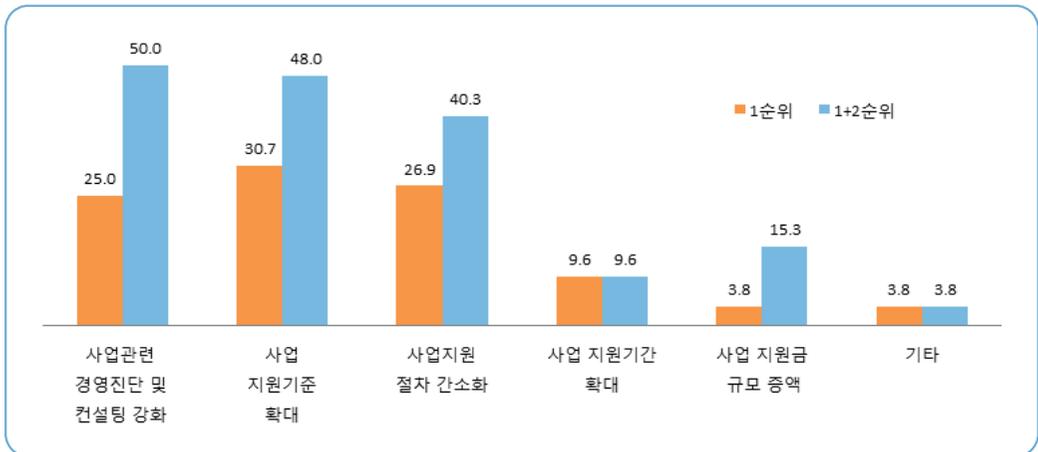
b. 지원관련 컨설팅 및 사후관리 체계화

여성가장은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어렵게 식당, 영세소매업 등을 개업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원 수혜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가장 창업자금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관련 경영진단 및 컨설팅 강화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지원기준 완화 48%, 사업지원 진행의 신속성이 40.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가장들이 체계적인 준비 없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경영상의 수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4-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점(중복응답)

(단위 :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가장 창업자금 실태조사」

따라서 지금보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첫째, 현재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발급되는 창업사업 타당성분석 이외에 창업초기 운영안정화를 위한 현장지원 및 상담 등 창업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생계형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여성가장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매 6개월 단위 경영상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실 우려가 있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컨설팅 기관 등과 업무제휴 추진을 통해 현장으로 해결 전문가 등을 활용한 경영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력 및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별도의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여성가장의 창업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여 사업의 내실화 촉진 및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조기 경영안정화로 자금회수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여성가장 창업 지원효과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라. 여성발명진흥원

1) 개요

여성발명진흥사업은 여성의 지식재산권 창출역량 강화 및 우수한 여성발명의 사업화를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시행되는 특허청의 지원사업으로써 사업수행기관은 (사)한국여성발명협회이다. 지원대상은 여대생, 주부 등 일반여성이 신청 가능한 여성발명창의교실, 웹진 발명하는 사람들, 생활발명 발굴지원사업, 변리자문서서비스 등이 있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여성발명인 및 기업인이 신청 가능한 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가 있다.

〈표 4-27〉 여성발명진흥사업 주요혜택

세부사업명	참가자 혜택
여성발명창의교실	발명과 지식재산권 기초 교육프로그램
발명하는 사람들	지식재산정보 수록된 월간 발명정보 웹진
생활발명코리아	(부문1) 지재권 출원, 시제품제작, 정부시상 등 (부문2) 시제품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세계여성발명대회	발명품 시상, 세계여성발명기업인 간 교류
여성발명품박람회	발명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비즈니스 매칭 기회

2) 현황

〈그림 4-10〉 생활발명 발굴지원사업(생활발명코리아) 프로세스



3) 성과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살펴보면, 2014년 14,934명에서 2015년 15,114명, 2016년 15,677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8〉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사업 수혜자	14,934	15,114	15,677
지원사업 예산	1,623	1,623	1,673

마. 과학기술-ICT 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지원

1) 개요

과학기술-ICT 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지원 사업은 공학 및 ICT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성향, 행동양식, 강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 컨설팅을 지원한다.

2) 현황

여성과학기술인 창업경진대회(W-STARTUP COMPETITION)는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우수 여성(예비)창업팀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경진대회 사전행사인 ‘W-STARTUP INSIGHT’를 통해 여성창업을 위한 강연과 간담회,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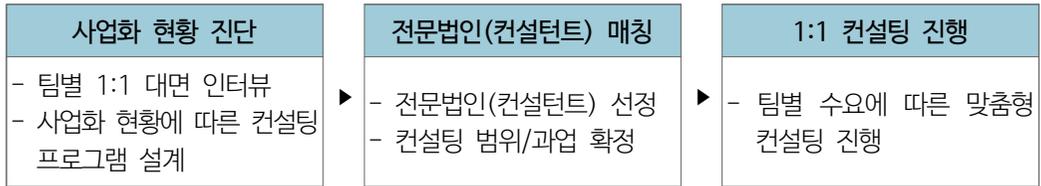
〈표 4-29〉 여성 창업경진대회(2017 W-STARTUP COMPETITION) 지원내용

구분	내용
사전행사	• W-STARTUP INSIGHT:여성창업을 위한 특강, 여성창업 성공사례 및 간담회,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지원대상	• 과학기술 및 ICT 기술기반 (예비)창업팀 및 5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 분야는 개인 참여 가능) • 참가팀 CEO, CTO가 여성이거나 팀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 경우 ※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예비) 창업팀
선발절차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본선 (반드시 팀 내 여성이 발표)
지원혜택	• 상금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02-6411-1065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는 창업경진대회 입상팀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링, 글로벌 진출을 위한 IR 코칭, 마케팅 전략 등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림 4-11〉 컨설팅 지원 프로세스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표 4-30〉 과학기술-ICT 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지원 사업성과

구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지원사업 전체 참여자 수	126명	139명	123명
창업 교육(강연) 참여자 수	87명	67명	55명
창업 아이디어 발굴(건) 수	15건	16건	10건
창업 컨설팅 지원(팀) 수	3팀	9팀	10팀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경제인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것으로 여성CEO MBA 교육,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국제회의 파견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가. 여성 CEO MBA 교육

1) 개요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은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및 여성임원으로서 강사료, 교재비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경영실무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설명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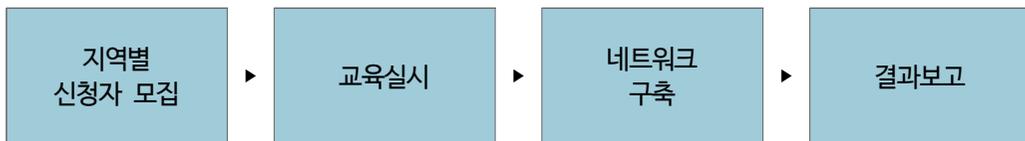
〈표 4-31〉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국 여성CEO 및 여성임원
지원사항	•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 교육횟수 및 시간 : 총 16회, 약 30시간
교육내용	• 경영실무 : 조직관리, 사업관리, 협상방법, 경영관리, 고객관리, 디자인, 브랜딩, 홍보, 법률, 세무, 특허, 마케팅 등 • 정부지원정책 :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 홍보 및 설명 • 경영자문컨설팅 : 법률, 세무회계, 마케팅, 자금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2) 현황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은 매년 경영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CEO에게 실무, 경영자문컨설팅 등의 실질적인 경영교육 운영 및 동문 워크숍, 성공기업방문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영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수강생에게 경영애로 등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절차는 지역별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그림 4-12〉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2006년부터 4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개최지역 수는 2014년 12개 지역, 2015년 16개 지역, 2016년 16개 지역으로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표 4-32〉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최 현황

(단위 : 개, 주)

구분	연도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개최지역 수	12	16	16
지역별 개최기간	12	12	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7), 「2017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개최 지역별로 참가자수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경기가 61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북부가 43명, 서울, 제주가 40명 순으로 참가자 수가 많았다. 2016년에는 상·하반기에 연 2회, 총 26회로 개최하여 월등한 참가자 수를 보이는데, 광주가 10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경남이 84명, 충북이 80명 순으로 참가자 수가 많았다.

2015년 대비 2016년 참가자 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광주가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경남 63.1%, 전북 59.1%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3〉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단위: 명, %)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			
			경영실무	협상스킬	전년대비 증가율	
수도권	서울	36	40	42	42	47.6
	경기	-	61	37	-	△64.9
	경기북부	-	43	-	34	△26.5
	인천	36	32	37	-	13.5
대구·경북		29	35	36	39	53.3
대전/충청	충북	30	34	46	34	57.5
	대전	21	30	32	26	48.3
	세종충남	28	31	-	49	42.9
광주	40	36	36	72	66.7	
전남		34	24	-	△41.7	
전북		24	27	30	36	59.1
부산/울산/경남	부산	31	37	-	47	21.3
	울산	39	34	37	31	50
	경남	38	31	34	50	63.1
강원		28	30	-	41	26.8
제주		-	40	-	59	32.2
합계		380	575	391	560	49.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7), 「2017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3) 성과

여성CEO MBA 교육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교육 수강생수는 2014년 380명, 2015년 57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연 2회 개최함에 따라 수강생 수도 951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강생 만족도는 2014년 90점, 2015년 91점, 2016년 94.3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4〉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성과

(단위: 명, 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교육 수강생수	380	575	951
교육 수강생 만족도	90	91	94.3
경영자문 상담 건수	197	272	-

주: 경영 자문 상담 건수는 '15년도 신규지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7), 「2017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4) 향후과제

기존 여성CEO MBA교육 성과평가 결과, 최신 트렌드 습득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 부여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높으나, 경영현장 및 일선에 더욱 도움이 될 실무적인 프로그램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여성경제인들을 위하여 경영능력 향상 및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경영기법, 현장사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경영실무, 해외사업, 세무회계, 마케팅 교육과 더불어 성공기업 방문을 통해 경영의지 고취 및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공기업 방문은 신기술 융복합 성공제품·서비스 사례,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리노베이션, 플랫폼 서비스 등 우수한 여성

기업 사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 여성CEO MBA교육 프로그램 예시 〉

- 4차 산업혁명시대, 나에게 알맞은 비즈니스 모델과 신상품 기획
- 고객의 마음을 여는 마케팅 기법
- 여성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시장 진출 핵심 노하우
-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 CEO를 위한 ‘인생디자인 워크숍’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 R&D 전략기획
- 바뀌는 정부 정책, 달라지는 조달 정책
- 여성 CEO 이미지리더십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

이외에도 국내외 경제 및 소비트렌드 변화, 정부의 지원 정책변화 등의 강연을 통해 여성기업이 시대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분야별 전문가가 1:1 현장코칭을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림 4-13〉 여성CEO MBA교육 추진 프로세스



여성CEO 교육에 대한 지역 내 여성기업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내 주요 신문광고 및 현수막 게재, 홍보물 제작 등과 같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의 내용 및 사례는 강연 참석자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강 이후의 강연별 자료를 취합하여 포럼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에 강연 동영상 자료를 게재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1) 개요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전국 여성경제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로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2017년 연수에서는 초청강연, 여성경제인DESK 운영, 비즈니스매칭, 일자리허브 홍보 및 문화역사기행 등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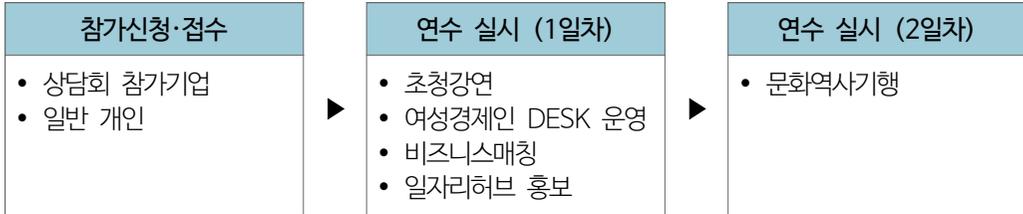
〈표 4-35〉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CEO
지원사항	•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연수내용	• 초청강연, 여성경제인 DESK 운영, 비즈니스매칭, 일자리허브 홍보, 문화역사기행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5

2) 현황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상담 및 정책건의를 위한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였으며, 각 분야의 대표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매칭을 실시하였다.

〈그림 4-14〉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3) 성과

2017년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의 참가자 수는 951명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하였다.

〈표 4-36〉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참가자수	677	731	951

4) 향후과제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는 여성경제인의 네트워킹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경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성경제인들의 전문성 및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인들간 상호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에서는 업종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분임조 운영으로 네트워킹 및 상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7년도 처음 시행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여성경제인들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1) 개요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각 국가별 정책공유 및 세계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각 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국여성대표단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업 대표이며 회의 참가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를 지원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식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현지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참가이며 APEC 여성경제포럼(APEC-WEF), 글로벌기업가정신 정상회의(GES), 세계여성경제인총회(FCEM) 등 국제회의참가를 지원한다.

〈표 4-37〉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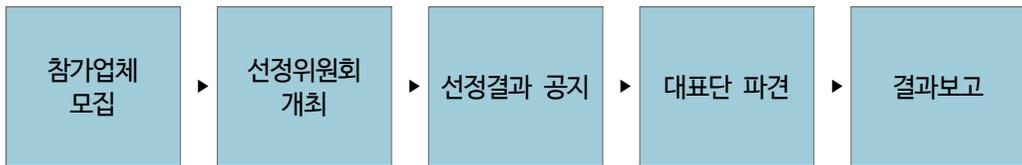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대표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참가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의 공통경비 지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본회의 및 세미나 등 공식행사 참가 - 주제별 워크숍 참가 및 발표 - 네트워킹 런치 및 만찬 참가를 통한 해외여성기업인과 교류 - 주최국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 참여
2016년 참가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중국 상해 Global Forum(중국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인원 : 2016년 11월 23일~25일/ 7명
2017년 참가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EM 세계여성경제인총회(모나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인원 : 2017년 3월 14일~17일/ 11명 • APEC 여성경제포럼(WEF, 베트남 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인원 : 2017년 9월 26일~29일/ 8명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자료: 중소기업부(2017), 「2017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 현황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공식회의에 참가하여 국가별 여성지원정책을 공유하며 주최국과의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한다. 절차는 참가자 모집단계, 파견 준비단계, 대표단 파견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그림 4-15〉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하며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여성경제인대회는 2006년 국내에 처음 유치한 이후, 2012년 재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동 대회에서 아시아 지역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부회장이 한국 대표단에서 선임된 성과도 얻게 되었다.

3) 성과

연도별 참가자 수는 파견횟수 축소와 내부 행사 일정으로 2016년은 7명 참석하였으나, 2017년은 여성기업인들의 국제회의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18명이 참석하여 당초 목표 15명 대비 12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2016년에는 중국 상해 Global Forum을 참석하였고, 2017년은 APEC 여성경제포럼과 FCEM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회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38〉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참가자 수	11	7	18
파견회의	APEC 제20회 회의	-	APEC 제22회 회의
	-	-	FCEM 제 65회 회의
	한미 첨단산업 포럼 제1회 회의	중국 상해 Global Forum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7), 「2017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4) 향후과제

국제회의 참석시 한국대표단의 구체적 역할 창출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바,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사전관리로 대표단 파견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교류협력 정례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위한 해외 주요 여성기업 및 여성단체와의 교류협력 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늘려야 하겠다.

이에, 해외 여성단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출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지원정책 공유를 통한 활발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여성기업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공동브랜드 여음, 서로사랑네트워크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이 있다.

가.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1) 개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실무교육을 지원하며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기업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초석마련을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표 4-39)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초보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출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내수기업을 신규수출기업으로 발굴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문바이어(B2B) 참가지원 • 수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및 해외 특정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교육 실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은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별 1:1 맞춤형 수출컨설팅으로 효과적인 전략 수립 지원 및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유관기관의 수출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표 4-40〉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16년)직접수출 실적이 없는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문가의 1:1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및 KOTRA 수출전문위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및 바이어정보 제공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비 및 번역비 지원

수출교육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특정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 전략 교육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 한다.

〈표 4-41〉 수출교육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초보 무역실무 교육 유망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별 마케팅 교육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거래되는 해외 유력 바이어 전문전시회(B2B) 참가지원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신규 거래선을 개척 및 확대하여 수출여성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글로벌 최신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여성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표 4-4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유망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력 바이어 전문전시회(B2B) 참가지원을 통한 신규거래선 개척 및 확대 • 글로벌 최신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하므로써 글로벌 시장 판로 확대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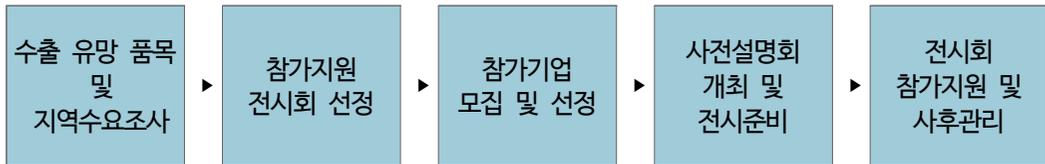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수출전문위원과의 1:1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수출전략수립 단계, 무역실무교육 등을 통한 수출역량개발 단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활용한 수출활성화 단계,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기업화 단계로 추진된다.

〈그림 4-16〉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특히,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향후 수출 유망 사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지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참가지원 전시회를 선정한다. 이후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사전설명회 개최, 사전마케팅, 통역원 매칭 등 전시 준비지원, 전시회 참가 현장지원 및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7〉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프로세스



3) 성과

신규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수출기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2016년 KOTRA와 MOU를 맺었으며, 2017년에는 15개사를 지원하였고 이 중 6개사가 총 44,323달러 수출에 성공하였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2016년 미국 2개, 인도네시아 1개, 중국 1개 등 4개의 전시회에 총 38개사를 참가 지원하여 20,755천 달러 수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이탈리아, 홍콩,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3개 전시회에 30개사를 참가 지원하여 11,441천 달러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에는 GTEP(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활용할 예정이다.

〈표 4-43〉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목록

구분	'16 , '17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전시회명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미국 라스베이가스 소비재 전시회(14개사 지원) • '16년 인도네시아 화장품 전시회(6개사 지원) • '16년 중국 이우 국제 소상품 전시회(10개사 지원) • '17년 미국 뉴욕 홈앤라이프-스타일 전시회(8개사 지원)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이태리 밀라노 가정용품 전시회(14개사 지원) • '17년 홍콩 메가쇼(4개사 지원) • '17년 UAE 두바이 보석 전시회(4개사 지원) • '17년 러시아 모스크바 미용 전시회(8개사 지원)

4) 향후과제

기존의 수출기업화의 효과적인 추동을 위해서는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교육을 첫 단계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추후에는 수출교육을 연초에 실시하여 수출준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수출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개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표 4-44〉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2) 현황

여성기업 확인접수는 온라인(www.smpp.go.kr)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접수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검토후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그림 4-18〉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3) 성과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건수는 2013년 4,540건, 2014년 7,467건, 2015년 8,153건, 2016년 9,242건으로 2015년 대비 약 13.4%가 증가하였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구매 의무화로 인해 2014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45〉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확인서 신청건수	5,235	8,767	10,080	10,683
확인서 발급건수	4,540	7,467	8,153	9,24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7), 「2017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1) 개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여성기업 확인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인서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사이트를 통한 입찰정보제공 및 입찰실무 상담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안내 등을 지원한다.

(표 4-4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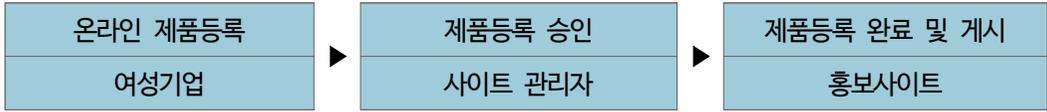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체 • 공공구매 업무 담당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공공기관 입·낙찰 정보제공 및 상담 • 공공기관 구매설명회 개최 안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자료: 중소기업부(2017), 「2017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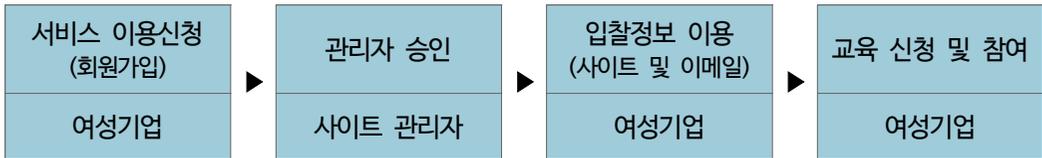
2) 현황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과 입찰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 여성기업제품 홍보 사이트 운영 지원사업은 온라인 제품등록, 제품등록 승인, 제품등록 완료 및 게시 등 총 3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은 서비스 이용신청, 관리자 승인, 입찰정보 이용, 교육 신청 및 참여 등 총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4-19〉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그림 4-20〉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3) 성과

공공구매 제도 홍보를 통해 여성기업의 입찰 참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입찰 참여 여성기업 수는 1,413건으로 전년에 비해 57.2% 증가하였다.

〈표 4-4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입찰참여 여성기업 수	542	899	1,4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7), 「2017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제품 전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2012년 106.4조원, 2013년 113조원, 2014년 111.5조원, 2015년 119.조원, 2016년 116.9조원 이며 그 중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액은 2012년 3.41조원, 2013년 4.48조원, 2014년 5.49조원, 2015년 7.14조원, 2016년 8.34조원 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3.2%, 4.0%, 4.9%,

6.0%, 7.1%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2016년 기준 전년대비 구매실적이 1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공공기관 제품구매에 있어서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표 4-48〉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구매액	106.4	113	111.5	119.2	116.9
여성기업제품구매액	3.41	4.48	5.5	7.14	8.34
구매비율	3.2	4.0	4.9	6.0	7.1

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17개 시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14.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12.9%, 제주특별자치도 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5년 대비 2016년 여성기업의 구매실적 증감율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95.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울산광역시가 6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9〉 17개 지자체 공공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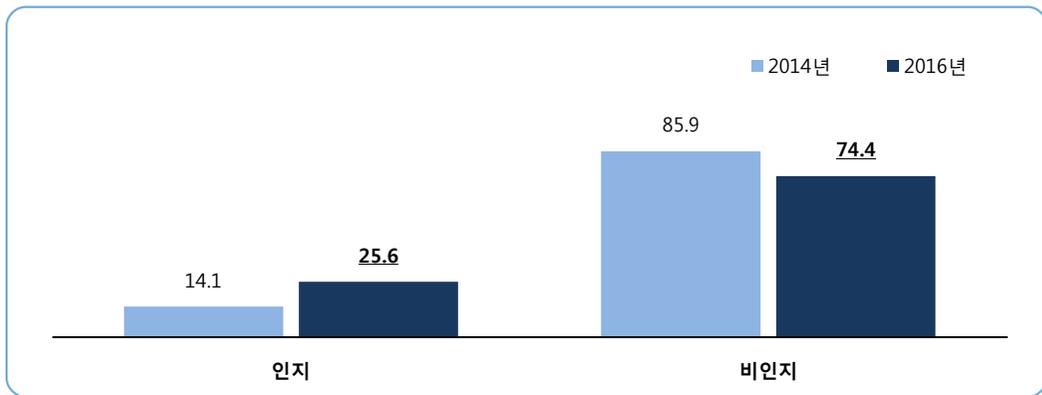
기관명	2015년 여성기업구매실적	2016년 총구매실적(A)	2016년 여성기업 구매실적(B)	비중	여성기업 증감율
				(B/A)*100	
강원도	225,890	3,122,375	284,297	9.1	25.9
경기도	393,268	5,690,083	545,854	9.6	38.8
경상남도	248,713	3,164,809	285,934	9.0	15.0
경상북도	288,228	4,240,999	394,272	9.3	36.8
광주광역시	68,460	463,792	43,322	9.3	-63.3
대구광역시	54,878	877,611	69,165	7.9	26.0
대전광역시	48,269	478,516	61,867	12.9	28.2
부산광역시	122,059	1,201,626	127,074	10.6	4.1
서울특별시	268,077	3,743,244	318,735	8.5	18.9
세종특별자치시	17,277	235,152	33,824	14.4	95.8
울산광역시	47,817	764,687	78,749	10.3	64.7
인천광역시	59,010	1,151,382	90,627	7.9	53.6
전라남도	240,714	3,467,143	301,029	8.7	25.1
전라북도	184,699	2,223,156	219,181	9.9	18.7
제주특별자치도	99,755	966,872	117,622	12.2	17.9
충청남도	192,424	2,431,973	251,612	10.3	30.8
충청북도	133,825	1,738,690	161,950	9.3	21.0
합계	2,693,363	35,962,110	3,385,114	9.95	26.0

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4) 향후과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여성기업이 74.4%¹⁵⁷⁾에 달하며, 공공구매 납품경험이 없는 기업이 전체 여성기업의 89.8%에 달하는 등 공공구매 활용도도 낮은 수준이다.

〈그림 4-21〉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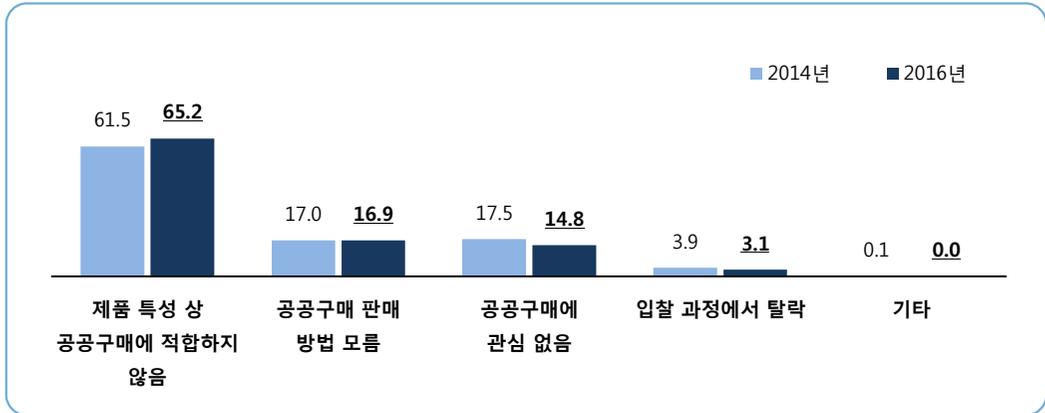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 방법을 모르거나 관심 없는 기업이 31.7%,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부적합이 65.2%로 나타났다.

157)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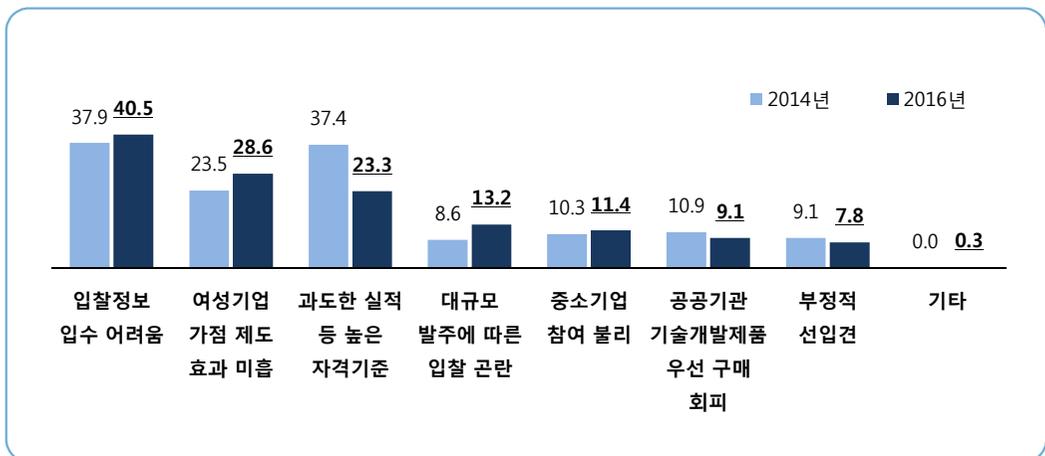
〈그림 4-22〉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없는 이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또한 공공구매 입찰 시 입찰정보 입수 어려움 40.5%, 여성기업 가점제도 효과미흡 28.6%, 과도한 실적 등 높은 자격기준 23.3%, 대규모 발주에 따른 입찰곤란 13.2%, 중소기업 참여 불리 11.4%, 공공기관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회피 9.1%, 부정적 선입견 7.8% 등으로 인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공공기관 구매 입찰 시 애로사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비하면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여성기업은 전체기업 3,604,77개 중 1,393,974개사를 차지, 38.7%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116.9조 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86.1조원으로 73.7%를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8.34조원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차원의 보완과 여성기업 제품이 입찰 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한 여성기업계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라. TV홈쇼핑 입점 지원

1) 개요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제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입점을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여성기업으로 선정된 여성기업에게는 홈쇼핑 입점 교육, 제품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상품품평회, 영상제작비, TV홈쇼핑 입점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표 4-50〉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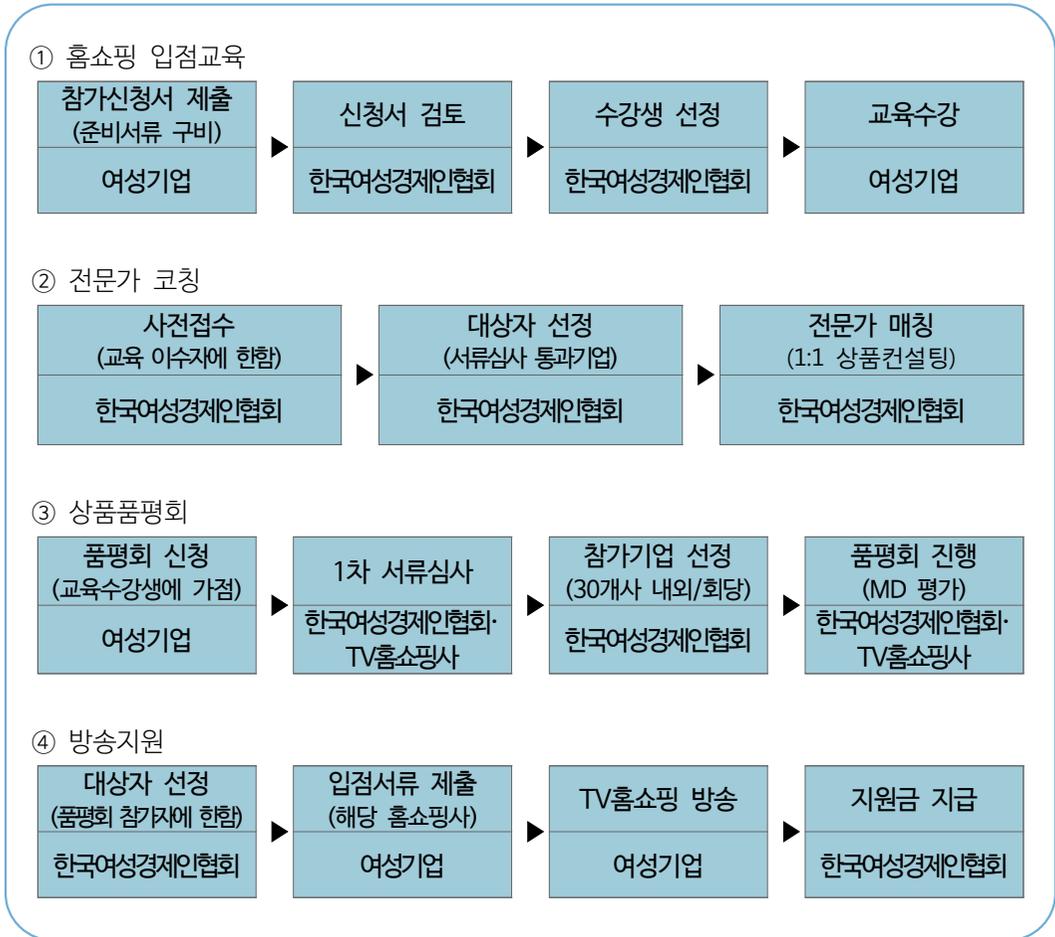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 규모	• 여성기업 200개
지원 대상	•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여성기업
지원 내용	• 홈쇼핑 입점교육, 전문가 코칭, 홈쇼핑 방송수수료, 인서트영상 제작비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제품소개서, TV홈쇼핑 입점희망 신청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jin.kim@wbiz.or.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2) 현황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방송에 필요한 홈쇼핑 방송프로세스, 제품카테고리별 상품 전략 교육 및 전문가 코칭을 통해 방송에 적합한 상품으로 리뉴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 입점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최종 방송업체를

선정한다. 지원금 중 방송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해당 TV홈쇼핑사에 일정 비율로 시기에 맞춰 지급하며, 여성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영상제작비 지원금은 방송 송출이 완료된 후 각 기업별로 협회의 지원금 지급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그림 4-24〉 TV홈쇼핑 입점 지원 프로세스



3) 성과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으로 1단계 홈쇼핑 입점 교육 품평회는 206개사가 지원했고, 그 중 16개사를 홈쇼핑 방송에 지원해 여성기업의 판로를 마련해주었다.

〈표 4-51〉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성과

구분	내용		
	목표 기업 수	지원기업 수	목표대비 기업지원률
홈쇼핑 입점교육 및 품평회	200	206	103%
방송 지원	15	16	106.7%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4) 향후과제

2017년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에 참가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1위는 보유 상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브랜드로서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 구축, 마케팅 전담인력의 부재, 노하우 부족 등이 여성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기업 제품의 브랜딩과 관련한 홍보 및 광고 등 마케팅 및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중성을 갖춘 제품의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구체화 시켜 성공적인 브랜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기업확인사업과 협업하여 B2C여성기업들의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미디어 홍보 및 광고를 통해 유망한 신규 여성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마.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1) 개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인증브랜드 ‘여움’은 일반 국민들에게 여성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인증브랜드 초기 사업화 단계로 품질은 우수하나 자체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제품을 보유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중소기업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4-52〉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추진내용

구분	2016	2017	2018 목표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브랜드 개발 회원사 대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업체(회원사)모집 일반소비자 대상 홍보 국내 유통채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모델 구축 사회적 책임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움몰: www.yeoum.co.kr 여움 홍보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B1 개관 (201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4 		

2) 현황

2016년 인증브랜드 ‘여움’ 개발 이후 ‘여움 1기’는 지원한 161개사 중 73개사를 선정하였다. 현재 2017년 ‘여움 2기’는 28개사가 선정되었다. ‘여움’에 선정된 기업은 기수에 관계없이 활동을 계속 지원하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여움몰과 여움홍보관에 입점가능하다.

〈그림 4-25〉 인증브랜드 선정절차



3)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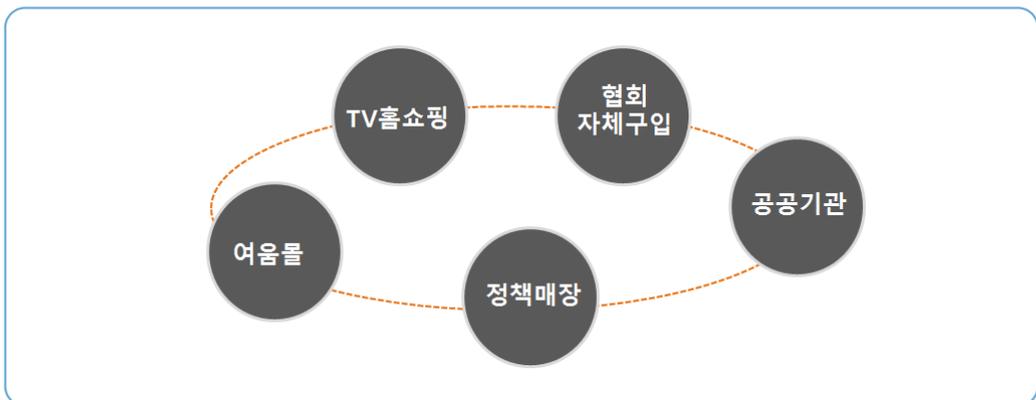
인증브랜드 ‘여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배너광고를 통해 홍보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여움몰로 유입시켰다. 또한 2017년에는 대형유통업체와 MOU를 맺어 ‘여움 브랜드전’을 개최하였고, 이 기간 동안 34개사가 총 45,764,328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움몰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의 MD와 벤더들이 ‘여움’에 선정된 기업의 상품을 론칭하기 위해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여움 홍보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약100개사의 상품이 전시 중에 있다.

4) 향후과제

인증브랜드 ‘여움’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각 유통채널별 최적화 제품 주력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판로확보를 위한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움’에 선정된 기업을 위한 마케팅과 전문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6〉 국내 유통채널 확보



바. 서로사랑 네트워크 운영

1) 개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제품에 대해 회원사간 직거래 장터를 통한 판로 확보를 위해 서로사랑 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현재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여성기업간 상호거래를 통해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표 4-53〉 서로사랑 네트워크 운영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사의 매출 증진을 도모하고, 가입하고 있는 회원사 제품을 홍보하여 거래의 활성화 및 매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41 서로사랑 네트워크 사이트 : www.welove7co.kr

2) 현황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사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회원사간 구매를 통해 판매자에게는 판로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효과를 주고, 구매자에게는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능하여 생산자와 구매자의 공동이익을 제고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직접생산제품에 한하여 판매자 신청 및 제품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이용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가능하다

〈그림 4-27〉 서로사랑 네트워크 판매자 신청 절차



3) 성과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개발 당해년도인 2016년에는 24개 품목이 거래되었고, 2017년 57개 품목의 제품이 판매되어, 서로사랑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간 거래는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37.5%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서로사랑 네트워크 플랫폼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리뉴얼 되었다.

4) 향후과제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B2C간 거래가 아닌 여성기업간 거래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형 웹사이트이다. 이에 향후 여성기업의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사랑 네트워크의 이용률을 높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1) 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은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지원하고, 최소 5억원에서 6억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4-5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p>1)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수출유망: 최근 2년 내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품목 기술개발 지원 - 수출초보: 최근 2년 내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품목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기업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기업: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품목을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 스타벤처: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추천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p>2) 지원조건</p> <table border="1" data-bbox="367 1136 1208 1277"> <thead> <tr> <th>구분</th> <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 <th>정부출연금 비중</th> </tr> </thead> <tbody> <tr> <td>수출기업기술개발</td> <td>최대 2년, 6억 원</td> <td>65% 이내</td> </tr> <tr> <td>혁신형기업기술개발</td> <td>최대 2년, 5억 원</td> <td>65%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수출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 원	6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수출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 원	65% 이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5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유선 042-1357)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tech.go.kr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2018년 1월 기준)

2) 현황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이 중요 평가 기준이 된다.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순으로 실시되며 최종 선발되어 협약된 이후에는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기술개발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그림 4-2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3) 성과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 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1,107개 사 중에서 46개 사로, 전체에서 4.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 총 217,067백만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9,985백만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기업지원 실적을 보면, 2014년 47개사, 2015년 54개사, 2016년 46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지원금액은 2014년 10,068백만원, 2015년 11,603백만원, 2016년 9,98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55〉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사,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6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 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기업 수	1,007	46	4.6	47	54	46
지원 금액	217,067	9,985	4.6	10,068	11,603	9,985

주: 16년은 추정치

자료: 여성가족부(2017), 「성인지 예산서」

아. 중소기업 R&D역량제고

1) 개요

중소기업 R&D역량제고지원사업은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제고 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총사업비의 50~100% 정도의 금액을 1년간 최대 3,000만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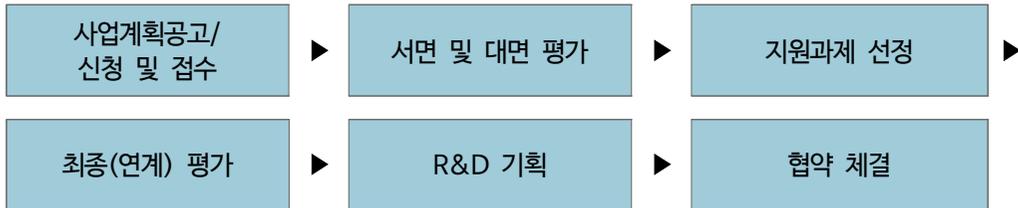
〈표 4-56〉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지원 분야 및 지원 조건	<p>1) 지원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기획지원 (57억 원)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지원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 (49억 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및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8억 원) :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및 코칭실시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 (51억 원) : R&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공과대학의 교수 (전임강사 이상)를 매칭하여 해결 지원 <p>2) 지원 조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구분</th> <th>지원기간 및 지원한도</th> <th>정부출연금 비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R&D 기획지원</td> <td rowspan="2">R&D 기획지원</td> <td>멘토링과제</td> <td>최대 2개월, 5백만원</td> <td>80% 이내</td> </tr> <tr> <td>전략과제</td> <td>최대 4개월, 25.5백만원</td> <td>75% 이내</td> </tr> <tr> <td colspan="2">R&D기획역량강화교육</td> <td>2일 이내</td> <td>100%</td> </tr> <tr> <td colspan="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td> <td>최대 1년, 30백만원</td> <td>50~75%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R&D 기획지원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최대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전략과제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1년, 30백만원	50~75% 이내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R&D 기획지원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최대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전략과제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1년, 30백만원	50~75% 이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5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74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2018년 1월 기준)

2) 현황

〈그림 4-29〉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프로세스



3) 성과

2016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178개 사 중에서 18개 사이며, 전체에서 10.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4,561백만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이 459백만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10.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16년 대비 지원금액 기준으로 18.6% 증가한 수치이다.

〈표 4-57〉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성과

(단위 : 개,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6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 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기업 수	178	18	10.1	13	17	18
지원 금액	4,561	459	10.1	318	387	459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 공정·품질 기술개발

1) 개요

기존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한 뿌리기업공정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표 4-58〉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품질 기술개발(44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공정개선(356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뿌리기업공정 (8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제품공정개선	최대 1년, 5천만원	75% 이내
	뿌리기업 공정	최대 1년, 1억 원	75% 이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2018년 1월 기준)

2) 현황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건강진단연계형 사업으로, 건강진단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주체의 역량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을 검증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림 4-30〉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프로세스



3) 성과

공정·품질개선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2016년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600개사 중에서 81개사이며, 전체에서 1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 금액으로 보면, 총 37,714백만 원 중 여성기업의 지원 금액은 5,091 백만 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1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59〉 공정·품질개선기술개발사업 성과

(단위 : 개사,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6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 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기업 수	600	81	13.5	85	79	81
지원 금액	37,714	5,091	13.5	3,481	3,867	5,091

자료: 여성가족부(2017), 「성인지예산서」

주: 2016년은 추정치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 수는 2014년 85개 사, 2015년 79개 사 2016년 81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금액은 2015년 3,867백만 원에서 2016년 5,091백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31.7%가 증가하였다.

차. 창업성장 기술개발

1) 개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 사업비의 80%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4-60〉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 창업과제 : 창업 7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 여성R&D과제 : 여성기업, 잠재능력은 있으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을 고용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팀(2인 이상) • 1인 창조기업 과제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이공계 창업꿈나무과제 : 이공계전공자, 타분야 재학 및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창업팀(2인 이상)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1) 창업기업과제 :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창업디딤돌과제 :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혁신 창업과제 : 고기술유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R&D, R&D+사업화·IP전략)지원 * R&D : 글로벌지향형, 스피노프형, 기술도입형 및 R&D 집약형 등 4가지 유형의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R&D+사업화 : 창업 후 3~7년 기업으로 신청자격 요건 제한 2)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 크라우드펀딩 등이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클라우드펀딩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 클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8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2018년 1월 기준)

2) 성과

2016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1,303개사 중에서 180개사이며, 전체에서 1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179,556백만원 중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19,788백만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1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1〉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6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 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기업 수	1,303	180	13.8	101	177	180
지원 금액	179,556	19,788	11.0	13,216	21,923	19,788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은 여성경제인DESK운영,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연구조사 기능 확충,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이 있다.

가. 여성경제인 DESK 운영

1) 개요

여성경제인 DESK는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해결하기 위한 창구의 필요성 제기(2014.12, 대통령 주관 「여성기업인 초청 오찬간담회」)에 따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기업 정책건의 전용창구로서 「여성경제인 DESK」를 설치하였다.

지원대상은 예비 여성창업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예비 여성경제인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이다.

〈표 4-62〉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구분	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2) 현황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들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9곳에 거점지역을 두고, 전국 17개 지역센터에서 여성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그림 4-31〉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단계	수행 방법	비고
여성기업 (신청)	▶ 정책아이디어 및 현장경영 애로사항 신청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	여성기업
↓		
여성경제인 DESK 접수 (해당지역 센터)	▶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신청접수	17개 지역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접수
↓		
전문위원 상담 (센터 방문 또는 기업)	▶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 및 해결	-
↓		
관계부처 협의 및 해결	▶ 미결과제 접수 및 해결 ▶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개선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이관해결	중소벤처기업부
↓		
결과 안내 (여성경제인 DESK)	▶ 처리결과 종결 및 회신	-

3) 성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성경제인 DESK는 ① 중앙·강원, ② 인천·서울, ③ 경기, ④ 충북·세종충남, ⑤ 대전·전북, ⑥ 광주·전남·제주, ⑦ 대구경북, ⑧ 부산·울산, ⑨ 경남으로 총 9개의 거점지역을 두고 있으며, 각 거점지역에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상담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4-63〉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담건수	764건	1,066건	1,766건

4) 향후계획

여성경제인 DESK는 여성경제인들의 애로를 상담하는 전문위원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매뉴얼 도입을 통해 상담을 체계화 하고, 여성기업 애로상담 우수 사례집 발행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 어려움 없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1) 개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물리적인 제약 없이 전문적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과 매칭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는 프로젝트 등록부터 완료까지 단위별 1:1로 전담 관리하여 초기 상담 및 조율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경력검증을 통해 인재 추천 및 전문분야별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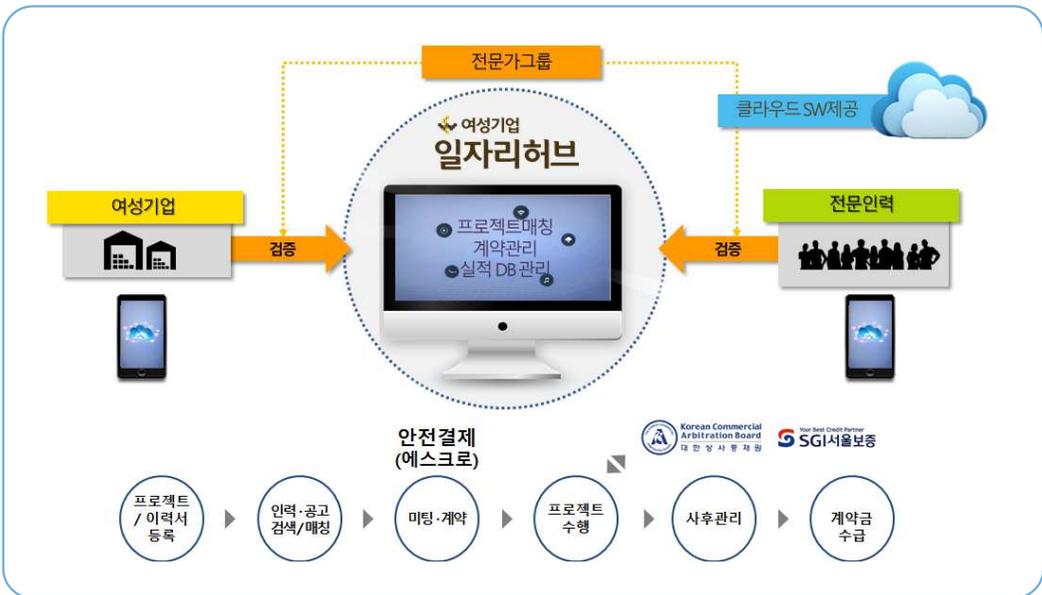
〈표 4-64〉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구분	내용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력을 물리적 제약 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매칭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등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주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이 인력 검증 및 인재 추천 등 자문 컨설팅 •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Escrow),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 업무용 SW를 클라우드 방식 (SaaS)으로 제공하고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 수행평가, 경력증빙, 경력개발 등 사후관리 ※ 일자리허브 참가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혜택 : IBK기업은행 대출금리 추가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참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 중소기업·벤처·초기창업 여성기업인 • 전문인력 : 전문가·경력자, 개인·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 주요분야 : 디자인 / IT개발 / 홍보마케팅 / 수출무역 / 회계재무 / 인사총무 등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www.iljarahub.or.kr) 회원가입 • 여성기업 : 회원가입 및 프로젝트 등록 • 전문인력 :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Tel. 02-369-0963, E-mail.ljarahub@wbiz.or.kr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 www.iljarahub.or.kr

전문인력이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이 프로젝트 계약부터 완료까지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및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여성기업회원이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일자리허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전문인력을 검증하여 계약에서 전문인력의 프로젝트 수행 후 안전결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시 업무용S/W와 클라우드를 제공함으로써 재택근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인력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4-32〉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2) 현황 및 성과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2017년 11월 3일 여성경제인의 날에 맞춰 론칭쇼를 개최하고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 유관기관·단체¹⁵⁸⁾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지도

를 확산하였고, 오픈 이후 약 2개월 시범운영 기간동안 기업회원 200개사 및 전문인력 회원 100명 가입, 50건의 프로젝트 등록 및 15건을 매칭하였다.

〈표 4-65〉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성과

구분	기업회원 수	전문인력 수	프로젝트 수	매칭 수(비율%)
성과	200개사	100명	50건 (시범운영기간)	15건(30%)

〈그림 4-33〉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158) 여성경제단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3) 향후과제

2017년 11월 처음 시작한 여성기업 일자리허브가 사업초기 빠르게 활성화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해도와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사업의 주요 수혜대상인 전국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명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접점을 마련하고, 지하철·신문 광고, 온라인 프로모션과 더불어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을 커버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다.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1) 개요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및 유용한 경영정보, 통계 등 여성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하였다. 포털시스템 최적화로 온라인 사업 등록·신청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의무화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만을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판로를 촉진하고 있다.

〈표 4-66〉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및 여성기업인
지원내용	• 포털사이트를 통한 사업 지원 및 경영정보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한 여성기업제품 홍보 및 구매문의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41

2) 현황

a.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지원사업 공고, 신청, 진행 현황관리, 사업평가 및 결과 통보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참여이력 및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가장창업자금, 여성CEO MBA교육, 여성특화 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을 통합 정보망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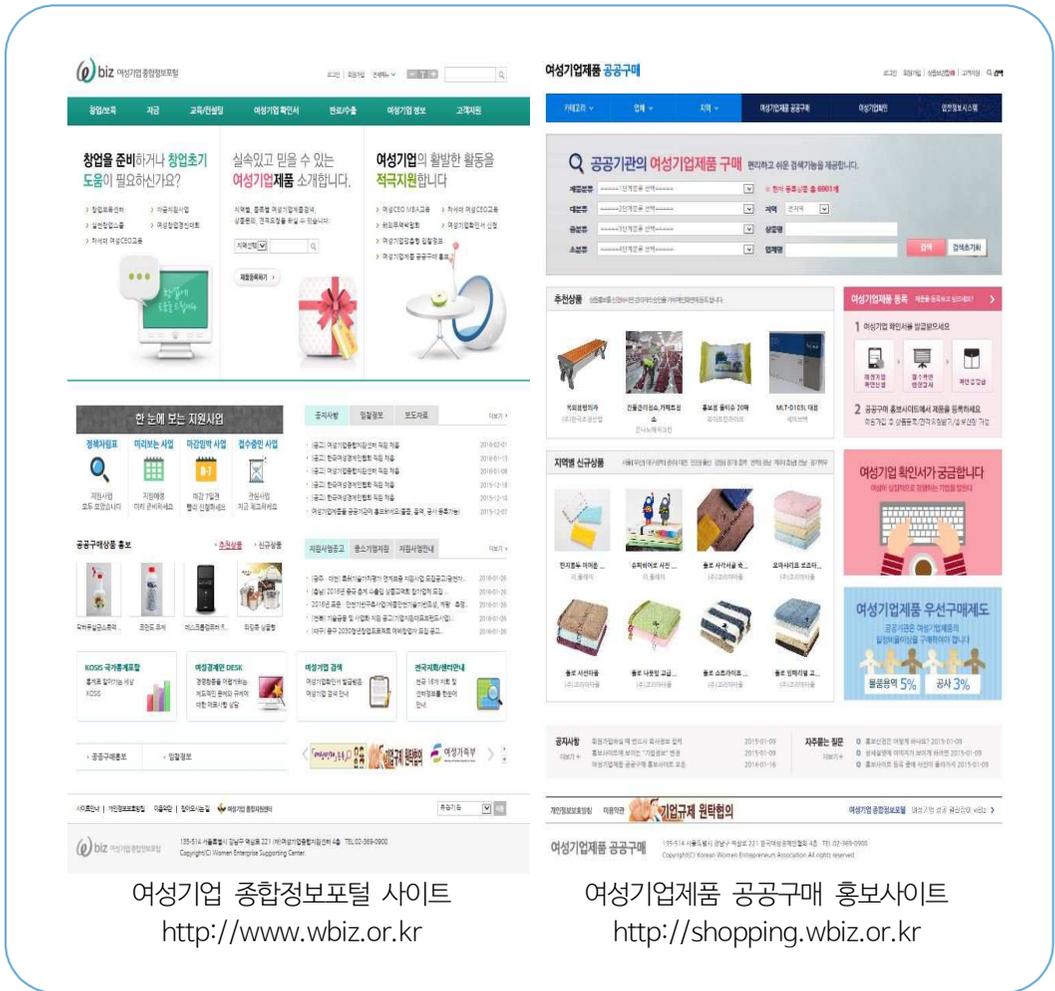
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¹⁵⁹⁾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여성기업제품을 등록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약1,300여개의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2018년까지 약 1,600여개 업체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정보

여성기업 통합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유형별, 생산제품별, 산업분류 등을 통한 여성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 구축으로 통합로그인,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일정관리, 설문조사, 전자결재, 문서함, 주소록 관리,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DB연계 개발로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개발로 운영 환경이 개선되었다.

159)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967호, 2013. 7. 30., 개정)

〈그림 4-34〉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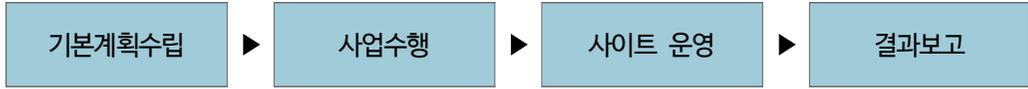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사이트
<http://www.wbiz.or.kr>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http://shopping.wbiz.or.kr>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계획은 수립단계, 사업수행단계, 사이트 운영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그림 4-35)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프로세스



3) 성과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3개년 추진 프로젝트로서, 1차년도(12년)에는 통합망 기반 구축단계, 2차년도(13년도)에는 통합망 고도화 단계, 3차년도(14년)에는 통합망 운영·개선 사업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대내 통합시스템인 사내인트라넷과 기업정보관리, 지원사업관리 부문, 대외 통합시스템, 여성기업지원정책정보, 온라인 기업 마케팅, 민원처리, 여성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털사이트 업데이트 및 지원사업관리 기능개선을 위해 창업, 교육, 여성가장창업자금, BI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시스템,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구축, 그룹웨어와 결제 연동 가능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하도록 구축하고, 통합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4년도에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업데이트로 여성기업 제품 등록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의 DB연계 개발로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개발로 운영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4) 향후과제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은 정부가 제안한 여성기업 활동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판로개척을 용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성기업인들이 정부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을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a. 지원사업에 대한 매뉴얼

전 사업에 대한 사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인수자가 없어도 매뉴얼만 보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16개 지회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업무 미숙함을 나타내지 않고, 공백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재 구축된 사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수요자에게는 더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다.

b. 여성기업 지원정책 통합정보 제공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이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전체 49.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기술, 자금지원, 유망기술동향, 신제품 자료 및 각종 정책정보에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콘텐츠 공유 기능을 구현하여 홍보를 활성화한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전용 웹(WEB)서비스 구축 및 맞춤형 최신 관심정보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라. 여성기업 연구조사

1)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연구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이다.

〈표 4-67〉 여성기업 연구조사팀 운영

구분	내용
소개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연구조사팀 운영
주요목적	•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
주요성과	• 여성기업 실태조사·여성기업백서 발간을 통한 정책 기반자료 생성 * 여성기업 실태조사 DB 구축('03, '05, '07, '09, '11, '13년, '15년, '17년) • 제조업의 경쟁력분석(생산성), 여성기업 고용률 분석, 공공구매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여성기업 연구실시 • 여성기업 조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조사연구) 여성기업가정신 조사,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 수출여성기업의 성장요인 조사 등 - (정책연구) 여성기업 전용공제조합 설립 운영방안, 여성기업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시장구조 확대에 따른 여성기업 판로확대 제고 방안 등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조사팀 02-369-0900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조사팀

2) 현황

연구조사팀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동향 분석 등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연구보고서 체계를 정비하여 정기연구, 수시연구, 연구용역으로 나누어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기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하고 있다.

3) 성과

보고서 발간 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8건 2017년 8건으로 자체 연구 비중은 2016년 37.5%였지만 2017년 75.0%로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내부 연구 비중이 37.5%p 증가했다.

〈표 4-68〉 연구조사팀 보고서 발간 건수

(단위 : 건, %)

구분	연도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고서발간 수	7	8	8	8	8
자체연구 비중	57.1	50.0	75.0	37.5	75.0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조사팀

4) 향후과제

여성기업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통계기반을 마련하고, 여성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기업 연구·조사 및 정책제안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조사 및 통계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화 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여성인재 아카데미

1) 개요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유능한 여성 중간관리자를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특화된 경력관리와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대상별 여성 중간관리자와 전문직 여성 대상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역량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은 조직 내 경력개발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간기업 여성 중간관리자,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 전문직 여성, 기타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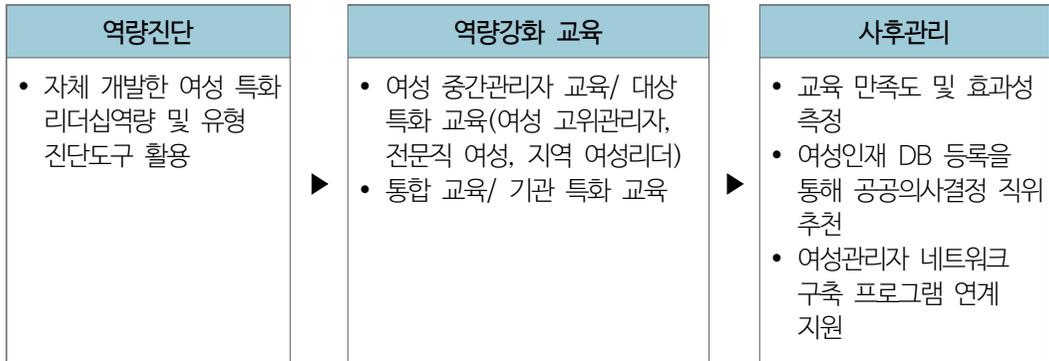
〈표 4-69〉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 여성 중간관리자, 전문직 여성, 지역 여성리더, 임원 후보군(고위 관리자)
교육형태	• 집합교육(2일 기본과정, 1일+온라인 혼합과정, 야간심화과정),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	• 조직 및 자기이해(역량진단), 소통 및 협상력 강화, 조직 관리 역량강화
문의처	• (사업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195, 6196 • (교육 신청 및 문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2-3156-6101

2) 현황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교육 대상별, 기관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사전 역량진단-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4-36〉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프로세스



3) 성과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2013년 6월 개소해 2017년까지 3만명 교육('13년 2천명, '14~'17년 각 7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말까지 총 23,208명을 교육하였다.

〈표 4-70〉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육인원	7,014명	7,067명	7,000명

자료: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 개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연계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 새일센터)를 통하여 찾아가는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창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차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 사업이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사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표 4-71〉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 미취업한 상태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
지원사항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문의처	• 여성가족부 : 02-2100-6206 • 고용노동부 : 044-202-7202

2) 현황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새일센터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단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을 위한 승인단계, 새일센터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추진단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만족도 조사단계 등 총 5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4-37〉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프로세스



3) 성과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이며, 취업 인원은 2014년 129,332명, 2015년 140,040명, 2016년 149,702명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하였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원은 '16년도 14,040명이며,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은 2014년 6,083명, 2015년 6,959명, 2016년 5,68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72〉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새일센터 이용자(구직자)수	251,466명	283,119명	314,545명
새일센터 취업자 수	129,632명	140,040명	149,702명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원	15,094명	16,689명	14,040명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	6,083명	6,959명	5,680명

주: 2016년은 추정치

자료: 여성가족부(2017), 「성인지 예산서」

사.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1) 개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3년간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50%를 보조해주고 추가 3년 연장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표 4-73)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파견인력 급여 50% 보조(최대 3년 연장 가능) 중소기업에서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기준연봉(석사 4,000만원, 박사 5,000만원)의 50% 지원 + 3년 연장 가능 중소기업에서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경력을 지닌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급여의 50%(최대 5,000만원) + 3년 연장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270

2) 현황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취업희망 신청자 및 채용희망기업 모집단계,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의·선정단계, 지원에 대한 협약체결단계,

지원결과에 대한 보고 및 사후관리단계 등으로 진행된다.

〈그림 4-38〉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프로세스



3) 성과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의 전체 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18.5%(97명), 2015년에는 22.2%(80명), 2016년에는 24.1%(114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지원인력의 평균 약 21.5%가 여성인력으로 채용되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수혜자는 1.9%p 감소했으나 여성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1.9%p 증가하였다.

〈표 4-74〉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 사업 수혜자	전체	523	360	490
	여성(비율)	97(18.5)	80(22.2)	118(24.1)
	남성(비율)	426(81.5)	280(77.8)	372(75.9)
지원 사업 예산	전체	7,400	5,065	12,481
	여성(비율)	1,333(18.0)	1,119(22.1)	2,996(24.0)
	남성(비율)	6,067(82.0)	3,946(77.9)	9,485(76.0)

주: 2016년은 추정치
 자료: 여성가족부(2017), 「성인지 예산서」

5.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업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금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교육 및 연수지원사업, 판로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추진방향은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과 펀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금지원사업은 여성기업에게 우대금리 및 가산점을 부여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과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은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확장,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판로지원은 여성기업의 판로 및 매출확대를 위해서 국내 전시회 및 국제 박람회 지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위원회 구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연수지원사업은 여성경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 CEO 경영혁신 포럼 개최,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직장체험, 여성경제인 경제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각 지역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75〉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사업 지원계획

지역	지원사업명	2017년
서울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40억원 규모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2개소, 310백만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3개소, 175백만원
부산	중소기업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 우대	자금지원 심사 시 가점 2점 부여

지역	지원사업명	2017년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6개소, 170백만원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지원	여성기업제품 구매 독려 공문발송
	여성기업제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홍보관 영상전시 지원 • 부산상품 홈페이지 홍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여성기업 15개사, 30백만원
	여성CEO 경영혁신포럼 개최지원	7회, 500명
	지역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 개최 지원	1회, 10개사, 10백만원
대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용자추천규모 4,0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	여성기업 6개사 지원, 25억원
	여성경제인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인대회 지원 : 우수제품 전시회, 수출 지원단 초청 상담회 특강, 시상 등 • 그린 IT 여성창업 지원사업:220백만원
	여성기업 해외 판로개척 사업 지원	60명
	여성기업 우대지원	Pre-스타/스타기업 육성사업(1점),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2점), 용역입찰계약 적격심사시 여성기업(0.5점)/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특별 신인도 가점(0.5~1점), 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2.4%우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금리 0.2% 우대)
인천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11개 업체, 입주공간 및 마케팅 지원, 10백만원 지원
	중소기업자금 지원시 여성기업 우대	경영안정자금 : 5억원한도, 2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균등분할상환)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환경개선 지원	88.5백만원, 25개 업체
광주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 자금 지원	10백만원 한도
	여성기업제품 판로지원	박람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우대
	여성소자본 창업컨설팅 지원	40명, 20백만원
	고객센터 상담사 인력양성사업	400명, 120백만원

지역	지원사업명	2017년
대전	여성기업인 BI교류회 및 워크숍 지원	3회, 5백만원
	여성기업 기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 참가(2점), 시제품 제작지원(1.5점),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1.5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49백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 15개사 사후관리 : 시설개선지원 5개사, 기업특강 80개사, 편의용품 구입 전달 5개사, 구직시 맞춤형 인사 채용 지원 30개사
	컨택센터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150백만원, 500명
	여성기업 이차보전 우대 지원	170개사, 200억원
울산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300억원, 이자 1%추가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가점 4점부여, 이차차액 0.5%가산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가점 3점부여, 35백만원
	여성가장 소상공인 특별지원	50백만원 이내, 보증수수료 연 1.0% 이내
세종	경영안정 자금지원	이자 1% 추가 지원
	여성기업우대지원(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경쟁력, 혁신성, 기업회생자금(3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신인도가점 부여
강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용자한도 7억원, 이차보전 3%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21백만원
	여성기업 공공구매 추진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연수 및 여성경제인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연수 3백만원 여성경제인 대회 지원 6백만원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지원	1회, 5백만원
경기	우수여성기업인 선정 및 온라인 브랜드관 운영	440백만원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 솔로몬 지원사업	64개사, 300백만원

지역	지원사업명	2017년
	경기북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10억원
	여성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1억원 20개사내외 통상촉진단 파견 2회
	가족친화경영컨설팅 및 경기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	5점, 여성근로자 30%이상 사업장 인증취득 가점 5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5점, 추가 이차보전율0.3%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신용평가시 1점, 보증료 감명 0.1%
	창업프로젝트 추진	여성참여자 1점
	유망중소기업인 인증	5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가점 1점 부여
	일자리 우수기업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	가점 1점 부여
	대구·경북 여성경제인대회 개최지원	56백만원, 300여명
경북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활동 지원, 216백만원
	경상북도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47백만원
	중소기업 창업 및 운전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 지원규모 : 600억원 • 운전자금 융자규모: 3,3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	가점 3점 부여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융자한고 5억원 이내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신성장기업 표창	가점 1점 부여
	경북 Pride상품 선정	가점 2점 부여
경남	여성기업활동촉진	5개사업, 1억원
	여성창업지원센터설치운영	35백만원
	소자본 여성 창업교육	27백만원
	차세대 여성CEO교육	14백만원
	여성CEO 혁신포럼	16백만원
	여성CEO MBA	8백만원

지역	지원사업명	2017년
전북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 운영	25백만원, 420여명, 6회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지원제도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창업, 경영안정자금)	가점 5점 부여
	우수 및 유망중소기업인증	가점 2점 부여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가점 5점 부여
	선도기업 선정	가점 1점 부여
	도시사인증상품 선정	가점 2점 부여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9개 자금 3,800억원
	전남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1개업체, 3~5년간 5억원 지원, 여성기업가점 5점
	전남형 차세대 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	업체당 1억원 지원, 3개업체 선정 여성기업 가점 5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사업비 5,226 백만원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지원	10백만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8개 내외, 기업당 10백만원 지원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300억원 규모, 우대금리 0.5%, 가점 5점
	여성 BI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12백만원
	충북여성CEO포럼	10백만원
	여성 및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	18백만원, 1개 기업당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가점 5점 부여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800억원규모, 한도 3억원 이내, 여성기업 0.5%이차보전, 가점 3점
	여성기업인 표창 2명, 충남 기업인 대상1개, 유망중소기업 지정 1개	-
	여성기업 신용보증 우대지원 (여성가장 소상공인지원)	창업후 1년이내, 보증료 0.1% 감면 (기업당 20백만원, 보증료율 0.5%, 2.5%)

지역	지원사업명	2017년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따른 단체 보조금 지원	9백만원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지원	-
제주	여성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우대	용자자금 이차보전 3%
	여성기업 전시지원 및 기업시장조사 참가지원 사업	항공료, 숙박료 지원, 사업비 50백만원
	여성기업 CEO 경영연수 및 CEO 경제포럼	15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7),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

제5부 여성 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 제1장 | 여성기업을 위한 경영환경 조성
- 제2장 |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및 육성 과제
- 제3장 |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제1장

여성기업을 위한
경영환경 조성

1. 여성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

최근 전 세계의 경기 위축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장기침체 상황에서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기업인의 역할과 리더십 그리고 경영혁신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가정신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기업가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업가정신 모범국가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와 2000년대 초반의 벤처 붐 붕괴이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크게 약화 되었다.¹⁶⁰⁾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가 185.9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계속해서 감소추세이며,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저 수준(88.3)으로 하락하였다.

160) 윤남수(2000),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5권 2호, pp.1537-1557

〈표 5-1〉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측정변수와 지수추정 결과분석

기업가정신 측정변수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연도	표준화 종합지수
(1) 문화적요인 (2) 공식제도 (3) 경제의지 (4) 기업 활동 (5) 공공부문	1988	185.9
	1995	179.3
	2000	118.6
	2005	114.9
	2010	95.2
	2014	88.3

자료: 황인학(2017), 「KERI Brief 2016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양극화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창업 및 경영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을 활성화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희인력이었던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 경영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경영자의 역할 및 성향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이 기업을 경영할 때 남성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성의 기업가적 성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여성이 기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어떠한 특성이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 여성기업인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화

해외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과정까지 정규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멘토링 지원, 창업경진대회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백악관이 주도한 SAI(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의 첫 번째 전략에서 생산적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경쟁시장 촉진을 세부 전략으로 두고 창업 및 기업 혁신활동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를 마무리하며 기업가정신을 고취한 오바마 대통령의 10대 정책 활동을 정리하였는데, 미래 신산업을 위한 기업가정신 촉발과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 기업가정신 장려를 성과중 하나로 제시했다.¹⁶¹⁾

이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정규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포함되며 2020년까지 초·중·고교 전체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국내 대학과 많은 기관에서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초점은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춰져 발전되어 왔다. 물론 창업을 앞둔 사람들의 기업가정신 함양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기업 혁신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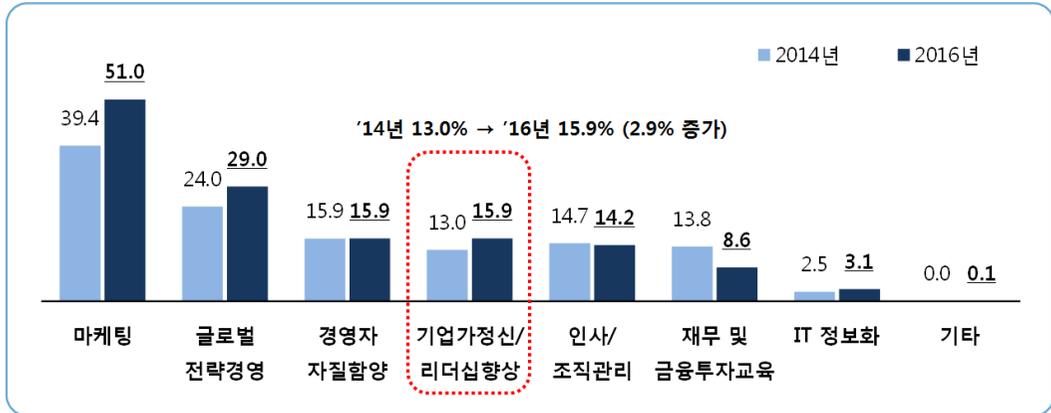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은 약 139만개로 전체 기업수의 38.7%를 차지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회적·환경적 차원에 따라 기업인의 성별에 따른 성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인에 특화된 기업가정신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인의 필요한 교육 분야에 대해 ‘기업가정신/리더십 향상’분야가 2014년 대비 2016년에는 2.9%늘어난 15.9%로 나타나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61)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제29호

〈그림 5-1〉 여성기업인의 필요한 교육 분야

(단위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또한 여성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교육 유무(有/無)에 따라 성향이 선진국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¹⁶²⁾,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교육 및 연수 참가 집단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 천원)

구분		응답 비중	매출액	당기순이익
여성경영자 교육 및 연수 참가경험	있음	7.8	233,703	36,017
	없음	92.2	139,900	32,332

주: 창업이전 경력은 현재 창업한지 7년 미만 응답자(1,171명)만 대상으로 조사
 자료: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4), 「2014년 여성기업 백서」

162) 김보례·윤아름(2017), 「여성기업가정신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 여성기업대표들을 중심으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에 여성기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기업인의 성향을 커리큘럼에 반영한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며, 여성경영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정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우리나라 여성기업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확대

여성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발현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기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은 무엇이고, 어떤 기업가정신을 함양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여성의 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업가정신연구는 여전히 청년창업 촉진과 벤처기업을 위한 일환으로만 수행되어졌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여성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도 여성기업의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기업가정신 연구 포함 등)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이하 'GEDI')에서도 2015년 여성 기업가정신 지수(Female Entrepreneurship Index, 이하 'FEI')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FEI'는 여성기업인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수이므로 여성기업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여성기업들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인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기업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지수를 개발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친화 분야로 사회 구조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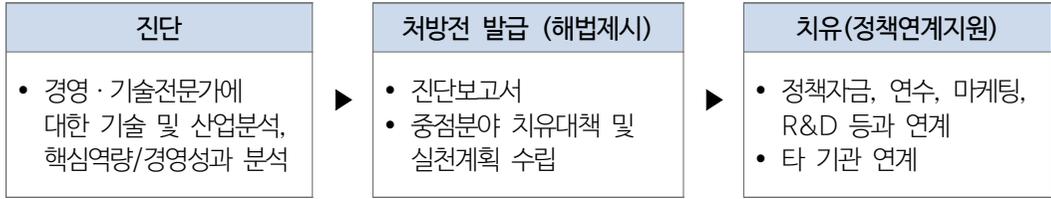
가.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중점사업인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은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종 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진단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창업 후 2년 이상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전략산업 등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처방전에 따라 금융, R&D, 마케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그런데 국내 여성기업은 88.8%가 5인 미만 기업으로 좋은 취지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건강진단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여성기업의 현실에 맞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은 여성기업들이 건강진단 사업 상담 및 신청을 하면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기업을 방문하여 외부 경영환경과 기업내부 역량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 여성기업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수립한 계획에 의해 정책 자금 용자, 연수, 수출마케팅, 컨설팅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해당 기업에 맞추어 연계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5-2〉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프로세스



나.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 촉진

쇠퇴기에 접어든 여성기업은 국가 전략 및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분야로 사업 전환을 유도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IT, 바이오,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마케팅, 자금, 교육 등 분야별 사업전환 전문가팀을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여성기업은 건강진단 후 그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서를 접수받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및 신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이 사업전환 시 사업전환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5-3〉 사업전환 촉진 프로세스

1단계	사업전환 전문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IT, 바이오,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마케팅, 자금,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2단계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서 접수 대상 :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여성기업, 건강진단사업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
3단계	CEO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이해 및 신기술 동향 정보 제공 사업전환 사업에 대한 설명, 성공사례 등을 제시하여 사업 마인드 전환 및 동기 부여 교육 대상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마련
4단계	전문가 진단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방문 실사 및 진단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 제안(신제품 개발, 사업 구조전환 등) 사업 방향, 구조전환 방법, 사업비용 등을 제안
5단계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과 전문가가 사업전환 제안 내용 협의 사업전환 승낙한 여성기업은 사업전환 신청서 작성
6단계	시책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접목 사업전환 실시, 마케팅 컨설팅 추진 자금 및 수출, 판로개척,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연계지원

제2장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및 육성 과제

1. 여성 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단계별 교육 시행

창업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별에 상관없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부족할 경우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전달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며 ‘나는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과 답을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기업을 위한 단계별 교육은 부재한 상태이며, 현재 창업분야에서 시행 중인 교육의 경우 실무를 실질적으로 해보는 교육이기 보다는 이론 또는 사례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은 배운 사례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기업인의 경우 기초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초·중·고급 수준으로 나누어 창업에 대한 단계별 정보교육 및 실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 Hi Seoul 창업스쿨

현재 창업에 대하여 단계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2004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Hi Seoul 창업스쿨’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스타트업 스쿨 과정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창업교육으로 창업분야의 트렌드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론 교육은 1단계 Mind Setting, 2단계 Business Modeling, 3단계 Action Plan, 4단계 Case Study로 이루어진다. 교육시간은 총 30시간 기준으로 16강을 수강 후 전문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해 1:1 밀착코칭을 진행하며 네트워킹&피칭데이는 별도로 진행된다.

〈그림 5-4〉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스쿨 교육체계도(2017년 기준)

STEP-1		STEP-2
실전교육 실전사례중심 Mind Setting - 기업가정신 - 창업가 리더십 - 4차 산업혁명 트렌드 Business Modeling - 제품/서비스 컨셉과 가치 - 고객/시장/차별화 Action Plan - 투자유치/자금확보 실전 - 법률/IP 정보	+	1:1 밀착코칭 전문가코칭/상시멘토링 벤처캐피탈리스트 엑셀러레이터 전문가 코칭 경영 멘토링
		실전 네트워킹 투자+정책+보육 투자네트워크 - VC, 엑셀러레이터 등 - SBA 투자지원팀 정책네트워크 - 정부지원사업 - 협력기관 지원사업 등 보육네트워크 - 서울창업허브 - 유관기관 BI 등

자료: 서울특별시 창업스쿨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창업스쿨의 주요 강점은 창업교육부터 자금 연계지원, 사후 지원의 원스톱 창업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전임 멘토제 운영으로 교육과정 동안 전문가의 개별/그룹 지도를 통해 창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해 교육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창업 정보와 동향을 주고받으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우대 및 중소기업쇼핑몰(서울샵) 선발 우대 등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시·공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운 창업 준비자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스타트업 스쿨도 운영 중이다. 온라인 스타트업 스쿨은 서울특별시 스타트업 스쿨 홈페이지(www.school.seoul.kr)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중 상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창업 일반 과정은 마케팅 전략, 키워드 및 SNS마케팅, 스마트앱 그리고 특허, 경영컨설팅의 이해 등 41개 온라인교육이 개설되어 있다.

2. 타기관의 연계성 강화 등 협력 방안 수립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한계와 장벽이 많다. 따라서 여성이 창업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창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제도적인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¹⁶³⁾.

그러나 현재, 여성 및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 중에 창업 지원제도만 하더라도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이를 시행하는 기관들로 중복,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체계의 구축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성 및 여성기업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는 각 관련 집단 간의 협력망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여성기업 정책의 성공과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63) 조경욱·조막래(2008), 「전라북도 여성창업실태 지원체계 개선방안」, 전북발전연구원

3.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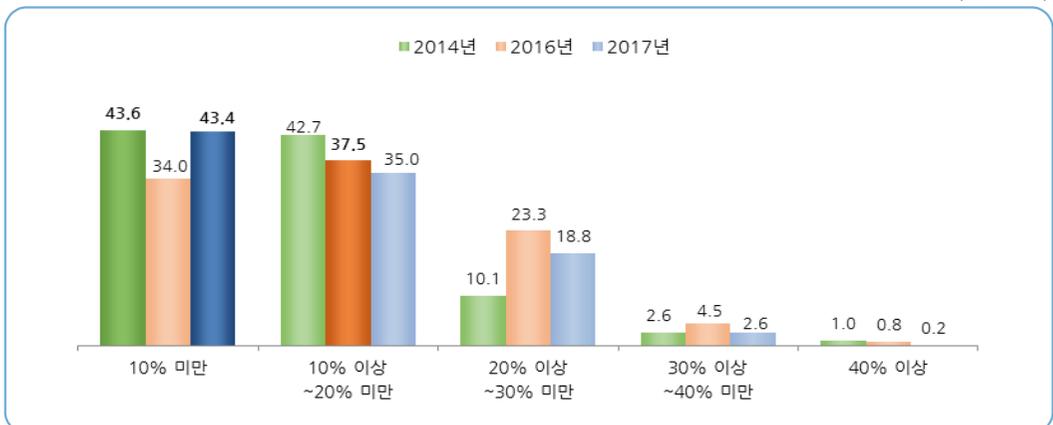
가. 여성기업 성공사례집 발간

창업 및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여성 창업 기업으로 도약한 성공사례를 담아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여성이 창업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 시행(14.1.1)으로 인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가장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기준으로 “여성기업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일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20%미만 정도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78.4%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여성기업 비중은 경제총조사 기준(2015년)으로 38.7%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등 여성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5〉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여성기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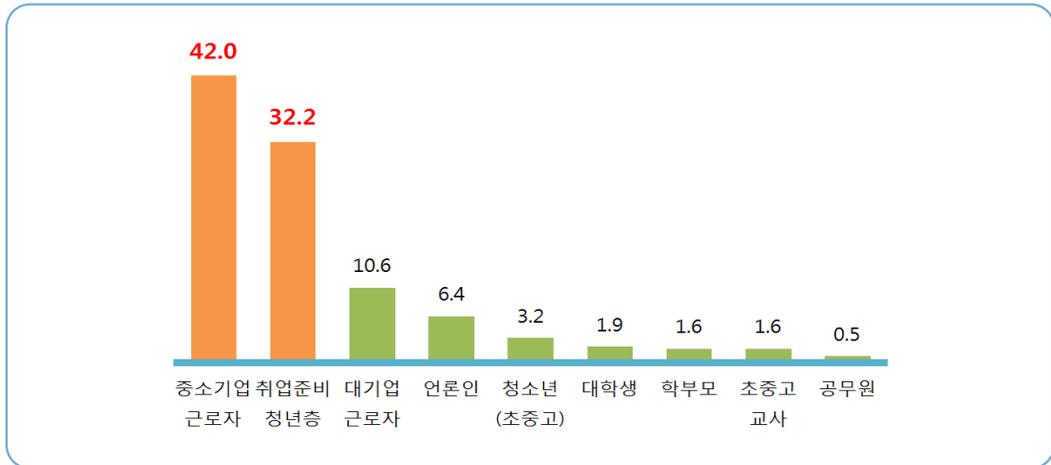
주: 사례 수는 2014년, 2016년 400명, 2017년은 500명임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여성기업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또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¹⁶⁴⁾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42.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취업 준비 청년층이 32.2%를 차지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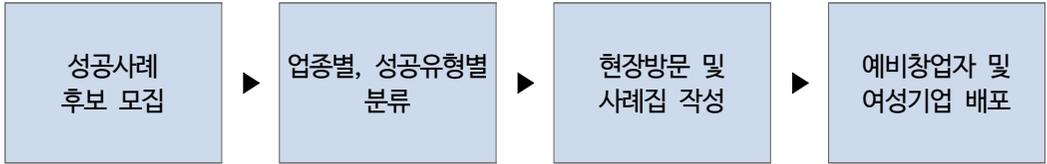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여성기업 애로 실태조사」

신규창업, 가업승계, 업종전환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의 도전 이야기 등 여성창업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업종별 사례들을 담아 예비 창업자들의 마인드 제고 및 여성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성공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책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2012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여성창업 성공스토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러한 여성기업 성공사례 집을 정례화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164)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여성기업 애로 실태조사」

(그림 5-7) 여성기업 성공사례집 발간 · 홍보 프로세스



사례 : 창업 성공사례집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또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9개 지역에 ‘여성경제인 DESK’를 발족했다. ‘여성경제인 DESK’에서는 2016년 1년 동안 약 2,000여건 이상 여성경제인과 상담을 하여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이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상담했던 많은 상담 사례 중 여성기업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사례 19건을 선별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이라는 여성기업 우수상담사례집을 2017년 11월에 발행하였다. 이 사례집에는 여성기업의 현장애로 및 DESK 전문위원과 함께 여성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간 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상담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여성기업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경제인 DESK 우수상담사례집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여성경제인 DESK 우수상담사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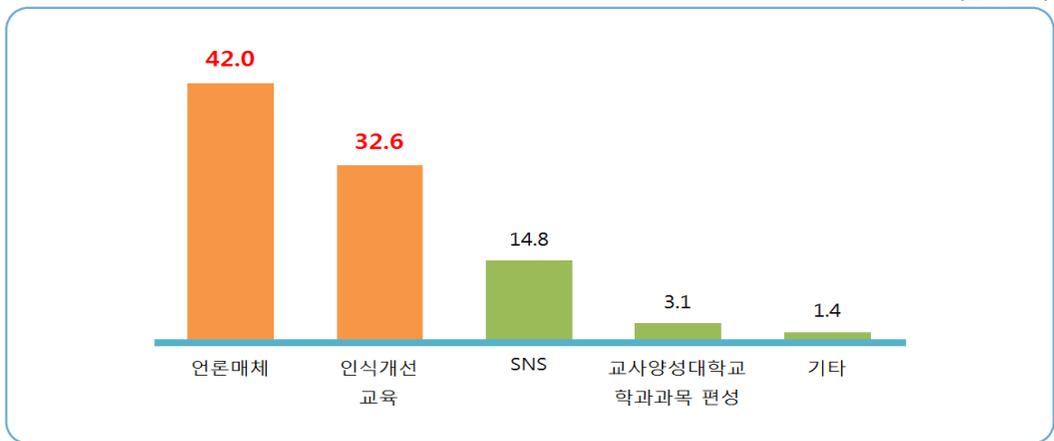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여성창업 성공 방송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인들에게 조사한 결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홍보수단은 공중파 라디오 등 언론매체 48.1%,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8〉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

(단위: %)



주: 중복응답 가능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여성기업 애로 실태조사」

그러므로 주요 언론사(예 : 글로벌 성공시대(KBS 1TV), 스카우트(KBS 1TV) 등의 공중파 방송 등과 제휴하여 여성창업 성공 사례를 방영하고, 우수 내용에 대해서는 성공요소, 경쟁전략, 기업 성장 등을 제공하여 여성창업 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창업 성공사례는 해외수출, 국내확장,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특히, 창업 재도전으로 성공한 사례의 경우, 기존사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업종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방송을 보는 예비여성창업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업성공률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창업 Q&A 코너 등을 운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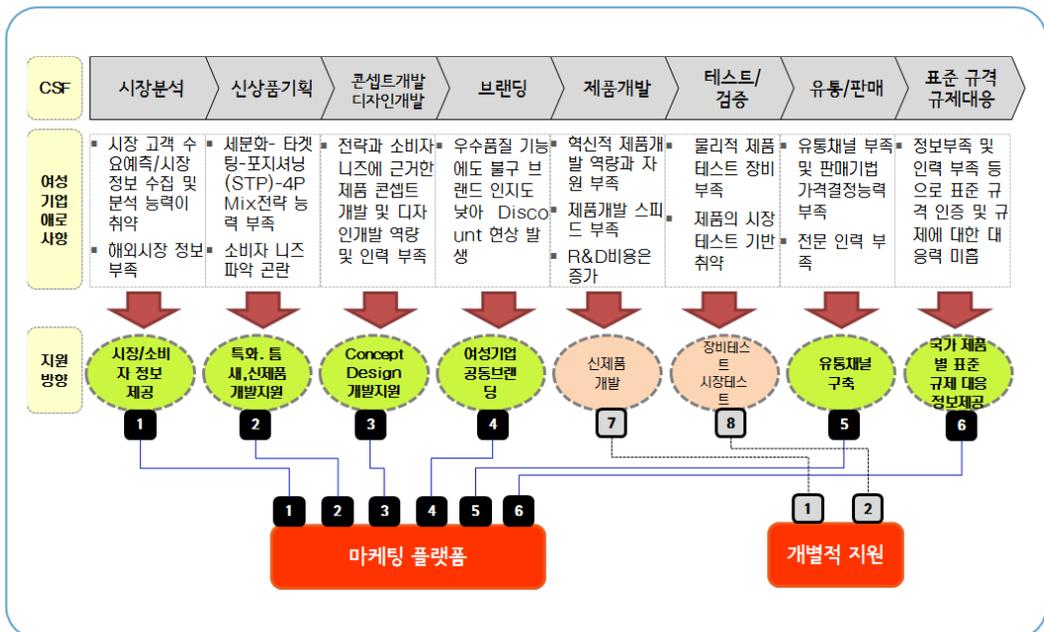
창업관련 궁금증을 방송 외의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해 주고, 창업 지원정책 소개 및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여성기업들은 시장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이 취약하여 시장트렌드 및 소비자의 니즈 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신제품을 기획, 혁신제품 또는 개선제품을 신속하게, 그리고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marketing platform)을 통해 여성기업의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시장대응 및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케팅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능은 여성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즉 시장 및 소비자의 니즈 분석-신제품 콘셉트 개발-신제품 콘셉트 구현-공동 브랜딩-혁신제품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통적인 마케팅 활동을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5-9〉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플랫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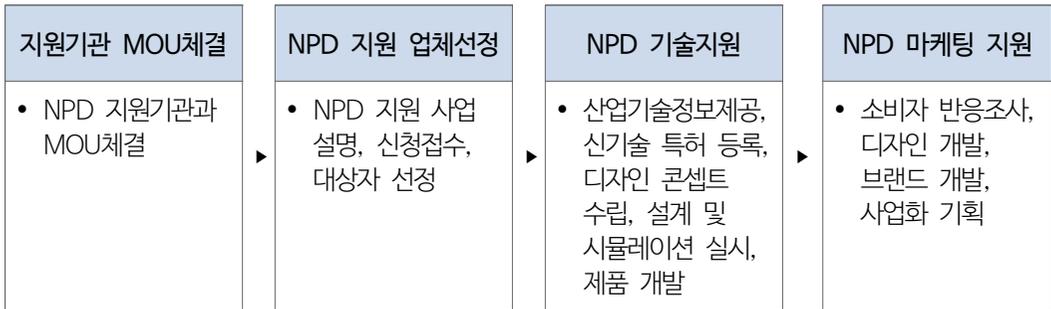
또한 마케팅 지원 플랫폼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은 마케팅리서치 전문가 및 상품기획 전문가, 콘셉트개발 전문가, 마케팅 전략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마케팅 플랫폼'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때로는 외부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여성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또는 혁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플랫폼 기반의 마케팅 지원은 여성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시장 및 고객 니즈에 기반한 상품기획 및 신제품 개발 상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별적인 방식의 마케팅 지원에 비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5.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개발 지원

여성 및 여성기업인들의 있는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NPD(New Product Development)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NPD 사업에 필요한 국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컨설팅 회사와 MOU체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성제조업의 신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판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그림 5-10〉 NPD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예를 들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지원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여성기업 NPD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창업 후 3년 미만) 국내 여성기업으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성장 유망한 아이디어로 한다. 특히 생활가전, 화장품/미용용품, 식료품/음료, 섬유/의복/가방/신발 등 여성적합 제품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3〉 NPD사업관련 각 기관별 주요 역할

주요 기관	주요 역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원, 제품모형 시뮬레이션 실시, 산업기술 정보제공 등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지역지식센터	신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의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 등)
컨설팅 회사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및 사업화 기획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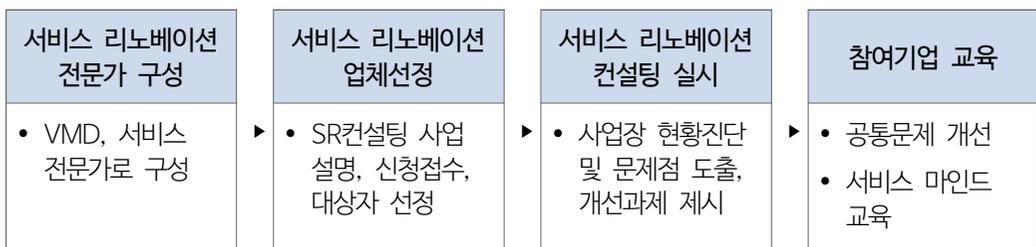
선정된 예비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품화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인 산업기술 정보제공 및 기술 검토, 신기술 특허등록 등을 지원하고, 디자인 콘셉트 개발, 설계, 시제품 개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목표시장, 수요층, 시장성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한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하고,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체성, 기술의 독창성, 경쟁 우위성, 마케팅 전략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여 사업 성공률을 제고한다.

6.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의 「2017년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이 31.62%, 도매 및 소매업이 29.60%로 전체의 61.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업종은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을 위한 서비스 리노베이션(Service Renovation)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여성기업의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실행을 지원하며,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여성 서비스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문가 집단(Pool)을 통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은 사업장 현황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제시 순으로 실시한다. 사업장 현황진단은 해당 사업장이 제품 및 서비스 콘셉트에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상권 내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입지 및 상권분석을 실시하고, 상품특성 및 매출현황, VMD(Visual Merchandising), 고객관리 및 판촉현황 등을 분석한다.

〈그림 5-11〉 서비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대상은 여성기업들 중 구매율이 높고, 여성기업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 분야(예를 들어, 의류판매 및 액세서리 판매점, 산후조리원, 노인복지 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를 집중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위의 지원대상 업종 중 분기별로

1개 업종씩 선정하여 지원사업 완료시점에 업종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간 서비스 수준 비교 및 발견된 공통 문제점, 우수한 사항에 대한 벤치마킹, 서비스 마인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업장에 대한 진단은 고객이 사업장에 들어와 나갈 때까지의 고객동선과 상황에 따라 점장 및 점원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지 고객접점(MOT : Moment of Truth) 분석을 하고 사업장별로 고객응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5-4〉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예시)

구분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
1단계	입지 및 상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위치는 상권의 핵심부위에 위치해 있고 찾기 쉬운가? • 사업장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는 충분한가? • 사업장 주변 상권의 집객시설 및 경쟁사업장의 고객은 어떠한가? • 사업장의 표적고객과 상권의 유동객의 특성이 일치하는가?
2단계	운영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장의 주력 상품은 무엇이며, 주요 콘셉트는 무엇인가? • 주력 상품의 가격대 및 시즌별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 해당 사업장의 손익구조는 어떠한가? •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상품을 보기 좋게 연출하고 고르기 쉽게 진열하고 있는가? • 사업장 방문고객에 대한 이력사항을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장 방문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가? • 방문고객 유형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목표고객에 적합한 홍보나 이벤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홍보나 이벤트 활동 시기나 횟수는 적당한가? • 홍보나 이벤트 활동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3단계	고객접점 (M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을 가장하여 사업장의 서비스 실태조사(미스터리 쇼퍼)방법활용 • 고객접점 및 서비스 실태조사 방법 설명 후, 사업장당 2인의 미스터리 쇼퍼 투입 (사업장별로 시간과 날짜를 달리하여 투입) • 미스터리 쇼퍼는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고객접점 서비스, 기타 고객 클레임 대응 현황 등을 조사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7. 멘토링 기능 강화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는 일반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의 진입기 기업,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 기업,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되고 있지만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성숙기 기업,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쇠퇴기 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 후 3년 미만의 진입기 단계에 속하는 여성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판로개척, 네트워크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선배 여성CEO, 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한 경영노하우, 경영기법 등을 전수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기업을 위한 멘토링 사업은 부재하고 과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멘토링 사업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당시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 구성이 어렵고, 선배 여성CEO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으로 여성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사업이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에 여성기업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성기업 전문융합지원체계(CFT : Cross Functional Team)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5-12〉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멘토링을 위한 CFT 멘토는 재능기부 봉사개념으로 모집하지만, 멘토들을 봉사활동 평가를 통해 봉사실적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여성경제인의 날’에 정부포상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지원 사업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멘토링 제도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한다.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은 멘토 활동 건수, 업체 만족도, 업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CFT 멘토를 재능기부 봉사개념으로 추진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이 가능하며,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여성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가.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지원자금 심사기준 적용

최근 들어 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여성이 신성장 동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여자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 창업자 및 여성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기업인들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시 매출액 150%이내 한도 예외, 창업기업지원자금 연간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받고 있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창업초기(5년 이내)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1%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기업에 관련한 지원사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다. 즉, 여성기업은 기본적으로 영세하고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서류 작성 등의 능력이 취약하여 선정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정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¹⁶⁵⁾. 또한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문제로 창업기에는 자금 접근이 소외되고 기업 성장기에는 담보 부족, 사업 규모의 영세성, 기술력의 취약, 적은 매출규모에 따라 자금접근의 배제 또는 제한 때문에 자금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차별적 대출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으로 여성기업의 대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성기업 수와 대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례에서 여성 및 여성기업의 자금난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성에 근거한 대출업자의 차별적 관행을 금지한 「평등신용기회법(The Equal Credit Opportunity, 1974)」 과 여성기업인이 대출을 얻기 위해 배우자 또는 남성 친척의 서명을 요구하는 법을 금지시킨 「여성기업소

16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2017.11) 여성기업인 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인 경우가 높아서 접근성이 낮다는 애로 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유법(The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1988)」의 제정이 그것이다. 특히 「여성기업소유법」 제정 이후 여성기업인들의 은행 대출비중이 1992년부터 200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¹⁶⁶⁾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적인 제도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적 보완과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기업인 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자금 신청 시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인 경우가 높아서 접근성이 낮으므로 한시적으로 정책지원자금 및 보증자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심사기준의 차등적인 적용하여 여성기업들이 자금을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5〉 정책자금 및 보증자금의 차등적 심사기준 개선방안

구분		일반 중소기업과 차등적인 심사기준 개선
정책자금	중소기업청	R&D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의 지원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 마련 필요
보증자금	신용보증	보증서 발급 시 일반 중소기업과는 차등적인 심사기준으로서 여성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창의성과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심사 필요
	기술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	
금융대출	금융기관	기존의 여신심사기준과는 상이한 기준 마련 필요
제도 신설	여성기업공제조합 설립과 운영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시 보증 또는 공사 판매 용역 등 의무이행시 이행보증 발행

166) 양인숙·강민정(201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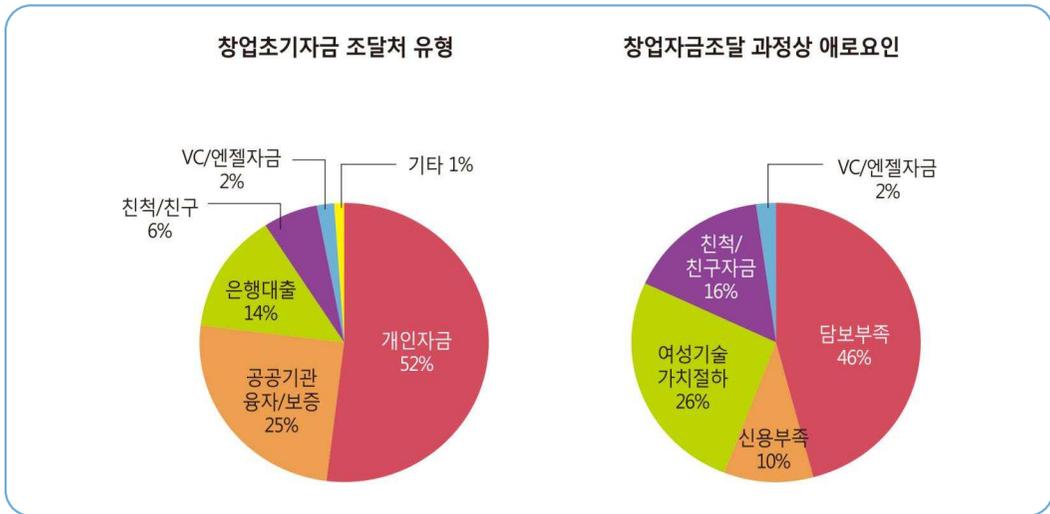
나. 여성전용 창업지원 펀드 조성

2017년 현 정부는 낙수효과 단절과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왔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창업 지원과 창업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 하나면 창업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만드는 환경을 구축하는 창업 국가조성을 국정과제중 하나로 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조성 전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8년에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하고,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한해서는 2017년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실패자의 소액채납금을 한시적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의 기대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 명과 재창업자 5.5천 명 육성이다.

그러나 창업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많은 창업자들은 그동안 창업자금조달에 가장 큰 애로를 겪어왔다.

(그림 5-13) 창업초기 자금조달처와 애로사항



자료: 양현봉(2014),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2014)에 따르면, 여성창업자들은 개인자금의존도가 51.7%로 매우 높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증(25.7%) 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은행대출(14%),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캐피탈(2.0%) 자금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 후 3년까지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7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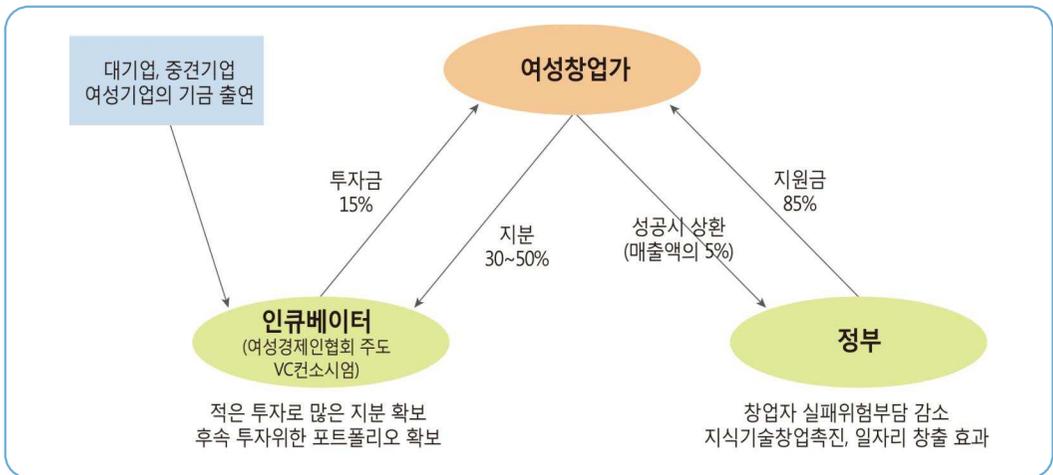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 자금조달 및 창업 3년차까지 자금조달문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전용 창업 전용펀드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전용 창업지원펀드 조성은 대기업, 중견기업, 여성기업 및 정부가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여성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전용 창업지원기금을 조성한다. 또는 대기업, 중견기업인 여성기업의 출연 및 정부의 공동 출연으로 여성전용 창업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여성 전용 창업 지원체계는 사전 인큐베이팅 지원 - 인큐베이팅단계지원 - 사후 인큐베이팅 지원 등 3단계로 운영한다. 인큐베이팅 또는 투자 대상 선별 전 단계에서는 개인 또는 5년 미만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과정에서 종자돈, 협력사, 벤처캐피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이전단계의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아이디어 발전 지원, 기술적 지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한다. 사업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은 각계 현장 전문가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기술력, 시장잠재력 규모, 창업자의 역량 및 전문성, 혁신역량 등 전반적인 창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 인큐베이팅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한다.

선별되어 창업을 성공한 경우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창업 지원과 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5-14〉 여성 창업활성화 생태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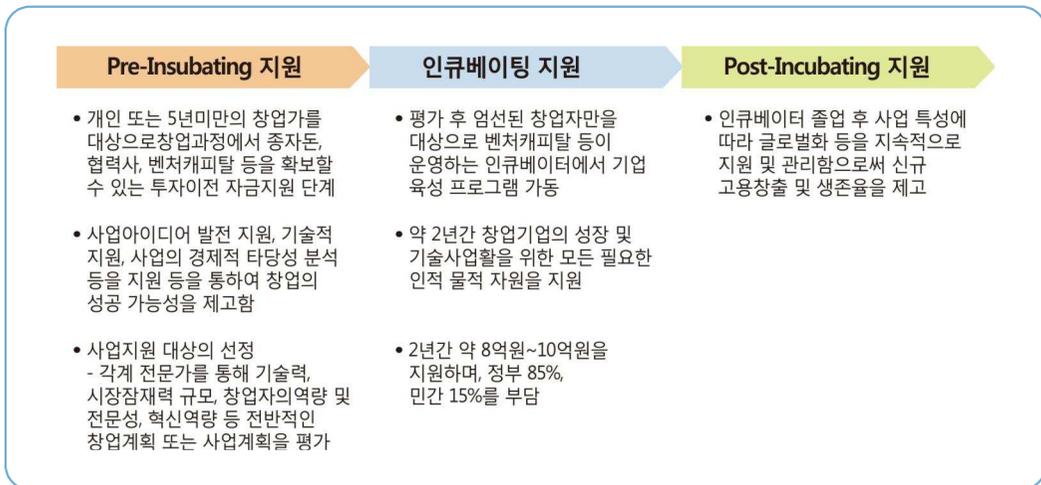
인큐베이팅 단계의 지원은 평가 후 엄선된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털 등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에서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약 2년간 창업 기업의 성장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모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2년간

약 8억 원~10억 원을 지원하며, 정부 85%, 민간 15%를 부담한다.

인큐베이터 졸업 후 사후단계 지원도 중요한데, 사업특성에 따라 글로벌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 및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 같은 여성전용창업자금확보 및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지식기술 기반의 혁신형 여성기업의 창업동기를 촉발하고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성과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15) 여성전용창업펀드의 운영 및 지원체계



제3장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1.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제도(의무화)의 실효성 제고

가.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확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들은 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¹⁶⁷⁾은 복잡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계약하며 실제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작성,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서류반려, 수정, 재작성, 출장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초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적용 착오, 절차 위반은 업체의 손실로 귀결됨으로 이에 대한 숙달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이다. 따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국내 여성기업 중에서 조달청에 기존 등록업체, 등록희망업체를 상대로 여성기업의 물품 및 용역의 조달등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입찰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강사, 조달청 근무 경력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구성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MAS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며, MAS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167)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 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고 고객이 나라장터(www.g2b.go.kr)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지원사업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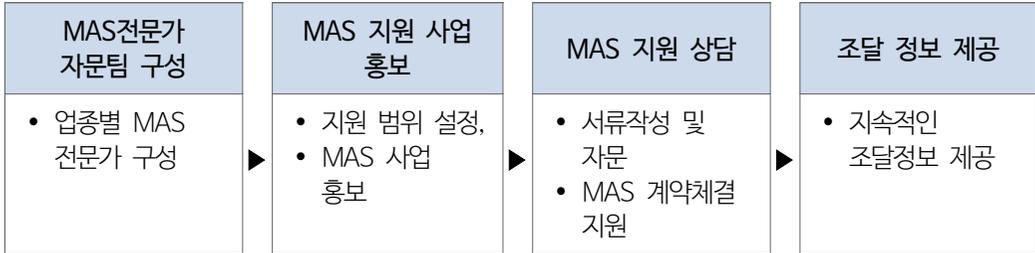
- 다수공급자물품 구매참가자격 지원 (조달청 업체등록 / 제조물품등록)
- 적격성 평가 지원 (실적증명발급방법 및 계약물품 인·허가사항검토)
- 협상물품등록 지원 (목록화 요청 및 제품별 표준규격서 작성)
- 가격자료 작성방법 지원 (매출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토)
- 나라장터 조달업체 업무 온라인 운영방법 지원
- 규격추가, 단종처리, 가격관리,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그러나 여성기업이 MAS를 활발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MAS 전문가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상주하면서 공공구매에 대한 서류작성 등과 같은 실무적인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지원사업 범위 〉

- 다수공급자물품 구매참가자격 지원 (조달청 업체등록 / 제조 물품 등록)
- 적격성 평가 지원 (실적증명발급방법 및 계약물품 인·허가사항검토)
- 협상물품등록 지원 (목록화 요청 및 제품별 표준규격서 작성)
- 가격자료 작성방법 지원 (매출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토)
- 나라장터 조달업체 업무 온라인 운영방법 지원
- 규격추가, 단종처리, 가격관리,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그림 5-16〉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또한 공공구매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을 통해서 지속적인 조달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정확한 서류작성, 숙달된 계약행정업무 수행지원 등의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약진행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계약추진, 최신 조달정보 습득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시장 판매확대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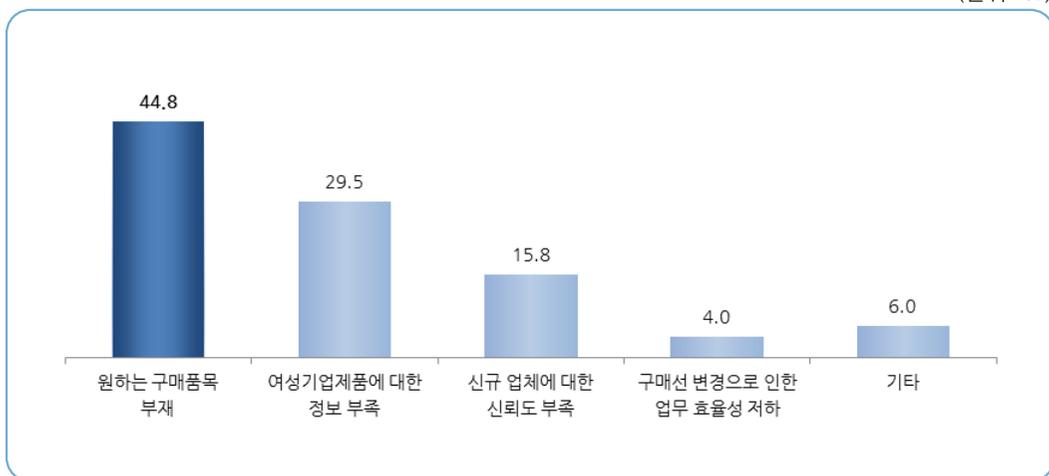
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구매의무화로 인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공공구매 실적은 '14년 5.5조원(4.9%), '15년 7.14조원(6.0%), '16년 8.34조원(8.34%)으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체 대비 여성 사업체 비중이 38.7%('15년 기준)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수년째 10% 미만의 수준에서 맴도는 것은 공공구매의 수요와 공급 간의 원천적인 불일치(mismatching)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구매할 만한 적합한 여성기업 제품을 등을 찾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여성기업제품 구매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원하는 구매품목 부재'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29.5%), '신규 업체에 대한 신뢰도 부족'(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적합한 제품이 없거나 제품 등을 구매해주는 공공기관이 없다고 보는 문제가 있다.

〈그림 5-17〉 여성기업제품 구매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주: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담당자 500명 대상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여성기업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표 5-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상	원인	개선 방안
제품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의 업종 특성상 공공기관의 수요와 사용용처에 부적합한 물품 용역 또는 공사가 있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수요와 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제조업59.3%, 비제조업66.6%), - 제품 카테고리에는 적합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구체적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 - 공공기관의 수요 및 용도와 여성기업 제품의 공급간의 원천적 불일치를 해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수요와 여성기업의 공급간의 원천적 불일치(mismatch)현상을 제거해야 함 - 공급자인 여성기업은 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여성기업의 생산/공급 물품 및 용역, 공사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을 지원 -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가능한 물품 및 용역, 공사 리스트를 작성해 여성기업의 공급능력 확충 및 준비 필요 - 공공구매 활용 절차와 공급가능 제품 목록과 구매가능 물품 목록을 포함한 공공구매 활용가이드북 제작 배포
공공구매 판매방법을 모름 정보입수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공공구매 입찰정보를 탐색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지원센터 사이트 공지외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입찰정보의 제공
공공구매에 관심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의 업종특성상 최종소비재 또는 중간재의 경우 공공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음 - 금융 및 보험업(55.7%), 건설업(25.1%)의 경우 무관심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수요와 용도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수요개발 필요
높은 입찰 참가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실적, 품질보증, 입찰자격요건 등의 자격기준으로 인한 탈락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입찰참가자격장벽을 높게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완화 필요 - 여성기업 공공구매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자격기준과 절차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참여 불리		
여성기업 가점제도 효과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가점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을 상향조정할 필요
대규모 발주에 따른 입찰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능력부족 등으로 전체 조달 입찰 물량을 충당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품목 생산자간 컨소시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돌파 필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회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등의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납품 추진 필요

주: 수치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자료임

(표 5-7) 공공기관의 유형별 현황('17년 9월 기준)

유형	하위유형	예시(지정공공기관 330개)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1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개)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전KPS(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2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20+20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도로교통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형	하위유형	예시(지정공공기관 330개)
		<p>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p> <p>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p> <p>한국소비자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p>
기타 공공 기관 (207개)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p>

유형	하위유형	예시(지정공공기관 330개)
		<p>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국악방송,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한식재단,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품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강원랜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8관광개발(주), 의리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문화재단,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p>

자료: 법제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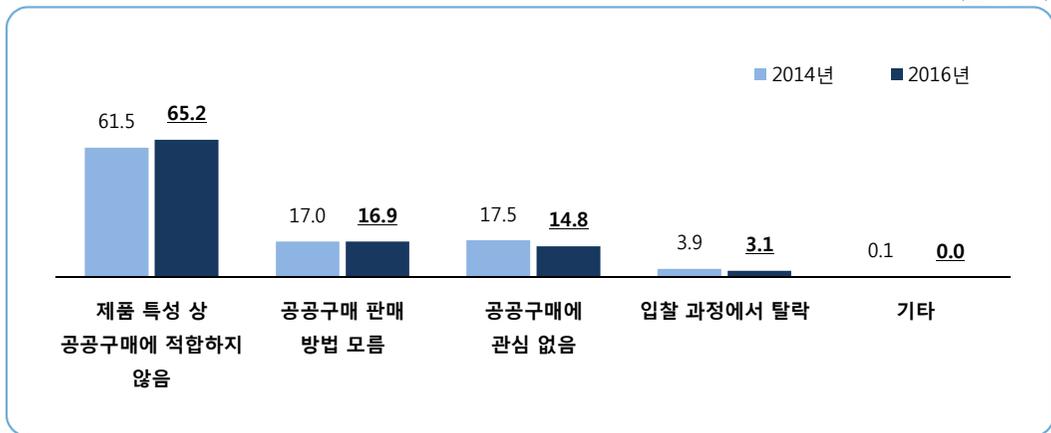
이러한 수요와 공급 간 원천적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는 여성기업과 공공기관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여성기업에게는 공공구매 활용 절차를 포함한 ‘공공구매 활용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여성기업이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물품 등의 수급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게는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초로 하여 여성기업의 생산/공급 물품 및 용역, 공사 리스트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공공구매 수요 적합형 제품 개발 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법적·제도적 보완 뿐 아니라 여성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구체적인 용도와 규격에 적합하도록 규격 또는 모델 변경을 포함한 신제품개발, 품질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그림 5-18)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7),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의 업종 특성상 일부 제품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구매의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조업 부문과 일부 비제조업부문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공급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구매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는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저변확대와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공공구매에 관심이 없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급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적절하게

기회가 발굴되지 못한 숨은 아이템을 추가 발굴하여 공공구매의 시장자체를 확대하고, 더 많은 여성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첫째, 공공구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및 제품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와 부적합한 경우와 기존의 제품 카테고리와는 적합하나 제품 규격과 용도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용도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함으로써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업종별 살펴보면, 공공구매 제품과의 부적합이 제조업 59.3%, 비제조업 66.6%로 비중이 매우 높아 이 부분의 개선 없이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수요와 용도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남동발전(주)의 경우 현장작업복을 구매하는데, 섬유원단 제조업체와 봉제업체, 의류업체들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복 제조 납품에 관한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여성기업을 통합하여 협동조합 설립이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대응 가능하다.

셋째, 개별기업 수준에서 생산능력부족 등으로 전체 조달입찰 물량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동종품목 생산자간 컨소시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돌파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의 자구노력은 여성기업 자체 노력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과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 상담자 또는 현장 컨설턴트들의 맞춤형 문제해결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 공공기관 구매입찰 진입장벽 완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자격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들의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들로는 과도한 납품실적요구, 과도한 품질보증, 엄격한 입찰자격요건 등의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소기업이 대부분인 여성기업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기업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입장벽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심사시 실적기준의 완화 등 입찰자격기준은 완화하고 여성기업 가산점을 높여 여성기업의 공공기관 구매 입찰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중소기업 입찰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입찰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쟁의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 간의 경쟁 수준에서 여성기업간의 경쟁수준으로 낮추어 여성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기업제품 중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이 '16년 기준 31.0조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3.7조원(11.9%)인데 이중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비중은 정확하진 않으나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를 기피, 구매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혁신형 여성기업의 육성과 여성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여성기업은 혁신성장의 실천 주체로서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신뢰성과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여성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마.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 제고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의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영방식을 미국과 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실제로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순수하게 여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만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혜택을 다양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백서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확인업무 전담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에서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대구경북, 경기지역은 여성기업 확인업무의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 1명씩 보유하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비해 신청 건수가 적으나,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직원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성기업 확인업무의 중요성과 향후 활용 가치가 증대됨을 고려할 때, 확인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기업 확인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기업확인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의거하여 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미국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시 확인뿐만 아니라, 교육신청, 정보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기업의 확인용도를 현재의 공공구매 조달용에 국한하지 말고, 자금지원 우대, 정부 및 지자체, 협회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인증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 강화

가. 지식·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여성 창업 분야 연구와 지원확대

‘지식기술 창업’이란 용어는 혁신기술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사업을 지칭하는 데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혁신기술 분야의 창업을 말하는데, 기술 분야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의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정책적 입장에서 ‘지식·기술 창업’은 중요한 분야이다.

그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여성들의 교육과 진로모색이 기술 분야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여성친화적 기술 분야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은 IT, 바이오, 생명공학, 미디어 등 소프트한 분야의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조명 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벤처기업협회회원사(703개사),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중 여성기업(565개사) 및 2013년 6월말 현재 여성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고 있는 기업(2,282개)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된 업체를 제외한 3,212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여성 지식·기술창업가를 대상으로 남성 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최근에 창업한 여성 창업기업일수록 여성이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사업 분야별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리하다는 응답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8〉 남성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

(단위 : %, 5점 척도의 점수)

구분		매우 불리	불리한편	비슷	유리한편	매우 유리	합계
전체		6.5	39.2	42.0	11.5	0.8	100.0
창업 연도	2006년 이전	6.5	37.6	38.7	17.2	0.0	100.0
	2006~2009년	5.5	38.6	43.3	11.0	1.6	100.0
	2010년 이후	7.2	40.5	42.8	8.9	0.6	100.0
사업 분야	제조업	5.6	37.9	42.2	13.3	1.0	100.0
	지식기반 서비스업	9.1	43.4	41.4	6.1	0.0	100.0

자료: 양현봉(2013),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

앞으로 <과학기술>과 <여성>이 미래를 여는 키워드로, 정책적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생각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책들은 여성 이공계 출신 및 기술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지원기관들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계해 여성이공계 출신 및 기술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식·기술 분야의 창업교육과 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9〉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동기부여 요인(단위 : %)

구분		전문성 보유	내부 여유 자금	목표 시장 성장성	경기 호전 전망	금융활용/ 정부지원 제도	규제 완화	기 타	합 계
전체		53.0	1.7	39.2	0.5	3.8	0.5	1.3	100.0
창업 연도	2006년 이전	48.3	1.1	45.1	0.0	2.2	1.1	2.2	100.0
	2006~2009년	49.5	0.8	46.5	0.0	2.4	0.0	0.8	100.0
	2010년 이후	57.7	2.8	31.1	1.1	5.6	0.6	1.1	100.0
사업 분야	제조업	49.4	1.7	42.2	0.3	4.0	0.7	1.7	100.0
	지식기반 서비스업	63.7	2.0	30.3	1.0	3.0	0.0	0.0	100.0
대표자 학력	고졸 이하	45.0	2.7	44.1	0.9	5.4	0.0	1.8	100.0
	전문대졸	59.2	1.9	35.2	0.0	0.0	3.7	0.0	100.0
	대 졸	54.7	1.2	38.7	0.0	3.6	0.0	1.8	100.0
	대학원졸	56.7	1.5	35.8	1.5	4.5	0.0	0.0	100.0

자료: 양현봉(2013), 전게서

때문에 지식·기술기반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에게 다양하게 질적으로 특화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나.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중기 기술융복합 세미나 개최

감성기반의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력이 부족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타 분야와의 결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남성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을 통해 성장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감성 아이템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분기별로 지역 내 산학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토록 한다. 융복합의 관점에서 Value chain(벨류체인)상 원료, 제조, 유통관련업체, 이업종 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그림 5-19〉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 세미나 추진 프로세스



또한 세미나 전후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업, 기술 융복합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성기업들의 DB확보와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기업 DB에 대한 통합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여성기업 일반현황, 생산제품 및 보유 기술에 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도록 한다.

여성기업들은 융복합 세미나를 통해 이업종, 중소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고 공동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등 실질적 협력방안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 및 구매(납품)협력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법으로 상호협력 해 갈 수 있다.

다. 여성기업 관련 전담 연구기관 설립(‘여성경제연구소(가칭)’)

1) 설립 목적

여성기업을 둘러싼 경제, 정책, 제도 등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여성경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여성경제의 발전과 여성기업인이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여성경제와 여성기업 관련 경영환경 조사·분석과 통계 DB를 구축한다.

둘째, 여성경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한다.

셋째, 여성기업 관련 종합적 연구와 정책대안 및 육성로드맵 제시한다.

넷째,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2) 설립 방안

여성경제연구소(가칭)의 설립은 효과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기 위해 3단계를 거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성경제연구소(가칭)의 3단계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경제연구소(가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기존의 여성정책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정책연구기관과 차별화되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둘째, 설립 근거 법령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일부 조직으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연구조사팀에서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및 정책평가, 여성기업백서 작성, OECD여성지표 비교 등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에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제도 및 정책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인적자원과 기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팀제의 조직을 보충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담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센터 외부에 독립된 별도의 재단법인 ‘여성경제연구소(가칭)’를 설립하여 연구소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장하여 국가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여성창업, 여성기업의 육성과 발전,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5-10〉 여성경제연구소(가칭) 설립 방안

단계	단계별 설립 방향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경제연구소(가칭)의 설립 타당성 검토 여성경제연구소(가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 검토 및 역할과 기능 정의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조직 내에 여성경제연구소를 설립 현재의 조직 인력 및 기능 보강하여 여성기업정책 전담연구소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 및 여성기업육성 정책평가, 여성기업백서 작성 등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연구 등 여성기업 특성 및 여성기업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외부에 독립된 별도의 재단법인 ‘여성경제연구소’를 설립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장하여 국가성장전략의 관점에서 씹크 탱크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의 비전과 전략과제 제시 여성창업, 여성기업의 육성과 발전,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

여성경제연구소(가칭)는 연구과제 기획, 국내외 조사연구, 정책 방향 설정,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을 위해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여성경제연구소(가칭)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여성기업 실태조사 구성하 되, 세부 업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1〉 조직 기능

구분	구성	업무
동향분석실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통계자료 생산 및 DB구축, 여성기업 통계 hub 역할 제공 등
		국내외 여성기업 동향 관련 자료조사·분석연구
		국내외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을 통한 전략 개발 등
경영전략 연구실	여성기업 경영 및 발전전략 연구	여성기업의 경영성과, 리더십, 조직문화 등 특성연구
		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상 애로요인(판로, 자금 등) 분석 등
		여성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성장정책 연구실	여성기업 성장동력 및 정책연구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및 유망 사업분야 발굴
		여성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
		여성기업 육성 정책, 법령,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연구조정실	연구업무 지원 및 조정	연구 과제 기획, 연구 성과의 관리 및 연구 업무 조정
		인사/총무/예산/회계 등 연구소 업무 지원

3. 여성기업 Control Tower 설립: 여성경제위원회(가칭)

가. 설립 타당성

2018년 인구절벽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정체와 돌파구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경제 활성화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최근까지도 여성관련 정책의 성과는 저조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일·가정 양립 및 직장 내 양성평등의식 확산,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촉진 및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창업인 지원 등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여성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나열식으로만 이루어져 명확한 목표 수립과 정책적 우선순위의 고려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에는 국무총리가 당연직으로 임명되어있고 당연직 위원 14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 12명,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나, 실질적 권한의 한계로 추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경제의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전략을 추진 할 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나. 설립목적 및 운영방안

1) 설립 목적

여성경제위원회(가칭)는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경제성장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써의 여성 인식을 토대로 여성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특화된 목표 설정을 전략 목표로 한다. 여성경제위원회(가칭)의 전략방향은 ① 여성경제의 선도자 발굴 및 육성, ② 신성장 동력원으로써의 여성기업 지원, ③ 고급여성인력 활용 극대화, ④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여성 지원 추진이다.

2) 조직구성 및 주요기능

여성경제위원회(가칭)의 위원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하며, 위원의 구성은 31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중 위촉직 위원을 70%로 구성하며, 당연위원은 9명으로 관련 부처의 장관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22명으로 대기업 여성경제인을 포함한 여성경제정책 전문가로 구성한다. 여성경제위원회(가칭)의 자문단은 여성경제 전문 자문단으로 운영하며 여성기업 대표나 여성기업을 설립자 등으로 한다. 여성경제위원회의 사무기구는 기획총괄, 조사연구, 교육홍보, 사업지원 기능을 팀 단위로 수행하며 여성경제활동 관련 전문성이 높은 민간단체 연구원 등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기획총괄팀은 실무협의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건을 작성하고 검토하며 여성경제위원회(가칭)의 예산을 운영 한다. 조사연구팀은 여성경제와 관련한 전문적 조사를 수행 및 연구하며 여성경제와 관련한 통계DB를 구축하고 연차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교육홍보팀의 경우 여성경제위원회(가칭)의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와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원팀의 경우 여성경제위원회(가칭)의 각 사업을 지원하고, 자체사업을 실행한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사무기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여성경제위원회(가칭)의 경우 업무가 상시적이면서 특정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여성경제위원회(가칭)의 주요기능 〉

- ① 여성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및 심의, 건의
- ② 여성경제정책 관련 부처 간 역할 조정
- ③ 여성경제활동 촉진 관련 사업,정책 이행점검
- ④ 여성경제활동 관련 지표개발 및 여성경제 이슈 연구

4. 여성기업 공제조합(가칭) 설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신성장 동력의 대안으로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자금이나 보증 이용 시 어려움이 많아 사업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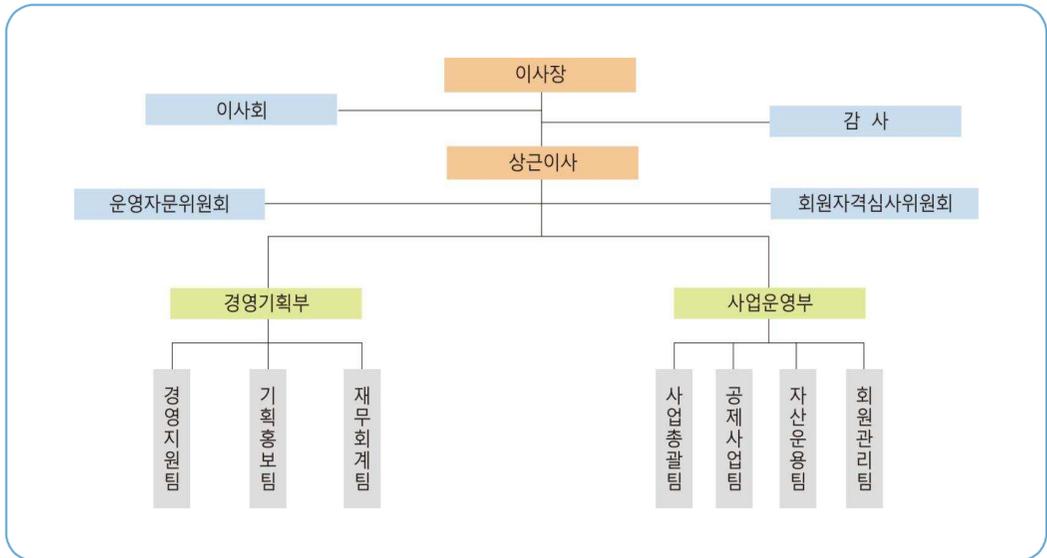
가. 설립 방안

여성기업공제조합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은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여성기업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으로 한다. 이러한 여성기업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칭) 여성기업공제사업기금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정부자금 지원과 여성기업인들의 각출금으로 마련한다. 시행 된지 30년이 지난 중소기업공제사업도 정부출연금과 회원의 공제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되 조합의 대표는 이사장이 하며, 업무 총괄은 상근이사 담당으로 한다.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또한 상근이사의 총괄 하에 경영기획부와 사업운영부의 설치 및 운영을 한다. 경영기획부는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재무회계팀으로 나누어 경영지원팀에서 조직 및 인사, 규정, 경영방침 각종 업무의 총괄 조정 등을 담당하고 사업운영부는 사업총괄팀, 공제사업팀, 자산운용팀, 회원관리팀으로 나누어 사업총괄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필요 사항을 지원하며 공제사업팀은 공제사업의 개발, 추진 및 수행을 담당한다.

또한 자산운용팀은 기금 및 재원 조상 및 자산 운용을 하며 회원관리팀은 회원가입 및 탈퇴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20〉 공제조합 조직도



나. 공제조합 사례

1) 정보통신공제조합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 조합원의 공동 이익실현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공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법인으로 설립(1988. 3. 31)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요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공사, 용역 및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와 관련 있는 의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 및 하도급이행보증, 임대차보증, 인허가보증, 납세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또는 용역의 시공사금, 운영자금, 공사용기자재의 구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조합원이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 또는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 조합원의 공사용기자재의 구매알선, 정보제공
-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대여
- 조합재산 및 기타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 등

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SW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SW사업자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자금 투자 등 고유목적 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주요사업 〉

-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3)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회 주요특징 〉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다. 추진방안

여성기업 공제조합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해당 법률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공제조합(가칭)의 주요사업은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여성기업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회원 증대를 위해서는 통합 정보망에 공제사업의 목적, 특징 등을 홍보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은 영세한 국내 여성기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여성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첨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개

가. 설립목적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경제인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주요기능

- 여성경제인 혁신 역량 강화(여성CEO MBA 교육,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여성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여성기업 인증브랜드, 홈쇼핑 입점지원,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실태조사)

다. 협회 CI

한자 ‘經’자에서 모티브를 착안



여성경제인들이 햇볕을 높이 들어 주위를 밝히고, 하나가 아닌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척박한 땅을 비옥한 양지로 만들겠다는 여성경제인들의 의지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유니크하게 형상화 하였다. 또한 여성경제인의 단합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여성경제활동을 통한 복리증진 및 회원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협회의 설립이념과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경제인들의 발전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라. 연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71년에 대한여성경제인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1999년에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어져오고 있다.

1970s-1980s

1971	10.15	대한여성경제인협회(大韓女性經濟人協會) 창립, 편정희 회장(삼풍수산)
1977	3.28	(사)재미한국인경제인협회와 자매결연
	7.6	사)한국여성실업인회 법인등록(상공부 허가 241호), 최경자 초대회장(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취임
1978	1월	미국하와이 이민 75주년 기념 한국종합상품전시회 참가
1979	9.10	(사)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개칭, 제2대 이영숙회장(제일창업(주)) 취임
1981	8월	제3대 이영숙 회장(제일창업(주)) 연임
1983	10월	제4대 백영자 회장(퀸비가구) 취임
1985	1월	월보 여성경제인 창간
	10월	제5대 백영자 회장 연임
1987	10월	제6대 이상숙 회장((주)소예산업) 취임

1990s

1991	1월	제7대 이상숙 회장 연임
1994	1.28	제8대 허복선 회장(제일중공업) 취임
1996	7.6	「여성경제인의 날」선포식, 모범여성경제인 포상
	12월	제9대 장영신 회장((주)애경) 취임
1997	7.4	「제2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1998	7.6	「제3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1999	1.28	여성기업 지원법 제정 축하연 및 여성경제인 신년인사회

- 2.5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공포(법률 제5818호)
- 5.6 연합회 해산총회 및 발기인 대회
- 6.11 (사)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해산허가(산업자원부)
- 6.1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식 출범, 창립총회 개최
- 6.24-7.9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강원, 경기, 전북, 경남, 제주 11개 지회 창립총회
- 7.10 협회 설립인가 정식 통과(중소기업청)
- 7.2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1차 정기총회, 장영신 초대회장 선출
- 10.20 충북지회 창립총회 개최
- 12.6 임시총회 개최 및 제2대 신수연 회장(코리아스테파) 선출

2000s

- 2000 6.14 「제4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01 7.6 「제5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02 3.16 울산지회 창립총회
- 3.19 제3대 이영숙 회장((주)코모도호텔) 취임
- 7.5 「제6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03 7.4 「제7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04 7월 제4대 정명금 회장(대구중앙청과(주)) 취임
- 「제8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05 5.3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개정
(여성경제인 범위확대 : 여성기업의 임원 → 모든 기업의 임원)
- 6.23 협회 사옥 현판식 개최
- 7.6 「제9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06 7.6 「제10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07 1.24 제5대 안윤정 회장((주)사라) 취임
- 7.5 「제11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10.1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허가
(중소기업청 허가번호 제 2007-7호)
- 2008 4.30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 실시(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24호)
- 7.3 「제12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 9.25-27 「2008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 11.3 외교통상부 MOU
- 2009 5.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시 법제화)
- 5.28 한국생산성본부 MOU
- 7.9 「제13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 9.16-19 '2009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 11.1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항)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물품 및 용역 5%, 공사 : 3%)

2010s ~ 현재

- 2010 1.27 제6대 전수혜 회장((주)오리엔트마린) 취임
- 7.7 「제14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 2011 6.21 「제15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 2012 5.7-12 세계여성경제인대회(여수 디오션리조트)개최
- 7.10 「제16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 2013 1.30 정기총회 개최 및 제7대 이민재 회장((주)엠슨) 취임
- 4.17 한국콘텐츠진흥원 MOU
- 6.18 미얀마 여성경제인협회 MOU
- 7.10 「제17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7.3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3항) 개정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준수 의무화)
- 10.2 IBK기업은행 '한국여성경제포럼' MOU
- 11.22 제1회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 12.20 한국남동발전 MOU
- 2014**
 -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3항) 시행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준수 의무화)
 - 3.13 제2회 여성경제포럼 개최
 - 5.27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MOU
 - 6.10 한국중부발전 MOU
 - 6.23 경기북부지회 창립기념식
 - 6.24 제3회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 6.29 중국여성기업인협회 MOU
 - 9.12 제4회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 10.23 국군재정관리단 MOU
 - 12.9 제5회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 12.19 청와대 여성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
 - 12.22 「제18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 2015**
 - 2.13 IBK기업은행 MOU
 - 3.27 제6회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 6.4 한국무역보험공사 MOU
 - 6.2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MOU
 - 7.9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10.23 제7회 한국여성경제포럼
- 2016**
 - 1.29 제8대 한무경회장(효림그룹) 취임
 - 3.11 제8회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 7.28 중국 하얼빈시 여성경제인협회 업무협약
 - 12.7 「제20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17**
 - 3.14~17 FCEM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총회 한국대표단 파견
 - 9.1~2 2017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9.26~29 APEC 여성경제 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10.27 인사혁신처 업무협약
 - 11.3 「제21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마. 조직도



바. 지회 소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는 전국에 총 16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회 및 지회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 내에 있는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기업인들에게 기업가로서의 자질향상 및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한 여성CEO MBA 교육과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홈쇼핑 입점지원 및 여성기업 인증브랜드(여움) 운영,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성기업 통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올바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산악회, 골프, 다도 등 회원들의 단합과 여가 활동을 위한 클럽활동 운영과 여성기업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내 봉사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표 6-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 및 지회 현황

지회명	설립일	주소	연락처
본회	1999.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02-369-0900
서울지회	1999.0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02-702-4244
부산지회	1999.07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051-465-1492
대구경북지회	1999.0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화랑로2길 10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053-756-0006
광주지회	1999.07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무등로 180번길 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523-6028
대전지회	1999.07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C동 223호	042-526-2861
인천지회	1999.0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032-260-3602
울산지회	2002.03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돈길로 20 3층	052-998-8585
강원지회	1999.07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033-244-5505
경기지회	1999.0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031-211-0292
경기북부지회	2014.04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031-868-8316
충북지회	1999.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167번길 4, 4층	043-231-7807
충남지회	2012.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	041-569-0570
전북지회	1999.0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063-272-9906
전남지회	2013.12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한양에드가 1차 4층	061-281-2612
경남지회	1999.0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055-212-1240
제주지회	1999.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064-726-6008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지원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특허청,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각 정부부처 산하에 여러 여성단체가 설립되고 거의 예외 없이 지휘감독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6-2〉 정부부처 산하 여성기업 관련 단체현황

관련단체	소관부서	회원수(명)	설립연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벤처기업부	2,231	1971년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벤처기업부	1,008	1999년
(사)21세기여성CEO연합	기획재정부	70	2003년
(사)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320	2001년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1,100	2004년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700	1993년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청	727	1993년

자료: 각 단체 홈페이지(2015년 11월 기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지원 관련 사업과 자금이 분산되고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다보니, 차별성 없는 사업과 자금이 중복적으로 집행돼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기업인들의 인지도 역시 낮은 상태이다.

여성기업인으로 구성된 협회들은 특정 법률 또는 「민법」에 설립 근거를 둔 법인으로서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협회는 많은 회원의 확보와 회원들이 협회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법률적 지위가 확인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기업 단체로, 협회의 뿌리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연륜도 깊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인 단체로서 대표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더불어 여성기업도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글로벌 포럼과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 여성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대표적인 여성경제인 단체로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여성경제인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여성경제인 단체의 협의체구성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단체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기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나눔경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6-3〉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법정기능

기능구분		협회의 업무(법제14조)
법령에 의한 수탁업무 기능	교육기능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정보제공기능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창업기능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판로(수출)지원기능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국제협력기능	외국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기타 기능	기타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위한 업무
	기타 수탁기능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수탁기능		
법인 본래의 기능	협회 고유의 사업기능	협회정관에 의한 회원간 교류 및 회원의 이익 증진 등 에 관한 사업

자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관, 2018.1

나. 추진과제

- 1) 협회 회원관리 및 서비스 강화
- 2)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추진
- 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재원 확보
- 4) 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
- 5) 멘토링 등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

1) 협회 회원관리 및 서비스 강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본질적으로 여성경제인들의 결합체인 특별법인으로서 안으로는 회원들 간의 교류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회원들 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보다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해 회원서비스 전담팀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회는 여성기업 단체의 대표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신규회원의 발굴 및 등록, 회원이탈방지, 및 회원서비스 강화 등 회원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을 혁신, 각 조직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회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규회원 확대는 물론 이업종 회원간 학습조직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산파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능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관리팀, 기획사업팀 이외에 회원 서비스팀을 신설,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4〉 회원지원팀의 주요활동(예시)

주요기능	세부활동
회원확대 홍보	- 미가입 여성 대상 협회DM발송 - 우수 여성기업 대상 회원유치활동
여성기업확인	- 여성기업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및 전담관리
여성기업 통합DB구축/관리	- 업종별 규모별 지원사업별 여성기업 현황정보 관리
여성기업회원 교류 지원	-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 이업종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구성 및 학습조직 구축 - 각 지회교류 및 활성화 지원

한편, 협회의 회원증가에 따른 여성기업의 복리증진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니즈 조사 후 회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정의한 후 다른 유사단체의 회원서비스 등을 벤치마킹 한후 신규 서비스 개발과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원서비스 예시 〉

- 제휴를 통한 할인 제공 서비스
- 정부정책 참여 우선기회 제공
-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상시자문
- 각종 교류회 교육 등을 통한 네트워크 참여기회 제공
- 각종 문화, 체육, 레저, 관광 등 관련 회원권 이용 서비스
- 경조사 관련 편의제공
- 각종 보험 인증 인허가 관련 대행
- 원자재 공동구매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회제공 등

이러한 협회의 회원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가령 기업경영전반에 관한 상시자문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협회 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외부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정하되, 선정된 전문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에 대해 협회의 발전기금으로 기부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무·회계·법률·마케팅·수출관세 등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기업과 서비스제공 및 기부협약을 체결, 협약기업은 서비스제공 및 수익 창출 시 일부분을 협회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추진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여성기업 정책지원활동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을 평가하는 조사이다. 1999년에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로 승인되었다.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하여 2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여성기업 육성 시책 등을 수립하는데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일대일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 팩스 및 E-mail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경영현황, 재무구조, 생산형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기업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왔으나, 각 지역별 여성기업의 창업업종, 신규 창업자수, 기업규모, 경영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각 지역별 특성 및 전략산업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지역별로 여성기업 업종을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 내 여성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심층자료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망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

- 16개 지역별 여성기업의 창업특성, 경영성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정책 요구사항 등 객관적 자료 도출
- 지역 특성에 따른 여성기업 창업 업종 비교분석
- 일반여성기업과 전략산업분야에 속한 여성기업의 특성비교
- 지역별 여성기업의 상대적 경쟁 우위 요소 도출
-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 현황과 연도별 사업규모 추이 조사
- 지역별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요구 특성 변화 등

이러한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단계별 차별적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법률적,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실질적 지원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실태를 반영한 여성기업 창업교육 아이템 선정 및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5〉 지역 전략 산업 및 연고 산업

지역	전략 산업	연고 산업
서울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IT융합,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바이오메디컬,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패션	바이오분야, 애니메이션분야, 디자인분야, 녹색성장 등
부산	항만물류산업, 관광컨벤션산업, 기계부품 소재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신발산업, 실버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축산업, 울산농산물,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	연고 산업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 공예산업, 동구포도주 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한복패션산업 등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 금속, 정보통신, 생물(바이오)분야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텔레메틱스, 자동차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정밀기기, 신소재산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산업디자인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경기	전시문화, 화훼산업, 향토자원진흥, 방송영상산업, 의료관광산업, 정보화 전략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여가관광, 관광/레포츠, 친환경농업, 도자기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전지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 옷산업, 태양광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보은문화산업, 바이오농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첨단문화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옥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보령머드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울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돗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이벤트산업,

지역	전략 산업	연고 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남해마늘가공산업, 통영진주가공산업, 창녕양파산업, Silk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재원 확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정부의 위탁사업 이외에 특별법인으로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자금확보 방법을 활용하고 자체 사업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협회가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회원의 권익증진 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고 이에 적합한 수단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업이 무엇이든간에 몇 가지 독자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협회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성공한 경우 성공보수로서 연간 0.1% 내외의 금액에 대해 협회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령 (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에서 관세경감확인서 발급수수료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성기업 확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국가 증명서

류이므로 이를 통한 자체 사업재원은 일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회의 독자사업을 위한 수익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결정된 사업용도와 회원서비스 강화 등에 활용할 경우 신규 회원 확대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서비스로 회원만족도가 개선될 것이다.

4) 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

우리사회의 여성 및 여성기업과 관련한 핵심 이슈는 일과 가정의 균형,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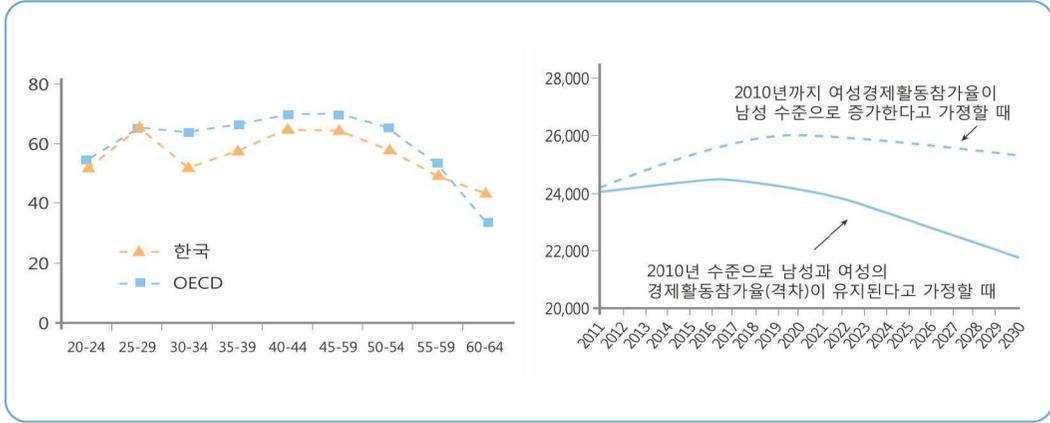
여성기업 관련 정책은 비단 어느 한 부처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설계 및 집행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여성기업 관련 단체 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기업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고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걸쳐 얽혀있고, 관련 여성기업 단체도 지휘감독 기관이 상이하다.

하지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정책이 새 정부 출범이후 폭넓게 접근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동력감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6-1>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2030노동력규모 추계

(단위 : %, 1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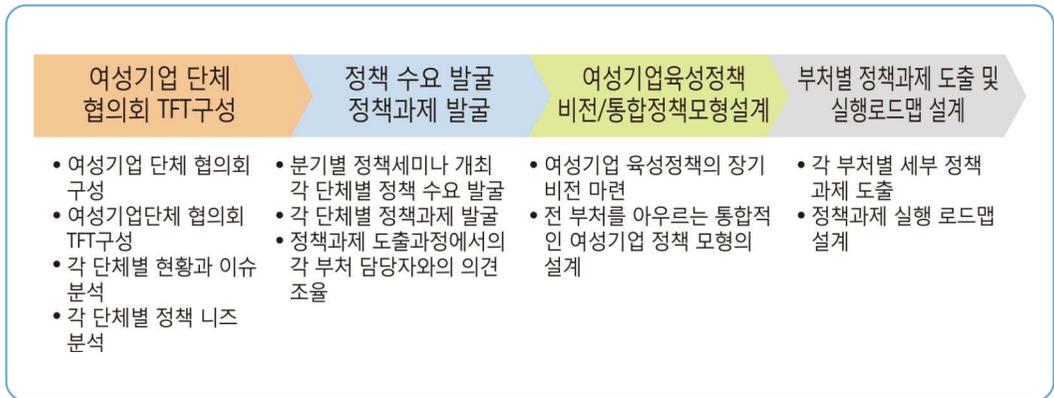
자료: OECD(2014), 「Closing the Gender Gap」

따라서 관련 부처의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처 산하의 여성기업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여성기업 관련 단체 협의체계 구성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연혁적으로 가장 오래된 여성경제인 단체일 뿐 아니라 회원 수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여성기업 성장과 지원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성기업 육성정책 모형이 설계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로드맵이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6-2〉 한국여성기업단체 협의회 구성과 운영 (예시)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3),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20 비전 및 발전전략」

5) 멘토링 등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

여성기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나눔경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그동안 여성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여성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06년도에 여성기업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회가 자율적으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실천하여 왔다.

지회별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지회의 전문계여고생 장학금 지원, 대전·충남지회의 여성가장 및 소상공인 불우이웃돕기 지원, 광주·전남지회의 장애우 사랑의 봉사 및 여고생 장학금 지원, 강원지회의 여고생 장학금 지급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구·경북지회는 소녀가장 및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의 여성기업이 장학금 지원 졸업생을 채용하여 근무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1년 6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이 되어 그 동안 각 지회에서 실천해오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기업인들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사회적 공헌 활동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여성기업 행복한 동행 발대식’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3년 7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한 여성CEO와 여성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등 예비 CEO와의 1:1멘토를 통해 선배 여성 CEO의 따뜻한 동행 선언이 이루어졌다.

여성기업 멘토링을 토대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존경받는 여성기업이 되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멘토링 선언문 〉

우리 여성CEO 멘토-멘티는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 500인의 멘토는 후배여성 CEO에게 창업과 경영노하우를 적극 전수하여 여성기업인 양성과 고용창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멘티는 선배 여성경제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CEO로서의 창업의지와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나. 우리 500인의 멘토는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물은 제거하여 후배 여성 CEO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 멘티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미래 CEO로서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려고 노력한다.

하나. 우리 멘토-멘티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여성과 사회, 국가의 발전을 항상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3. 7.10.

여성CEO 멘토-멘티 일동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개

가. 설립목적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하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주요기능

- 여성기업창업 보육공간 및 지원시설 제공,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전국 16개 지역센터 운영)
- 여성창업지원(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여성기업 판로지원(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연구조사팀 운영)

다. 재단 CI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심벌마크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Coporate Branding의 핵심요소로서 ‘WE(우리)’의 콘셉트로 개발되었다. 각각의 사각형의 조합으로 ‘W(woman)’와 ‘E(enterprise)’를 형성하여 WE를 상징한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장이 되는 ‘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21세기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시대에 많은 여성경제인들이 국가경제의 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라. 연혁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의해 2001년 국회에 센터 설립관련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이후, 2007년에 중소기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2000s ~ 현재

2007	10.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주무관청 : 중소기업청)
	10.9	2007년 정기이사회
2008	8.19	2008년 정기이사회
	11.30	부산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12.30	경기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2009	2.24	2009년 정기이사회
	6.1	중앙센터보수공사(강의실 및 회의실 등 교육시설 구축)
	11.16	대구경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12.18	전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12.16	경남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2010	1.27	2010년 제1차 임시이사회
	1.30	전수혜 이사장 취임
	2.4	2010년 정기이사회
	2.3	강원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4.3	2010년 제2차 임시이사회
	7.4	인천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10.7	2010년 제3차 임시이사회
2011	2.22	2011년 정기이사회
	1.31	충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6.30	대전충남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2012	3.26	광주전남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 12.9 울산센터(건물매입), 제주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 2013**
 - 1.1 이민재 이사장 취임
 - 12.30 충남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 2014**
 - 1.27 2014년 정기이사회
 - 12.30 전남센터 확장완료(분양매입)
- 2015**
 - 1.26 2015년 정기이사회
 - 2.25 여성경제인 DESK 설치
- 2016**
 - 1.29 한무경 이사장 취임
 - 2.19 2016년 정기이사회
- 2017**
 - 2.28 2017년 정기이사회
 - 6.22 2017년 제1회 임시이사회
 - 8.10 서울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 8.31 2017년 제2회 임시이사회
 - 11.30 주무관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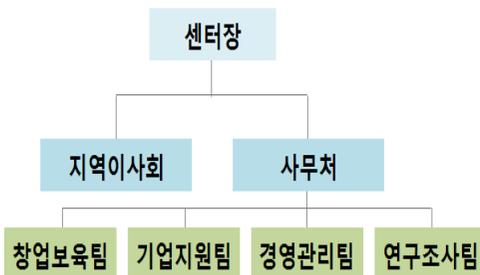
마. 조직 현황

〈조직〉



〈기구〉

① 중앙



② 지역센터



바. 지역센터 소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17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 제공, 판로, 애로상담, 창업보육 등의 지원을 통해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여성기업 지원기관의 메카로써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각 지역센터 내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여성기업과 전문적 능력을 가진 인적자본의 물리적인 제약 없이 연계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여성기업지원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여성기업 일자리허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성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수출경험이 부족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저변의 확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경제인 DESK를 설치하였고,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 연구·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 법률 개선을 위해서 연구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센터는 여성경제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활성화 유도과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표 6-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 및 지역센터 현황

센터명	설립일	주 소	연락처
중앙센터	199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24	02-369-0900
서울센터	200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02-702-4244
부산센터	200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051-465-1001
대구경북센터	1999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화랑로2길 10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053-742-5192
광주센터	1999	광주 북구 신안동 무등로 180번길 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527-1612
대전센터	2000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C동 223호	042-526-2862
인천센터	2001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032-260-3600
울산센터	200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돌길로 20 3층	052-998-8585
강원센터	200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후석로 366 2층	033-241-3475
경기센터	20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031-211-2235
충북센터	20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예체로 167번길 4 4층	043-236-6561
충남센터	201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	041-569-0572
전북센터	20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천서로 477 2층	063-272-9906
전남센터	2015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한양에드가 1차 4층	061-284-4343
경기북부센터	2018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031-868-8316
경남센터	199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055-212-1241
제주센터	2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동 관덕로 15길 23 2층	064-726-4467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발전전략

가. 배경 및 필요성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15개 지역에 센터를 갖추고 있고, 지역별 센터 간 긴밀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처음부터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으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센터 자체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17년 일자리 허브 사업을 발굴하여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의 매칭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신규사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센터 스스로 여성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수행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6-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기능구분		지원센터의 업무(시행령제12조②)
법령에 의한 수탁업무 기능	교육기능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연수
	정보제공기능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창업기능	여성의 창업지원
	판로(수출)지원기능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연구 및 조사기능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기능
	기타 수탁기능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타 수탁기능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자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관, 2018.1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 지식기술 센터(가칭) 설치
-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 현대화
- 3)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시스템 강화
- 4)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및 사업개선

1) 여성기업 지식기술 센터(가칭) 설치

2018년 2월 현재 전국 16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225개의 창업보육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 중 지식·기술집약적인 창업기업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과기부), 한국여성경제진흥원(기재부) 등의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간 연계 및 체계적 지원 기능이 수행되지 못해 여성기업 지원에 따른 실효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여성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거점지역별 (가칭)여성기업 지식기술 센터를 설치하여 지식기반의 아이디어 창업을 활성화 시킨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안의 기존 여성창업보육실과 차별화된 ‘기술기반’창업을 위한 설비들을 갖춘 다른 형태의 센터를 설치하여 연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가칭)여성기업 지식기반 센터의 운영 원칙 〉

- 지식기술창업 분야의 수익창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연장
- ※ 현재 여성기업종합센터의 보육실 입주 기한은 최대 3년임
- 여성기업 지식기반 센터에 입주하는 (1인)여성기업인은 일정 시간의 창업교육 이수(이전 이수자 제외)를 의무화함
- 여성의 감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식·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검증센터(proof-of-concept center) 운영
- ※ 지식·기술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에서의 융합, 여성친화적 지식서비스업종에서도 창의적 아이템 발굴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개념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 현대화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성창업 지원 및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여성창업보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창업보육 기능 못지않게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산하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울시 산하 여성능력개발원/여성발전센터 등의 여성창업보육 시설에 비추어서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공간 및 환경을 제공하여 여성창업 기업간 교류와 여성창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의 현대화 추진한다. 향후 시설, 전문성, 여성창업 성공률에 있어 글로벌 수준의 전문 여성창업보육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한다. 글로벌·강소형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등에 필요한 연수시설, 여성기업 커뮤니티 활동(모임) 공간 배치한다. 국내외 여성기업 동향,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대상 정부 지원 사업, 여성 기업 통계 및 정책자료, 각종 세미나/워크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성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다. 전문화된 여성창업보육 코칭 시스템 도입 : 영역별로 재무코치, 전략코

치, 운영코치, 정보기술코치, 인적자원코치, 특허코치, FTA 코치 등 체계적 이고 전문화된 코치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핀란드의 전문화된 창업보육코칭 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표 6-8〉 핀란드의 여성기업 육성 체계

단계	내용
여성창업가 발굴 단계	여성창업경진대회와 교내 로켓피치 대회 등을 통해서 창업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여성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함
Pre-Incubation 단계	발굴된 여성창업가를 중심으로 아이템을 구체화시킴. 아이템 구체화 단계에서는 기존의 생계유지형 창업아이템(음식, 교육 등)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전공이 융합된 융합형서비스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특히, 서비스, 바이오, IT, 우주항공 등)
Incubation 단계	전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하여 초기창업자금조달에서, 제품디자인, 제품생산, 특허 등 제품 실현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Acceleration 단계	투자유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필요한 전문 기관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
BomGlobal 단계	글로벌 진출시장조사, 파트너 체결, 협약, 자금지원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감소형 여성기업을 육성함

자료: 양인숙·강민정(201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대화 기본계획 내용 〉

- 컨퍼런스 콜, 화상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IT 인프라와 CCTV 등의 안전보안 시설 완비
-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휴게실, 카페, 샤워실, 물품 창고, 전용 주차장, 영유아 보육시설 등 여성친화적인 시설 및 환경 조성
- 어린 자녀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설치 및 확대, 또는 인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지원 시스템 확보
- 자녀양육과 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편의성(지리적 접근성),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배치 필요

3)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시스템 강화

여성기업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창업의 질적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지역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창업자의 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 경영지원 체제를 마련할 방안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예비창업자 및 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에게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의 특화산업 및 신기술 창업에 대한 기술타당성 분석 등 상담·자문을 통해 여성창업 적합 분야로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창업활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여성창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화산업 및 여성적합 창업 사례 등을 연구·조사하여 공유하고, 지역 특화와 관련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센터 졸업기업에 대해서는 졸업 후 준비해야 할 사무실 임대, 사업소재지 등기이전, 인력 확충에 따른 사회보험과 세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및 사업개선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 착수시기의 조정, 통합정보망을 통한 사업 참여 신청,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과지표 중 매출액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필요, 창업성공률 관리를 위한 생존률 조사 등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첫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성과지표 중 매출액산출기준은 센터가 지속적으로 보육실수를 확장하여 입주기업을 늘린다고 해도 신규 창업업체가 많이 입주하는 해는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출액, 평균매출액 지표를 매년 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둘째,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이 창업 2년 뒤 49.1%에 불과, 창업생존이 낮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창업기업에 대한 생존율 관리는 창업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휴·폐업 조사 통한 창업후 생존 지표의 조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 인력, 지원사업 등을 찾아서 매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9〉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가 연말에 시작되어 익년 연초에 마무리 되므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곤란 • 실전창업스쿨의 경우 참여자 이력관리가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 문제 발생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신규 창업업체가 많이 입주하는 해는 매출액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출액, 평균매출액 지표를 매년 상향하는 것은 불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기준의 표준화 ①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기 및 종기의 변경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가 12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10월로 조정 필요 ② 사업참여 신청자를 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하여 조사 신뢰도 향상 ③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과지표 중 매출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입주기업 전체가 아닌 1년 이상 보육업체로 산정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성공을 위한 첫번째 단계는 성공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창업 성공률 관리체계는 매우 중요한데, 창업기업에 대한 졸업 후 생존율 관리는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의 사후 성장관리 •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휴·폐업 조사 통한 생존률 지표 관리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졸업기업의 생존율 조사필요 - 또한 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창업성공 확산이 필요

또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의 효율적인 공간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는 공간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개방형 공동보육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공간수요가 높은 성장단계의 창업기업들은 대형보육실 및 소회의실 등을 제공하여 창업보육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여성기업지원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사업은 여성기업의 수요에 최적화한 전문인력을 온라인 상에서 매칭하고 활용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매칭, 검증 및 사후관리로 기업의 만족도 제고 및 유연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시스템 기반 구축 작업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타 공공기관과의 연계 및 서비스 확대 예정이다. 여성기업에 특화된 프로젝트 단위 전문인력 매칭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특히 출산, 육아 문제 등으로 인해 본인이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전문인력에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재택 근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 하고자 한다.

셋째, 수출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은 여성기업들의 선호도가 높고 사업의 유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품목별 여성기업 DB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출 준비 지원단이 박람회 특성과 여성기업 제품 간의 수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니즈를 감안한 제품 및 포장의 현지화, 샘플제품준비, 외국어카탈로그 제작 등 참가 준비를 사전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의5(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4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② 삭제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 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을"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 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법 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당해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여성기업 확인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 가. 주주명부 1부
 - 나. 사원명부 1부
 - 다. 주식 등 지분관계도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여성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2.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2.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213호,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8호,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7호·제8호,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㉓까지 생략

부 칙 (여성부직제) <제17116호, 2001.1.2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건설교통부”를 “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로, “여성특별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9> 내지 <35> 생략

부 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3조 생략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1> 생략

<15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53> 내지 <241> 생략

부 칙 <제20087호, 2007.6.1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연임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 2008.2.2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제 3 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 통신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로 한다.

-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 <제21832호, 2009.11.1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부터 〈64〉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제 3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 2013.3.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3조 생략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 생략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인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 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가족부장

관"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

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

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 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

적을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5>부터 <382>까지 생략

표
목차

<표 1-1> 각 국가별 여성기업 정의 7

<표 1-2> 전체 사업체 및 여성 사업체수 추세 8

<표 1-3> 남·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2015) 9

<표 1-4> 남·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2015) 10

<표 1-5>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률 변화 32

<표 1-6> 유럽연합(EU) 회원국 38

<표 2-1> 성장단계별 위치에 대한 인식 57

<표 2-2> 여성기업의 기업연령(업력) 58

<표 2-3> 여성기업인의 일반현황 60

<표 2-4> 여성기업체 업종별 성별 고용현황 64

<표 2-5> 여성제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현황비교(성별구분) 65

<표 2-6> 여성기업 규모별 알·가정양립 지원 현황 67

<표 2-7> 2016년도 여성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지표 68

<표 2-8> 2016년도 여성제조업 및 중소기업 재무현황 70

<표 2-9>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87

<표 2-10>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90

<표 2-11> 국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91

<표 2-12> 2016년 주요국 여성근로자 산업별 종사비율 94

<표 2-13> 지역별 여성 초기기업활동 비율(2015-2016) 104

<표 2-14> 지역별 여성기업 생계형/기회추구형 활동 비율(2015-2016) 105

<표 2-15> 지역별 성숙기 여성기업 활동(2015-2016) 107

<표 2-16> 지역별 여성기업 사업중단 활동(2015-2016) 108

<표 2-17> 지역별 여성기업 산업 분포(2015-2016) 110

<표 2-18> 지역별 여성기업 혁신 수준(2015-2016) 111

〈표 2-19〉 지역별 여성기업 수출(2015-2016)	113
〈표 2-20〉 지역별 여성기업 향후 고용 기대(2015-2016)	117
〈표 2-21〉 지역별 여성 투자 비율 및 규모(2015-2016)	118
〈표 3-1〉 미국 여성기업센터(WBC) 현황(2017년 기준)	125
〈표 3-2〉 미국의 공공구매 실적	129
〈표 3-3〉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국내외 비교 분석	190
〈표 4-1〉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 주요 내용	194
〈표 4-2〉 여성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지원정책 흐름	198
〈표 4-3〉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흐름	199
〈표 4-4〉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현황	209
〈표 4-5〉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210
〈표 4-6〉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211
〈표 4-7〉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주요사업 개요	213
〈표 4-8〉 21세기여성CEO연합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214
〈표 4-9〉 IT여성기업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215
〈표 4-10〉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 주요 수행사업 개요	217
〈표 4-11〉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218
〈표 4-12〉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220
〈표 4-13〉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222
〈표 4-14〉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224
〈표 4-15〉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225
〈표 4-16〉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226
〈표 4-17〉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228
〈표 4-18〉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17년도)	229
〈표 4-19〉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230
〈표 4-20〉 여성창업경진대회 운영 개선방안	230
〈표 4-2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231
〈표 4-2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233

〈표 4-23〉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234
〈표 4-2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235
〈표 4-25〉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236
〈표 4-2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누적 현황	239
〈표 4-27〉 여성발명진흥사업 주요혜택	243
〈표 4-28〉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 성과	244
〈표 4-29〉 여성 창업경진대회(2017 W-STARTUP COMPETITION) 지원내용	245
〈표 4-30〉 과학기술-ICT 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지원 사업성과	246
〈표 4-31〉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요	247
〈표 4-32〉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최 현황	248
〈표 4-33〉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249
〈표 4-34〉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성과	250
〈표 4-35〉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252
〈표 4-36〉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253
〈표 4-37〉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254
〈표 4-38〉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256
〈표 4-39〉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257
〈표 4-40〉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258
〈표 4-41〉 수출교육 개요	258
〈표 4-4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259
〈표 4-43〉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목록	261
〈표 4-44〉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262
〈표 4-45〉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263
〈표 4-4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264
〈표 4-4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265
〈표 4-48〉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266
〈표 4-49〉 17개 지자체 공공구매실적	267
〈표 4-50〉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271
〈표 4-51〉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성과	273
〈표 4-52〉 인증브랜드 여음 운영 추진내용	274

〈표 4-53〉 서로사랑 네트워크 운영 내용	276
〈표 4-5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 개요	279
〈표 4-55〉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성과	280
〈표 4-56〉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개요	281
〈표 4-57〉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성과	282
〈표 4-58〉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개요	283
〈표 4-59〉 공정·품질개선기술개발사업 성과	284
〈표 4-60〉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286
〈표 4-61〉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287
〈표 4-62〉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289
〈표 4-63〉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291
〈표 4-64〉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292
〈표 4-65〉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성과	294
〈표 4-66〉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296
〈표 4-67〉 여성기업 연구조사팀 운영	301
〈표 4-68〉 연구조사팀 보고서 발간 건수	302
〈표 4-69〉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 개요	303
〈표 4-70〉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실적	304
〈표 4-71〉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개요	305
〈표 4-72〉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성과	306
〈표 4-73〉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개요	307
〈표 4-74〉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성과	308
〈표 4-75〉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사업 지원계획	309
〈표 5-1〉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측정변수와 지수추정 결과분석	318
〈표 5-2〉 교육 및 연수 참가 집단별 경영성과 비교	320
〈표 5-3〉 NPD사업관련 각 기관별 주요 역할	338
〈표 5-4〉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예시)	340
〈표 5-5〉 정책자금 및 보증기금의 차등적 심사기준 개선방안	344
〈표 5-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3

〈표 5-7〉 공공기관의 유형별 현황('17년 9월 기준)	354
〈표 5-8〉 남성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	363
〈표 5-9〉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동기부여 요인(단위 : %)	364
〈표 5-10〉 여성경제연구소(가칭) 설립 방안	367
〈표 5-11〉 조직 기능	368
〈표 6-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 및 지회 현황	387
〈표 6-2〉 정부부처 산하 여성기업 관련 단체현황	388
〈표 6-3〉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법정기능	390
〈표 6-4〉 회원지원팀의 주요활동(예시)	392
〈표 6-5〉 지역 전략 산업 및 연고 산업	394
〈표 6-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 및 지역센터 현황	407
〈표 6-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408
〈표 6-8〉 핀란드의 여성기업 육성 체계	411
〈표 6-9〉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413

그림 목차

〈그림 2-1〉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46
〈그림 2-2〉 현 기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47
〈그림 2-3〉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48
〈그림 2-4〉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49
〈그림 2-5〉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50
〈그림 2-6〉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51
〈그림 2-7〉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52
〈그림 2-8〉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또는 도움 여부	53
〈그림 2-9〉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54
〈그림 2-10〉 여성기업의 인증 유형	55
〈그림 2-11〉 여성기업 주력분야 내 시장경쟁 정도	59
〈그림 2-12〉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강점	61
〈그림 2-13〉 여성기업인의 약점	62
〈그림 2-14〉 여성기업체 고용인원 및 고용구조	63
〈그림 2-15〉 여성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66
〈그림 2-16〉 2016년도 여성기업 경영지표 비교	69
〈그림 2-17〉 2016년도 여성제조업 및 중소제조업 경영지표 비교	71
〈그림 2-18〉 여성기업의 수익성	72
〈그림 2-19〉 여성기업 수출 및 매출액 구성현황	73
〈그림 2-20〉 여성기업의 연구개발(R&D) 조직 현황	75
〈그림 2-21〉 여성기업의 정기적인 직원교육 제공 여부 및 교육 내용	76
〈그림 2-22〉 여성경영자에게 필요한 교육 분야	77
〈그림 2-23〉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대우	78
〈그림 2-24〉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부분	80
〈그림 2-25〉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 분야	81

〈그림 2-26〉 여성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분야	82
〈그림 2-27〉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83
〈그림 2-28〉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	84
〈그림 2-29〉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	88
〈그림 2-30〉 OECD 회원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갭 추이(15~64세)	88
〈그림 2-31〉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91
〈그림 2-32〉 국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92
〈그림 2-33〉 OECD 회원국의 근속기간 12개월 미만 여성근로자 비율	95
〈그림 2-34〉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	96
〈그림 2-35〉 OECD 회원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97
〈그림 2-36〉 OECD 회원국의 여성 장관 비율	98
〈그림 2-37〉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여성 비율	99
〈그림 2-38〉 2016년 OECD 회원국의 여성 임원(기업) 비율	100
〈그림 2-39〉 OECD 고학력 여성고용률	101
〈그림 2-40〉 OECD 연령별 여성 고용률(2016)	101
〈그림 2-41〉 여성자영업자 비율(2016)	102
〈그림 2-42〉 OECD 회원국의 여성 초기기업활동 비율(2015-2016)	104
〈그림 2-43〉 OECD 회원국 여성의 생계형/기회추구형 기업활동 비율	106
〈그림 2-44〉 OECD 회원국의 성숙기 여성기업 활동(2015-2016)	107
〈그림 2-45〉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사업중단 활동(2015-2016)	108
〈그림 2-46〉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산업 분포 (2016)	110
〈그림 2-47〉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혁신 수준(2016)	112
〈그림 2-48〉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 수출(2016)	113
〈그림 2-49〉 국가별 기업 경영환경 인식	115
〈그림 2-50〉 OECD 회원국의 향후 고용 증가 예상	116
〈그림 2-51〉 OECD 회원국의 여성기업의 향후 고용 전망(2016)	117
〈그림 2-52〉 OECD 회원국의 여성 투자 비율(2016)	119
〈그림 2-53〉 OECD 회원국의 여성 투자 규모(2015-2016)	119

〈그림 3-1〉 여성기업가정신 Flying Goose 프로그램 수행방안	177
〈그림 3-2〉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기업 피닉스 플랜	179
〈그림 4-1〉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관련 지원사업	203
〈그림 4-2〉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229
〈그림 4-3〉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프로세스	232
〈그림 4-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236
〈그림 4-5〉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동기	237
〈그림 4-6〉 창업자금 지원자의 창업 업종 선택	238
〈그림 4-7〉 여성기업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238
〈그림 4-8〉 한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240
〈그림 4-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점(중복응답)	241
〈그림 4-10〉 생활발명 발굴지원사업(생활발명코리아) 프로세스	244
〈그림 4-11〉 컨설팅 지원 프로세스	246
〈그림 4-12〉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248
〈그림 4-13〉 여성CEO MBA교육 추진 프로세스	251
〈그림 4-14〉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253
〈그림 4-15〉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255
〈그림 4-16〉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259
〈그림 4-17〉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프로세스	260
〈그림 4-18〉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262
〈그림 4-19〉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265
〈그림 4-20〉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265
〈그림 4-21〉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제도 인지 여부	268
〈그림 4-22〉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없는 이유	269
〈그림 4-23〉 공공기관 구매 입찰 시 애로사항	269
〈그림 4-24〉 TV홈쇼핑 입점 지원 프로세스	272
〈그림 4-25〉 인증브랜드 선정절차	274
〈그림 4-26〉 국내 유통채널 확보	275
〈그림 4-27〉 서로사랑 네트워크 판매자 신청 절차	277

〈그림 4-2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280
〈그림 4-29〉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프로세스	282
〈그림 4-30〉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프로세스	284
〈그림 4-31〉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290
〈그림 4-32〉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293
〈그림 4-33〉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294
〈그림 4-34〉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298
〈그림 4-35〉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프로세스	299
〈그림 4-36〉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프로세스	304
〈그림 4-37〉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프로세스	306
〈그림 4-38〉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프로세스	308
〈그림 5-1〉 여성기업인의 필요한 교육 분야	320
〈그림 5-2〉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프로세스	323
〈그림 5-3〉 사업전환 촉진 프로세스	325
〈그림 5-4〉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스쿨 교육체계도(2017년 기준)	327
〈그림 5-5〉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여성기업 비중	329
〈그림 5-6〉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대상	330
〈그림 5-7〉 여성기업 성공사례집 발간 · 홍보 프로세스	331
〈그림 5-8〉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	333
〈그림 5-9〉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플랫폼 전략	335
〈그림 5-10〉 NPD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337
〈그림 5-11〉 서비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339
〈그림 5-12〉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342
〈그림 5-13〉 창업초기 자금조달처와 애로사항	346
〈그림 5-14〉 여성 창업활성화 생태계 시스템	347
〈그림 5-15〉 여성전용창업펀드의 운영 및 지원체계	348
〈그림 5-16〉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351
〈그림 5-17〉 여성기업제품 구매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352
〈그림 5-18〉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없는 이유	358

<그림 5-19>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 세미나 추진 프로세스 365
<그림 5-20> 공제조합 조직도 373

<그림 6-1>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2030노동력규모 추계 398
<그림 6-2> 한국여성기업단체 협의회 구성과 운영 (예시) 399

2017 여성기업 백서

발행인 : 한 무 경
발행일 : 2018년 2월
기획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조사팀
주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쇄 : 호박앤컴퍼니(주) 02-512-4556

본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2017 여성기업 백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